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710-01

CULTURAL
IMPACT
ASSESSMENT

- 2015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본 보고서는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황 혜 진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의 상실 또는 파괴에 대한 문제제기

○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 및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확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융성 기반 조성 필요

○ 「문화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된 문화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행 및 본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침 수립 필요성

□ 연구목적

○ 2014년 1차 시범평가를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및 실행

○ 공모방식을 통한 개별평가와 각 개별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인 종합평가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문화영향평가의 수행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인식 제고 및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

○ 2016년부터 시행될 본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침 수립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발전과정의 제시

○ 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평가 사례(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농어촌영향평가) 및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사례(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설계 및 추진방안과 관련된 시사점 도출

○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방식을 설정하고,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의 구체적인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개발·제시

○ 개별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

□ 연구방법

○ 2015년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추진함

- 두 개의 평가 모두 전문연구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평가'에 해당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나, 개별평가는 1개의 정책(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문화영향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면, 종합평가는 다수의 개별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meta evaluation)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개별평가기관 및 대상 정책 선정		개별평가		종합평가		결과 발표
· 공모 시행 · 평가지침 보급 · 워크숍 실시	⇨	·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사업 대한 자체평가	⇨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개별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현장평가)	⇨	· 평가결과 관련 부처·지자체 통보 · 인센티브제공 · 언론보도 등
문체부, 문광연		신청분야 연구기관·단체 등		연구원, 평가단		문체부

[그림 1] 2015년 문화영향평가 절차

○ 개별평가의 경우 공모를 통해 정책연구·평가 전문기관 중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화영향평가기관으로서 적합한 기관에서 제시한 정책을 5개 선정함

○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대상 선정 기준은 '정부·지자체 정책 또는 사업 중,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국민의 문화권에 영향이 큰 정책,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이었으며, 문화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제외함

○ 개별 평가기관 및 대상 정책의 선정은 응모기관이 제시한 연구제안서에 대한 서류심사, 제안서 발표,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다음의 〈표 1〉과 같은 5개 평가기관과 5개의 정책이 선정됨

〈표 1〉 2015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기관 및 대상정책

정책	주관	내용	자체평가 기관
새뜰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농식품부/ 지역발전 위원회	o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논의, 2015년부터 시작	(사)인문사회연구소

정책	주관	내용	자체평가 기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o 우수 시장 6개소 선정,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하여 외국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 서울 남대문, 부산 국제, 대구 서문, 전주 남부, 청주 육거리, 제주 동문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서울시	o 세운상가 보존 결정에 따라, 세운상가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 자원을 연계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 활성화	(사)문화사회연구소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o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행정 구현, 마을공동체를 통해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관계망 복원, 공동체 회복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강원도청	o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 문제를 해결	문화컨설팅 바라

○ 개별평가는 아래의 〈표 2〉에서 제시된 공통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사업 및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평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적합한 평가방법에 따라 수행

〈표 2〉 2015년 개별평가의 핵심(공통)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평가방법 예시
문화기본권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의 양태 • 영향의 경로 • 영향력의 크기 • 영향력의 지속성	•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자료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 및 시뮬레이션 •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심층인터뷰 • 델파이기법 • 초점집단면접(FGI)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종합평가는 개별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함

○ 종합평가기관은 개별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인터뷰 참관 등을 통해 개별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또한 개별평가기관과의 통합워크숍을 통해 평가과정 및 결과의 공유를 통해 개별평가에서 나타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함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경우 개별평가기관에 평가지표의 선택과 평가방법의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진행함

〈표 3〉 2015년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생활문화예술 참여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 다양성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문화정체성	4.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의 조화
	5.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문화공동체

○ 개별평가와 종합평가 모두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계획)의 대상지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field study)와 정책 관계자(사업담당자,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FGI(Focused Group Interview)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활용했으며, 특히 종합평가의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함

3.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함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문화로 옷 입히기)'를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타 분야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교정 기제의 부재
- 문화기본권의 침해 방지 및 문화적 권리의 확대

-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 방지 및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 실현
- 문화적 요소의 고려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문화영향평가의 전개과정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문화부문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되었으며, 2003년에는 「문화영향평가제도 연구(문화사회연구소, 2003)」, 「문화영향평가제도 해외사례조사 연구(김규원, 2003)」가, 2006년에는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06)」 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됨

○ 한편 2013년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김효정, 2013)」, 「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4)」가 진행됨

- 특히 「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4개의 정책(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에 대한 시범평가가 진행됨

□ 국내외 유사 영향평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 명확한 절차 제시 및 평가기준 설정

○ 의무조치의 부과를 통해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 타 부처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활성화 모색

○ 영향평가 참여유인(인센티브)의 마련

4.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가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내부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어 특색있는 마을로 재창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종합평가결과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

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동 사업은 대규모 시설조성보다는 마을 단위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주거 특성(아파트, 단독다가구, 한옥, 상가 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고유한 유형문화유산이 문화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된 사업결과 또는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움
- 한편 주민들이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이나 빈집이나 폐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화 하는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나 참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예술가나 기획자 등과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작업 이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어렵기는 하나 공동육아, 마을축제, 마을신문 제작, 마을공동체 교육 등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관련된 인물, 사건, 이야기 등이 발굴되고 재창조됨으로써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형성 및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큼
- 따라서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재창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결과에 대한 자료화 또한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강원도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이타적·양보적 태도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종합평가결과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기본계획에서 '지역향토자원(사회·문화·자연·역사)을 활용할 것을 주요한 기본방향으로 제시

하고 있고 선정된 사업 내용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이나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그러나 공동체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의 아이템을 문화유산으로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마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인문학적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마을의제 발굴 및 지역자원 조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마을의 역사적, 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강좌, 마을 자원조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을 조기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교육·컨설팅 등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새뜰마을 사업

○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되었으며, 전국 55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함

○ 종합평가결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항목을 제외한 5개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무형문화유산'과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무형문화유산'과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용효율성만을 고려한 개발·보수가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 담장, 계단, 마을길과 같은 촌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문화경관, 산업경관, 생활문화유산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 또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마을 고유 문화경관의 의미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방안

-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역사, 설화, 기술, 예법, 생활문화, 놀이문화, 음식문화, 전통적 관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발·보수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 간의 충분한 사전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콘텐츠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 박원순 시장 체제 이후 서울의 개발사업들은 기존의 뉴타운 사업 정책을 지양하고, 오래된 건축물관 공간을 보존·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운상가군 활성화, 청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창신·숭의 지역의 봉제 및 의류 중심의 재생공간 조성 사업, 성동구 성수동 지역 수제화 제조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서울역 고가재생사업 등임

○ 종합평가결과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문화향유'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문화향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새로이 조성되는 활력거점(세운전자박물관, 공연이벤트 상설무대, 갤러리, 젊은 예술가 창작실 등)의 공간 조성 뿐 아니라, 그 이후 공간운영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잠재적 이용자(상가주민, 인근주민, 관광객 등)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이들의 문화접근성과 실질적 문화향유수준의 제고가 가능할 것임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세운상가 공동체 구성원(상가 소유자, 세입자, 인근 주민, 입주 문화예술인,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등)간 이해관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과 관계맺기 프로그램이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세운상가 재생사업 이후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소유주와 상인 간 상생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 기존 유통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확대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크게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중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상인대학(점포대학), 상인조직 역량강화,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전통시장 ICT 육성,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이 포함됨

○ 이 중에서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K-POP 등 한류공연·음식, 한국문화체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필수 관광코스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당 3년간 50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임

○ 종합평가결과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향유'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표현 및 참여'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표현 및 참여'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추진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참여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일방적·하향적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동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기획자 등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참여 기제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주된 정책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며 주된 지원 내용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이목을 끌기 위한 볼거리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외에도 시장상인, 내국인 방문객, 인근 주민 등에게도 열려있는 생활문화 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문화마케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해당 시장이나 주변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디자인의 적용 및 상품·콘텐츠의 개발, 비용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한 시설현대화, 상권 활성화로 인한 현대적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무분별한 입점 등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경관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인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시사점 및 향후 방향

1) 개별평가의 시사점과 향후 방향

□ 시사점

○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지역적·내용적·절차적 다양성 및 평가 적용가능성 확인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창조적 해석과 구성

○ 개별사업 평가결과 검토를 통한 문화영향평가 준거 자료 확보 및 전망

□ 향후 방향

○ 평가대상의 세분화 및 체계화를 통한 선명한 포지셔닝 필요

○ 지표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적합성과 확산성 제고

○ 평가체계와 평가방식의 확정 및 매뉴얼화

2) 종합평가의 시사점과 향후 방향

□ 시사점

○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포괄적 프레임(frame)을 개발 및 제시

○ 문화영향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의 정의 및 조작화 시도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균형 추구

□ 향후 방향

○ 평가지표 및 방법의 지속적 개선과 보완

- 전년도 평가결과의 공유 및 워크숍과 전문가 FGI의 적극적 활용
- 종합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부담 간 균형 모색

○ 평가자료 수집 시기의 조정 및 전문평가단의 조기 참여

- 사업기본계획 / 실행계획 / 현황자료의 초기 협조 확보
- 종합평가 전문평가단의 조기 참여 및 현장조사 의무화
- 개별평가의 문헌검토, 통계자료 확보, 설문조사 설계의 엄밀성 강화

○ 평가지침의 명확화와 간주관성 확보

- 평가지침의 명확화 및 평가회의·통합워크숍 등을 통한 간주관성 확보
- 사전평가와 과정(사후)평가의 평가 초점 차별화
- 평가의 범위 및 사례분석의 활용 방법 제시

○ 표준평가모형 개발

○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대상정책 선정 우선순위 설정

3)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법적 기반 재정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대상 선정 권한 추가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체화 및 위상 제고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중앙/지방)
- 자료협조 및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 명시

○ 문화영향평가 DB시스템 구축 (CIAS :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 대국민 공모를 통한 대상과제 선정
-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촉구
- 결과공유포럼 개최로 평가시행결과 공유 및 의견 청취
-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 각종 평가지표에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반영
-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참고 자료로 포함
- 우수기관 표창 및 시상
- 정책 및 사업 홍보 지원

○ 평가 결과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영향평가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권한
- 중앙행정기관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결과 통보 의무 규정
- 종합결과보고서 공표 및 개선 현황 점검

6.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시

○ 6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제시함

목 차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 범위 ····· 6
2. 연구 방법 ····· 7
3. 연구 흐름도 ····· 9

제2장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발전과정 ····· 13
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 13
2. 문화영향평가 논의의 발전과정 ····· 22
3.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 27

제2절 국내 타 분야 영향평가 사례 분석 ····· 30
1. 환경영향평가 ····· 30
2. 성별영향분석평가 ····· 40
3. 고용영향평가 ····· 59
4. 농어촌영향평가 ····· 72
5. 시사점 ····· 77

제3절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 분석 ····· 83
1. 미국 :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 83
2. 캐나다 : 노스웨스트 준주의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 91
3. 뉴질랜드 ····· 102
4. 영국 : 영향평가제도 ····· 106
5. 시사점 ····· 111

제3장 2015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제1절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 117
1.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117
2.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방식 ····· 117

제2절 개별평가의 설계 ····· 122
1. 대상 정책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122
2. 개별평가 지표와 방법 ····· 125

제3절 종합평가의 설계 ····· 132
1. 종합평가의 목적과 의의 ····· 132
2. 종합평가 지표와 방법 ····· 132

제4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개별평가

제1절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 153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 15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162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 166

제2절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개별평가 결과 ····· 171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 171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183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 186

제3절 새뜰마을 사업 개별평가 결과 ····· 192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 19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198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 204

제4절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결과 ····· 223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 22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229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 231

제5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 236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 236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250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 256

제6절 개별평가 종합 ····· 264
1. 개별평가 종합을 통한 시사점 도출 ····· 264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266

제5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가

제1절 종합평가 결과 ····· 273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273
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 278
3. 새뜰마을 사업 ····· 283
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 286
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 291

제2절 종합평가의 시사점 및 한계 ····· 296
1. 종합평가의 시사점 ····· 296
2. 종합평가의 한계 ····· 298

제3절 개선방안 ····· 301
1. 평가지표 및 방법의 지속적 개선과 보완 ····· 301
2. 평가자료 수집 시기의 조정 및 전문평가단의 조기 참여 ····· 301
3. 평가지침의 명확화와 간주관성 확보 ····· 303
4. 표준평가모형의 개발 ····· 303
5.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대상정책 선정 우선순위 설정 ·· 304

제4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306
1. 법적 기반 재정비 및 DB시스템 구축 ····· 306
2. 인식 확대 방안 ····· 310
3.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 312
4. 평가 결과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314

제6장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시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 317
1. 개념 ····· 317
2. 목적 ····· 317
3. 도입배경 ····· 317
4. 법적 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 318
5. 추진경과 ····· 318
6. 대상 ····· 318
7. 평가 유형 ····· 320
8. 평가절차 ····· 321
9. 평가체계 ····· 322
10. 추진일정 ····· 32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26
1.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 326
2.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운영 ····· 326
3. 선정절차 ····· 328
4. 대상선정기준 ····· 328

제3절 개별평가 ····· 330
1. 개요 ····· 330
2. 평가기관 선정 ····· 331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332
4. 평가보고서의 작성 ····· 339
5. 개별평가의 관리 및 지원 ····· 343

목 차 Contents

제4절 자체평가 ····· 344

1. 개요 ····· 344
2. 평가시행 체계 및 절차 ····· 345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347
4. 체크리스트 및 평가보고서 작성 ····· 348
5. 자체평가 참여시 인센티브 ····· 362

제5절 평가결과의 제시 및 활용 ····· 363

1. 정책권고 및 이행점검 ····· 363

참고 문헌 ····· 365

부록 ····· 373

1. 2015 문화영향평가(종합평가) 주요개념 및 평가지표 ····· 375
2. 2015년 종합평가 서면평가서 양식 ····· 389

〈표 1-1〉 2014년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 수행내역 ····· 4
〈표 1-2〉 개별평가 대상 정책 및 평가기관 ····· 6
〈표 1-3〉 2015년 개별평가의 핵심(공통)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8
〈표 1-4〉 2015년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 8
〈표 1-5〉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구성 ····· 9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 24
〈표 2-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지표 ····· 24
〈표 2-3〉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유형(안) ····· 26
〈표 2-4〉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 27
〈표 2-5〉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 27
〈표 2-6〉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평가영역 및 항목 ····· 28
〈표 2-7〉 일반환경영향평가 주요시행연혁 ····· 30
〈표 2-8〉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37
〈표 2-9〉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서 제시한 지표에 의한 평가 ····· 37
〈표 2-10〉 '11~'15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자료 ····· 40
〈표 2-11〉 환경영향평가 예산 ····· 40
〈표 2-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시행연혁 ····· 42
〈표 2-13〉 대상계획 선정기준 ····· 43
〈표 2-14〉 대상사업 선정기준 ····· 43
〈표 2-15〉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구분 및 역할 ····· 45
〈표 2-16〉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현황 ····· 46
〈표 2-17〉 2014년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현황 ····· 47
〈표 2-18〉 법령의 평가지표 ····· 52
〈표 2-19〉 계획의 평가지표 ····· 53
〈표 2-20〉 사업의 평가지표 ····· 54
〈표 2-21〉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 58
〈표 2-22〉 2013-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추진 결과 ····· 58
〈표 2-2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 ····· 59
〈표 2-24〉 성인지정책 예산 ····· 59
〈표 2-25〉 고용영향평가 주요 시행연혁 ····· 60
〈표 2-26〉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65
〈표 2-27〉 '12~'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68
〈표 2-28〉 '13~'15년도 고용영향평가사업 예산 ····· 69
〈표 2-29〉 2015년도 정규 평가과제 ····· 70
〈표 2-30〉 2015년도 현안 이슈 과제 ····· 70
〈표 2-31〉 2015년도 지속 평가과제 ····· 70
〈표 2-32〉 농어촌 영향평가 주요시행 연혁 ····· 72
〈표 2-3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정책과 관련 부처 ····· 73

표 목차 Contents

〈표 2-34〉 사회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준비를 위임 또는 포함한 법규와 규칙 ····· 84
〈표 2-35〉 사회영향평가 원칙 ····· 88
〈표 2-36〉 사회영향평가 지표 ····· 89
〈표 2-37〉 NEPA에 따른 EIS 체크리스트 ····· 91
〈표 2-38〉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주요시행 연혁 ····· 94
〈표 2-39〉 등급별 평가유형 비교 ····· 95
〈표 2-40〉 검토위원회 중대성 판단 지표 ····· 99
〈표 2-41〉 평가요소의 기초조건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 100
〈표 2-42〉 2015년 하반기 기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사업 ····· 101
〈표 2-43〉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평가 필요 여부 판단 단계 ····· 103
〈표 2-44〉 영국 영향평가제도 주요 시행 연혁 ····· 106
〈표 3-1〉 2015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기관 및 대상정책 ····· 118
〈표 3-2〉 2015년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119
〈표 3-3〉 세부 평가지표 예시 ····· 120
〈표 3-4〉 종합평가 연구진의 현장조사 및 인터뷰 참관 ····· 121
〈표 3-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 125
〈표 3-6〉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개별사업 평가지표 ····· 126
〈표 3-7〉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 127
〈표 3-8〉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평가지표 : 정성적 평가 ····· 129
〈표 3-9〉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평가지표 : 정량적 평가 ····· 130
〈표 3-10〉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 131
〈표 3-11〉 2015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평가지표 세부지표 ····· 133
〈표 3-12〉 문화경관의 영역 ····· 143
〈표 3-13〉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의 유형 예시 ····· 144
〈표 3-14〉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구성 ····· 149
〈표 4-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대 전략 ····· 154
〈표 4-2〉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요 및 예산 ····· 157
〈표 4-3〉 연도별 지원사업 종류 및 신설과 폐지 상황 ····· 158
〈표 4-4〉 마을활동가 양성 계획 ····· 162
〈표 4-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대상 ····· 163
〈표 4-6〉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 164
〈표 4-7〉 자체평가기관 평가점수체계 ····· 165
〈표 4-8〉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사업수혜대상자 설문항 ····· 166
〈표 4-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 167
〈표 4-10〉 2015년 1차 선정 공동체 현황 ····· 173
〈표 4-11〉 2015년 2차 선정 공동체 현황 ····· 175
〈표 4-12〉 사업 형태별 지원한도액 및 자부담비율 ····· 177
〈표 4-13〉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형태에 따른 사업 및 세부내용 ····· 177

〈표 4-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내용별 유형 및 세부내용 ····· 178
〈표 4-15〉 마을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른 특징 ····· 179
〈표 4-16〉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대상 선정 기준 ····· 180
〈표 4-17〉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 평가 기준 ····· 181
〈표 4-18〉 시군별 조사 대상 공동체 현황 ····· 183
〈표 4-19〉 세부지표와 설문문항 ····· 185
〈표 4-20〉 정책 수립과 실행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 186
〈표 4-21〉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 186
〈표 4-22〉 긍정적 영향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 187
〈표 4-23〉 평가지표별 평균점수와 순위 ····· 188
〈표 4-2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190
〈표 4-25〉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새뜰마을 사업 선정지역 ····· 194
〈표 4-26〉 새뜰마을사업 생활인프라 사업 예시 ····· 197
〈표 4-27〉 새뜰마을사업 휴먼케어 사업 예시 ····· 197
〈표 4-28〉 델파이 기법 기간 및 절차 ····· 198
〈표 4-29〉 새뜰마을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 199
〈표 4-30〉 새뜰마을 평가지표 (문화정체성) ····· 199
〈표 4-31〉 문화기본권 중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 200
〈표 4-32〉 문화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 200
〈표 4-33〉 문화기본권 중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 201
〈표 4-34〉 문화정체성 중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 201
〈표 4-35〉 문화정체성 중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 202
〈표 4-36〉 문화정체성 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 203
〈표 4-37〉 환산점수표 ····· 204
〈표 4-38〉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종합 점수 ····· 204
〈표 4-39〉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 사업계획안 ····· 208
〈표 4-40〉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 평가 점수 해석 기준 ····· 211
〈표 4-41〉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 평가 결과 종합 ····· 218
〈표 4-42〉 세운상가 도시재생의 3대 사업 목표 ····· 224
〈표 4-43〉 보행데크 거점공간 조성안 ····· 228
〈표 4-44〉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개별평가 방법 ····· 230
〈표 4-45〉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세부 사업 및 지원내용 ····· 236
〈표 4-46〉 전주 남부시장 연령별·성별 상인 현황 ····· 237
〈표 4-47〉 전주 남부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 현황 ····· 237
〈표 4-48〉 전주 남부시장 품목별 점포수 현황 ····· 237
〈표 4-49〉 청주 육거리시장 연령별·성별 상인 현황 ····· 240
〈표 4-50〉 청주 육거리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 현황 ····· 240
〈표 4-51〉 청주 육거리시장 품목별 점포수 현황 ····· 241

표 목차 Contents

〈표 4-52〉 전통시장 특성화 유형 및 내용 ····· 243
〈표 4-53〉 2015년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대상 ····· 245
〈표 4-54〉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세부 사업 계획 ····· 248
〈표 4-55〉 청주 육거리시장·성안길 육성사업 세부 사업 계획 ····· 249
〈표 4-56〉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 ····· 250
〈표 4-57〉 문헌조사 개요 ····· 252
〈표 4-58〉 현장 방문조사 개요 ····· 253
〈표 4-59〉 인터뷰 개요 ····· 253
〈표 4-60〉 설문조사 대상인원 ····· 254
〈표 4-61〉 방문객 및 시장상인 대상 설문문항 ····· 254
〈표 4-62〉 문화영향평가 평가 지표의 재구조화(예시) ····· 269
〈표 5-1〉 문화기본법 개정(안) ····· 302
〈표 5-2〉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307
〈표 5-3〉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308
〈표 5-4〉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310
〈표 6-1〉 분야별 예시 ····· 319
〈표 6-2〉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 320
〈표 6-3〉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성 ····· 323
〈표 6-4〉 분야별 예시 ····· 329
〈표 6-5〉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 333
〈표 6-6〉 2016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 세부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의 예시 ····· 334
〈표 6-7〉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 348
〈표 6-8〉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평가항목 ····· 351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 9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 14
[그림 2-2] 국내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발자취 ····· 31
[그림 2-3]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 33
[그림 2-4]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 34
[그림 2-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 35
[그림 2-6]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 49
[그림 2-7]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절차 ····· 50
[그림 2-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 51
[그림 2-9]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 58
[그림 2-10] 고용영향평가 체계 ····· 63
[그림 2-11] 고용영향평가 절차 ····· 64
[그림 2-12] 농어촌 영향평가 평가체계 ····· 75
[그림 2-1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절차 ····· 76
[그림 2-14] 국내 타분야 영향평가 사례의 시사점 ····· 82
[그림 2-15] 사회영향평가 절차 ····· 87
[그림 2-16] 노스웨스트 준주의 위치 ····· 92
[그림 2-17]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단계 ····· 96
[그림 2-18] 문화영향평가의 6단계 모델 ····· 98
[그림 2-19]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절차 ····· 104
[그림 2-20]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후 절차 ····· 105
[그림 2-21] 영향평가과정 단계 ····· 109
[그림 2-22] 영향평가과정에 따른 평가절차 흐름도 ····· 109
[그림 2-23] 영국 영향평가를 시행한 정책 문건 현황 ····· 111
[그림 2-24]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의 시사점 ····· 114
[그림 3-1] 2015년 문화영향평가 절차 ····· 117
[그림 3-2] 2015년 개별평가의 평가방향 ····· 119
[그림 4-1] 마을공동체의 과제 및 전략 ····· 153
[그림 4-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절차 ····· 161
[그림 4-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문화영향 (서면평가 결과) ····· 167
[그림 4-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체계 ····· 179
[그림 4-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절차 ····· 181
[그림 4-6] 새뜰마을 사업 시행절차 ····· 196
[그림 4-7] 현장 평가(케이스 스터디) 연구 흐름도 ····· 205
[그림 4-8] 연호2리 옛 모습(70년대) ····· 206
[그림 4-9]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206
[그림 4-10]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206
[그림 4-11]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207

그림 목차 Contents

[그림 4-12]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207
[그림 4-13]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슬레이트지붕 철거 ····· 209
[그림 4-14]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시설 ····· 209
[그림 4-15]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텃밭 조성 ····· 209
[그림 4-16]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환경미술 ····· 210
[그림 4-17]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 210
[그림 4-18]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 210
[그림 4-19] 문화영향시범 자체평가 - 종합평가지수 ····· 211
[그림 4-20]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격차(평균) ····· 212
[그림 4-21]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표현의 자유(평균) ····· 213
[그림 4-22]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평균) ····· 214
[그림 4-23]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유산(평균) ····· 215
[그림 4-24]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적 경관(평균) ····· 216
[그림 4-25]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공동체(평균) ····· 217
[그림 4-26] 초록띠 공원 조성안 ····· 228
[그림 4-27] 전주 남부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 238
[그림 4-28] 전주 남부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 238
[그림 4-29] 전주 남부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 238
[그림 4-30] 전주 남부시장 이벤트 활용가능 공간 시설현황 ····· 239
[그림 4-31] 청주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 241
[그림 4-32] 청주 육거리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 241
[그림 4-33] 청주 육거리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 241
[그림 4-34]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체계 ····· 245
[그림 4-35]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 ····· 246
[그림 4-36]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 ····· 247
[그림 4-37] 개별평가 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 266
[그림 4-38]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 267
[그림 4-39] 문화영향평가 방법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 270
[그림 5-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 278
[그림 5-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 282
[그림 5-3] 새뜰마을 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 286
[그림 5-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종합평가 결과 요약 ····· 290
[그림 5-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 295
[그림 6-1]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 321
[그림 6-2]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 322
[그림 6-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전문평가) ····· 324
[그림 6-4]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자체평가) ····· 324
[그림 6-5] 문화영향평가 추진일정 ····· 325

[그림 6-6] 문화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절차 ····· 328
[그림 6-7]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평가모형 ····· 332
[그림 6-8]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표준분석·평가 절차 ····· 337
[그림 6-9]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절차 ····· 346
[그림 6-10]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체계 ····· 34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대두

○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된 '문화융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권 향유 및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영향력의 긍정적인 성과를 유도·지원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됨

○ 「문화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문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정책수단의 마련 필요

-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문화를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문화를 통한 국가 사회 전체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시행 2014.3.31.]

□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요구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은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여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실행방안 필요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법률 제12134호, 2013.12.30., 제정] [시행 2014.3.31.]

□ 2014년 1차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보완 필요

○ 2014년 3월부터 12월에 걸쳐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적절성,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음

-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대상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산업단지 유휴시설·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2건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행복주택 정책' 2건이었음

〈표 1-1〉 2014년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 수행내역

〈2014년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 수행내역〉

2014년 문화영향평가에서 적용된 핵심지표

구분	핵심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프로그램	문화수요와 표현충족
문화정체성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

①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정책내용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정책평가 및 제언

-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환경에 긍정적 영향력 기대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으로의 확산안 필요

② 산업단지 유휴시설·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정책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지역의 폐산업시설을 예술인 창작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정책평가 및 제언

- 지역민 중심의 협의회 구성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문화영향력 확산 기대
- 사전 파일럿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나, 전문가 창작과 시민향유의 연계 및 관계형성 관련된 전략의 보완 요망

③ 도시재생 정책

정책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정책내용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도록 지원

정책평가 및 제언

- 전통시장 및 공동체 보존, 지역 특화산업 활용, 주민 참여 계획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외부전문가, 기획자 등의 바람직한 협업체계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제 프로그램 영 인력 배치 요망

④ 행복주택 정책

정책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정책내용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정책평가 및 제언

- 주택 조성 시 만들어진 문화공간의 개방으로 주민 문화수용 충족 기대
- 공간 디자인 및 시공과정에서 입주민이 참여할 플랫폼 구축이 필요

○ 1차 시범평가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다양한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

- 특히 문화진흥을 주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의 의의 제고 필요

- 현장평가 일정까지 포함하여 평가 일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현장평가와 서류평가가 통합되어 평가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평가대상 정책이 시설·공간 정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특성화평가항목 없이 핵심평가항목과 평가지표로만 평가함.
- 실질적으로 평가수행시 직접적 기준이 되는 세부지표의 최소기준의 개념 및 기준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

2. 연구 목적

□ 2014년 1차 시범평가를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문화영향평가를 설계

○ 2014년 개발된 평가 핵심지표(문화기본권 지표 2개, 문화정체성 지표 2개)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의 완성도를 높임

□ 각각의 정책에 적합한 전문적인 문화영향평가의 수행

○ 공모방식의 활용을 통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개별평가 수행기관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각의 정책에 적합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인식 제고

○ 5개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문화영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 및 향후 시행 지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2016년 본격 시행될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발전과정의 제시

- 기존에 이루어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간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제시

○ 국내 타 분야 영향평가 사례 분석

- 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평가 사례(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농어촌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설계 및 추진방안과 관련된 시사점 도출

○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 분석

-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사례(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설계 및 추진방안과 관련된 시사점 도출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설계 및 평가결과 제시

○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방식을 설정하고,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의 구체적인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개발·제시

○ 개별평가의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5개 평가기관과 5개의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선정하고, 핵심평가지표(문화기본권 분야 지표 3개와 문화정체성 분야 지표 3개로 구성)와 각 평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특성화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정책과 평가기관은 다음의 〈표 1-2〉와 같으며, 개별평가에서는 자체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각 정책(사업 및 계획)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

〈표 1-2〉 개별평가 대상 정책 및 평가기관

정책명	주관	정책 내용	평가기관
새뜰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농식품부 /지역발전 위원회	o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논의, 2015년부터 시작	(사) 인문사회연구소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중소 기업청	o 우수 시장 6개소 선정,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하여 외국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명	주관	정책 내용	평가기관
		- 서울 남대문, 부산 국제, 대구 서문, 전주 남부, 청주 육거리, 제주 동문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서울시	o 세운상가 보존 결정에 따라, 세운상가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 자원을 연계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 활성화	(사) 문화사회연구소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o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행정 구현, 마을공동체를 통해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관계망 복원, 공동체 회복	(사) 한국문화기획학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강원도청	o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 문제를 해결	문화컨설팅 바라

○ 한편 종합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개별평가에 대한 상위평가(meta analysis)를 통해 개별평가결과를 종합하고 개별평가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통일한 종합평가지표를 통해 비교가능한 평가결과를 제시하도록 함

□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시

○ 개별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

2) 시간적 범위

○ 평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2015년 1월~2015년 12월까지로 하되, 대상 정책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제시함

3) 공간적 범위

○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별 정책의 공간적 대상범위에 한정함

2. 연구 방법

○ 2015년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진행됨

○ 개별평가의 경우, 아래의 〈표 1-3〉에서 제시된 공통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사업 및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평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적합한 평가방법에 따라 수행

- 개별평가기관이 구체적으로 사용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은 제4장에서 서술함
- 종합평가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개별평가의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함

〈표 1-3〉 2015년 개별평가의 핵심(공통)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평가방법 예시
문화기본권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의 양태 • 영향의 경로 • 영향력의 크기 • 영향력의 지속성	•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자료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 및 시뮬레이션 •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심층인터뷰 • 델파이기법 • 초점집단면접(FGI)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종합평가의 경우,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함

- 세부지표의 내용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함

〈표 1-4〉 2015년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생활문화예술 참여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 다양성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문화정체성	4.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의 조화
	5.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문화공동체

○ 개별평가와 종합평가에서 활용된 공통적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

- 국내외 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부보고서, 학술논문, 홈페이지 자료 참고
-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현황자료, 통계자료 참고

○ 현장 평가 및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계획)의 대상지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field study)와 정책 관계자(사업담당자,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수행

○ FGI(Focused Group Interview) 및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정책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FGI(Focused group interview) 수행
- 대상 정책 및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발, 정책제언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평가단 구성을 통한 종합평가 수행

- 종합평가단 구성을 통한 종합평가 수행 및 결과 제시

〈표 1-5〉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구성

구분	종합평가단	
문화기본권	서순복 교수(조선대)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 임학순 교수(가톨릭대) 한승준 교수(서울여대) 홍기원 교수(숙명여대)	양혜원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종은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체성	구자훈 교수(한양대) 김규원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백선혜 박사(서울연구원) 안창모 교수(건국대)	

3. 연구 흐름도

○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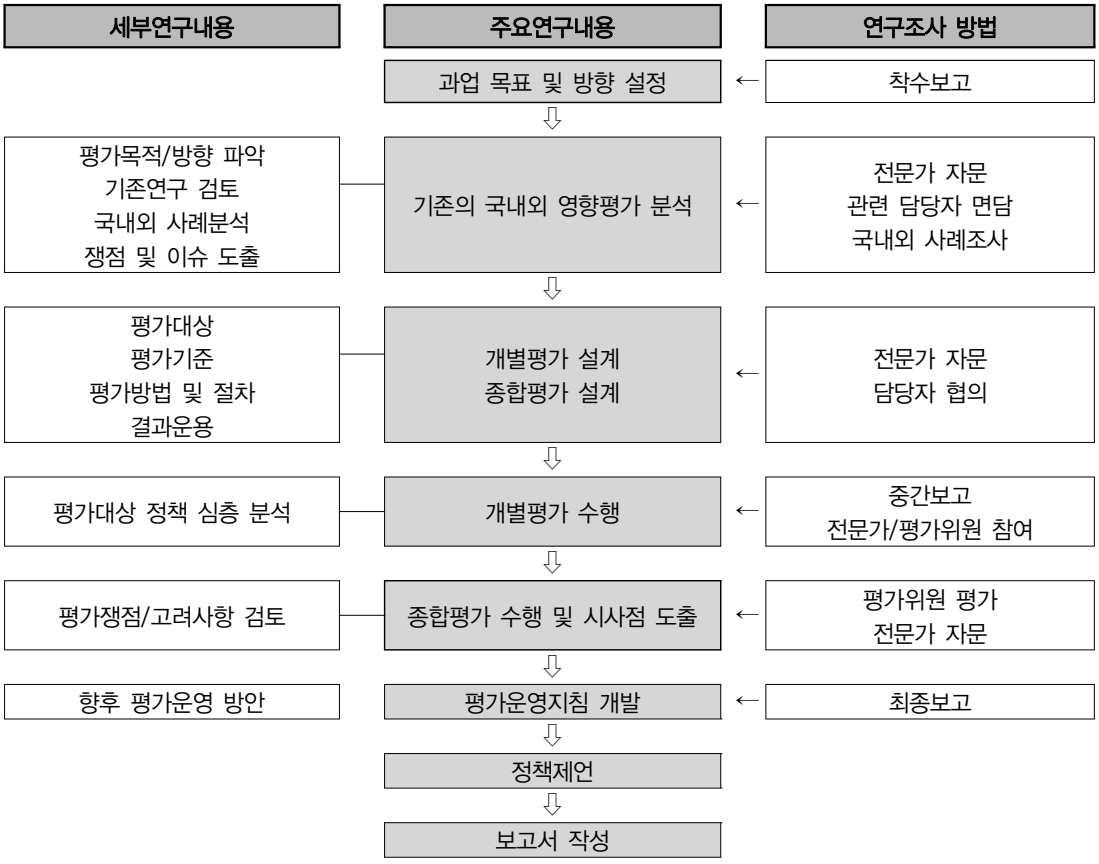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제2장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발전과정
제2절 국내 타 분야 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3절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 분석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발전과정

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함

○ 이러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간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으로서, 또한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국가·국민·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문화적 부가가치를 통해 더 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인식 제고에 힘입어 대두됨

○ 즉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문화로 옷 입히기)'를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2)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

가. 타 분야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교정 기제의 부재

○ 문화영향평가는 타 분야에서 수립되고 추진되는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기제(correction mechanism)의 역할을 수행함

○ 교육정책, 복지정책, 인프라 조성 정책 등 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고유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해당 분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만을 고려하여 입안되기 때문에 동 정책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비가시적인 문화적 영향이나 정책대상의 삶의 방식, 태도, 가치, 관계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난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의 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산업기반시설은 갖추어졌으나 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문화기반시설은 과소하게 공급되거나, 해당 지역공동체의 가치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방식으로 인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설사 해당 정책이 문화적 영향을 고유의 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해당 정책이 가져올 다양한 부수적인 문화적 영향(side effect)에 대해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기본권의 침해 방지 및 문화적 권리의 확대

○ 1948년 제정된 「UN 인권선언」제 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를 처음으로 선언하였으며, 이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됨

○ 우리 「문화기본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국가와 공공부문은 이렇게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경제적 가치 때문이라 할 수 있음[1)]

- 미적 가치(aesthetic value) : 문화예술은 내적 감정 및 관념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훌륭한 문학, 시, 음악, 회화 등의 예술작품이나, 이러한 문화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대상은 그것을 소비·향유하는 이에게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함
- 정서적 가치(emotional value) : 문화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작가·예술가의 자기표현이며,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당대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함. 즉 문화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작품을 매개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견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억눌려 있던 생각과 불만이 표현되고 분출되며, 각자가 가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짐
- 교육적 가치(education value) : 문화예술은 독특성과 참신성을 주요한 요소로 하는 만큼, 기성질서 또는 기존 사고의 틀을 전복하고 새로운 사상, 아이디어,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혁신적 가치를 가짐. 훌륭한 문화예술은 사물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제공하며, 본질에 대한 천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성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인지능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문화는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문명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1) 양혜원(2015). 문화가 있는 날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용, 호혜성, 신뢰 등 민주주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통합적 가치(social integration value) :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identity)과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다른 집단, 계층과의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통해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함
-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 문화는 유관 단체, 기관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2]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이자 근간이며,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창구효과(window effect)로 인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짐. 또한 문화 분야는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 성격이 강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국민의 문화향유 보장

○ 그러나 이렇게 문화가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화에 대한 소비는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Q*)보다 과소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또한 문화에 대한 욕구는 천부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로부터 정서적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후천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험재(experience goods)에 해당하며 아동이나 청소년기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또한 문화향유의 수준은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 사회적 위치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항상 문화격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격차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소유로 이어져 사회계급 재생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부르디외, 1996; 강수택·박재홍, 2013)[3][4]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의 확산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정홍익 외.(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부르디외, 삐에르(1996).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하). 최종철 옮김. 새물결. 서울.
4) 강수택·박재홍(2013).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 추이와 문화취향. 현상과 인식. 37(3). p.87-115.

□ 표현 및 참여 보장

○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세계인권 선언(UN:1948)은 제 19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 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와 문화기본법 제4조 전단을 통해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포함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5]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우리 헌법재판소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음

○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에 대한 검열의 금지',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가와 공공부문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의 보호

○ '각 문화는 보호받고 보전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의 일부'라는 인식은 2001년 UNESCO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의 체결로 결실을 이루었음

- 동 협약은 첫째,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둘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게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넷째, 문화

5) Emerson Thomas I.(1966).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다양성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것이며, 다섯째, 문화다양성은 시공간을 넘어서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에서 구현됨을 제시함[6)]

○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7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에 대한 국회에서의 비준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속조치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문화적 표현'을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조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국가와 공공부문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문화다양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차별이 없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6) 한건수(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문화예술지식DB 심층이슈분석 제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다.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 방지 및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 실현

○ 특정 집단 또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구성원들의 태도, 즉 구성원이 소속 집단이나 국가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애정, 소속감 등에 좌우되며, 구성원들의 집단이나 국가에 대한 태도는 그들이 공유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에서 비롯됨

○ 한편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언어, 세계관, 가치, 상징,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적 객관화(객관화된 묘사, 인공물, 예술품, 공예품 등)과 관계되며,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다른 집단 혹은 국가와 구별됨[7)]

-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화와 문화화를 통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간주하기보다 집합체의 일부로 체험하게 됨

○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은 과거의 역사적·문화적 소산으로서, 오늘의 우리를 확인하고 묶어주는 식별자이자 접착제로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문화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다만, 여기서의 문화적 정체성은 자민족중심주의나 국민주의(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공존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이 구성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적 정체성을 이러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때,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문화유산의 보호 및 창조적 활용 증진

○ UNESCO는 1972년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를 통해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를 채택함

○ 또한 유형적 형태를 가진 유형문화유산 뿐 아니라 무형적 특성을 가진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도 함께 보호하기 위해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유산은 일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자 결정체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또한 세대에

7) 허영식·정창화(2012). 한국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간문화적 접근방안. OUGHTOPIA. 27(2).

서 세대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과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법적 보호 외에 보완적 보호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 따라서 국가와 공공부문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창조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문화경관의 보호 및 가치 증진

○ '문화적 경관 또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란 그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만의 보호에만 치우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이 가진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해왔다는 반성에서 대두된 개념임

- 이는 1987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개념으로 유적과 기념물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일상적 경관을 중시하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와 맞닿아있음

○ UNESCO는 1992년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문화경관'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편입시켰으며 문화경관을 '문화재(cultural properties)이며 세계유산협약 1조에서 규정된 자연과 인간의 결합의 소산(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 또한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7년 「경관법」을 제정했으며, 제2조에서 '경관(景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 이러한 문화경관은 자연 속에서 인간이 적응하고 살아온 삶의 자취의 표상이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지역 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근본적 구성요소로서 공동체의 복지와 국가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8]에서 그 가치가 인정됨

○ 따라서 국가와 공공부문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문화경관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각 지역이 아름답고 쾌적하며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8) 류제헌(2013).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국제적 선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pp.575~588. 581쪽. 재인용.

□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 실현

○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사회의 파편화, 핵가족화의 지속 등으로 인해 과거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양극화와 심화, 소외와 고독, 갈등의 심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문화는 이러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보유 혹은 체화하고 있는 가치체계이자 신념이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임

○ 한편 문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 구성원간의 소통과 공감을 촉발하고, 갈등의 치유, 시민적 미덕의 교육, 신뢰나 호혜성, 관용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국가와 공공부문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공동체의 보호와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라. 문화적 요소의 고려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을 받던 것이 20세기 후반까지의 현상이었다면, 21세기는 문화가 성장을 주도하고 도시의 활력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동인이 되었음[9)]

○ 즉 더 이상 문화는 경제성장의 부수적인 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문화적 요소의 부가를 통해 더 큰 경제적·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게 됨

- 중공업의 쇠퇴로 경제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영국의 게이츠헤드(Gateshead)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맞음
- 중국의 명산, 호수, 관광지를 무대로 그 지역의 민화나 전설을 공연으로 제작한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의 산수실경공연 인상(印象, impression)시리즈는 해당 도시의 문화와 자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주민들을 공연에 출연시켜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함
- 설치미술가인 〈쿠사마 야요이〉와 협업하여 브랜드 혁신을 추구한 〈루이비통〉이나 피카소, 샤갈, 미로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을 라벨 디자인에 활용하여 명품와인으로 발돋음한 〈샤토 무통 로칠드〉와인, 예술성이 가미된 감각적인 매장으로 조성한 〈프라다〉의 〈에피센터(Epicenter)〉등과 같은 아트마케팅(art marketing)은 제품과 기업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데 기여함

9) 정정숙(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빈민가 청소년에게 오케스트라교육을 실시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악기에 대한 책임감, 조화를 위한 협동심과 상호존중을 일깨워줌으로써, 음악을 통한 교육과 재활,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이루어냈으며, 이들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시키는 사회적 치유 효과를 거둠
- 빈부격차가 심해 범죄발생율이 높았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일환인 페인팅 프로젝트 후 범죄 발생율이 25% 감소함
- 퇴락한 공업지대의 고(古)건축물 및 도심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도시의 분위기를 통일시키고, 빈 공간을 아틀리에, 로프트 주택, 갤러리 등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든 독일의 라이프치히는 2011년 라이프치히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가볼만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 과거 점포 수 90개, 방문객 4천명에 불과했던 경기 수원시의 못골시장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이 많게는 하루 2만명씩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됨[10)]

○ 즉 문화영향평가는 타 분야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문화화(문화로 옷입히기)를 통해 정책의 수용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며, 해당 정책이 의도한 고유의 정책 효과를 더욱 크게 배가시키며, 문화적 가치와 비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2. 문화영향평가 논의의 발전과정

1) 2000년대 초반 : 2003~2006년 초기연구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문화부문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함

○ 당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그간 다양한 정책·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문화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재한데 이는 사회발전과의 관계에서 문화가 독자적 가치로 인정되기 보다는 종속적 혹은 사회변동의 결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임
- 문화의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에 국가 발전전략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제도 수립 시 국민의 문화적 삶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즉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

10) 남정탁.(2013.11.19). 수원 못골시장, 구경 한번 와보세요…웃음이 가득해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9/20131119004902.html?OutUrl=naver

검증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하며, 문화적 타당성 검증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를 ⅰ) 문화의 사전적·계획적 관리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ii) 정책·제도의 사회적 수용가능성 및 정책실행가능성(feasibility) 제고 iii) 문화영향평가 과정에 국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문화민주주의 구현 iv)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대외 국가경쟁력 강화에 궁극 기여로 제시함

○ 이에 따라 2003년에는 「문화영향평가제도 연구(문화사회연구소, 2003)」, 「문화영향평가제도 해외사례조사 연구(김규원, 2003)」가, 2006년에는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06)」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됨

○ 이들 연구에서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정의, 목적, 시행방향, 시행시기, 평가주체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문화영향평가의 정의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발전, 즉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하여,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며 인간의 삶을 둘러싼 제반 문화적 관습과 신념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평가제도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목적

○ 정치·경제적 사회체계가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의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시행방향

○ 국민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규범적 평가로, 기존의 타 평가제도가 규제적 성격이라면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창조적 요소가 형성·유지되도록 유도 및 지원적 성격을 갖는 제도를 제안함

□ 수행시기

○ 2006년 연구에서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4대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와 달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으며, 평가과정은 4대 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제시함

□ 평가주체

○ 2003~2006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평가대상을 스크리닝 한 후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안함

□ 평가대상

○ 2003년 연구는 문화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환경과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도시공간과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1차 평가대상 영역으로 설정했으며, 1차적 대상 영역을 바탕으로 문화발전에 유용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 관습, 패러다임의 정책·법제 영역을 2차 평가대상으로 설정함

○ 2004년의 연구는 가장 적은 범위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으로 분류함

○ 2006년의 연구는 평가 대상을 대범위의 영역 및 사회적 시스템 등의 운영 원칙까지 포함하도록 넓게 설정하고 기존의 규제 위주의 평가가 아닌 권고적 성격의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구분	평가대상	대상분류
2003년	1차 : 도시공간 및 문화환경 영역	도시계획, 건축/조경/공공디자인, 공공미술,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2차 : 국정과제 및 부처별 정책 법제영역	국정목표/원리/과제, 중앙부처별 정책, 지방자치단체 정책, 문화관광부 정책
2004년	개별사업	물리적인 개별사업, 프로그램 사업
	정책사업	국가정책, 지역정책
2006년	국가 차원	정책/제도 도입, 비법정계획인 중장기종합비전 및 계획, 분야별 중장기계획, 연도별 주요 종합시책 등과 법적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자치단체/산하기관	사업계획

□ 평가지표

○ 2003~2006년에 실시된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다음의 〈표 2-2〉와 같음

〈표 2-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유형	평가내용
2003년	체계차원	국정목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국정목표와 제안 여부 평가
		분야별 국정과제	문화정책과 타 정책과의 유기적 시너지 효과 증대에 관한 과제의 포함 여부
		중앙부처 및 자방자치단체	문화적 악영향 최소화 방안 및 문화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방안 평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의 권고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정도

	평가항목	평가유형	평가내용
	생활차원	수용자 개인의 문화적 역량 개발의 관점	자기개발성, 쾌적성, 심미성, 자율성, 접근성, 편의성, 다양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복지의 관점	민주성, 공익성, 소수자 배려와 다양성
		공동체 형성의 관점	공공성, 지역성, 정체성, 연대성, 자치성
		생태학적 관점	자연친화성, 다양성
		문화적 생산성과 전문성	창의성, 고유성, 효율성, 타당성
연도	평가항목	문화적 가치	문화적 권리
2004년	평가 요소	사회발전	문화 환경 / 문화공동체 형성 / 문화정체성 확보
		창조성	문화 활동(창작) 참여
		문화자원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다양성	의사·표현·정보의 자유 / 믿음, 사상에 대한 자유
		사용과 향유	문화 접근성
연도	정책목표	상위지표	하위지표
2006년	문화적 발전	창조	공급자의 창조성 / 수혜자의 창조성 / 전문가 및 시민의 창조성
		계승	문화유산 보존 / 기존의 공동체망 보존 / 지역고유문화 보존
		관용	개방적 문화수용 / 소수문화에 대한 관용
		형평	계획의 민주성 / 계획의 시민참여
		신뢰	정책의 실현가능성 / 정책의 투명성

○ 지속적으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 연구와 실행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어떠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문화영향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무엇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 불분명, 문화의 속성 상 다양한 영역이 존재) 때문에 제도의 법제화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음

2) 2013년 이후의 연구

□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함

○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개념을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넓게 파악하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을 가짐을 선언하고,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함

○ 이에 따라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평가가 다시 진행되게 됨

□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동 연구에서는 문화융성 실천과 국민행복 실현의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 존중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는 핵심가치로서 '문화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도출함

- 즉 세계화와 서울 중심적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역 차원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문화, 문화적 자유 등이 타인이나 사회적 제도 등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국민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문화영향평가 대상

- 동 연구는 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밀접한 분야의 정책과 계획, 국가와 지역의 위상 및 경쟁력과 상관성이 높은 정책 및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표 2-3〉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유형(안)

기준	대상		내용
국민일상생활과의 밀접성	여가	시설	여가문화시설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여가문화정책 및 계획 (방송, 영화, 이벤트(축제 포함), 시설 내 프로그램)
	기본	시설	주택 및 도시, 기반시설 조성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주거, 식품 및 위생
국가 및 지역의 위상 및 경쟁력 상관성	대외교류	시설	국내외에 관광/한류단지 조성
		프로그램	대외협력프로그램, ODA 프로그램 (세종학당, 한류문화정책 등)
	산업경제	시설	산업시설 및 단지조성
		프로그램	FTA,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인력양성	시설	교육시설 계획 및 정책
		프로그램	중장기 공교육정책 및 평생교육 정책 등

11) 김효정,(2013).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편 동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는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4〉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정책목표	상위지표	하위지표
문화기본권 보장	평등/다양성	문화격차 및 차별해소, 문화향유 및 창작기회 균등
	자유/자율	창작/표현의 자유 및 자율성 보장
	소통/교류	문화공유, 이해/학습, 발산
문화정체성 확립	정신문화/관습	사회/역사 인식, 공동체 문화 공유/확립
	문화유산/계승	문화유산보존, 진흥
	상생/발전	새 시대에 대응 문화변화 발전

○ 한편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주관 부처에 정책심의위원회 또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담당관(평가담당관)을 지정할 것을 제시함

- 또한 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으로 문화영향평가센터를 별도로 조직할 것을 제안함

○ 또한 평가체계는 자체평가와 선정평가로 이원화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함

3.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 평가 개요

○ 2014년에는 「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4)」를 통해 다음의 4개의 정책(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에 대한 시범평가가 진행됨

- 2014년 시범평가에서는 특히 정책의 가시성이 높고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간 정책'을 중심으로 대상의 선정이 이루어짐

〈표 2-5〉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

관계부처	사례	정책명	정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대구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내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천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및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인에게는 활동 공간 확대 제공, 국민에게는 문화향유 공간 제공, 노후 산업단지는 활성화에 기여
국토교통부	서울, 부산	도시재생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유형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분류함. 도시재생 선도

관계부처	사례	정책명	정책 내용
			지역을 통해 도시재생의 시범적 효과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후속사업으로 파급효과 확산 및 한국형 도시 재생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할 예정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 증진 도모, 단지 내 공원과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화합과 소통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

○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해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30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특히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지표에 있어 최소기준을 함께 규정함

〈표 2-6〉 2014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평가영역 및 항목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소분류)		세부지표
		평가지표	내용	
문화 기본권	소극적 권리	1. 문화인프라 충분성	• 문화공간 확보	1.1.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 계획 ① 최소기준- 개별 문화시설 1개 ② 개별 문화시설 2개 이상 혹은 복합시설 - 문화 활동 가능한 최소 규모 : 3.5㎡(1인 전시공간)*10명 1.2. 문화 활동이 가능한 인테리어와 장비 계획 여부 1.3. 접근 용이성(대중교통이용 편의 계획 등)
		2. 문화인력배치 계획	• 전문 인력 확보 및 배치	2.1. 전문 인력의 경력 2.2. 전문 인력 배치 계획 2.3. 전문 인력 배치 인원 수 ① 최소기준- 시설 당 1인 ② 시설 당 2인 및 2인 이상
		3. 문화프로그램 계획	•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3.1. 공간운영계획 3.2. 프로그램 계획 ① 최소기준- 프로그램 2개 ② 3개 이상 3.3.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4. 문화재정확보 정도	• 정책·사업계획에서 문화재정 확보 계획	4.1. 공간과 시설운영 관리예산 확보 4.2.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4.3. 외부 지원금 확보
	적극적 권리	5. 문화 수요와 표현 충족	• 향유·표현·교류 기회의 충분성	5.1. 자발적 주민 커뮤니티활동 지원계획(수요창출) 5.2. 타국, 타 지역과 문화교류 지원 계획(수요·표현 계기) 5.3. 타 문화기관과의 교류 지원 계획(공감·표현 창출)
		6. 문화 장벽과 차별 해소	• 장애인·이주민·성적 소수자 등의 표현 및 향유 기회 증진	6.1.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과 운영 ① 최소기준 - 이동편의 ② 할인혜택, 안내, 브로슈어 등 6.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① 최소기준 - 1건 계획 ② 2건 이상 고려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소분류)		세부지표
		평가지표	내용	
문화 정체성	지역 고유성	1. 지역 고유자원 보호	• 대상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특성 및 고유자원 고려	1.1. 지역 문화유산(유·무형) 검토 ① 최소기준 – 유·무형 중 1가지 ② 2가지 이상 고려 1.2. 공동체/지역 문화자원(시설, 행사, 지역학 혹은 역사 등)의 검토 ① 최소기준 – 자원 중 1가지 ② 2가지 이상 고려 1.3. 지역 예술인과 문화단체 검토
		2. 지역 고유자원 활용	• 공동체/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검토	2.1. 지역 문화시설 활용계획 2.2.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 검토 2.3. 지역기반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 활용계획
	공동체 소통·발전	3.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	• 정책 및 사업 계획 시 갈등가능성 고려 • 정책 계획 시 주민의 참여기회 및 의사소통 기회 제공	3.1. 지역의 문화관련 전문가 포함한 자문회의 개최(건수) ① 최소기준 – 2회 ② 3회 이상 3.2. 유사 사업 갈등 해소 사례 조사(건수) ① 최소기준 – 사례조사 1건 ② 2건 이상 3.3. 주민설명회/토론회(건) ① 최소기준 – 2회 ② 3회 이상
		4. 지역공동체 상생 및 발전	•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성 고려	4.1.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 ① 최소기준 – 주민 지향 조사 ② 조사 결과의 반영 4.2. 지역 사회의 비전 고려 여부 ① 최소기준 – 비전 관련 언급 ② 비전의 반영 4.3. 홈페이지, 안내책자, 브로셔 ① 최소기준 – 홈페이지 개설 ② 홈페이지에 자료 및 공지사항 탑재 및 브로셔 배포

○ 평가방법은 평가전문가, 문화기획자, 도시공학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도출했으며, 정성적 방식의 평가에 초점을 두어 진행됨

□ 시범평가의 의의와 한계

○ 동 연구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문화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또한 장기적 파급력과 가시성이 높은 시설·공간 정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또한 10개의 평가항목과 30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였고, 특히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각 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그러나 시범평가 대상이 시설·공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다른 유형의 정책에 대한 일반화는 제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업 담당부서의 인식의 저조, 세부지표의 최소기준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제시됨

제2절 국내 타 분야 영향평가 사례 분석

1. 환경영향평가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12)]

○ 각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에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오염을 사전에 차단 ·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를 통해 환경상 영향이 있다하여 무조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합목적성, 경제성 등 다른 인자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수단의 하나임[13)]

□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시행연혁

○ 주요 시행연혁은 다음 〈표 2-7〉와 같음

〈표 2-7〉 일반환경영향평가 주요시행연혁

1981년	-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 최초시행
1990년	-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성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전에 존재하던 제도) 도입
1993년	- 환경영향평가의 보다 효과적인 제도시행,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2011년	- 사전환경성검토를 폐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신설 - 3가지의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관리효율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

12)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s://www.eiass.go.kr.supp/inform/target/view.do) 참고
13) 송영일(200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에코포럼 발표문.

○ 국내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발자취 내용은 다음 [그림 2-2]와 같음

[그림 2-2] 국내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발자취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재

3) 평가유형 및 대상

□ 평가유형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환경평가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구분하여 시행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함

○ 일반환경영향평가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해로운 환경을 피하거나 제거, 감소할 방안을 마련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함

□ 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14)]

-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단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철도의 건설사업, 공항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등 17개 분야 79개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15)]

- 정책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의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의 건설,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등(총 8개 분야 16개, 2015년 기준)
- 개발기본계획 : 동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국토의 일부지역(구체적인 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도시개발, 산업단지의 지정,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등(총 17개 분야 78개 개발기본계획)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에서 환경적 영향 수준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따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

- 동법 제5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수도법, 하천법 적용지역, 초지법 적용지역, 그 밖의 개발사업 등(총 9개의 개발사업)

○ 평가특징

- 현재 시행중인 영향평가 중 가장 먼저 시작되어 다른 영향평가의 기본이 되는 평가로 알려져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특례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음(2011년 전면개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전문평가업자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부실 및 미이행 했을 시 벌칙이 신설되었음.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사[16)]에 의한 작성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음

14) 환경부(2015.7.30).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대책. 보도자료
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aKor/contentview.kei
16)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실시. 2014년 총 2회실시, 누적합격자 총27명,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사에 의한 작성의무화 예정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환경·에너지 분야(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환경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환경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아닌 대학졸업자로서 환경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분야 업무를 5년(5급 이상은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6. 9년 이상 환경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평가체계 및 절차[17)]

□ 평가체계

○ 환경부(협의기관) : 승인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 전문 검토기관으로의 검토 요청, 승인기관에게 협의의견 제시 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전문 검토기관) : 평가서 검토, 검토의견 전달(환경부)

○ 승인기관 : 사업계획 승인, 협의의견 전달(사업자)

○ 사업자 : 자체 평가서 작성, 계획 승인 요청(승인기관)

○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는 다음 [그림 2-3]과 같음

[그림 2-3]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재

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aKor/contentView.kei

□ 평가절차

○ 우리나라 일반환경영향평가의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18]·군수·구청장[19](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이 공고·공람하고 설명회·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임

○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최종평가서를 제출 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에 이어 환경부와 협의하는 단계임

○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와 사후영향을 조사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는 다음 [그림 2-4]와 같음

[그림 2-4] 일반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프로그램 기본교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8개 분야 16개 정책계획과 도시개발 산업입지 등 17개 분야 78개의 개발기본계획을 협의대상 계획 범위로 두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에서 환경적 영향 수준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따름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19)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 정책계획 검토 및 협의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중 정책계획 부문의 평가 절차는 다음 [그림 2-5]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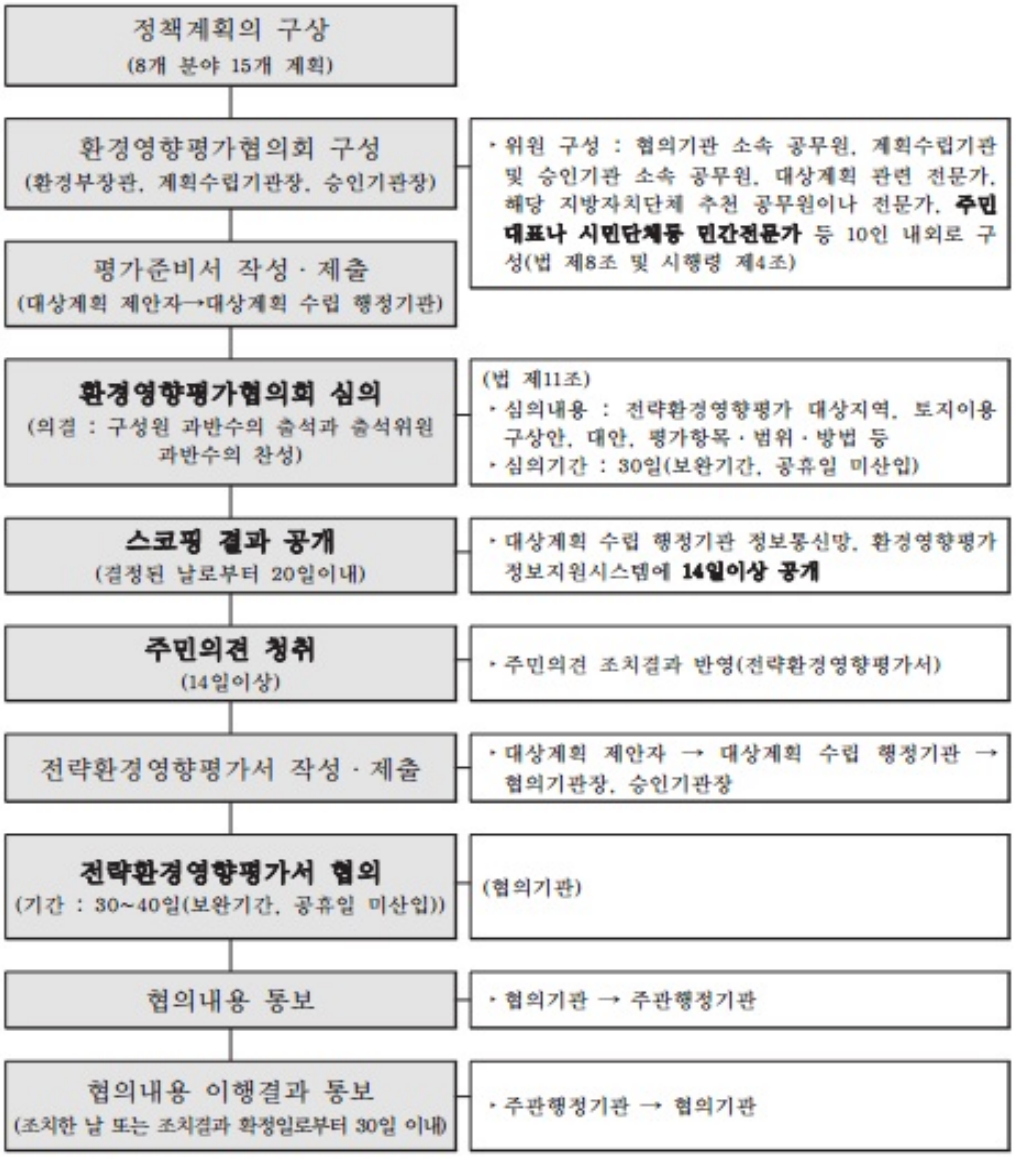

[그림 2-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

출처 : 환경부(2014).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 개발기본계획 검토 및 협의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중 개발기본계획 부문의 평가 절차는 정책계획의 협의절차와 같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 협의회 구성 방식

○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협의회 구성 기준[20)]

○ 구성기준 : 10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기본원칙으로는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최적 환경성검토 방법을 자문·결정하므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됨
- 협의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환경단체 포함),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협의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지명함

○ 위원

-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장, 입안·승인 등 담당부서 공무원, 환경부서 공무원 등 2~3인 (산하기관 소속직원 포함 가능)
-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관 공무원,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임의) 등 1~2인
- 검토대상 행정계획의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유역(지방)환경청이 하는 경우, 협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 포함함
- 대안·검토항목 부적정에 따른 협의단계 보완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기관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협의회 재구성)
- 관계전문가로는 자연·생활환경, 환경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환경평가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내외임
- 관계행정기관은 행정계획·환경평가 관련 전문가 3인 내외, 협의기관은 대학교수,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 KEI 직원 등 3인 내외 추천함
- 개발계획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토기관인 KEI 직원 추천함

20) 환경부(20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5)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방법

□ 평가지표 및 항목

○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한 기술식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표적으로 대기환경 항목의 기상 부문은 기온, 강수량, 습도, 풍향, 적설량, 일사량 등을 고려하여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함

〈표 2-8〉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항목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1. 대기환경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4. 생태환경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2. 수환경	가. 수질 (지표·지하) 나. 수리· 수문 다. 해양환경	5. 생활환경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3. 토지환경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6. 사회경제분야	가. 인구 나. 주거 (이주의 경우 포함) 다. 산업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2015 환경평가 교육프로그램 기본교재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2014년 1월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나, 평가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4년 10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을 발간하여 참고사항으로 지표를 제시하였음

〈표 2-9〉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서 제시한 지표에 의한 평가

평가서 구성항목	평가지표 입력 방법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정책	– 현재, 미래에 환경에 대해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표기 – 현재와 미래를 종합하여 1~5점 표기
– 국제 환경동향, 협약, 규범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다루지 않음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점검목록에 ○(해당), △(보통), ×(해당없음) 중에 하나 표시
–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출처 : 권영한 외(2014).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평가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동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예컨대, 대기환경분야의 기상의 경우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 유사사례 조사, 이론식을 이용하는 방법, 기상모델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있음

6) 평가결과의 활용

○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환경부장관의 보완요청,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법은 사업자의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관리대장의 기록 및 비치,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통보 의무, 승인기관 장의 협의내용의 이행 확인을 위한 조사권, 승인기관장 및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의 불이행시 조치명령권, 공사중지명령권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s://www.eiass.go.kr.supp/inform/target/view.do)을 통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21)]

○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 16조 제1항, 2항)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동법 제17조 제3항)

○ 또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동법 제19조 제1항). 또한 이를 통보받은 자는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동법 제19조 제3항)

2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환경영향평가[22)]

○ 일반환경영향평가 역시 승인기관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한 뒤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동법 제27조, 28조)

○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함.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동법 제30조)

○ 특히「환경영향평가법」제4절에서는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그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함(동법 제35조).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동법 제39조)

○ 또한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함. 이 외에도 환경부장관은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함(동법 제40조)

2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평가운영현황

○ 2011년부터 2015년의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음. 현재 122건이 접수 되었고, 조건부로 104건, 기타(반려)3건, 기타(취하)1건 임을 볼 수 있었음

○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조건부가 높은 비율로 관측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시 절차상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유의해야할 점임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은 제도 도입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사업자와 평가업체간의 개선이 필요함

〈표 2-10〉 '11~'15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자료

	접수	소계	결과미입력	조건부	기타(반려)	기타(취하)
2011	199	187	18	164	1	4
2012	205	217	9	201	2	5
2013	173	156	8	140	5	3
2014	176	177	0	171	4	2
2015	122	108	0	104	3	1

출처 :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 협의현황통계. https://www.eiass.co.kr

○ 2014년부터 2015년의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국토환경관리라는 항목아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기법 개발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표 2-11〉 환경영향평가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14	'15
국토환경관리	예산	2,340	2,223

출처 : 환경부(2014). 201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성별영향분석평가

1) 목적 및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의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함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함

□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조(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23]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2) 주요시행연혁

○ 도입과정과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기, 도입기, 확장기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준비기(2002~2004년)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로서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임

○ 도입기(2005~2011년)는 공무원이 평가주체가 되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직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함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평가를 추진함
- 행정기관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 기관 및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함

23) 「여성발전기본법」은 전부개정(2014.5.28)되고 2015.7.1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시행됨

○ 확장기(2012년~현재)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분석평가 대상 정책을 확대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시행연혁은 다음 〈표 2-12〉와 같음

〈표 2-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시행연혁

단계	기준(년)	내 용
준비기	2002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
	2004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2005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도입기	2006	기초자치단체 대상기관으로 포함
	2007	시·도 교육청 대상기관으로 포함
	201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2011.9.15)
확장기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2012.3.16)
		분석평가 대상 확대(사업 ⇒ 제·개정 법령, 계획, 사업) ※ 2005년 53개 기관 85개 과제 → 2014년 304개 기관 26,438개 과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개정(2012.10월/법제처) ※ 법령안 심사 요청 시 분석평가서 첨부하도록 규정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2014.3.24) 및 시행(2014.9.25)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시행중인 법령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3) 평가유형 및 대상[24)]

가. 평가대상

(1)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4)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① **법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령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② **계획**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으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예) ○○기본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표 2-13〉 대상계획 선정기준

선정기준		해당여부
대상계획[25]	-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예 □아니오
	-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예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예 □아니오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③ **사업**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 위사업

○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작성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표 2-14〉 대상사업 선정기준

선정기준		해당여부
대상사업	- 인적대상 사업(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예 □아니오
	- 시설설치·개선 사업(예: 공원, 도로, 주거 등)	□예 □아니오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예 □아니오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25) 예) 인력 양성(전문가 활용 포함) 이나 교육훈련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취·창업 활성화·신규사업 촉진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수혜자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시설·건물·건축물의 설비 확충·개선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조사·통계정보 구축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자원 이전(보조금, 연구비 등 현금 및 현물) 관련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며 수행은 전문연구자가 진행함[26)]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분석평가를 하고 정부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사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다름

○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대상 공모,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나. 평가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 자체평가 :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 전문평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에 대한 평가 / 계획에 대한 평가 / 사업에 대한 평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27)]

- 연중 수시 : 법령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평가
- 특정 시기 : 사업에 대한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3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8월 말까지 평가서 제출
- 사업 분석평가 추진일정을 특정한 시기로 하는 이유는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를 위해서임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27) 김둘순 외(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평가체계 및 절차[28)]

가. 평가 추진체계

(1) 여성가족부

○ 분석평가제도 운영 및 지원 전반 총괄

○ 평가운영: 평가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 검토 및 의견 통보, 개선안 검토

○ 평가종합: 기관별 분석평가 추진결과 및 정책개선 이행결과 종합보고

○ 평가지원: 중앙 및 16개 지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운영, 공무원 대상 분석평가 교육 지원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

○ 자체 정책개선 추진

○ 소속 공무원 중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각 부서에서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평가서 제출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29)]

○ 지정권자: 여성가족부 장관,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하는 센터로 기관 유형 및 역할은 다음 〈표 2-15〉와 같음

〈표 2-15〉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구분 및 역할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1개소)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16개소)
○ 지역 분석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업무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정책개선,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 컨설팅 방향 설정 지원,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28)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29)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인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3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 주류화 제도의 연구
- 2008년 여성부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 2012년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재지정 받음
- 센터 조직은 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팀, 성인지예산컨설팅팀, 성인지통계지원팀으로 구성됨(2012.3)

○ 평가기관 지정현황('15. 1월 기준, 16개 지역 총 17개소)은 다음 〈표 2-16〉와 같음

〈표 2-16〉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현황

지역	구분	기관명	지정
서울	중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5.10.
서울	지역	서울여성가족재단	'10.11.5.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8.10.20.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2.6.25.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3.1.10.
광주		광주여성재단	'11.9.5.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12.3.20.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12.5.21.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gia.kwdi.re.kr/center/page.do?cg=centerHistory

지역	구분	기관명	지정
경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08.5.10.
강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09.6.1
충북		충북여성발전센터	‘12.9.7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8.5.10.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12.5.21.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0.11.5.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0.1.15.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12.3.20
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1.1.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4) 분석평가책임관[31)]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

○ 역할

-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 특정성별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책임과 지정현황은 다음 〈표 2-17〉과 같음

〈표 2-17〉 2014년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현황

(단위: 명)

전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304	44	17	226	17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31)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상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애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32)]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설치: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

○ 역할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공표
- 분석평가결과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33)]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의 분석평가책임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현장활동가 포함).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 역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34)]에 해당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32)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33) 개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15.1.12.)로 중앙위원회 기능에 포함됨.
34)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평등 조례 등 유사조례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바우이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10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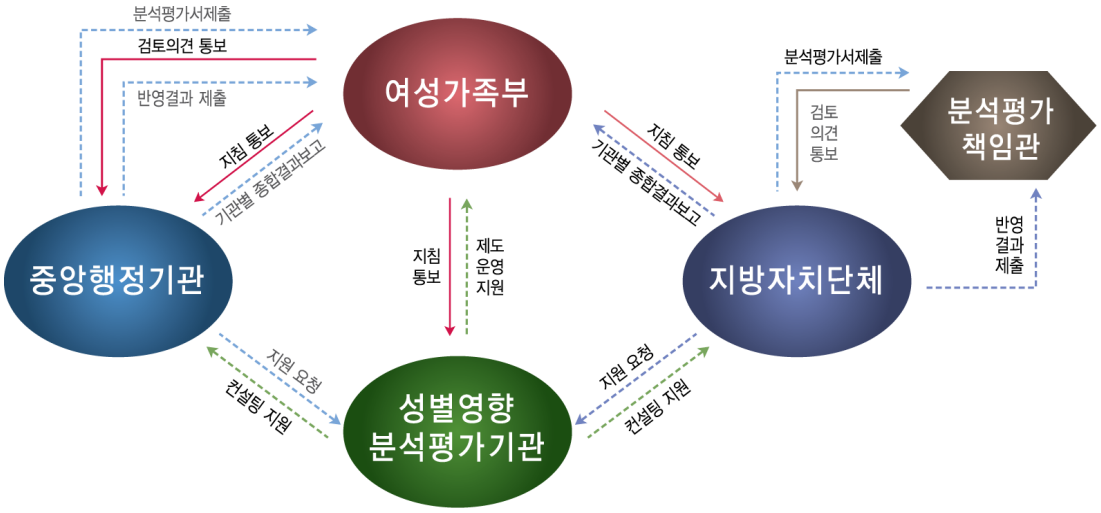

[그림 2-6]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나. 평가절차

□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분석보고서를 공표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총 6단계로 진행

○ 1단계 : 각 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 제출함

○ 2단계 : 분석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이 검토 및 통보

○ 3단계 : 검토의견을 '개선의견'으로 통보받은 기관(또는 부서)은 검토의견 반영결과(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출

○ 4단계 : 각 기관은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다음년도 2월말)

○ 5단계 : 여성가족부는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

○ 6단계 : 공표

○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절차는 다음 [그림 2-7]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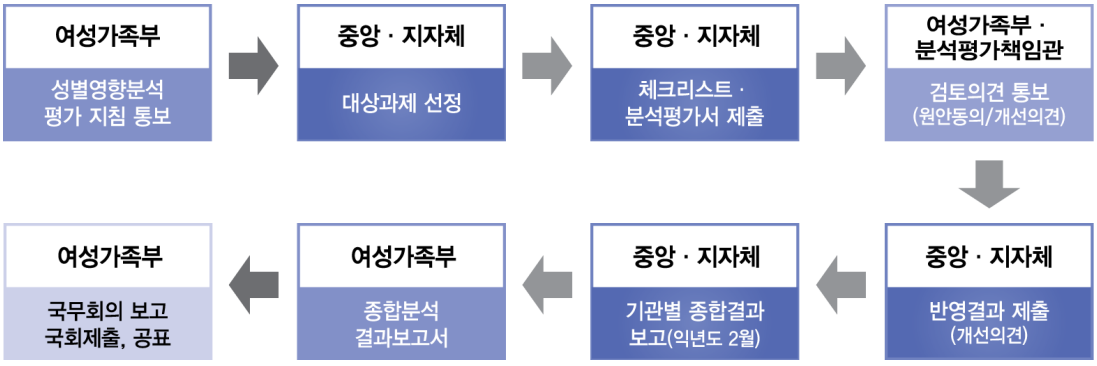

[그림 2-7] 일반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절차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착하여 실시 가능

- 대상정책 소관기관은 관련자료 제출, 연구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등 참석 협조
- 전문연구기관 등의 특정평가 시행과정에 현장전문가, NGO 등 의견수렴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특정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개선 권고(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특정성별분석평가의 절차는 다음 [그림 2-8]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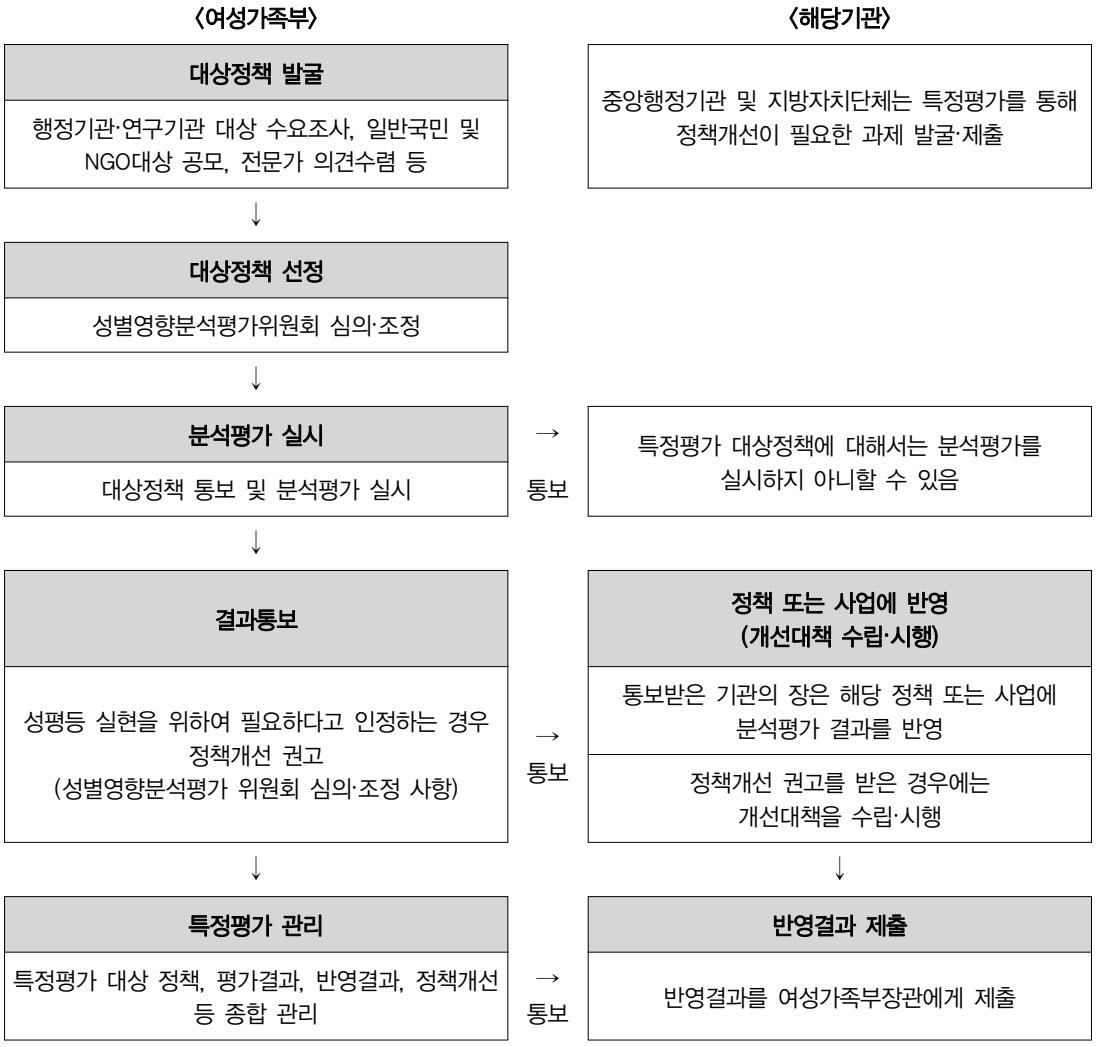

[그림 2-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5)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방법[35)]

□ 평가지표

○ 법령

- 제·개정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참여에 대해 6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법령의 평가지표는 다음 〈표 2-18〉과 같음

35)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표 2-18〉 법령의 평가지표

분석평가 항목	평가지표	해당 여부	점검 포인트
Ⅰ.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36]	□ 있음 □ 없음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이 있는지 점검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있음 □ 없음	-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거나 특정 성별의 명시(용어, 조치 포함)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인지 점검 -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Ⅱ.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있음 □ 없음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37]	□ 있음 □ 없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 또는 시설 설치, 통계·실태조사 등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 - 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Ⅲ.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있음 □ 없음	-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 조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있음 □ 없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는지 점검 -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계획

-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5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계획의 평가지표는 다음 〈표 2-19〉과 같음

36) 성별 고정관념은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 예)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37) 예) 건강검진 또는 진료에 대한 규정에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발병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 사회보험제도에서 최소기여기간을 늘려 급여수습조건을 강화하는 경우 단기간 근로,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표 2-19〉 계획의 평가지표

분석평가 항목	평가지표		해당 여부	점검포인트
Ⅰ.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있음 □ 없음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Ⅱ. 전략 및 중점과제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38]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없음	-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④ 법령 반영 계획	해당 개선안 기술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정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주1 :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 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예)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평균수명이나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병률이 달라 보건, 안전 등 이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주3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주4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38) 성별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사업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다음 〈표 2-20〉와 같이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표 2-20〉 사업의 평가지표

분석평가 항목	평가지표		해당 여부	점검포인트
Ⅰ.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 있음 □ 없음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해당 개선안 기술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예산	⑤ 예산 반영 계획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사업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 성별 통계 구축 등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평가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GIA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지원체계 구축

○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8조제2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6) 평가결과의 활용[39]

□ 정책개선 실적 관리

○ 자체개선사례 관리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서 작성 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한 정책을 대상으로 함
- 자체개선사례에 대한 추진실적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등을 통해 현황 파악

○ 개선의견 반영결과 관리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정책을 대상으로 함[40]
-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중 하나를 체크하고 확인 후 과제별 수용 항목 및 불수용 사유 등은 GIA시스템에 입력하여야 과제가 종료됨

○ 개선실적 재점검(중앙행정기관 대상)

- 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중 개선예정이거나 개선완료가 되지 않은 정책을 대상으로 실제 개선 현황을 점검

○ 정책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1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해야 함(영 제8조)
-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특성 및 정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9)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40)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결과 제출서의 내용을 확인 후 개선의견 수용 여부 등을 관리

□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기관별로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2월말까지)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제도 개선 및 정착을 위한 노력[41)]

○ 내용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초기에 타 부서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제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나 절반이상의 추진과제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1부서 1개 과제씩 분석평가를 하도록 노력을 집중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2012년)이후 '검토의견통보' 절차가 추가되어 공무원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안이 추가로 제공되기도 함.
-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 전국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어 컨설팅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공무원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자문을 주기도 함
- 지표 개선 노력 : 초기의 분석평가는 지표의 평가항목 개수가 많아 공무원들이 작성하는데 부담이 되었으며, 질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이를 반영하여 평가항목 수를 줄이거나 작성양식에 '예,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는 박스를 추가함. 분석평가 지표는 대체로 평가항목의 축소, 간소화 방향으로 진행됨

○ 법적 기반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이 근거조항만으로는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규정되지 않아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를 추진하기에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정(2011년)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었고, 추진절차나 체계가 견고해짐

41) 김둘순 외(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실효성 확보 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초기에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 성 인지 감수성 교육과 젠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분석평가 추진 후 우수 분석평가 사례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함
-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통해서 과제 수를 지정하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업무합동평가지표에도 과제수를 평가지표로 포함해 분석평가 추진 과제수를 관리함[42)]
-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 심사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법령안은 차관회의에 상정 불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통계 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7) 평가운영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

○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통해서 과제 수를 지정하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업무합동평가지표에도 과제수를 평가지표로 포함해 분석평가 추진 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43)]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부처의 주요 사업과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되어 분석평가 실시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44)]

○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는 다음 [그림 2-9]과 같음

42)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43)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44)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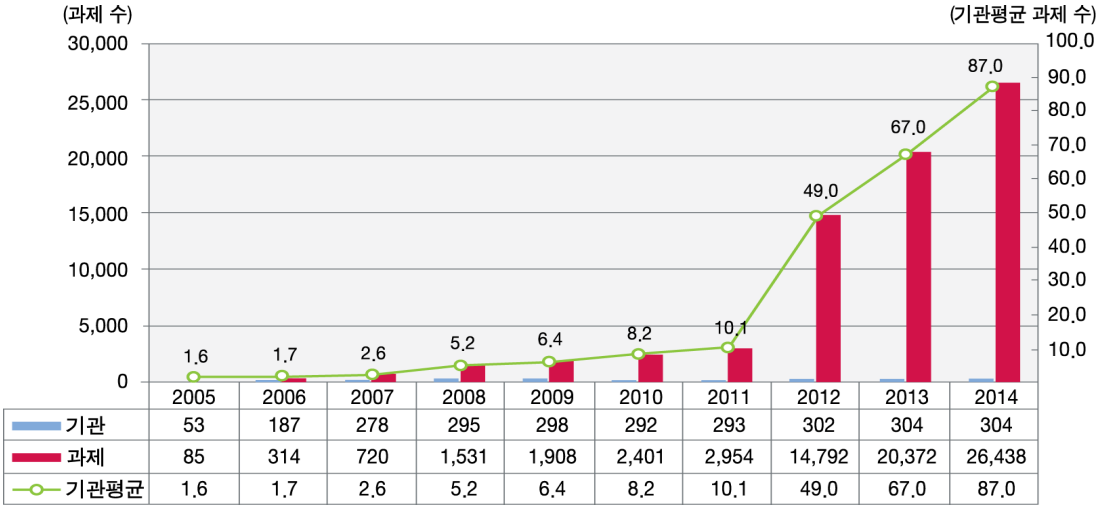

[그림 2-9]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출처 :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결과는 〈표 2-21〉와 같음

〈표 2-21〉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단위: 개(%))

	연도	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	2014	2,106(100)	1,930(91.6)	31(1.5)	145(6.9)
	2013	1,569(100)	1,393(88.8)	31(2.0)	145(9.2)
	2012	1,270(100)	1,099(86.5)	27(2.1)	144(11.3)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 2013-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추진 결과는 〈표 2-22〉와 같음

〈표 2-22〉 2013-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추진 결과

(단위: 개(%))

연도	구분 (대상기관 수)	과제 수	원안동의*	개선의견	개선의견 수용률**	기타***
2014	전체(304)	26,438(100)	18,875(71.4)	2,846(10.8)	2,368(83.2)	4,717(17.8)
	법령	17,433(100)	11,662(66.9)	1,480(8.5)	1,155(78.0)	4,291(24.6)
	계획	173(100)	101(58.4)	64(37.0)	56(87.5)	8(4.6)
	사업	8,832(100)	7,112(80.5)	1,302(14.7)	1,157(88.9)	418(4.8)
2013	전체(304)	20,372(100)	13,957(68.5)	3,306(16.2)	2,773(83.9)	3,109(15.3)
	법령	12,740(100)	8,657(68.0)	1,159(9.1)	906(78.2)	2,924(23.0)
	계획	125(100)	63(50.4)	55(44.0)	46(83.6)	7(5.6)
	사업	7,507(100)	5,237(69.8)	2,092(27.9)	1,821(87.0)	178(2.4)

출처 : 여성가족부(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주1* : 담당공무원이 분석평가서에 정책개선을을 제시한 과제 또는 개선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
주2** : 개선의견 수용률(%)=(수용+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주3*** : 기타는 분석평가서 작성제외 통보되거나 중단된 과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는 다음〈표 2-23〉와 같음

〈표 2-2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개선실적 개요

구분	2014년	2013년
추진 정책 수	8개	6개
대상 정책	- 법령(과학기술, 병무·군사, 정보통신 등 분야) - 장애인 정책 - 정부R&D 지원사업 - 자활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 법령(행정, 법무, 농업, 도시, 조택 등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직업능력개발사업 - 문화콘텐츠인력양성정책 -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개선과제 도출 수	60개	57개
정책개선 권고사항	22개	11개

출처 : 여성가족부(2015).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 현황은 다음 〈표 2-24〉와 같음

〈표 2-24〉 성인지정책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지원	1,851	1,905	1,928

출처 :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3. 고용영향평가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권고 제시[45)]

○ 각종 경제·산업정책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고용·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45) 고용노동부(2015)『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102쪽.

궁극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을 탈피하고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고자 함[46]

○ 현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증대됨

□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23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 시행연혁

○ 주요 시행연혁은 아래의 〈표 2-25〉와 같음

- 초기에는 재정사업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제도개선, 산업정책 등으로 평가분야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47]

〈표 2-25〉 고용영향평가 주요 시행연혁

2006년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시작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2010년	'10년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위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평가 실시(7개 과제)
2011년	- 고용영향평가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실시 (19개 과제) -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위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 고용영향평가 실시 (19개 과제)
2013년	-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영향평가 실시 (15개 과제)
2014년	- 고용영향평가 실시(30개 과제)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와 시행령의 개정 - 사전 고용영향평가 시범실시
2015년	- 고용영향평가 실시(연초 목표과제 수 30개[48] 중 현재까지 21개 진행 중[49])

출처 : 이상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재구성.

46) 윤윤규, 원희연, 최양국 외(2008)「지역산업정책의 고용영향분석평가」. 한국노동연구원. i 쪽.
47) '10년: 재정사업평가 위주 → '11-12년: 복지, 관광, 금융 등 복시 산업 정책으로 확대→ '13년: 부처간 연계 협업 과제 비중 확대 (상기 보도자료, 붙임2 참조.)
48) 2015년도 예산안에는 목표치가 33개 과제이나, 2015년 4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상으로는 목표과제가 30개로 명시되어 있음.
49) 고용노동부(2015.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보도자료. 붙임2.

3) 평가유형 및 대상

□ 평가대상[50)]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넷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시의성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 고용관련 전문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51)52)]

○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 규정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음

- 고용률 70%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53)]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 평가유형

○ 평가대상 선정 주체에 따라

-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요청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이 분석 ·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을 평가[54)]
- 선정평가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을 평가

---

50)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2항에 내용.〈개정 2010.6.4., 2014.1.21.〉

51) 국민들은 2015년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궁금한 정부정책을 평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는 '고용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중 결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2015.1.16). 일자리 창출 효과가 궁금하다면? 지금 고용영향평가를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참고.

52) 2015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는, 정규평가과제 15개, 현안 이슈과제 2개, 지속평가과제 4개 포함. 그 중 고용률 70%로드맵 과제가 9개, 국민제안과제가 5개 포함.

53) 2013년도부터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 사업 위주로 평가대상을 선정함. 고용노동부(2015.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보도자료.

54) 요청평가는 평가대상을 발굴하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기 어려운 시행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관 부처 등이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에 협조적이며 결과 활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또는 사업을 중심으로 고용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행정. p.223.)

○ 평가시기에 따라[55)]

- 사전평가 : 시행되기 전의 사업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함
- 과정평가: 실시 중인 사업 또는 정책을 대상으로 함
- 사후평가: 사업 또는 정책이 완료된 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

○ 세부사업 기간이 중장기적이며 신규사업이거나 고용영향이 비교적 큰 사업일 경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업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며, 고용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일 경우 사후평가만 실시함

4)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체계

○ 고용정책심의회 조직 및 구성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로, 심의회의 구성을 동법에 명시하고 있음
-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됨
- 2015년도 기준, 고용정책심의회는 각 부처 차관(8개 부처), 학계 등 전문가(11명), 노동계 및 경영계(각 3명)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제2장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조직 및 운영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제8항에 의거하여 고용영향평가사업 대행기관을 지정하며, 지정된 대행기관은 2년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운영되어 2년마다 재공모 과정을 거침(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담당)

55)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 · 행정. p.224.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 2013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내에 하부조직으로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위치
- 2015년에 전문가·정책실무자·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고용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제 선정 및 평가 시 질 확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56]
-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주요 업무는 평가모형개발, 정책평가, 법제도개선평가, 고용영향평가 사업 모니터링 등으로 나뉨[57]

○ 고용영향평가 업무의 비용 지급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제8항 및「시행령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이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10]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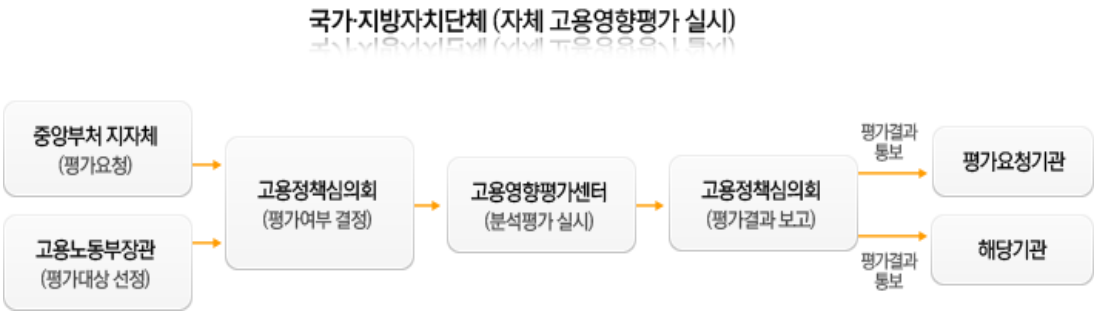

[그림 2-10] 고용영향평가 체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www/project/measure/impact.jsp)

56) 고용노동부(2015).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57)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고용영향평가센터 조직도 참조.
URL=〈https://www.kli.re.kr/kli_home/introduce/lst.home-64000?parentCode=00050〉, (접속일:2015.9.15)

□ 평가절차

○ 평가과제 선정

- 고용부장관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 별도 고용영향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정책 후보안을 선정 후 고용정책심의회에 상정·확정
-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주요 국정과제,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정책·사업 중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사업
- 둘째,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나 국민 개인의 평가희망 정책 중 평가 가능성, 시의성, 중요성 등이 높은 정책
- 셋째, 기타 일자리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 법·제도 등

○ 평가 실시

- 고용영향평가센터 연구진을 중심으로 과제별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가 추가로 투입되어 공동연구(co-work) 수행
- 평가 결과에는 해당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의 양·질은 물론 정책의 고용연계성, 예상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이 분석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언이 제시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고용정책심의회 보고 후, 소관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 기획·개선 및 재정운용의 참고자료로 활용
- 특히,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처 등에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권고, 소관부처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통보(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5항, 제6항)
- 익년 상반기 중 전년도 평가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소관부처 정책반영 현황 모니터링 실시

○ 평가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11]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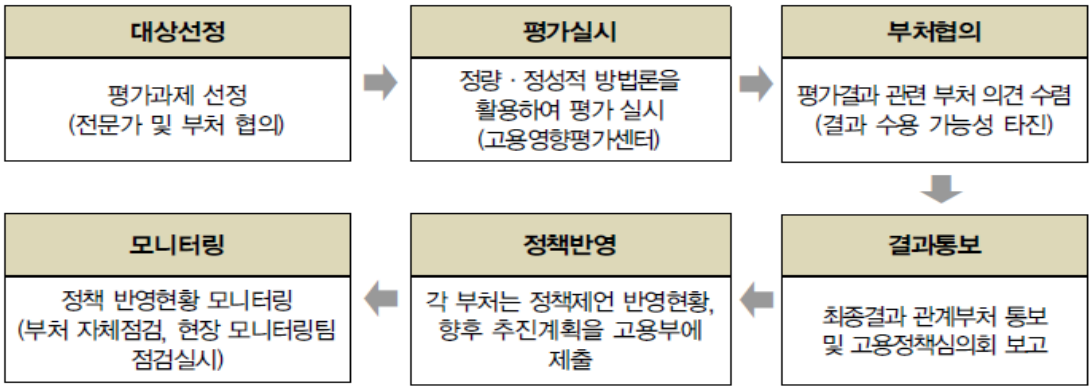

[그림 2-11] 고용영향평가 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2015).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5)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방법

□ 평가내용의 구성[58)]

○ 기초 조사와 전체 얼개 구성

- 평가 대상의 고유 목적 및 재정 투자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파악하고, 사업의 고용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분석함

○ 양적 평가

- 평가 대상 사업의 고용효과를 양적으로 측정 혹은 추정하며, 기본적으로 산업연관분석에 기초
- 양적고용효과의 측정범위는 고용효과(임금을 받는 고용)와 취업효과(자영업까지 포함)로 구분하거나, 직접효과(사업, 정책, 제도,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와 간접효과(사업, 정책, 제도, 법 등의 도입으로 인해 타 산업 및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효과)로 분류

○ 질적 평가

- 평가 대상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질적 효과를 측정함

○ 평가 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고의 도출

- 위의 결과를 결합하고, 사업의 주무부처에 보다 고용친화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함

□ 평가지표[59)]

○ 양적고용효과와 질적고용효과의 분류 및 측정방법은 아래의 〈표 2-26〉와 같음

〈표 2-26〉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대분류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측정 방법
양적 평가[60)]	직접효과	- 고용인원 및 인건비의 증감에 따른 직접적 고용 및 취업효과	-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추정 - 사업예산서 상 고용인원 및 인건비 관련 항목을 이용 - 단위는 연간고용자수 (Man-Year) 개념으로 환산
	간접효과	-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생산물이 증가함에 따른 각 산업부문의 간접적 고용 및 취업효과	- 산업연관분석방법 - 기본적으로 I-O모형으로 추정 - 미시자료분석으로 DID와 PSM 활용 - 보완적으로 CGE 모형, 시계열 모형, 다변수 회귀분석 모형, 방정식 체계 거시 모형 등 적합한 모형을 추가 활용
질적 평가	고용확대	- 내국인 고용 - 미취업자 우선 고용 -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사업일정, 사업비 책정방식)	- 사업관련자료 - 각종 고용정보 - FGI(FGD) 및 실태조사

58) 이상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59) 이상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대분류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측정 방법
	–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청년, 여성, 고령) –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고용의 질 제고	– 직접고용의 안정성 (고용계약형태와 사업 후의 일시적 실업) – 임금수준(유사 사업의 기능별 임금수준 비교) –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 근로 안전 예산확보	
인력수급	– 노동시장 교란방지(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가 실제 운용된 이후에도 (정부 지원 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수준	
평가대상의 특수성		

출처 : 이상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주1: Man-Year(年人員, 人年):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로, '한 사람이 일 년동안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정의

주2: Input-output model (투입산출모형)

주3: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준실험적 방법

주4: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이란 선택편의를 제거하도록 적절한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참여단위 각각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쌍둥이(twins)를 찾아 목표변수를 비교하는 짝짓기(매칭)접근방법

주5: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 경제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문이 상호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효과를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임.

□ 평가방법[61)]

○ 정량적 분석(거시경제 및 산업간 순환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등)과 정성적 분석(실태조사, FGI 등)을 함께 실시하여 대상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정책 시행으로 예측되는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적 변화 등을 분석·평가

○ 정책의 양적 고용창출 효과를 경로별로 분석 파악

1) [직접고용] 사업을 통해 직접 고용되는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

2) [정부구매] 재화 서비스를 구매, 생산기업의 일자리를 만듦

3) [시장조성] 규제완화, R&D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및 매출증대로 고용증가

○ '10년에는 고용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사전고용영향평가 시범실시, 현재 계획단계인 정책의 향후 고용효과를 예측 및 평가. 사전고용평가는 정책수요분석(예: 대상기업 수, 종사자 수 등), 유사정책의 효과 조사 및 준용, 관련 업계 및 단체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설 수립 및 검증과정을 거침

60)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외에 유발고용효과를 산출한 고용영향평가도 있었음. 유발고용효과는 직접효과로 지출된 인건비가 가계지출을 통해 전 산업에서 추가적인 생산 및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통계청의 소득대비 지출규모, 가계 평균소비성향 등을 반영하여 I-O 모형으로 추정.

61) 고용노동부(2015.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보도자료.

○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권고 제시

6)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보고 및 제언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결과의 통보, 결과 공개, 정책제언 및 개선 권고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중 제13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동법 제 13조)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5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6항**
> 제5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평가운영현황

□ 고용영향평가의 평가

○ 성과지표 : 고용영향평가 정책제언 수용률(%)

○ 측정방법 : 고용영향평가에서 실시한 총 정책제언 수 대비 소관 부처가 수용한 정책제언 수

〈표 2-27〉 '12~'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2	'13	'14	'15
정책제언 수용률 (단위: %)	목표	신규	60	74	75
	실적	81	71.1	–	–
평가 과제수 (단위: %)	목표	15	15	25	30
	실적	19	15	30	–

출처 : 고용노동부(2014). 20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Ⅲ-1).

□ 추진실적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평 가(7개 과제), 2011년 이후 본격 실시

○ 그간 "13개 중앙부처, 6개 자치단체 소관 90개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고용친화적 정책제언을 완료

- 평가과제 수: '10년 7개→'11년 19개→'12년 19개→'13년 15개→'14년 30개 → '15년 33개

○ 초기에는 재정사업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이후 제도개선, 산업정책 등으로 평가 분야 범위도 지속 확대

- '10년: 재정사업 평가 위주 → '11~'12년: 복지, 관광, 금융 등 복지·산업정책으로 확대→ '13년이후 부처간 연계·협업과제 비중 확대

○ '13년부터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17년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큰 규제완화, 법·제도 개선 등 로드맵 주요과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평가계획: '13년 10개 → '14년 20개 → '15년 30개

○ 고용영향평가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고용 영향평가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함

- 한국노동연구원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을 대폭 확충 (연구인력 4명→20명)

- 고용영향평가센터는 2013년 "고용영향평가지침"을 수립, 정량분석 방법론[62] 및 정성분석 평가요소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

  ① 예산안: I-O모형 및 거시경제통합모형으로 분석, ② 사업 참여/미참여 기업 성과 차이: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미시분석

62) ① 예산안: I-O모형 및 거시경제통합모형으로 분석, ② 사업 참여/미참여 기업 성과 차이: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미시분석

□ 고용영향평가사업 예산[63] [64]

○ 고용영향평가사업의 예산은 2011년 이후 약 20억원 규모를 유지

○ 2014년도 예산안에 고용영향평가사업비로 28억 1,900만원이 반영[65]

〈표 2-28〉 '13~'15년도 고용영향평가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13	'14	'15*
사업 수	15	30	33
예산	1,964	2,819	3,179

출처 : 고용노동부, 2014년 예산편성개요, 2015년 예산편성개요.

□ '15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정규 평가과제, 현안 이슈 과제, 지속 평가과제로 나누고 있음[66]

- 평가과제는 주로 정부정책으로 구성되며 1년에 2회로 나눠서 진행함
- 보통 정규평가과제는 기일이 시급하고 단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성됨

○ 2015년도에 고용영향평가 대국민 과제공모를 시행하여 평가대상 선정에 반영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팝업공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고용노동부 해당페이지로 연동됨
- 고용노동부 참여마당 내에 "고용영향평가 과제제안 게시판" 운영 중이며, 전체 공개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5년도 과제의 경우, 2015.1.23.~2.10까지 22개 게시글이 존재하며, 이 중 5개가 2015년도 21개 과제 중 포함되어 있음

○ 2015년도 평가과제는 아래 〈표 2-29〉와 같음

- 정규 평가과제 (15개), 현안 이슈 과제 (2개), 지속 평가과제 (4개)[67]

63) 고용노동부(2014.11). 2015년 예산편성개요,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1105&state=A&seq=1434976786253)
64) 고용노동부(2013.11). 2014년 예산편성개요,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1105&state=A&seq=1395656317819)
65)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 · 행정.
66) 고용노동부(2015.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보도자료. 붙임4.
67) 지속 평가과제는 정규 평과가제나 현안 이슈 과제보다 오랜 기간 모니터링을 진행함.

〈표 2-29〉 2015년도 정규 평가과제

분야	소관부처	과제명	비고
창조경제	중기청	창업사업화	고용률70%로드맵 '14년 연기과제
	문체부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고용률70%로드맵 '14년 연기과제
	산업부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	고용률70%로드맵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학회 제안과제
중소기업지원	산업부	동반성장 기본계획	고용률70%로드맵
	중기청	중소기업 우선구매	학회 제안과제
규제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경총 제안과제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국민 제안과제
복지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고용률70%로드맵
교육	교육부	대학 특성화 지원	전문가 제안과제
환경	환경부	지역 환경혁신클러스터 육성	고용률70%로드맵 '14년 연기과제
	환경부, 부산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지자체 신청과제
기타	산업부	한-칠레 FTA	국민제안과제
	고용부, 기재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국민 제안과제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전문가 제안과제

〈표 2-30〉 2015년도 현안 이슈 과제

분야	소관부처	과제명	기타
규제	기재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고용률70%로드맵
	산업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사후·추적평가

〈표 2-31〉 2015년도 지속 평가과제

분야	소관부처	과제명	기타
중소기업	중기청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고용률70%로드맵
고용	고용부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채용모델 확산	고용률70%로드맵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국민제안과제
		장년고용대책(노인일자리 사업 포함)	국민제안과제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2015.4.13. 붙임4.

□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계획[68)69)]

○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 및 시행 컨설팅

-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68) 고용노동부(2015).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1110&state=A&seq=1428026352162〉(접속일:2015.9.15)
69) 고용노동부(2014.12.). 사업입찰공고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

- 2013년도부터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17년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큰 규제완화, 법·제도 개선 등 로드맵 주요과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시행(7.1)에 따른 정책제안 수용 의무화 및 사전고용영향평가 도입[7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28)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71] 등으로 고용영향평가 영역 확대 및 활용도 제고[72]
- 주요 국책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 추진여부 결정에 고용효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의 고용친화적 예산 편성·집행 유도

○ 평가 결과 모니터링 및 고용영향평가 온라인 DB 구축 ('15년 중 계획)

-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 결과보고서 등을 집적한 쌍방향 웹DB 구축·운영, 평가 및 수용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영향평가 방법론의 개발 및 보급[73]

- 정책·사업 유형별 평가모델을 표준화, 평가매뉴얼 개발·보급 및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의 신뢰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2014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 중 고용영향평가 인프라구축을 위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지역인재 고용영향 평가방안 마련, 사전고용영향평가 사례연구 및 실행방안 마련, 일자리창출 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 사전고용영향평가는 정책수요 분석, 유사 정책의 효과조사 및 준용, 관련 업계·단체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설 수립 및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재 계획 단계인 정책의 향후 고용효과를 예측하고 평가함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교육부와 고용부가 소관하여, 2016년부터 도입이 의무화되며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해야함

○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를 통한 고용영향평가 저변 확대

- 고용영향평가 관련 학술대회, 전문가 집단 구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저변 확대 추진

70) 정책수립 단계에서 고용에 관련된 제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분석, 고용친화적 정책대안 마련
71) 정부·지자체의 정책 및 법령에 대해 지역인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토록 의무화
72) 고용노동부(20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국회확정).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div_cd=&mode=list&page=1&bbs_cd=OP1102&state=A&pimSeq=1&piSeq=1
73) 고용노동부(2015.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보도자료. 붙임2.

- 평가 종합분석 연차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컨퍼런스) 개최

○ 기타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평가대상 선정 시,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나 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절차의 개방성 대폭 강화 ('15년~)
- 담당부처 뿐 아니라 외부(국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단기제안을 강화하거나 전문용어를 배제하는 등 평가 (결과)보고서 전면 개편 추진
- 전문가·정책실무자·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고용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과제 선정 및 평가 시 질 확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고용친화적 정책·사업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용효과를 감안한 계획 수립이 가능

4. 농어촌영향평가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차별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집행 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요시행연혁

○ 농어촌영향평가의 주요시행연혁은 다음 표〈2-32〉와 같음

〈표 2-32〉 농어촌 영향평가 주요시행 연혁

2010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방안 및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용역」 수행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문지원기관 관련 업무 수행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201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용역」 추진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파악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실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실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4년 11월 21일)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2015년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출처 :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15).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

3) 평가유형 및 대상

○ 평가유형은 크게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진행됨

- 자체평가 : 각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매뉴얼에 따라 직접 평가,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 9개 부처와 9개도에서 실시
- 전문평가 :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하는 정책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진하였음. 전문평가의 경우 총 8개 정책(2011년 2개 정책, 2012년 2개 정책, 2013년 4개 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를 통해 도농 간 비교 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정책 평가 종합 및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표 2-3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정책과 관련 부처

	평가대상	관련 부처
2011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	여성가족부
2012	평생학습정책	교육과학기술부
	응급의료정책	보건복지부
2013	에너지복지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주택바우처	국토교통부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농림축산식품부.

4)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체계

○ 삶의 질 향상위원회 조직 및 구성

- 삶의 질 향상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임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됨

※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기능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 조정
-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
-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통계청장, 경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 농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임기 2년)

※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0조7항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주요기능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심의
-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삶의 질 향상 전문지원기관
- 전문지원기관 구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 1센터장, 2팀(점검평가팀, 조사연구팀), 총 10명 인원으로 구성

○ 농어촌영향평가 평가 체계는 다음 [그림 2-12]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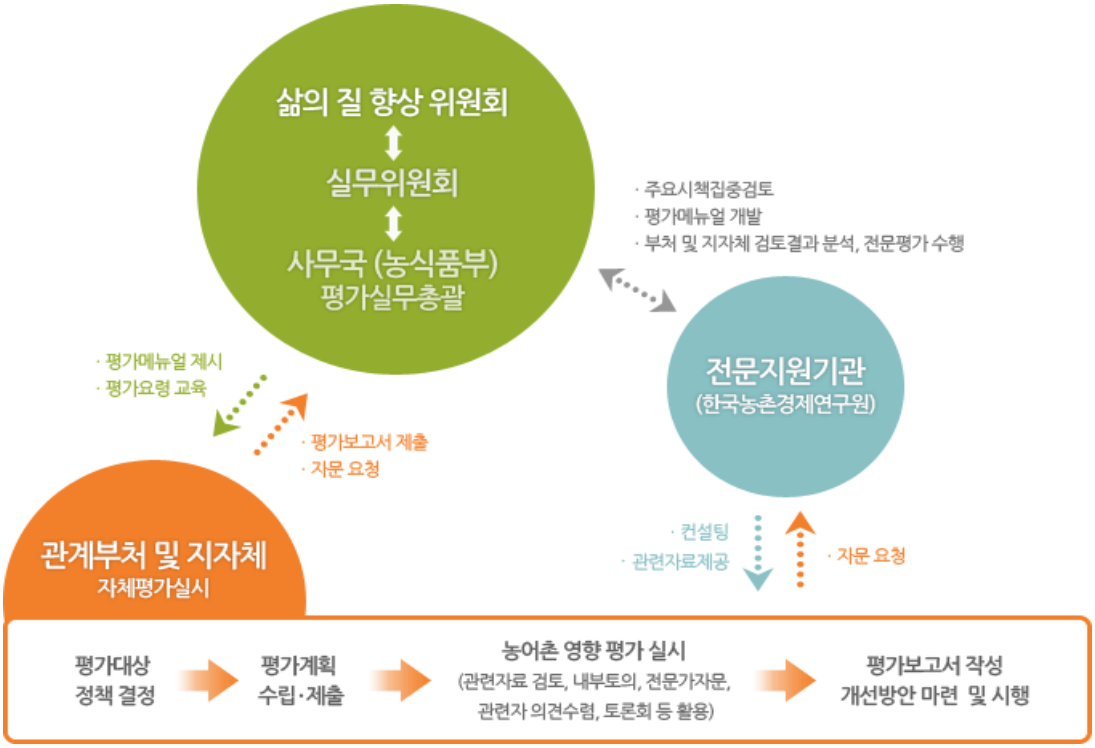

[그림 2-12] 농어촌 영향평가 평가체계

출처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홈페이지 http://ruralllife.krei.re.kr/web/ruralllife/

□ 평가절차

○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 평가절차

-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평가절차는 다음 [그림 2-13]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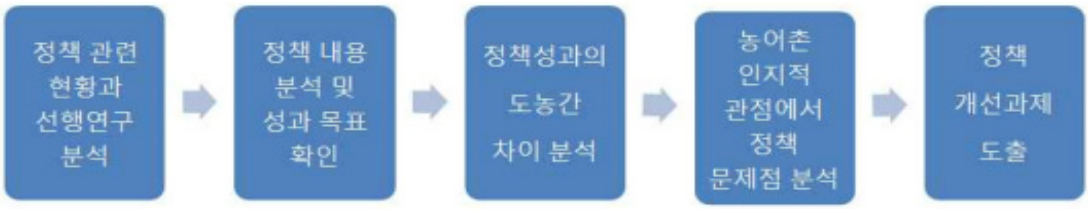

[그림 2-13]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절차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농림축산식품부.

5)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방법[74]

□ 평가방법

○ 정책 시행 시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농어촌의 특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정책 검토

○ 현재 기획·시행중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농어촌의 경제, 경관, 전통문화 등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 분석

□ 평가항목

○ 농어촌 영향평가에서는 정책이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지역의 사회자본 등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음.[75]

6) 평가결과의 활용

○ 농어촌 영향평가 자체평가는 2011년 7개 부처와 9개 도, 2012년 8개 부처와 9개 도, 2013년 5개 부처와 9개도에서 진행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농어촌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심 유발과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함

74) 삶의 질 향상위원회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21
75)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농림축산식품부.

○ 2014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장애인복지정책, 폐기물관리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2011~2012년에 진행한 전문평가 추진과제에 대한 추수 평가(follow-up assessment)를 진행하였음

7) 평가운영현황

○ 운영현황

- 현재 중앙부처와 시·도가 자율시행(연간 1건 이상)하는 자체평가에 대해 의무기준을 설정, 사전의무화 검토·추진 중임.

* 법령 제 개정 시 의무화하고 있는 평가(현행 성별영향평가,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에 농어촌영향평가 추가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76]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예산사업(예시: 연간 100억원 → 30억원, 단계적 확대) 및 5년 이상의 중장기 대책 수립 시 농어촌영향평가 의무화

5. 시사점

○ 국내 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중심에서 법령 제·개정안, 계획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법령을 분석평가대상으로 포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77]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4) 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시행 중인 법령'도 포함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가 가능해짐[78]

76) 농림수산식품부(2014. 8. 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보도자료.
7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박선영(20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78)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9쪽.

○ 최근 고용영향평가는 개별 사업 중심에서 다부처 사업, 산업별 · 정책분야별 평가로 확대되고 있어 선정평가대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우며, 경제 · 산업정책, 고용관련 이슈 등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평가 대상안 마련에 있어서 각종 정책, 고용 관련 이슈, 노동시장 현황 및 기존의 고용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79]

○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확대를 위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법제화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양한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의무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합리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처 및 지방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부정적임[80]

○ 김경희 외(2013)[81] 또한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운영 방식은 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제도의 형식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의 대상 및 성격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향평가의 목적이 명확해야하며, 평가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심사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의무조치(법령)의 부과를 통해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평가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추진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2011)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추진절차나 체계를 견고하게 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시행으로 분석평가 대상을 법령과 사업 및 계획으로 확장하였고 평가 결과 산출된 성평등 조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4)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포함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공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과 결과를 알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79)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 · 행정」, 219쪽.
80)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5.4.3 등록, 김성진 담당자, 창조행정담당관
81) 김희경·조규진(2013)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법률 및 법령 개선효과 분석: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환경부장관의 보완·요청,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은 사업자의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관리대장의 기록 및 비치,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통보 의무, 승인기관 장의 협의내용의 이행 확인을 위한 조사권, 승인기관장 및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의 불이행시 조치명령권, 공사중지명령권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자료제공 협조, 결과통보,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거나 부처간의 협조사항, 결과의 통보, 환류 이행상황의 점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거나 문화영향평가협의체의 내부지침에 환류 이행상황 확인·점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 문화영향평가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임[82)]

□ 협의체를 통한 평가제도의 운영

○ 타 분야 영향평가의 경우 해당 영향평가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각 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해 분석평가의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결과 정책 반영, 공무원 교육 등 해당 기관의 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함
- 또한 중앙센터 1개소와 16개 광역 시·도 지역별로 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 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박선영(2012)[83)]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의 차관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82) 이환성(2013). 특정평가결과 환류의 장애요인과 효과적 환류방안 16p 참고.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83) 박선영(20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 농어촌영향평가의 경우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 조정,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함
-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심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관할하고 있음

○ 향후 문화영향평가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함[84]

□ 영향평가 참여유인(인센티브)의 마련

○ 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초기에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 성 인지 감수성 교육과 젠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분석평가 추진 후 우수 분석평가 사례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함
-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통해서 과제 수를 지정하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업무합동평가지표에도 과제수를 평가지표로 포함해 분석평가 추진 과제수를 관리함[85]
-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 심사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법령안은 차관회의에 상정 불가하도록 함

○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고용영향평가로 인한 실익은 적은 반면 부담이 크기 때문임[86]
- 고용영향평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확보할 수 있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경우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각종 평가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조정해야하며 고용창출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올 경우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됨[87]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초기에 타 부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1부서에서 1개 과제씩을 분석평가하도록 유도했음

○ 초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항목 개수가 많아 공무원들에게 작성에 대한 부담을 부여하고, 질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음. 이를

84)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85) 여성가족부(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86) 국회예산정책처(2013)「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행정」, 220쪽.
87) 국회예산정책처(2013)「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행정」, 220쪽.

개선하고자 지표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되고, 작성양식에 '예,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는 박스를 추가함으로써 지표를 개선한 바 있음

○ 문화영향평가 시행 시 영향평가로 인한 편익과 비용(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설팅, 시상제도 등의 참여유인이 필요함

□ 문화영향평가의 홍보 방안 마련

○ 고용영향평가 초기에는 평가의 외부 인지도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 불가했으며,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하는 채널이 부족했으며,[88][89]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대상과제 선정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을 마련하고, 정책백서나 리플렛을 통해 해당 제도를 홍보함

□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체계 필요

○ 고용영향평가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고 부정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언론왜곡 및 부처갈등을 우려하여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평가의 한계로 지적됨[90]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91] 정책제언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후속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제언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원 확대

○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평가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획실, 정책·사업평가실, 법·제도 개선평가실로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기획실은 평가과제를 선정·관리하고 평가모형과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평가모형개발팀과 로드맵 과제 등 주요 고용대책을 현장 점검하는 로드맵 모니터링팀으로 구성
- 정책·사업평가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사업시행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
- 법·제도개선평가실은 주요 법·제도·규제에 대한 평가 및 지원, 평가결과의 반영 및 법·제도·규제 개선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

88)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5.4.3 등록, 김성진 담당자, 창조행정담당관
89) 본 한계점은 2014년도에 제작한 고용노동부 평가를 따름. 따라서 2015년 1~2월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대상 심사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위 평가에 대한 조치로 생각됨.
90)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5.4.3 등록, 김성진 담당자, 창조행정담당관
91) 국회예산정책처(2013)「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 · 행정」, 2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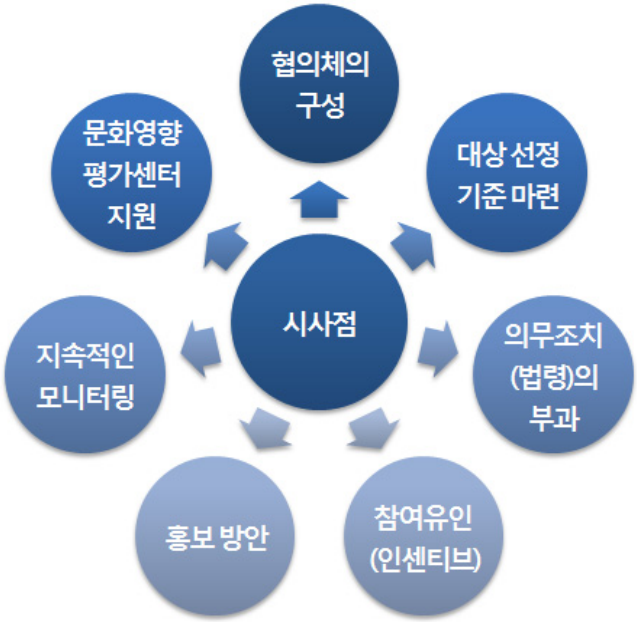

[그림 2-14] 국내 타분야 영향평가 사례의 시사점

제3절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 분석

1. 미국 :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 사회영향평가의 지표와 내용은 미상무성과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이 1994년 공동위원회(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여 발표한 사회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과 원칙(1994,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과 2003년 개정 내용[92]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임

1) 목적 및 근거

○ U.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하 NEPA, 1969)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이하 SIA)는 "어떤 개발사업 혹은 개발정책의 추진 결과가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그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93]으로 별도의 절차나 개념이라기보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실현 및 인문 환경(Human Environment)의 해석을 위해 NEPA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94]

○ 법적 근거

- NEPA는 "인문 환경(Human Environment)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을 평가하는 데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함께 사용할 것을 요구함
-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40은 PART 1500-1508에 걸쳐 NEPA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보고서 관련 사항, "인문 환경(Human Environment)"의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포괄적 환경 대응 책임 보상법, 1980)」,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SARA, 1986)」에서 해당 지역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회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92)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Principles and Guidanc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2003). Principles and guidanc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93) Burdge et al.(1995). Social Impact Assessment: State Of the Art.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94) 환경부(2008).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제도 조사 분석 연구.

- 사회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준비를 위임 또는 포함하고 있는 법규와 규칙은 다음 〈표 2-34〉와 같음

〈표 2-34〉 사회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준비를 위임 또는 포함한 법규와 규칙

기준(년)	법	조항
1969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42 U.S.C. 4332]	(A)"인문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 (B)또한 현재의 정량화되지 않은 환경의 쾌적함과 적절하게 고려된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것을 요구함
		(C) include in every recommendation or report on proposals for legislation and other major Federal action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a detailed statement by the responsible official on-- (i)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posed action, (ii) any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which cannot be avoided should the proposal be implemented, (iii) alternatives to the proposed action
1976	어업보전관리법 (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적정 생산량 유지를 위한 어장 접근 제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법률로 내무부 장관과 지역어업관리회에서 이 시스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1978	미국 환경위원회(CEQ) 40 CFR 1500-1508	국가환경정책법 절차조항 시행에 관한 규정
	40 CFR 1500.1(목적)	(a) NEPA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 국가 헌장이다. 이것은 정책 수립, 목표 설정, 정책 수행에 수단을 제공한다. (b) NEPA 절차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실행되기 전에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환경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NEPA의 목적은 훌륭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활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NEPA 절차는 환경 영향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이러한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공한다.
	40 CFR 1508.8(영향)	영향은 생태적, 미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혹은 건강관련 영향들이 직접적·간접적·누적적이든 포함되어야 한다.
	40 CFR 1508.14 (인문 환경)	"인문 환경"은 자연과 물리적 환경,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련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경제 또는 사회 영향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의 필수조항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준비되고 경제, 사회, 자연, 물리적 환경 효과가 상호 연관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인문 환경에 대한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78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개정	'인문 환경'이라는 용어는 논의되고 있는 자원 개발 활동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조건, 생활의 질, 고용, 건강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소와 조건 및 요인들을 의미함
1980	포괄적 환경대응 책임 보상법	지역관련 프로그램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대형자금 계획 수용과 관련한 지역 주민 및 공동체와 공동 작업을 의무화함
1982	핵폐기물 처리법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요구에 따라, 부지 선정 과정에서 원주민 부족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 장소 부지에 대한 특정 인구학적 제한에 대한 영향 평가 지원
1986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영향권 내 지역 주민 공동체와의 협업과 계획 실행에 따른 영향 평가 의무화

출처: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anc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1994). U.S. Department of Commerce.

2) 주요시행연혁

○ 1970년대 초 내무부에서 알래스카 횡단 송유관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를 준비하면서 "사회영향평가(SI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1993년 12인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조직(미상무성과 IAIA[95]공동).

○ 1994년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원칙과 지침 마련

○ 1996년 미국 환경의 질 회의(US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사회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포함함[96]

○ 2003년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원칙과 지침 개정

3) 평가대상 및 특징

□ 평가대상

○ 사회영향평가는 사업,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사업(Projects): 농업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개 시설의 건설 또는 공항의 확장
- 정책(Policies): 이민, 위험 및 오염 등의 폐기물 처리, 가구 재배치, 지구온난화와 식료품 저장 유지
- 계획(Plans): 토지 이용 명칭, 성장 관리 또는 정책 실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계획
- 프로그램(Programs): 계획의 결과, 예를 들면 태평양 북서부 강에 야생 연어를 반환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본 관리

□ 평가의 특징

○ 사회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개발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평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개발행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구별됨[97]

○ 환경영향평가만으로 검증할 수 없는 지역의 공동체 혹은 민족, 인종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등 문화적 가치 및 문화적 특성을 중요한 평가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98]

○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회과학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며[99] 관련 정보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회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95)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s Assessment
96) 이시재(2000).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223-228.
97) 이시재(2002).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환경사회학연구(ECO). 3. p. 106-132.
98) 김규원(2003).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9)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s(1999). The NEPA Desk Guide. p.9-7

○ 사회영향평가는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인문지리학 등 관련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함[100]

○ 제안된 개발행위와 관련한 논의를 포함해 사회영향평가에 고려되어야 하는 평가의 유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평가 유형: 사회적, 문화적,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심리학적, 정책적 영향

4) 평가방법 및 절차[101]

□ 평가방법

○ 인문 환경(Human Environmental)에 대한 요소는 이웃, 공동체(communities), 지역(regions)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포함할 것

○ 영향은 제안된 활동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와 실행으로 인한 미래의 영향과의 차이로 정의됨

○ 대안은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개선될 수 없는 경우 보상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임

○ 정보는 적합한 사회과학적 방법과 가정을 사용해 수집해야 하며, 독립적인 대상으로 상호검사(peer review)[102]가 반드시 필요함

○ 평가방법과 가정은 쉽게 이해가능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해야함

□ 평가절차

○ 사회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표준절차는 10단계로 설정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2-15]와 같음

① 공공의 참여 : 잠재적인 영향권 내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 참여 계획을 수립함

② 사업 설명 및 대안 제시 : 현재 사업과 정책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위치, 토지의 크기, 사회간접자본의 필요성(도로, 상하수도), 건설 일정,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 시설의 크기와 형태, 지역 노동력 수요, 제도적 자원과 같은 정보를 제시해야 함

③ 인문환경과 영향권의 기술 : 해당 지역의 현재와 과거의 상태에 대한 기술을 의미함

- 생태조건, 역사적 배경, 정치·사회적 자원, 문화 및 사회 심리적 태도, 인구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100)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s(1999). The NEPA Desk Guide.

101)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2003).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102) peer review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및 전략적 검토를 제공하는 과정임. 검토자(reviewer)는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며 개발시행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발자가 고용함. 〈출처 : Moreno et al.,(2012). EIA Review Methodology.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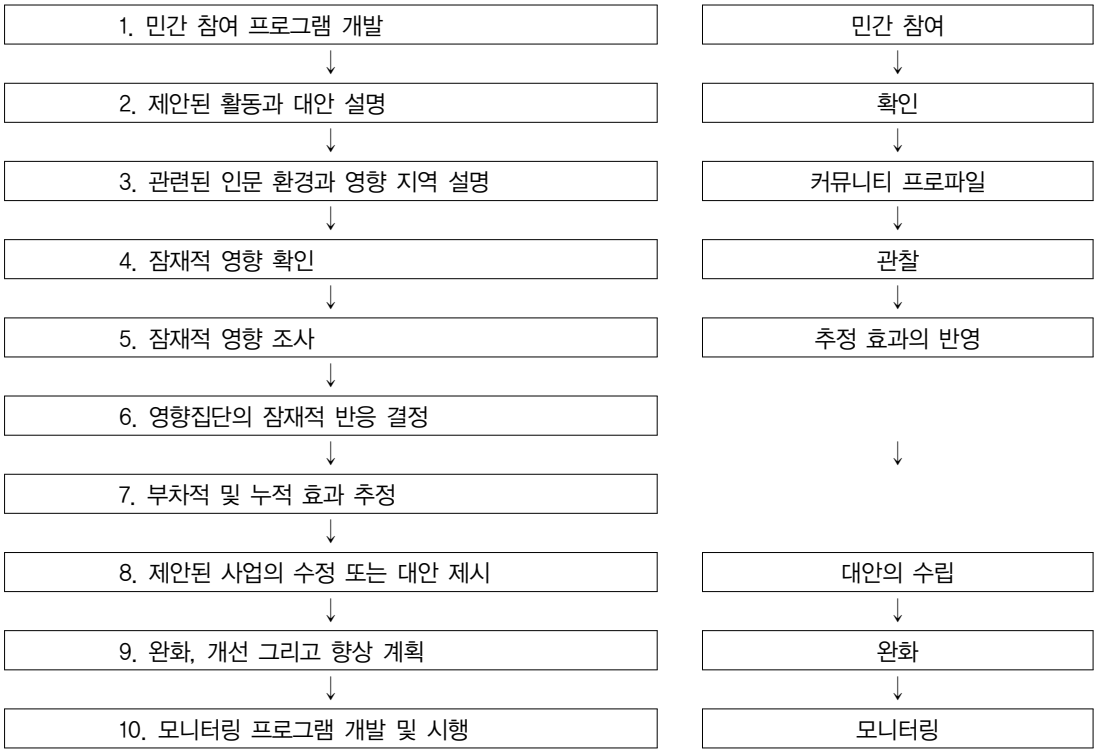

[그림 2-15] 사회영향평가 절차

출처 :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2003).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④ 잠재적 영향의 확인 : 가능한 모든 범위의 사회적 영향을 확인함.

- 사건 발생의 확률, 영향권에 있는 인구수, 영향의 지속성, 영향집단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 부차적인 영향의 가능성, 영향완화 혹은 전화의 가능성, 현재와 미래 정책 결정의 타당성, 불확실성, 사업에 대한 논란 여부를 포함함

⑤ 잠재적 영향 조사 : 사업으로 인한 미래의 영향과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함

- 개발 주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과거 유사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사회영향평가보고서 기록, 인구통계학적 자료, 기록물과 이차 자료, 현장조사(인터뷰, 청취, 그룹 미팅, 통계조사)가 핵심적인 자료임
- 분석방법 : 비교분석법, 직선적 경향 분석(Straight-line trend projections), 인구 승수법(Population multiplier methods), 시나리오 분석, 전문가 판단, '사라진 미래(futures forgone)' 계산법 등을 사용함

⑥ 영향에 대한 반응의 결정 : 직접적인 영향에 기초한 사람들의 반응(태도와 행동)을 예측함

⑦ 부차적 및 누적 효과 : 프로젝트로 인한 간접적, 누적 영향의 측정

⑧ 제안된 사업의 수정 또는 대안 제시 : 새로운 대안 또는 대안의 수정에 대해서도 잠재적 영향에 대해 각각 조사해야함(⑤단계)

⑨ 완화 :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함

⑩ 모니터링 : 예상하지 못한 사회영향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함. 특히, 다양한 변수가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모니터링이 필요함

5) 평가내용 및 지표

□ 평가내용[103)]

○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대중의 참여 방법을 설명해야함
- 중요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언급해야함
- 사회영향평가가 기초로 하는 연구 방법과 가정에 대한 설명
-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분석
- 정보 출처 확인, 불가능하지만 필요한 정보 확인, 정보의 중요성 평가와 불가능한 정보의 획득여부에 따른 절차
- 평가 수행자
- 제안된 완화 방법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 평가원칙

○ 사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 9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35〉와 같음

- 사회영향평가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및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주요 원칙으로 표명하고 있음

〈표 2-35〉 사회영향평가 원칙

1. 다양한 대중의 참여	모든 잠재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개인과 집단의 확인 및 참여
2. 영향의 형평성 분석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분명히 하고, 사회적 약자를 강조함
3. 평가의 초점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향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함
4. 방법, 가정, 의의 규정	가정, 의미 결정과 같은 SIA 설계에 대해 설명해야함
5. 사회적 영향의 피드백	개발추진자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며, 설계-평가-수정-평가의 과정이 필요함
6. SIA 전문가 활용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사회과학자가 실시해야 함
7. 모니터링/완화 프로그램	모니터링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
8. 자료 출처 규명	대상 지역과 관련한 과학적 자료, 2차 자료 및 1차 자료를 활용해야 함
9. 데이터 부족에 대한 대책	중요 자료가 부족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한 방침이 필요함

출처 :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2003).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103)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s(1999). The NEPA Desk Guide.

□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제안된 활동으로 인한 인구, 공동체, 사회적 관계에서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나타냄

○ 사회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회영향평가지표는 다음 〈표 2-36〉와 같음

〈표 2-36〉 사회영향평가 지표

평가지표	평가 내용
인구 변화	인구 규모 밀도 및 변화 / 민족, 인종 분포 / 이주 인구 / 임시노동자의 유입이나 유출 / 주기적인 거주자
지역사회 및 제도적 구조	자발적 결사체 / 이익단체 활동 / 지자체의 규모와 구조 / 변화에 따른 역사적 경험 / 고용·소득 특성 / 취약 계층의 고용 평등 / 현지·지역·국가 연계 / 산업·상업의 다양성 / Presence of planning and zone
정치 & 사회 자원	권력 및 권한의 배분 / 전입자와 거주자의 갈등 / 이해 관계자의 확인 / 이익·혈연 영향집단 / 리더쉽 역량과 특성 / 조직간 협력
지역사회 및 가족의 변화*	위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 / 이동·이주에 대한 관점 / 정치 및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 주거 안정성 /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 가족 및 친구 네트워크 /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 인프라의 변화 / 원주민 인구 / 토지 이용 패턴 변화 / 문화, 역사, 고고학적 자원의 영향

주1* : 가정생활, 직장 조정, 태도, 인식, 가족의 특성과 인적관계를 포함한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화의 범위는 태도로부터 가족과 인적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 위험, 건강, 안전에 대한 인식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주2** : 지역사회자원은 천연자원과 토지 이용 패턴, 주택의 가용성과 지역사회서비스(건강, 치안, 화재보호, 정화시설을 포함한)의 패턴을 포함, 인간사회의 연속성과 생존의 핵심은 역사와 고고학 및 문화적 자원에 있음, 평가지표를 통해 원주민과 종교 하위문화의 가능한 변화들을 살펴봄

출처 :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2003),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 NEPA Desk Guide(1999)[104]에서는 사회영향평가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Socioeconomic Impact Analysis)"의 특징을 가지며, 주제상 "문화 자원(Cultural resource)"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문화 자원(Cultural resource)"은 여러 종류의 유산 관련 자원(heritage-related resources)에 대한 포괄적 용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역사적 사이트, 건물, 지구(districts), 구조, 역사적 대상, 건축, 고고학, 공학 그리고 문화적 가치(예를 들어 법원, 19세기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
- 역사적 대상 : 과잉 산업 시설에서 볼 수 있는 시설, 고고학적 사이트에서 출토되거나 발견된 대상, 하와이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대상
- 역사, 민속, 고고학적 중요성을 지닌 문서 : 군사기지의 기록, 고고학적 사이트의 기록, 건물의 원안 및 사양
- 미국 원주민 또는 화와의 원주민 조직의 전통적인 종교 또는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

104)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s(1999). The NEPA Desk Guide.

- 지역사회,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장소의 의미(sense of place)"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장소(locations)
- 지역사회, 이웃, 미국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그룹의 전통 신앙과 문화적 관행

○ King(2000)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s)이 제한적임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요소를 문화자원으로 다룰 것을 제안함[105)]

- 역사적 속성 : 역사적 중요성이 있거나 고고학적, 건축학적, 기술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으로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자격이 있는 유적지. 건물, 구조, 사이트, 일반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대상들이 “지역(districts)"으로써 역사적 특성이 될 수 있음. 역사적인 속성은 NHPA(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06의 검토를 중심으로 함
- 미국 원주민 문화 항목 : 유적, 장례용품, 신성한 물건, 인디언 부족 또는 하와이 원주민 그룹과 관련 있는 문화 유산, NAGPRA(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의 주제임
- 고고학적 자원 : 일반적으로 역사적 속성이지만 때때로 속하지 않는 것. ARPA(Arch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에 의해 고고학적 사이트, 특징, 100년 이상 된 유물로 정의된 자원(ARPA는 연방 및 원주민 지역에 적용됨)
- 고고학적, 역사적, 과학적 데이터 : ADPA(Archeological Data Preservation Act)의 대상. 보통 고고학적 자원 또는 역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발견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
- 미국 원주민의 종교 의식 : AIRFA(The American Indian Religious Freedom Act)의 주제. 신성하거나 영적인 장소와 관련 있는 특정한 장소이거나 아닌 경우도 있음
- 연방정부의 토지에 있는 원주민의 신성한 땅 : Executive order 13007의 주제. 역사적인 특성이나 고고학적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음. 미국 원주민 문화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닌 경우도 있음
- 자연 환경의 문화적 사용 : 예를 들어, 동물이나 식물의 식용 사용, 장소, 식물, 동물, 미네랄의 의식적 또는 종교적 사용.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해 검토되어야 함
- 공동체의 문화 규범, 가치, 신념 그리고 노동, 여가, 관계, 욕구 충족, 사회 참여 등의 방식 : NEPA에 의한 사회영향평가의 주제임. 저소득층과 소수 집단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역사적인 문서 : FRA(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or Federal Records Act)의 대상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문서

○ 미국해양대기관리처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사회영향평가 지표는 다음〈표 2-37〉과 같음

105) T.F.King(2000). What should be the "cultural resources" element of an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표 2-37〉 NEPA에 따른 EIS 체크리스트[1)]

Contents	Authority CEQ	Suggestions/remarks
4.0 Environmental Consequences(forms scientific and analytic basis for comparisons under alternatives)	1502.16	
인문환경의 질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1508.27(b)(4)	
인문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영향(불확실하거나 독특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정도	1508.27(b)(5)	
등록된 역사적인 장소의 지역, 사이트, 도로, 구조 또는 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중요한 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의 손실이나 파괴의 가능성	1508.27(b)(8)	
저소득층과 소수집단에 대한 환경적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영향		
Urban quality,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e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including the reuse and conservation potential of various alternatives and mitigation measures.	1502.16(g)	
인간 활동과 자원, 생태계와 인간 사회 사이의 중요한 인과 관계 확인	1508.7	

출처 :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www.noaa.gov

6) 평가결과의 활용

○ 사회영향평가의 결과는 환경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s) 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에 포함되며 정책결정자와 계획 설계자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함[106)]

2. 캐나다 : 노스웨스트 준주의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 매켄지밸리(Mackenzie Valley)는 이누비알루이트 정주 생활권(Inuvialuit Settlement Region)을 제외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 노스웨스트 준주는 총 인구 41,462 명(2011년 기준)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으며, 인구의 47.6%[107)]가 원주민임. 메켄지밸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긴 1,738km길이의 매켄지 강을 따라 분포한 그위친(Gwich'in), 사투(Sahtu), 델초(Deh Cho), 아카이초(Akaitcho), 틀리초(Tlicho) 등 다섯 개 도시로 구성

106)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s(1999). The NEPA Desk Guide.
107) 캐나다관광청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

[그림 2-16] 노스웨스트 준주의 위치

출처: 두산대백과

○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은 매켄지밸리의 연방법으로 토지 및 수자원의 사용을 관리하고 지역 개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발족됨

○ 매켄지밸리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하위에 사회적영향, 경제적 영향, 보건적 영향과 더불어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2012년 문화영향평가 시행지침(안) 역시 환경영향평가 하에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2008년도부터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2년 문화영향평가 시행지침 작업에 대한 결과 및 이후의 추진과정이 공개된 바는 없지만, 아직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음[108)]

○ 기본적으로 문화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라는 점에서 국내의 문화영향평가와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며, 아래의 다섯 가지 유형을 '문화적 환경'으로 포함함[109)]

- 유형적 문화유산

108) 문화영향평가의 제반적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02년 이후로 문화에 대한 영향평가가 시도되었으나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캐나다 등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의 관심은 지역토착민 또는 문화유산에 국한되었다. 매켄지밸리의 문화영향평가도 원주민의 문화 및 삶의 질에 대한 수요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Adriana Partal(2013). Impact Assessment: A Tool to Assist 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ities Research Institute. p.1. 참고.

109)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p.9.

- 정신적·역사적·사회적으로 의의가 있는 장소
- 작물재배 및 토지활용 방식
- 지역의 문화, 정체성 및 가치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문화경관
- 문화적 가치, 표현, 지식체계 등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문화영향평가가 유형의 문화유산 영역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인식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사업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진단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110)]

○ 기존에 존재했던 「환경영향평가 지침서」, 「환경평가의 전통적 지식」, 「사회경제학 영향평가 지침서」 안에 문화영향 및 평가에 대한 지침을 포함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문화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검토위원회, 개발업자 및 원주민 집단이 개발사업이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더욱 잘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함[111)]

□ 법적근거

○ 「매켄지벨리 자원관리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상에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원주민의 삶의 방식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등 문화영향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 Mackenzie Valley Resource Management Act (S.C. 1998, c.25), 111 (1) ..."impact on the environment" means any effect on land, water, air or any other component of the environment, as well as on wildlife harvesting, and includes any effect on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r on heritage resources. 115 (1) The process established by this Part shall be carried out in a timely and expeditious manner and shall have regard to (a)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th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f proposed developments; (b) the protection of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well-being of residents and communities in the Mackenzie Valley; and (c) the importance of conservation to the well-being and way of life of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to whom section 35 of the Constitution Act, 1982 applies and who use an area of the Mackenzie Valley.

출처: 캐나다 법제처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laws-lois.justice.gc.ca)

110)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p.3.

111)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09). Status Report and Information Circular – Develop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A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Initiative. p.3.

2) 주요시행연혁

○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주요 시행연혁은 다음 〈표 2-38〉과 같음

〈표 2-38〉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주요시행 연혁

1998	캐나다 의회에서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 승인 (1998.12.22) 매켄지밸리 환경영향검토위원회 설립
2005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 평가절차 개정
2008	검토위원회가 문화영향평가 지침서 개발 착수 메켄지밸리 환경영향검토위원회가 환경평가 시작[112] IAIA의 문화영향평가 워크샵 참여 및 수행
2009	검토위원회가 환경평가 규정집 배포 문화영향평가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샵, 현장조사, 인터뷰 실행

출처: 캐나다 원주민문제·북방개발부(AANDC) 연혁 (www.aadnc-aandc.gc.ca)
주1. 상기 표는 매켄지밸리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혁과 문화영향평가 지침재발 관련 연혁이 혼용되어 있음.
주2. 중장기 과제가 많아서 세부 프로젝트 시행 현황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운영현황 참조.

3) 평가유형 및 대상

□ 문화영향평가 수준검사 (Level of CIA Test)에 따른 평가유형

○ 평가신청 전 단계(Pre-application Stage)에서 문화영향평가 수준검사를 시행하여 3개의 유형으로 분류

○ 문화영향평가 수준검사는 개발 프로젝트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를 점검함

○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내용에는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세부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의 속성: 문화적 영향에 경고사인을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 가치있는 문화자원으로부터의 거리: 개발지가 주요 문화자원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 장소적 특성: 해당 장소를 보호해야할 만큼 가치있고 의미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 문화집단의 특성 및 초기 문화적 우려: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문화소유자에 대한 것이 있는가? 그들의 사업에 대한 초기 반응이 대중의 우려를 나타내는가?

○ 문화영향평가 수준검사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은 아래의 〈표 2-39〉와 같음

112) 캐나다 원주민문제·북방개발부(AANDC) 연혁 참조
http://www.aadnc-aandc.gc.ca/eng/1374760498850/1374760562098

〈표 2-39〉 등급별 평가유형 비교[1)]

유형	사업 및 장소의 특징	주요 평가 요소	예비검토 기대결과
기본 문화영향평가 (Basic) (문화 영향 잠재 요소에 대한 초기적 탐색)	- 주로 소규모 사업이거나, 중간규모의 사업 중 문화적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나 요소가 없는 경우	- 사전 상황 및 맥락 - 원주민 문화 소지자들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 및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 - 문화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을 기록	- 신청서류 및 사업지역 정보 - 환경평가를 시행할 확률이 낮음
중간 문화영향평가 (Moderate) (문화적 우려 사안에 대한 집중 연구)	- 중·소형 사업 중 잠재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위치한 경우 - 대형 사업 중 민감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 공식 평가를 위한 문화 집단 간 합의 도출 - 좁은 범위 설정 (장소 및 기타 문화적 자원에 대한 집중 평가) - 외부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초빙 필요 - 현장연구	- 예상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요약정보 - 문화적으로 부정적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시정방안 또는 환경평가가 요구될 수 있음
종합 문화영향평가 (Comprehensive) (광범위한 문화영향평가 집중 연구)	- 대형 사업 중 다수의 문화적 자원에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 문화적 환경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 설정 - 심화된 현장연구	- 개발정보보고 제출요망 - 환경평가를 시행할 확률이 높음

4)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기관

○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MVRMA: Mackenzie Valley Resource Management Act)」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행정 기관인 매켄지밸리 환경영향 검토위원회(Mackenzie Valley Environmental Impact Review Board: 이하 검토위원회)가 평가를 주관함

>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 (S.C. 1998, c.25), 114 of the Art**
> The purpose of this Part is to establish a process comprising a preliminary screening, an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an environmental impact review in relation to proposals for developments, and
> (a) to establish the Review Board as the main instrument in the Mackenzie Valley for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review of developments;
> (b) to ensure that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proposed developments receives careful consideration before actions are taken in connection with them; and
> (c) to ensure that the concerns of aboriginal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are taken into account in that process.

출처: 캐나다 법제처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laws-lois.justice.gc.ca)

○ 매켄지밸리 환경영향 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MVRMA 제11조(연방장관에 의한 위원 임명)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제15조에 의거하여 선정된 자, 제57항 1(2)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트리초 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를 제외하고는 연방장관이 임명함

- 구성은 원주민 토지분쟁위원회 (Aboriginal land claim organizations)가 절반을, 캐나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임명하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113]
- 2014년 3월자를 기준으로 검토위원회는 8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

□ 환경영향평가 평가체계[114]

○ 검토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및 규제적인 절차들을 총괄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독자적인 위원회가 평가절차에 참여함

○ 평가절차 중 예비검토 및 토지와 수자원 규제는 각 5개 지역의 토지와 수자원 위원회, 캐나다 국토해양부, 캐나다 환경부, 국가 에너지 위원회 등이 담당함

○ 평가절차 중 환경평가는 검토위원회가 담당함

○ 평가절차 중 환경영향검토는 검토위원회에서 조직한 독자적인 패널이 담당함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115]

○ 초기 지역공동체 참여 과정, 평가에 적절한 분석 대상 및 단계의 결정이 완료된 후에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

○ 사업의 규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영향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비검토, 환경평가, 환경영향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함

○ 약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예비검토 단계만 시행하며[116] 개발사업 승인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경평가나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게 됨

○ 환경평가를 시행한 후에 검토위원회는 연방장관과 지역장관에게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지,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지 등을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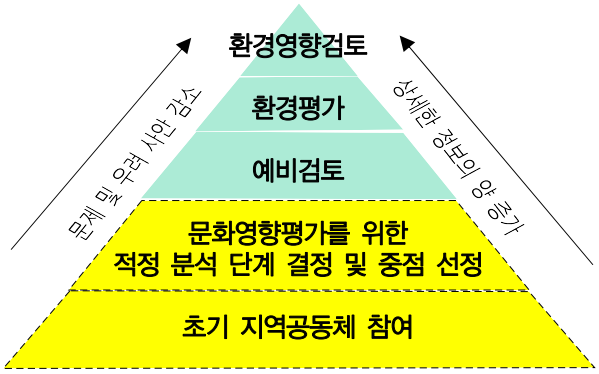

주1. 하단의 점선 부분은 비공식적 단계 (개발 사업 신청 이전)

[그림 2-17] 매켄지밸리 환경영향평가 단계[1)]

113) 메켄지밸리 환경영향 검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www.reviewboard.ca
114) 매켄지밸리 환경평가 검토위원회(2013). Decision Makers in the Process. p.1. http://www.reviewboard.ca/process_information/step_by_step_information.php
115)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p.27.
116) Mackenzie Valley Environmental Impact Review Board(2014). Annual Report 2013-2014. p.10.

□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 단계

○ 예비 검토 (Preliminary Screenings)

- 공식적 단계 중 첫 번째로 제안된 개발이 환경에 미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나 중대한 대중적 우려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과정으로 “가능성검사(might test)"라고도 함
- 대략 6주의 검토기간 소요되며, 개발을 승인해도 되는지 아니면 환경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함
  ① 문화영향평가와 개발제안 사이의 논리적인 인과 관계
  ② 특정 문화 자원에 대하여 제안된 개발 이외에 누적되는 효과를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확인
  ③ 가치 있는 문화 자원에 대한 잠재적 영향 존재 여부
  ④ 중대한 영향에 대한 예측 및 근거
  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완화책에 대한 제안

○ 환경 평가 (Environmental Assessment; EA)

- 환경영향평가의 두 번째 단계로 검토위원회가 개발이 환경과 인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상세하고 집중적으로 공식조사를 진행
- 검토위원회가 예비검토 결과 제안된 개발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 감소, 제거할 수 있는지 “완화방안(mitigation measures)”을 권고함
- 검토위원회는 논의 대상이 아닌 지역의 소규모 사업 및 가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각각 서면 의견 수렴 및 범위 설정 회의(scoping sessions)를 실시하여 검토의 범위를 설정
- 검토위원회는 범위 설정 결과, 예비 검토 과정에서 수집된 공식적 기록 자료 및 환경 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권한 위임 사항"을 작성
- 검토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방 정부 및 지자체장에게 사업 규제 및 실시 내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전달
- 아래의 경우 개발 중지를 권고:
  ①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화책이 개발업자에 의하여 모두 고려되었으나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공식적 기록으로 제출된 증거에 기초할 때 문제의 장소가 매우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짐이 분명하고 그 가치가 제안된 개발 유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
  ③ 영향권의 중심에 있는 문화 집단이 개발 제안의 주요 세부사항이 공개된 직후부터 높은 수준의 우려를 표한 경우
  ④ 개발업자와 문화 집단이 서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희박하여 완화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

○ 환경영향검토 (Environmental Impact Review; EIR)

- 환경영향평가의 세 번째 공식적 단계로 논쟁의 여지가 매우 크거나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만 실시됨

- 검토위원회가 선정한 3인 이상의 패널이 심층적 검토를 실시
- 패널은 "권한 위임 사항"을 발간하여 "문화 영향 성명" 에 포함될 사항을 밝히고 개발이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완화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림
- 문화적 완화책의 일반적 예
  ① 개발 추진에 있어 대안 채택: 협상에 기반하여 경로 및 위치 재설정·재선정, 추진 일정의 변경, 건축 방식의 변경 등
  ② 보상: 다른 장소에서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적 활동 및 의례 거행을 위한 기회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도록 지원
  ③ 보호 장벽 설치 혹은 점이지대 설정
  ④ 개발에 원주민 문화 관행을 포함: 개발 과정 내에 원주민 관행 및 의례를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원주민들이 토지와 장소에 대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함
  ⑤ 전문적 발굴 고고학 시행: 고고학적 유물이 개발에 의해 파괴·손상되기 이전에 발굴
  ⑥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영향으로부터 문화 자원 보호

□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절차[117)]

○ 문화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문화에 미칠 영향을 검토함

○ 문화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자원을 인식하고,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저감하거나 방지하고 긍정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문화자원에 미치는 잔여효과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협력함

○ 매켄지밸리 문화영향평가 지침(비공식문서)에서는 다음 [그림 2-18]과 같이 여섯 단계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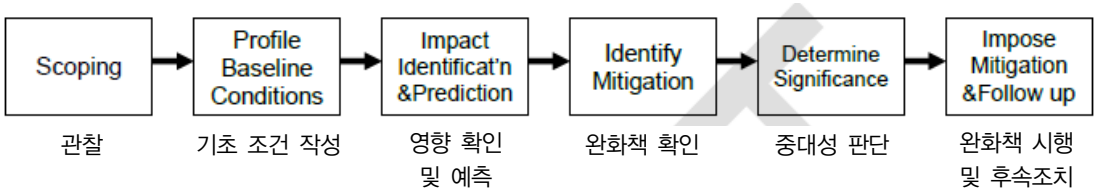

[그림 2-18] 문화영향평가의 6단계 모델

출처: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 관찰단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도록 함

- 1) 지역 내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 2) 공동체 구성원과 토지, 가치관을 형성하는 다른 문화적 가치들 간의 관계 3) 공동체의 인구적 속성 4) 전통적, 자연적 법, 거버넌스, 정치적/법적

117)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16쪽.

구조, 관습 5)지역자치단체나 연방정부와의 관계 6) 사회문화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목표 7) 문화적 회복탄력성과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8) 사냥, 열매채집, 수렵 등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 9) 문화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

5)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방법

□ 평가지표

○ 문화영향평가의 6단계 중 중대성 판단을 위한 지표는 다음 〈표 2-40〉과 같음

〈표 2-40〉 검토위원회 중대성 판단 지표[118]

중대성 요소	검토위원회 고려 사항
영향의 본질적 특징*	영향이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이 문화를 위협하거나 훼손하는가? 어떠한 과정으로 부정적 영향이 진행될 수 있는가?
상황적 맥락**	해당 문화적 변화에 의한 연속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다른 개발에 의한 누적되는 영향이 존재하는가? 영향권 하의 인구나 자원은 얼마나 회복탄력적인가? 이들의 현재 상태와 이를 나타내는 기준은 어떠한가? 문화 요소가 비탄력적일수록 완화책 마련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별 고려 사항	해당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누가 어떠한 성과를 언제 냈는가? 문제의 자원은 원주민 문화 집단 내에서 어떠한 중요도를 차지하는가? 변화는 해당 장소의 시각적·정신적 상징물인 문화자원을 가리거나 손상시키거나 제거하는가? 이슈는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작은 변화가 해당 장소와 관련된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가? 해당 장소나 경관은 유사한 여러 중요 장소 중 하나인가? 혹은 유일무이한가? 문제의 장소는 문화적 구전동화, 이야기, 구전 역사 등에서 중심적 역할인가 주변적 역할인가? 문제의 장소는 더 큰 규모의 집합체나 복합체의 일부로써 치명적인 파괴 없이 손상을 견딜 수 있는가? 마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로 해당 장소와 자신들을 일치하여 인식하는가? 해당 장소는 문화 집단(들)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가? 해당 장소의 손상으로 인해 다른 유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는가?
트레이드오프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가? (예- 경제성장 등) 개발이 진행되면 영원히 변하게 되는 지역 관련 가치나 활동이 있는가? 원주민 집단이 해당 장소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가?
관리 역량 및 사회적 수용력	해당 원주민 집단은 특정 문화 자원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가? 개발 진행 과정에서 변화가 수용가능한 한계 기준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설 수 있는가? 추가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정도로 위의 한계 기준이 무너진 상태인가? 예견되는 변화가 이를 수용할 지역공동체 및 정부의 역량을 벗어나는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관련 문화 자원은 문화적으로 의미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는가? 현재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관리 계획은 증가하는 변화를 다루기에 충분한가?
지리적 영역 및 분포도	해당 개발 사업에 의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문화 집단, 중요한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받는가? 문제의 장소 및 자원이 다수의 문화 집단에 가치 있는 것인가?

118)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p.51.

중대성 요소	검토위원회 고려 사항
발생가능성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50% 이상인가?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추정치를 고려할 때 50%의 발생가능성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은가? 추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떠한 가정이 사용되었는가? 누가 추정치를 계산하였는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존재하는가?
시기 및 지속 기간	개발 계획 일정이 동물, 추수 및 의례 활동을 포함하는 문화 자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그 영향은 회복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가? 그 변화는 단기간에 걸쳐 일어나는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가?
영향의 형평성	문화 내 특정 문화 집단이나 하위 집단이 영향에 더욱 취약한가? (여성 및 유아 등)
대중적 관심	제안된 개발 활동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우려를 표명한 광범위한 문화 집단이 있는가?

*주1. 부정적인영향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영향의 경로를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

□ 평가방법

○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며, 문화영향평가 6단계 중 기초조건(baseline) 작성 단계에서의 정량화와 정성화를 위한 예시는 다음 〈표 2-41〉와 같음

〈표 2-41〉 평가요소의 기초조건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예시

평가요소	기준 (Criteria)	지표 (Indicator)	의미	활용 가능한 자료
바람직한 방식으로 원주민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기회	특정 지역에서의 사냥, 덫 치기, 물고기 잡이에 대한 참여 혹은 회피 여부	특정 지역에서의 사냥, 덫 치기, 물고기 잡이에 참여한 지역 주민 비율 (%)	특정 지역에 대한 원주민 경제의 영향력	통계자료,지역 재생가능자원위원회, 주민 설문조사
	해당 지역에서 확보한 육류의 양과 질	특정 장소에 대한 긍정·부정적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 (%)	전통 음식의 양과 질에 대한 변화의 인식 여부 확인	주민 설문조사, 토지사용자 연례회의 시 대면조사
원주민 언어의 보존	직장에서의 원주민 언어 사용	회사 계획서 등에서 원주민 지명(地名)의 표기 비율 (%)	원주민 언어의 실질적 사용	회사문서 검토
		직장 내 원주민 언어 사용 빈도	업무상 근로자가 얼마나 수월하게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지의 정도	관찰
	어린이의 원주민 언어 사용	교실 밖에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비율 (%)	젊은 세대에 의해 원주민 언어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정도	캐나다통계자료, 지역학교 놀이공간에서의 관찰
특정 지역 관련 문화 지식의 전수	문화·의례적 관행을 위한 특정 장소의 사용	매년 특정 장소에서 밤을 새우거나 캠핑을 하는 가구 비율 (%)	특정 장소와 관련된 지식이 전수되는 기회의 빈도	주민 설문조사, 연례회의 대면조사
문화적 관례의 보존	전통적 식이(食餌)의 유지	전통적 음식을 활용하는 가구 비율 (%)	가정 내 문화 관행의 보존	주민 설문조사

□ 평가의 특징

○ 개발업자와 문화적 영향의 대상이 되는 집단 간의 상호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

○ 문화적 영향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평가 전(全) 단계에 이를 위한 장치를 마련

○ 정부에 의한 규제적 성격을 지양하고 개발업자와 문화 집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가 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자발적 검토의 도구가 되도록 함

6) 평가결과의 활용[119)]

○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 s.128(1)(b)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환경평가 완료 후 문화적인 완화(mitigation)를 시행하기 위해, 개발자와 원주민 집단간의 협의(예-영향 혜택 합의, Impact Benefit Agreements), 정부 담당자와 개발자간 협의(예-사회경제학적 합의, Socio-economic Agreements) 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검토위원회는 노스웨스트 준주(GNWT)나 원주민문제 및 북부개발부(AANDC) 등 다른 책임부처에 문화적 영향 완화책을 공유하거나, 추가적인 문화영향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여 모니터링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음

7) 평가운영현황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현재 매켄지밸리 검토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42〉 2015년 하반기 기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사업

평가 진행 중인 사업	개발사	평가 시작 연도	현재 진행상황	현재 단계
호워드 패스 진입로 개선 프로젝트 Howard's Pass Access Road Upgrade Project	셀윈 차이홍 마이닝 사 Selwyn Chihong Mining Ltd.	2015	개발자 협의안 제안 검토 Review of the Developer's Proposed Terms of Reference	관찰 Scoping

119)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p.53.

평가 진행 중인 사업	개발사	평가 시작 연도	현재 진행상황	현재 단계
프레리 크리크 도로 및 활주로 Prairie Creek All Season Road and Airstrip	캐나다 징크 사 Canadian Zinc Corporation	2014	최종 협의안 발의 final Terms of Reference issued	개발자평가보고/ 환경영향 Developer's Assessment Report/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제이 파이프 프로젝트 Jay Project	도미니언 다이아몬드 에카티 사 Dominion Diamond Ekati Corporation	2013	공청회 후 기록물 제출 Post hearing filings	공청회 후속조치 Hearing follow-up
매켄지밸리 고속도로 Mackenzie Valley Highway	GNWT-DOT	2013	수정된 협의안 발의 Revised Terms of Reference issued	협의안 및 작업계획서 Terms of Reference and workplans
옐로나이프 골드프로젝트 Yellowknife Gold Project	타히 골드 사 Tyhee NWT Corp.	2008	환경평가 대기 EA suspended until further notice	정보요청 Information requests

출처: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http://www.reviewboard.ca/registry/status_of_assessments.php

3. 뉴질랜드[120][121]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마나훼누아 집단이 지역 및 자연 자원과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문화적 가치, 문화적 이해관계 및 연관성을 기록하고 개발 사업이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완화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1991년 제정된 자원관리법 (Resource Management Act)하의 오클랜드 통합 계획(Proposed Auckland Unitary Plan)

○ 오클랜드 통합 계획(Proposed Auckland Unitary Plan)은 오클랜드 내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동 제공, 해양환경 유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며 이미 오클랜드의 환경 또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음

120) Auckland Council. Cultural Impact Assessments Process.
121) Auckland Counci. Mana Whenua Cultural Impact Assessments, Proposed Auckland Unitary Plan: Fact Sheet http://www.aucklandcouncil.govt.nz/EN/planspoliciesprojects/plansstrategies/unitaryplan/Documents/Key%20topics%20in%20detail/upkeytopicsmanawhenuaculturalimpact.pdf

2) 평가대상 및 특징

□ 평가대상

○ 마나훼누아 집단의 주요 지역 및 가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함

□ 평가의 특징

○ 원주민이 직접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오클랜드 위원회는 시행 과정 조율, 정보 제공, 권고사항 전달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

○ 오클랜드 통합계획(Auckland Unitary Plan)은 이전의 지자체 계획보다 원주민 집단에 의한 평가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를 "자원 동의 (resource consent)" 신청 시 포함함

○ 사업계획 중 구조 계획(structure plan)이 있을 경우 문화영향평가는 필수임

○ 통상적으로 장문의 보고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메일이나 짧은 서신으로 이루어지며 우려 사안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등을 서술

3)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체계

○ 뉴질랜드의 문화영향평가는 크게 사업신청서 제출 전과 후로 나뉨

- 오클랜드 위원회는 시행 과정 조율, 정보 제공, 권고사항 전달 등의 보조적 역할을 주로 하며 원주민들이 문화영향평가에 직접 참여

□ 평가 필요 여부 판단 단계

○ 문화영향평가에 앞서 오클랜드 통합계획 지도 및 GIS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여 문화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침

○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필요 여부 판단 단계는 다음 〈표 2-43〉과 같음

〈표 2-43〉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평가 필요 여부 판단 단계

단계	판단 내용
1	오클랜드 통합계획의 지도를 확인하여 마나훼누아 집단의 중요 지역 및 가치 있는 지역(Sites and Places of Significance or Value)에 해당하는지 확인 고고학적 유적지와 개발 사업지 간의 최단 거리가 50미터 이내일 경우 문화영향평가 실시 공사 지역이나 삼림 제거 지역이 아래의 영역과 중첩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 실시 뛰어난 자연 경관 영역 (Outstanding Natural Landscapes overlay) 뛰어난 자연 특성 영역 (Outstanding Natural Features overlay) 뛰어나고 높은 자연적 특징을 가진 영역 및 해안 지역 (Outstanding and High Natural Character and Coastal Areas overlay)
2	오클랜드 통합 계획 부록 확인 부록 9.1에 지정된 원주민에게 중요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 문화영향평가 실시

단계	판단 내용
3	오클랜드 위원회 GIS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아래의 영역에 해당할 경우 문화영향평가 실시 관습적 해양 소유권 지역이거나 해양및연안지역법(Marine and Coastal Area Act) 지정 관습적 권리 보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4	보호구역(reserve)이라면 관련 보호구역관리계획(Reserve management Plan)을 검토
5	개발 과정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지 확인 대기, 토양 및 수자원에 대한 오염 배출 가능성 수로변경, 수자원 사용, 댐의 건설 과정 하상(河床) 또는 연안 지역의 매립 혹은 오염 가능성 광물 자원 채취 과정 맹그로브(mangrove) 제거 과정 중대한 생태지역(Significant Ecological Area, SEA) 내의 토양 오염 및 식수(植樹) 제거 가능성 마나훼누아 집단에게 가치있는 지역 및 장소에 근접한 작업 과정

□ 평가절차

○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절차는 다음 [그림 2-19] [그림 2-20]과 같음

- 오클랜드 위원회 내 자원동의 부서(resource consents team)가 관련 원주민집단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원주민집단과 문화영향평가 필요여부를 논의한 후 진행되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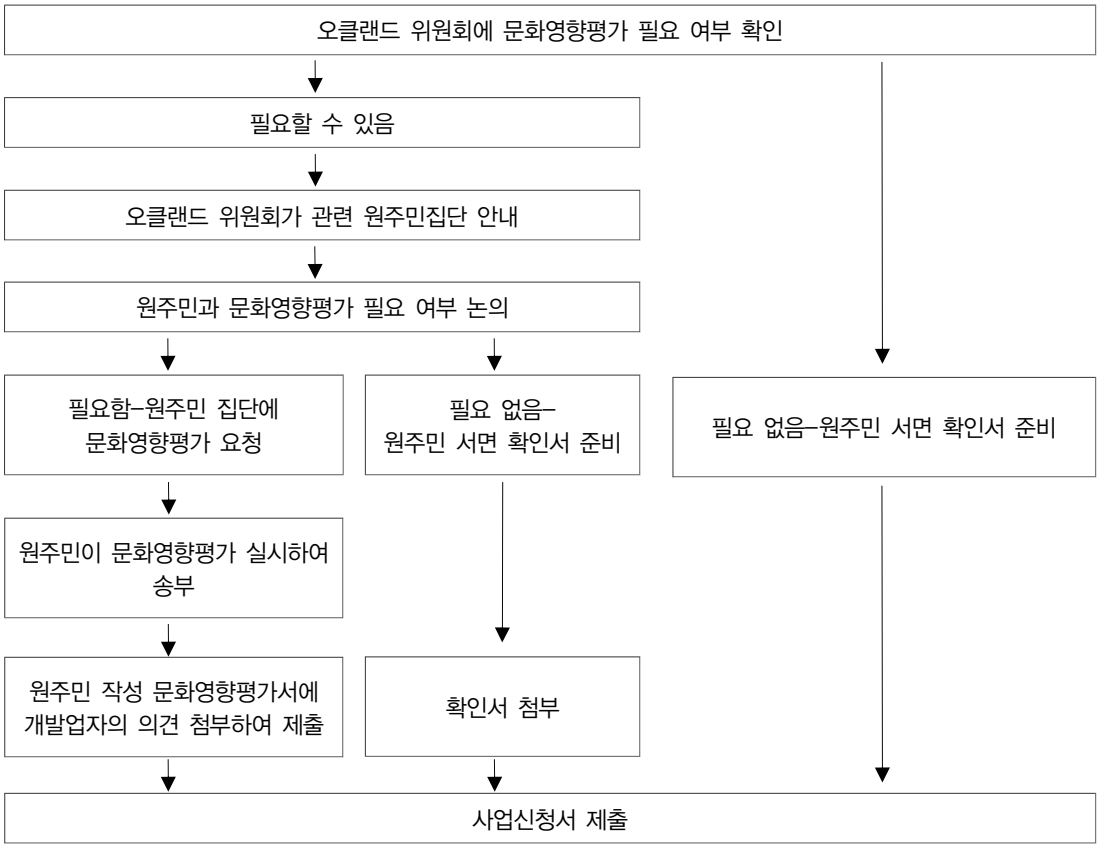

[그림 2-19]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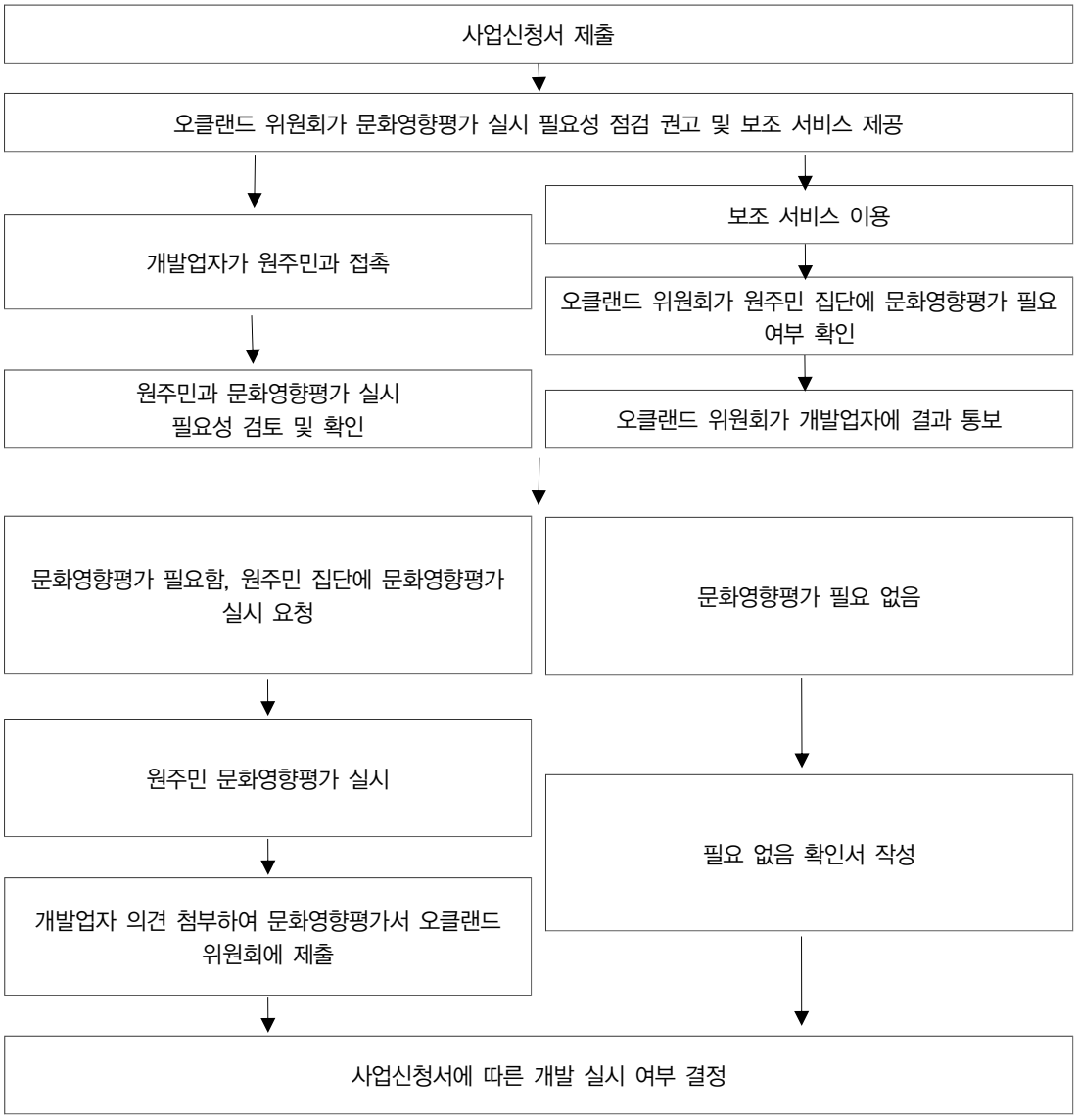

[그림 2-20] 뉴질랜드 문화영향평가 사업신청서 제출 후 절차

4)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내용의 경우, 우려 사안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등을 서술함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현장 정보(부족/집단에서 일부 현장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화영향평가를 받고자하는 지역의 가치 있는 자원 경관 등에 대한 소개 등이 서술됨
- 방법론(현장 조사, 초안 검토, 뉴질랜드 토착 원주민 대상 프레젠테이션, 고고학적 평가 또는 설문 등

4. 영국 : 영향평가제도

○ 영국은 1985년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7년 영향평가제도(Impact Assessment)로 개편을 단행하여 다양한 영역의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를 시행하고, 영향평가를 각 부처별, 사업별로 실시되는 정책에 적용하여 정책 입안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

○ 영국정부는 경제적 분석을 비롯한 분석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약서 등 각종 서식을 개정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영향평가지침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함

○ 영향평가서는 요약서, 증거자료 및 부록으로 구성됨

- 요약서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 논의단계에서 고려한 대안의 소개, 최종 선택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서술함
- 증거자료는 요약서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요약서에 서술한 내용에 재한 세부 증거를 제시함
- 부록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평등영향평가 등 특정영향평가의 내용을 포함함

1) 목적 및 근거

○ 영향평가는 정책 입안자에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사고를 돕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며,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비용 및 편익,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함[122)]

2) 주요시행연혁

○ 영국 영향평가제도 주요 시행 연혁은 다음 〈표 2-44〉와 같음

〈표 2-44〉 영국 영향평가제도 주요 시행 연혁

1998	블레어 총리가 주요 규제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선언
1999	규제영향평가가 모든 정부부처로 확대
2000	규제영향평가 지침 마련
2006	규제영향평가를 영향평가제도로 개편

출처: 장민선(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재구성.

122) 장민선(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p.18-19.

3) 평가유형 및 대상

□ 평가대상

○ 영국 내 사적 부문, 시민사회의 기구 및 공적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정부 개입적 부문이 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률, 하위법령 뿐만 아니라 실행규약이나 지침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연간 총비용이 1백만 파운드 이하이거나 규제력이 없는 사업 및 정책은 패스트트랙으로 분류되어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평가유형

○ 영향평가는 정책개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형성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짐

○ 영향평가 시행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안 비용·편익 분석 외에도 필요에 따라 특정영향평가를 추가로 수행하여 경쟁,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환경, 평등 부문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함[123)]

4) 평가체계 및 절차

□ 평가 기구

○ 선진규제국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산업혁신기술부(BIS 소속기관으로 영국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총괄함
- 각 부처의 영향평가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IA Library를 운영
- 평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수립함

○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

- 정부가 제안한 규제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독립위원회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증거 및 분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사함
-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 증거에 기반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함
- 각 정부부처는 규제완화소위원회에 규제조치 또는 규제완화조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규제정책위원회에 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목적에 부합(fit for purpose)'한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영향평가서를 규제완화소위원회로 보낼 수 있음. 만일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 이를 명시하고 보강 및 개선하기 위한 증거를 추가로 수반해야함

123) 장민선(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p.4.

- 규제정책위원회는 선진규제국이 마련한 영향평가 지침, 툴킷(Tool kit), OITO(One-in, Two-out) 원칙, 재무부의 Green Book을 토대로 영향평가서를 검토함

○ 규제완화소위원회 (RRC: 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 정부의 규제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
- 새로운 규제 조치 또는 규제완화 조치를 제안하는 부처들의 요구를 취합하며, 이때 영향평가서 및 규제정책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평가절차

○ 영향평가과정은 정책 입안과정의 ROAMEF(근거(Rationale), 목적(Objectives), 검토(Appraisal), 모니터링(Monitoring), 평가(Evaluation), 피드백(Feedback)으로 불리는 정책 사이클을 따라, 정책계발단계, 대안선택단계, 협의단계, 최종제안단계, 제정단계,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짐

- 정책개발단계: 정책문제를 규정하고, 정부의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며,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
- 대안선택단계: 각종 대안의 확인 및 개발과 공식협의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이자 비용편익 초기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 협의단계: 공식적인 협의로서 외부에 공개하며, 고려된 대안들의 비용편익을 가능한한 수량화함. 정책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비용편익 산정 및 주요한 가정을 위해 협의를 활용할 수 있음. 협의를 수행하는 경우 영향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함.
- 최종제안단계: 최종제안서가 합의되고 규제완화소위원회로 보내는 단계로, 선호된 대안의 비용 및 편익에 초점을 맞춤. 협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안을 보강하고 사후집행평가(PIR) 계획을 제시해야함.
- 제정단계: 최종제안단계의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법률, 하위법령, 규제조치의 최종내용을 반영하여 영향평가서를 수정하는 단계.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 평가단계: 이미 시행된 정책의 실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집행평가(PIR)를 시행하는 단계. 정책 목적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심사 결과로서 제언된 이행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 영향평가 과정 단계는 다음 [그림 2-2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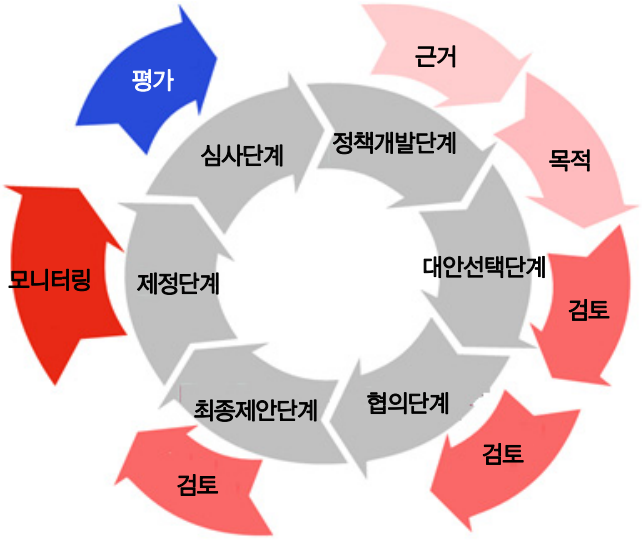

[그림 2-21] 영향평가과정 단계[1)]

출처: 영국 기업혁신기술부(2015)

○ 이상의 평가절차는 아래의 [그림 2-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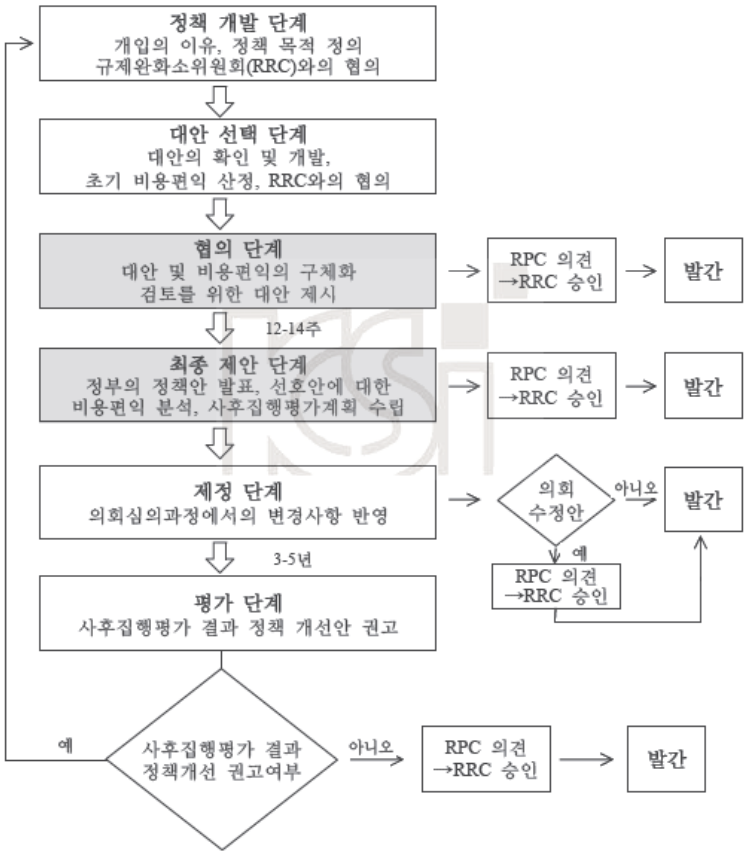

[그림 2-22] 영향평가과정에 따른 평가절차 흐름도

출처: BIS(2011). Impact Assessment Guidance, p.22(장민선(2012), 재인용)

5)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방법

○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 사회영향, 건강영향 등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영향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가치가 환산되는 것이 중요함[124]

○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미리 할당된 배점에 따라 합산하는 방식이며, '전문가'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는 없음[125]

○ 시장 기반의 접근으로는 전술선호(Stated Preference)와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가 있음

- 현시선호방식은 유사하거나 관련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행위를 분석하여 상품에 내포된 가격을 추산하는 것이며 만족가치법(Hedonic pricing),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등이 이에 속함
- 전술선호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해 사람들에게 직접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나 수용의사(WTA: Willingness to Accept)를 측정함

○ 다른 접근법으로 '주관적 안녕감 접근법(subjective well-being approach)', '삶의 만족도 접근법(life satisfaction approach)' 등을 변형하여 사용함

○ 예를 들어 건물의 디자인적 질(Design quality)의 가치를 추산하는 경우, 좋은 디자인은 운영 비용의 절감, 해당 장소에서의 서비스 질이나 결과물의 증감, 직원 모집 및 근속 현황 등을 토대로 편익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시민 만족도, 교육적 성취, 사용자경험 등 가치의 경제적 환산이 불가한 경우에도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내지 비슷한 방식으로 측정함[126]

6) 평가결과의 활용

○ RPC Opinion은 정밀검토 대기(Awaiting Scrutiny), 불승인(RED), 제한적 승인(AMBER), 승인(GREEN), 연간 순비용 확인(EANCB[127] Validated), 해당사항 없음(Not Applicable)로 작성하게 되어있으며[128] 협의단계에서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는 불승인, 제한적 승인, 승인으로, 최종제안단계에서 이루어진 평가의 결과는 불승인 또는 승인으로 제시함[129]

124) HM Treasury(2011).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p.22.
125) HM Treasury(2011).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p.35.
126) HM Treasury(2011).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p.57-58.
127) Estimated Annual Net Cost to Business (연간 순비용 추정)
128) Impact Assessment Template 참조.
129)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2015).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22.

7) 평가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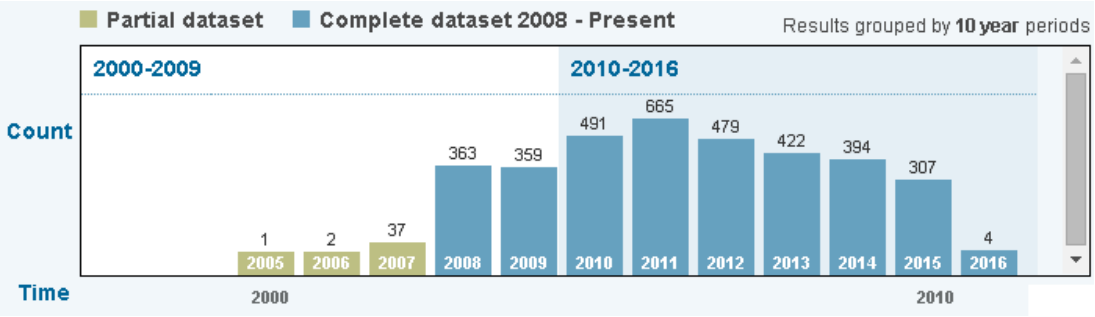

[그림 2-23] 영국 영향평가를 시행한 정책 문건 현황

출처: 영국 법제처(http://www.legislation.gov.uk/ukia)

5. 시사점

○ 이상 국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명확한 절차 제시 및 기준 설정

○ 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는 사업의 규모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를 기본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단계나 범위를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영국의 영향평가는 정책개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형성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특정영향평가를 추가로 수행해 경쟁,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환경, 평등 부문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130]

○ 미국은 사회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실행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화 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 사업 진행에 따른 평가 단계를 구분하고, 집단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범위[131], 평가 대상의 문화적 속성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유형화해 영향평가의 절차나 방법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함

130) 장민선(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p.4.
131) 윤순진(2004).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283-311.

□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 조치 강화

○ 평가의 추진체계와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캐나다는 「매켄지밸리 자원관리법」에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매켄지밸리 환경영향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를 독립 행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규제 및 실시 내용에 대한 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해당 연방 정부 및 지자체장이 권고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 추진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주관 기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도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

○ 미국과 캐나다의 영향평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소수민족 또는 저소득층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 하고 있음

- 캐나다는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포함했던 문화적 영향평가요소가 문화유산에 국한되었음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 원주민의 생활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에는 '원주민 언어의 보존 정도'와 같은 영역도 평가지표로 포함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 내 공식문서에서의 원주민 지명 병기 여부를 측정하거나, 직장 내 원주민 언어 사용 빈도를 확인하는 등 공동체 내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표를 측정하고 있음
- 미국의 사회영향평가는 '인문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문화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문화재뿐만 아니라 공동체, 저소득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고려를 강조함으로써 문화 가치와 문화적 특성의 반영을 실현하고 있음

○ 또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인 NEPA*(U.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는 환경 정의의 실현 및 보호를 위해 거의 모든 문화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132)]
- 미국 환경위원회(CEQ)의 법규에는 "인문 환경"의 개념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영향평가의 지침에는 "사회 영향"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음

132)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s(1999). The NEPA Desk Guide.

○ 문화영향평가의 정의 및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문화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관련 개념 및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평가의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 미국은 NEPA 이외에 어업보전관리법, 포괄적 환경대응 책임 보상법, 핵폐기물 처리법 등 다양한 법규와 규칙에 사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 제도의 확산과 시행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정부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타분야의 법령 및 규정에 문화영향평가 시행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종합 계획 지도 및 GI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지역 및 자원 경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도록 함

- 문화영향평가에서 평가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재청의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식 표준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 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서식 및 기본 포맷을 규격화하고 전문가가 아닌 평가 실행 주체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정부는 경제적 분석을 비롯한 분석의 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약서 등 각종 서식을 개정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영향평가 지침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함
- 특히, 전 부처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만들기 위해 평가보고서의 기본 포맷을 규격화하고, 분석 증거 및 추가 자료는 개별정책이나 부처의 특성에 따라 부록으로 제시하도록 보고서 형태를 단순하게 제시함으로써 평가보고서의 행정적 활용 가능성을 높임
- 또한 영향평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예/아니오 형태로 도식화하고, 영향평가지침서에 예시를 활용하는 등 비전문가인 평가 주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 양식을 구성함

□ 평가제도 지원 방안

○ 미국은 NEPA(국가 환경 정책법)의 맥락에서 사회영향평가 제도의 원칙과 지침을 마련해 사회

평가의 개념, 항목별 리스트, 평가 원칙, 절차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제도를 지원함[133)]

○ 캐나다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문화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검토위원회, 개발업자 및 원주민 집단이 개발사업이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더욱 잘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활용함

○ 전문가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의 사회영향평가는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인문지리학 등 사회과학분야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평가보고서에 평가 결과의 사회과학적 분석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처럼 평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평가 방법 및 절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분석에 대한 가이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명확한 절차 및 기준 설정	▪ 사업 진행에 따른 평가 단계 구분 ▪ 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 절차와 방법의 차별화
법적 의무 조치 강화	▪ 평가 주체 권한 규정 마련 ▪ 권고 사항 제안 및 수용에 관한 규정 마련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 고려	▪ 소외계층 및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 고려 ▪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 마련
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방안	▪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 각종 서식 및 기본 포맷 규격화
영향평가 제도 지원 방안	▪ 평가제도의 원칙과 지침 마렴 ▪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

[그림 2-24] 국외 문화영향평가 유사사례의 시사점

133) 정주철·임재영(2007).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연구-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16(1). p,45-58.

제3장

2015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제1절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제2절 개별평가의 설계
제3절 종합평가의 설계

제1절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설계

1.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2015년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 1차 시범평가에 이은 2차 시범평가의 성격을 가짐

○ 동 연구는 2014년 1차 시범평가를 보완하여 기 개발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2015년 2차 시범평가에 활용할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5개 정책(계획 및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특히 2015년 평가에서는 일방적인 하향식 평가지표의 하달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발굴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2014년 평가와는 달리 공모 방식을 통해 5개 개별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평가기관이 핵심지표(공통지표) 외에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 과정에서 개별 평가기관과 해당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와의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2015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방식

○ 2015년 문화영향평가는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추진함

○ 두 개의 평가 모두 전문연구평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평가'에 해당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나, 개별평가는 1개의 정책(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문화영향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면, 종합평가는 다수의 개별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meta evaluation)의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개별평가기관 및 대상 정책 선정		개별평가		종합평가		결과 발표
· 공모 시행 · 평가지침 보급 · 워크숍 실시	⇨	·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사업 대한 자체평가	⇨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현장평가)	⇨	· 평가결과 관련 부처·지자체 통보 · 인센티브제공 · 언론보도 등
문체부, 문광연		신청분야 연구기관·단체 등		연구원, 평가단		문체부

[그림 3-1] 2015년 문화영향평가 절차

1) 개별평가

○ 공모를 통해 정책연구·평가 전문기관 중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화영향평가기관으로서 적합한 기관에서 제시한 정책을 5개 선정함

○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대상 선정 기준은 '정부·지자체 정책 또는 사업 중,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국민의 문화권에 영향이 큰 정책,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이었으며, 문화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제외함

○ 개별 평가기관 및 대상 정책의 선정은 응모기관이 제시한 연구제안서에 대한 서류심사, 제안서 발표,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다음의 〈표 3-1〉와 같은 5개 평가기관과 5개의 정책이 선정됨

〈표 3-1〉 2015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기관 및 대상정책

정책	주관	내용	자체평가 기관
새뜰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농식품부/ 지역발전 위원회	o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논의, 2015년부터 시작	(사)인문사회연구소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o 우수 시장 6개소 선정,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하여 외국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 서울 남대문, 부산 국제, 대구 서문, 전주 남부, 청주 육거리, 제주 동문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서울시	o 세운상가 보존 결정에 따라, 세운상가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 자원을 연계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 활성화	(사)문화사회연구소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o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행정 구현, 마을공동체를 통해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관계망 복원, 공동체 회복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강원도청	o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 문제를 해결	문화컨설팅 바라

○ 이중 '새뜰마을 사업'과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사업이며, 세부사업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의 성격을 가짐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정책에 해당하며,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의 계획 단계에 대한 평가로서 사정평가의 성격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이 집행 중에 있는 단계로서 과정평가의 성격을 가짐

○ 선정된 개별평가기관과 종합평가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통합워크숍을 통해 개별평가에 대한 평가방향과 핵심지표 등에 대한 기본틀(framework)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토대로 개별평가를 진행함

○ 한편 개별평가기관에게는 핵심지표(공통지표)를 제시하고, 이 외에 대상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추가·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함

- 1차 통합워크숍을 통해 결정된 개별평가의 평가방향과 핵심지표(공통지표)는 아래와 같음
- 대상 정책(계획이나 사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정량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성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개별평가기관별로 정량화 방식에 자율권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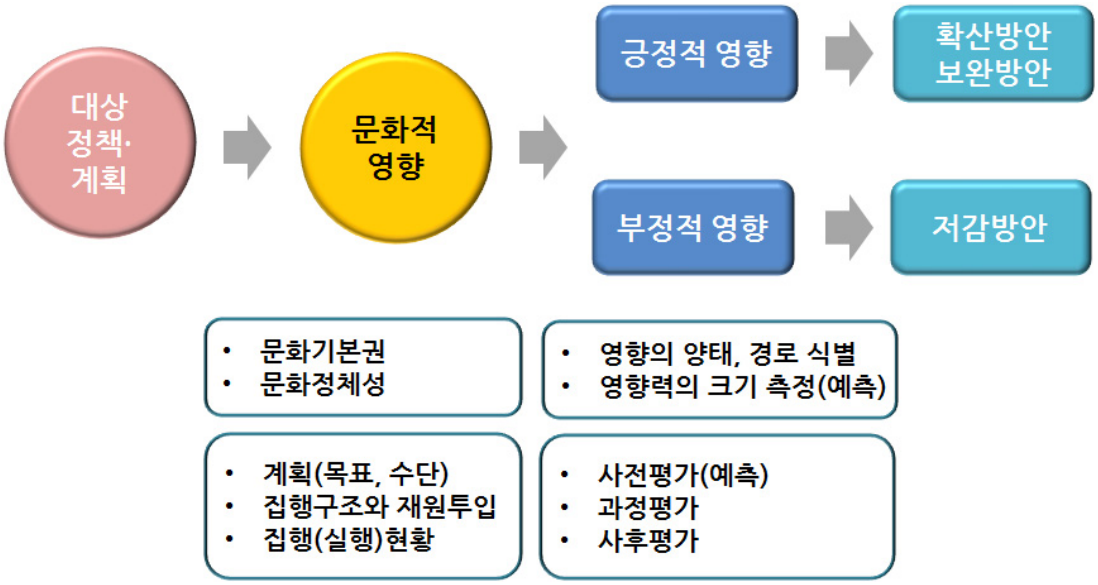

[그림 3-2] 2015년 개별평가의 평가방향

〈표 3-2〉 2015년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평가방법
문화기본권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의 양태 • 영향의 경로 • 영향력의 크기 • 영향력의 지속성	•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자료 분석 • 통계자료를 활용한 추세분석 및 시뮬레이션 •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심층인터뷰 • 델파이기법 • 초점집단면접(FGI)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표 3-3〉 세부 평가지표 예시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정성적 평가	영향력의 크기 (정량적 평가)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현 계획(정책)이 대상지역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시킬 것인가?(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킬 것인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예 1] 수치로 제시[134)] [예 2] 5점 척도 ① 매우 미약 ② 미약 ③ 보통 ④ 강함 ⑤ 매우 강함 [예 3] 3점 척도 ① 미약 ② 보통 ③ 상당
	• 현 계획(정책)이 대상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현 계획(정책)이 대상지역 주민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킬 것인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 현 계획(정책)이 대상지역 주민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현 계획(정책)이 대상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인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 현 계획(정책)이 문화다양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현 계획(정책)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 현 계획(정책)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 현 계획(정책)이 고유한 경관을 보존 및 발전시킬 것인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 현 계획(정책)이 고유한 문화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현 계획(정책)이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키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 현 계획(정책)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 개별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는 2015년 8월~2015년 11월에 걸쳐 진행됨

2) 종합평가

○ 종합평가는 개별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함

○ 종합평가기관은 개별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인터뷰 참관 등을 통해 개별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134) 통계 등의 수치로 제시할 경우 ① 시계열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 시계열자료의 이전 3년 값의 비교를 통해 영향력의 크기를 판단 ② 시계열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기준이나 국내 유사한 지역의 속성값과의 비교를 통해 영향력이 크기를 판단

〈표 3-4〉 종합평가 연구진의 현장조사 및 인터뷰 참관

과제명	평가기관	일시	장소	내용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사)문화사회 연구소	11.03(화)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현장조사 및 관계자(세운포럼, 세운거버넌스, 자문위원) 간담회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문화컨설팅 바라	11.06(금)	춘천시 동내면	현장조사 및 진행상황 점검 전문가 간담회(FGI) 참관
새뜰마을 사업	(사)인문사회 연구소	11.09(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평가지표 검토 대상지 마을 현장조사,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지원사업	추계예술대학 교산학협력단	10.02(금)	청주시 육거리시장 전주시 남부시장	현장조사, 관계자 간담회(담당 공무원, 상인회 등) 및 진행상황 점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한국문화 기획학교	10.08(목)	서울시 신청사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또한 개별평가기관과의 통합워크숍을 통해 평가과정 및 결과의 공유를 통해 개별평가에서 나타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함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경우 개별평가기관에 평가지표의 선택과 평가방법의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진행함

- 최종적으로 확정된 종합 평가지표는 다음의 제3장 제3절에서 제시함

제2절 개별평가의 설계

1. 대상 정책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5년 문화영향평가(2차 시범평가)에서는 공모를 통해 정책연구평가 전문기관 중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화영향평가기관으로서 적합한 기관에서 제시한 정책을 5개 선정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강원도), 새뜰마을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서울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중소기업청),

○ 이들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내부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어 특색있는 마을로 재창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인구가 밀집해있는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그 대상 범위가 상당히 광범하며, 그간 투입된 예산 규모 또한 2012년 725억원(35개 사업), 2013년 222억 원(22개 사업) 등으로 매우 큰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정사업에 해당함
- 동 사업은 국민의 삶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단위의 마을단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큼
-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지원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향후 사업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강원도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이타적·양보적 태도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2014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시범사업으로 48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2015년도에는 총 92개소 마을 공동체를 선정함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동 사업은 강원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
- 동 사업은 경제, 복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가치들(삶의 방식, 문화적 혜택, 문화적 공간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진행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향후 동 사업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함

3) 새뜰마을 사업

○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되었으며, 전국 55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함

○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새뜰마을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이 광범위함
- 한편 기존에 진행된 개발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확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체성, 이미지 등을 담고 있는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획일적인 건축물, 구조물, 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면서 마을의 독특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함
- 새뜰마을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담고 있는바 동 사업이 가져올 문화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 박원순 시장 체제 이후 서울의 개발사업들은 기존의 뉴타운 사업 정책을 지양하고, 오래된 건축물관 공간을 보존·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운상가군 활성화, 청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창신·숭의 지역의 봉제 및 의류 중심의 재생공간 조성 사업, 성동구 성수동 지역 수제화

제조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서울역 고가재생사업 등임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함
- 세운상가의 경우 1960년대 후반 건립 이후 한국의 전자 상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서울 도심 공간에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공중 보행데크를 연결하여 서울에 가장 긴 생태적 공중 보행도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심의 보행 및 생태적 경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동 사업은 세운상가에 문화예술 콘텐츠가 중심인 스튜디오, 전시공간 등과 같은 창의적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이 상가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특히 동 사업이 임대료의 상승을 가져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부정적 측면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135]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 기존 유통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확대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크게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중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상인대학(점포대학), 상인조직 역량강화,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전통시장 ICT 육성,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이 포함됨

○ 이 중에서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K-POP 등 한류공연·음식, 한국문화체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필수 관광코스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당 3년간 50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임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전통시장은 거래, 정보교류, 문화 등 우리 생활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해온 문화적 장(場)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기존의 공용공간과 시설개선에 치중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류체험, 명품거리, 한국적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 야시장 등 문화적 요소를 접목할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135)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란 정체되어 있던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면서 문화적·예술적 활동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인 예술가들이 지역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함

- 현재 전국의 6개 시장이 선정되어 3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동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이 가져올 문화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 문화적 요소를 적절하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 개별평가 지표와 방법

○ 개별평가의 평가지표는 개별평가기관과 종합평가기관의 통합워크숍을 통해 확정된 핵심지표(공통지표)를 포함하되, 각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지표를 변용 또는 추가하여 설정됨

- 개별평가지표의 최종적 확정은 개별평가기관별로 별도의 자문회의, FGI, 전문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이루어짐

○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별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는 다음의 〈표 3-5〉와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문헌연구, 정책자료 분석,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단위사업 중 2014년에 추진 중이며, 문화 관련 담당부서에서 진행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됨

- 구체적으로 5개 단위사업, 즉 공동육아, 마을기업, 에너지자립마을,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문화영향의 측정은 전문평가위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량화함

- 추가적으로 사업 수혜자(지원사업 선정자 144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함

〈표 3-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문화 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 (10)	해당사업에 접근하기 쉽게 설계되었나? (사업참여자, 사업수혜자)
		확장성(10)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마을주민, 새로운 기획, 문화공간확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개방성(5)	사업주제결정, 사업내용및 방식에 제한요소가 없는가? (주제설정, 내용구성)
		기회성(5)	사업의 참여자에게 창작 및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발표, 창작,표현 기회 등)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10)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가? (계층, 장르, 주제, 대상 등)
		수용성(10)	사업의 내용이 참여자에게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확장에 기여하는가? (지역민의 수용성, 계획의 수용성 등)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존성(5)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보존하려는 계획이 적정한가? (자연환경, 인적자원, 보존장치 존재)
		활용성(5)	문화유산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계획 유무, 활용을 위한 활동)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정체성(5)	마을의 고유성을 유지·강화하고 있는가? (오래된 건물, 지명, 장소, 이야기, 인물 등)
		대표성*5)	마을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가? (대표적 상징공간, 이미지 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계성(10)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주민협의체, 공동체의 합의)
		지속성(10)	마을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인가? (갈등관리방안, 이해조정 기구존재, 자립의지)
		주체성(10)	마을주민들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있는가? (자발적 참여)

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는 다음의 〈표 3-6〉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문헌연구, 정책자료 분석,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설문조사는 201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83곳의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함

○ 문화영향의 정량화는 각 지표에 대한 세부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짐

〈표 3-6〉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개별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설문문항
문화 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공간 확보 및 활용	1. 공동체/문화활동 공간 확보 여부 1-1 활성화 정도
		공간 활용 프로그램	1-2 공간활용 프로그램 여부
		공간의 지속 사용	1-3 사업 종료 후 사용 여부
		유휴공간 활용	2. 유휴공간 혹은 불용공간 활용 계획 유무 2-1 활용한 공간의 활용 촉진 정도
		마을 내 문화시설 활용	3. 기존 문화시설 활용 계획 유무 3-1 문화시설의 활용 촉진 정도
		문화활동	4.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정도
		문화예술 관람	5. 문화예술 관람 빈도의 증가 정도
		사회적 약자 배려	6. 활동의 지역 내 소외자 고려 정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설문문항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논의 구조	1. 정례화 된 회의 여부 1-1.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보 여부
		의사 표현	2. 의사 표현의 증가 정도
		다양한 매체 활용	3.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성원과 공유 여부 3-1 대화 증가 정도
		공동체 활동의 마을 공유	4. 활동 내용이 마을 주민에게 전달되는 정도
		참여의 자율성	5. 마을 주민 혹은 외지인의 참여 증가 정도
		삶의 질(생활문화) 향상	6.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혹은 생활문화 향상에 대한 전망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체 구성계층과 다른 계층의 참여	1. 활동가의 구성 파악(현지인, 귀농귀촌인) 2. 다른 계층의 참여 유도의 적극성
		타 문화 계층 참여 유도	3. 다문화 가정 혹은 다른 문화 주민의 참여 유도 정도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적 고유성 검토	1. 사업계획상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고려 여부
		문화유산 활용	2. 활동에서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의 활용정도
		지역 정체성 표현	3. 활동이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도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신규 자원 발굴과 활용	1. 신규 자원 발굴 유무 1-1. 신규 자원의 활용 촉진 정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마을과의 연계 - 마을홍보여부와 전망	1. 홍보 시 마을 홍보 병행 여부 1-1. 마을 홍보에 긍정적 영향의 정도
		재능 있는 인재 발굴	2. 구성원 재능 발견 가능 여부 2-1 마을 자원으로의 가능성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	3. 향후 마을활동에 대한 구성원 관심 증가 정도
		마을에 대한 관심	4.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촉진 정도

3) 새뜰마을 사업

○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는 다음의 〈표 3-7〉와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문헌연구, 정책자료 분석,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전국 5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기본계획 외에 대상지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역별 세부사업계획을 취합하여 평가의 판단근거로 활용함
- 또한 55개의 사업 대상지 중 21개 지역의 주민 추진위원장과의 전화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시행함

○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대상 지역별로 종합점수를 도출함

〈표 3-7〉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측정방법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문화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마을환경정비, 마을축제 등) • 중장기 계획 여부 ① 5년 이상 장기계획 ② 3-4년 중기계획 ③ 2년 이하의 단기계획 ④ 1년 이하의 일시적 계획 ⑤ 계획 없음

평가항목		세부지표	측정방법
			• 취약계층 비율 ① 80% 이상 ② 70% ③ 60% ④ 50% 미만 ⑤ 50% 미만
	주민 문화적 욕구조사	주민 문화적 욕구조사	• 주민 문화적 욕구조사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자원조사, 주민의견청취 등)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주민참여/소통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	• 사업인지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주민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	• 사업참여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 사업호응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주민 욕구 표현/수용	주민 욕구를 반영한 기본계획	•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수용	• 주민평가 및 승인 ① 주민 70% 이상이 승인 ② 50–60% ③ 30–40% ④ 10–20% ⑤ 추진위원회만 승인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마을역사문화 보존	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성 보존	• 마을이야기 발굴/보전 ① 있음 ② 없음 • 마을비전에 대한 주민 동의 정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다양한 문화 수용	외지인·소수자 문화 수용	• 외지인·소수자 프로그램/활동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세대 계층 간 문화 수용	•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활동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다양한 장르 융합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의 장르 융합	• 장르 융합 프로그램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유형문화유산	마을유형문화유산 보존·활용	• 마을유형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무형문화유산	마을무형문화유산 보존·활용	•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마을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마을주민 일상생활 문화	•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거 경관	주택의 문화적 특성 반영	• 문화적 특성 반영 계획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주거편의성/에너지효율성 증진	• 주민편의성 증진 계획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 에너지효율성 증진 계획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마을 경관	마을 경관 보존·활용	• 특색있는 공간/시설 보존·활용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생태 경관/생업 경관	생태 경관 보존·활용	• 생태 경관 보존·활용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생업 경관 보존·활용	• 생업 경관 보존·활용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평가항목		세부지표	측정방법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주민 조직/활동가 양성	주민 조직	• 추진위원회 ① 있음 ② 없음 • 추진위원회 주민 신뢰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주민 활동가	• 주민 활동가 양성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주민 활동가 참여 의향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주민 공동체성 확장	공동체 프로그램/활동	•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 중장기 계획 여부 ① 5년 이상 장기계획 ② 3-4년 중기계획 ③ 2년 이하의 단기계획 ④ 1년 이하의 일시적 계획 ⑤ 계획 없음 • 운영인력 계획 여부(주민강사 포함)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공동체 공간(복합커뮤니티 공간)/인프라	•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 운영인력 계획 여부 (주민강사 포함)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준주민자치적 사업 전개	주민참여형 공동체 설계	•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 중장기 계획 여부 ① 5년 이상 장기계획 ② 3-4년 중기계획 ③ 2년 이하의 단기계획 ④ 1년 이하의 일시적 계획 ⑤ 계획 없음
		후속 사업 연계 방안 설계	•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민관거버넌스/파트너십	외부 전문가 파트너십 구축	• 협의구조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외부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① 있음 ② 없음

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개별평가는 다음의 〈표 3-8〉, 〈표 3-9〉와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문헌연구, 정책자료 분석,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해 이루어짐

- 문화영향의 측정은 정성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량화를 위한 평가지표 또한 함께 구성하여 문화영향의 정량화를 시도함
- 설문조사는 상가주민, 서울시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표 3-8〉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평가지표 :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또는 확대)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의 문화자원 격차를 해소(또는 확대)시킬 것인가?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주민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신장(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주민의 소통과 거버넌스를 신장(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문화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증진(또는 침해)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소수자들의 문화권리를 증진(또는 침해)시킬 것인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문화유산을 보존(또는 훼손)할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또는 해체)할 것인가?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보존(또는 훼손)할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경관을 새롭게 발전(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발전(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공동체의 관계성을 형성(또는 해체)할 것인가?

〈표 3-9〉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평가지표 :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측정)방법 및 결과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20)	• 문화자원 격차 • 문화향유 격차	• 계획이 문화 관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 프로그램 운영 / 시설 ·프로그램 운영인력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3가지 중 1개만을 규정한 경우(3점) ③ 3가지 중 2개만을 규정한 경우(6점) ④ 3가지 모두를 규정한 경우(10점) • 계획을 통해 정책대상자 또는 정책대상 중 취약계층(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수준(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교육경험률, 관람 또는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20)	• 표현과 창작의 자유 • 소통과 거버넌스의 권리	• 계획에 정책대상자의 참여 기제가 명시되어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 계획의 실현으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 계획에 정책대상자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의 확보,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 프로그램 운영인력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는가? (예: 주민에 의한 문화예술창작·발표, 문화예술동아리활동 등) ① 아니오 (0점) ② 3가지 중 1개만을 규정한 경우(3점) ③ 3가지 중 2개만을 규정한 경우(6점) ④ 3가지 모두를 규정한 경우(10점)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0)	• 문화생태계의 종다양성 • 소수자들의 문화 권리	• 계획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방식의 보호 또는 형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 계획이 소수집단 (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문화적 표현방식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 계획이 문화적 종다양성을 침해하거나 문화적 획일화와 관련된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10)	• 문화유산의 보존 • 전통문화의 계승	• 계획으로 가치있는 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 계획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또는 창조적 계승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10)	• 고유한 경관의 보존 • 경관의 새로운 개선	• 계획으로 고유한 문화적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 계획이 대상지의 고유한 문화적 경관에 대한 보호 또는 형성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20)	• 공동체의 정체성 발전 • 공동체의 관계성 형성	• 계획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할 제도적 기제를 명시하고 있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 계획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아니오 (0점) ② 예 (10점)

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는 다음의 〈표 3-10〉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문헌연구, 정책자료 분석, 현황자료 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해 이루어짐

- 특히 동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는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외에 2015년 선정된 6개의 전통시장 중 '전주 남부시장'과 '청주 육거리시장'의 2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 2개 시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요 관계자들(시장상인 14명, 시장 방문객 12명, 사업 담당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대상시장별로 시장상인과 방문객 각 100명씩 총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함
- 문화영향의 측정은 정성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표 3-10〉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화 공간 ,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소외계층 배려
		문화 전문인력 확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주민 창작프로그램 운영
		주민 창작활동의 확산
		콘텐츠개발에 다양한 참여 기회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교류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거버넌스 전개
		공간, 환경의 다양화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유·무형 고유문화콘텐츠 반영
		사업 활동 확산에 따른 고유문화콘텐츠 보전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의 보전
		인문경관의 보전
		문화경관의 보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주민, 이해관계자의 참여
		해당 사업의 가치증진
		공동체 구성원 개인 삶의 질 제고

제3절 종합평가의 설계

1. 종합평가의 목적과 의의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는 단일 기관에 의한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발굴을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공모를 통해 5개의 개별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평가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함

○ 한편 종합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제시함

○ 종합평가는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1) 개별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를 통한 개별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먼저 5개의 개별평가기관의 의해 실시된 다수의 '개별평가'에 대해 상위평가(meta evaluation)를 실시함

○ 여기에서는 개별평가기관에서 활용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각 개별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개별평가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개별평가에서 제시된 평가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2) 종합평가지표의 별도 설정을 통해 대상 정책의 종합적 평가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의 경우 개별평가기관에 평가지표의 선택과 평가방법의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진행함

○ 이를 통해 5개의 정책을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비교 분석함

2. 종합평가 지표와 방법

1) 종합평가 지표의 설정 및 주요 개념의 조작화

○ 종합평가 지표 설정을 위해 개별평가에 대한 개괄적 검토와 통합워크숍을 2차례 수행했으며, 별도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종합평가지표를 다음의 〈표 3-11〉와 같이 설정함

○ 평가대상정책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는 크게 '사전평가지표'와 '과정/사후평가지표'로 분류함

① 사전평가지표 : 평가대상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 단계인 경우, 평가대상사업이 실행 초기여서 문화적 영향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

② 과정/사후평가지표 : 평가대상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 평가대상사업이 아직 실행 중이나 문화적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

○ 또한 종합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함

① 정량평가 : 각 평가항목마다 2개의 세부평가지표에 대해 해당하는 점수 부여(-10, -5, 0, +5, +10점)

- 각 평가항목 : 최저 -20점, 최고 +20점
- 총점 : 최저 -120점, 최고 +120점

② 정성평가 : 평가점수를 부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표 3-11〉 2015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측정)방법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문화향유수준	[사전평가] • 계획을 통해 정책대상자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계획을 통해 정책대상자 또는 정책대상 중 취약계층(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수준(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교육경험률, 관람 또는 교육의 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과정/사후평가] • 사업을 통해 문화 관람 또는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사업을 통해 정책대상자 또는 정책대상 중 취약계층(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수준(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교육경험률, 관람 또는 교육의 질 등)이 향상되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생활문화예술 참여	[사전평가] • 계획으로 표현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계획으로 정책대상자의 생활문화예술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과정/사후평가] • 사업으로 표현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측정)방법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사업으로 정책대상자의 생활문화예술 참여가 확대되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 다양성 • 문화적 차별	[사전평가] • 계획이 대상지의 문화적 종 다양성을 보호 또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계획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가? [역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과정/사후평가] • 사업으로 대상지의 문화적 종 다양성이 보호 또는 확대되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사업으로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이 조장되었는가? [역순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4. 문화경관 및 유형 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의 조화	[사전평가] • 계획이 대상지의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계획의 실현 결과가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과정/사후평가] • 사업이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사업의 실현 결과가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5. 무형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사전평가] • 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과정/사후평가] • 사업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했는가?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측정)방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사업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기여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문화공동체	[사전평가] • 계획이 대상지 내 공동체의식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계획이 문화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과정/사후평가] • 사업으로 대상지 내 공동체의식이 제고되었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사업으로 문화공동체의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5점) ③ 보통이다(0점) ④ 그렇다(5점) ⑤ 매우 그렇다(10점)

□ 문화의 정의

○ '문화(culture)'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136)]

- Raymond Williams는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137)]에서 문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ⅰ) 지적, 정신적, 미적 개발과정 일반 ii) 사람들, 일정시기 혹은 집단이 공통의 정신을 매개로 하여 획득한 특정한 삶의 양식 iii) 지적작업 혹은 지적 실천, 특히 예술적 활동 iv) 문화는 특정한 사회질서가 소통되고 재생산되며 경험/탐구되는 기호적 표현의 세계

○ 한편 UNESCO는 문화를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요소의 총합이라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협의의 범위에서 벗어나 생활방식, 가치체계, 신념들을 포괄한다고 정의함

○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기반하여 「문화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의 개념을 정의함

>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본법」의 정의개념을 받아들여, 광의의 '문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함

136) 김연진.(2013).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7) Raymond Williams(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가.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체험, 즉 문화향유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짐[138)]

- 미적 가치(aesthetic value) : 문화예술은 내적 감정 및 관념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훌륭한 문학, 시, 음악, 회화 등의 예술작품이나, 이러한 문화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대상은 그것을 소비·향유하는 이에게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함
- 정서적 가치(emotional value) : 문화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작가·예술가의 자기표현이며,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당대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함. 즉 문화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작품을 매개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견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억눌려 있던 생각과 불만이 표현되고 분출되며, 각자가 가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짐
- 교육적 가치(education value) : 문화예술은 독특성과 참신성을 주요한 요소로 하는 만큼, 기성질서 또는 기존 사고의 틀을 전복하고 새로운 사상, 아이디어,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혁신적 가치를 가짐. 훌륭한 문화예술은 사물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제공하며, 본질에 대한 천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성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인지능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문화는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문명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관용, 호혜성, 신뢰 등 민주주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통합적 가치(social integration value) :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identity)과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다른 집단, 계층과의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통해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이렇게 문화향유가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화에 대한 소비는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Q*)보다 과소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천부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로부터 정서적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후천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재화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에 해당하며 아동이나 청소년기때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그러나 이러한 문화향유가 가지는 다양한 긍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화향유의 수준은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 사회적 위치 등에 큰 영향을 받기

138) 양혜원.(2015). 문화가 있는 날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때문에 현실에서는 항상 문화격차가 나타나게 됨

- 박용치(2003)[139]는 문화격차(culture gap)를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으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로 정의하며, 조권중(2004)[140]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수수준의 차이'로 해석함
- 문화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데 첫째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사회의 특정 집단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둘째,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소유가 사회계급 재생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부르디외, 1996; 강수택·박재홍, 2013)[141][142]

○ 따라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향유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부문은 정책적 노력을 다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UN인권선언 등에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

- 1948년 제정된 「UN 인권선언」 제 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권리'를 처음으로 선언하였으며, 이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됨
- 우리 「문화기본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나 계획이 정책대상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동 사업(계획)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개의 차원, 즉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하도록 함

①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은 정책대상 또는 정책대상 중 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관람이나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함
-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문화예술

139) 박용치(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10. p.120-147.
140) 조권중(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특별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41) 부르디외, 삐에르(1996).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하). 최종철 옮김. 서울. 새물결.
142) 강수택·박재홍(2013).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 추이와 문화취향. 현상과 인식. 37(3). p.87-115.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확보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인력 및 예산이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수준'은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을 의미함
- 정책대상집단의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이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나.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포함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143]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우리 헌법 제 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됨[144]

-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에 대한 검열의 금지',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한편 과거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정책대상의 전문예술에 대한 관람 기회와 관람률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일반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고 창작·발표 등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문화예술은 일반국민(ordinary people)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이웃과

143) Emerson Thomas I(1966).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144) 박주현.(2014).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 커뮤니케이션북스.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이 직면한 소외, 공동체의 붕괴, 불안과 고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직접적인 문화예술 창작·발표를 위한 기획, 교육, 연습, 발표행위 등을 모두 생활문화예술 참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문화예술 참여는 '일반국민에 의한 문화적 형태의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나 계획이 정책대상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차원, 즉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함

①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

- 사업(계획)의 입안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참여 기회나 절차가 보장된 경우, 사업(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정책대상의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점수 부여
- 사업(계획)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의 참여기회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설사 절차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축소 또는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생활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사업(계획)에 정책대상이 정책대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사업(계획)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다.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각 문화는 보호받고 보전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의 일부'라는 인식은 2001년 UNESCO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의 체결로 결실을 이루었음

- 동 협약은 첫째,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둘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게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넷째, 문화다양성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것이며, 다섯째, 문화다양성은 시공간을 넘어서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에서 구현됨을 제시함[145)]

○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7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에 대한 국회에서의 비준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속조치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을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조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5) 한건수(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문화예술지식DB 심층이슈분석 제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나 계획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고자 함

① **문화적 종다양성**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보호하거나, 상업주의 예술로부터 비상업주의 예술이나 독립예술, 다양성예술을 보호하거나,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호·육성하거나, 다양한 문화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침해하거나, 문화적 획일화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 해당 사업(계획)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차별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형성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혁파하는데 기여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라.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 UNESCO는 1972년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를 통해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함

- 동 협약은 1959년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로 고대 누비아유적이 수몰위기에 빠지자 유네스코에서 국제적인 누비아 유적보호운동을 전개했고 그로 인해 인류유산 보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채택됨

○ 동 협약에 따르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란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monuments),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를 의미함

- 기념물(monuments) : 건축작품, 기념적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특성을 가진 구조물이나 구성요소, 금석문, 혈거유적지 및 혼합유적지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

-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s) : 독립적인 또는 연계된 구조물들 중 건축적인 또는 그들의 동질성 또는 경관상의 이유로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 유적지(sites) : 인간의 작품 또는 인간과 자연의 결합적 작품, 고고학적 유적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역사적, 미학적, 민속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으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문화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영문으로는 '문화재'를 'cultural property'가 아닌 'cultural heritage'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146)]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의미함

[문화재보호법, 2015.12월 현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015.3.27.일 개정, 2016. 3.28 시행 예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라는 개념을 활용하도록 하며, 문화유산의 범위에 포괄되는 개념 중 무형문화유산을 제외한 '문화적 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4번째 평가항목으로 다루도록 함

- 무형문화유산은 5번째 항목에서 다루도록 함

○ 한편 '문화적 경관 또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란 그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만의 보호에만 치우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이 가진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해

146)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26478&lang=ENG

왔다는 반성에서 대두된 개념임

- 이는 1987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개념으로 유적과 기념물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일상적 경관을 중시하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와 맞닿아있음

◯ UNESCO는 1992년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문화경관'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편입시켰으며 문화경관을 '문화재(cultural properties)이며 세계유산협약 1조에서 규정된 자연과 인간의 결합의 소산(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으로 정의함

○ 이러한 문화경관은 물리적 제약과 내외적인 자연환경, 연속적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힘에 의해 주어지는 기회의 영향 아래 인간사회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됨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2013년도 개정본)

Cultural landscapes

Cultural landscapes are cultural properties and represent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designat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and settlement over ti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constraints and/or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of successiv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orces, both external and internal.

○ UNESCO는 문화경관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농업경관, 종교·역사적 산, 성지나 종교적 대상지, 역사문화루트, 원주민문화유적, 공원 혹은 정원, 산업문화경관, 역사도시, 정주지, 캠퍼스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표 3-12〉 문화경관의 영역

영역	내용	등록사례
의장(意匠)된 경관 (designed landscape)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의 설계의도 하에 창조된 경관	Sintra(Portugal, 1995) Arajuez(Spain, 2001)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evolved landscape)	①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 ②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으로 유적 주위에 남아있는 화석경관 등	① Cordilleras 계단식 논(Philippine, 1995), Saint-Emilion(France, 1999) ② Vat Phou와 이에 부속하는 Champasak의 고대주거(Laos, 1999)
관련된 경관 (associative landscape)	인간의 제 활동 특히 신앙 및 종교, 문학, 예술활동 등과 직접 관련된 경관	Tongariro 국립공원(New Aealand, 1993), UlruruKata Tjuta 국립공원(Australia, 1994), Perdu산(France./Spain, 1997, 1999)

출처 : 오민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제-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287. p.92-108.

〈표 3-13〉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의 유형 예시

유형	세계 문화 유산명(국가)
전통적 농업경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필리핀), 커피문화경관(콜롬비아)
종교·역사적 산	피레네산맥 문화경관(프랑스), 태산· 황산·무이산(중국)
성지나 종교적 대상지	바미얀 계곡(아프가니스탄), 빔베트카 바위 은신처(인도), 룸비니 석가탄생지(네팔), 왓푸 사원(라오스),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한국)
역사문화루트	실크로드(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네게브 지역 항로 교역로(이스라엘), 시렌토 지역(이탈리아), 키산 지역 순례길(일본), 잉카 루트(아르헨티나)
원주민문화유적	울룰루바위(호주), 통가리로산(뉴질랜드)
공원 혹은 정원	메사버드국립공원(미국), 데사우뵐리츠공원(독일), 큐가든(영국), 쑤저우 전통정원, 베이징 황실정원, 피서산장과 사원, 루산국립공원(중국), 크로메지우시의 정원과 성(체코)
산업문화경관	포스다리, Blaenavon지역(영국), 류칸-노토텐 산업유산(노르웨이)
역사도시	네세바르(불가리아), 그랑바싱(코트디브아르), 리장(중국), 아유타야(타이), 로도스 중세도시(그리스), 산토도밍고식민도시(도미니카공화국)
정주지	홀라쇼비체역사마을(체코), 홀로쾨마을(헝가리), 외암리·양동마을(한국), 안후이성 마을(중국),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마을(일본)
캠퍼스	국립자치대학교 중앙대학도시캠퍼스(멕시코)

출처 : 성종상(2015). 기념물에서 경관으로-문화경관으로 본 세계문화유산. 건축. 59(12). p.21-24.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함

○ 우리나라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경관(景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음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계획)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도록 함

①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을 보존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거나,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②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의 조화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룬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문화경관이나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그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마.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제시된 유형문화유산과 문화적 경관이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형문화유산은 무형적 특징을 가진 문화유산에 해당함

○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란 '공동체, 집단,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관습(practices), 표상(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과 이들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s), 공예품(artifacts), 문화적 공간(cultural spaces)'을 의미함

-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과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 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에서 제시된 '무형문화재'란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됨

- 다만 2015년 3월 개정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그 범위가 더 확대되었음

[문화재보호법, 2015.12월 현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015.3.27.일 개정, 2016. 3.28 시행 예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UNESCO「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개념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관습(practices), 표상(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과 이들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s), 공예품(artifacts), 문화적 공간(cultural spaces)'으로 정의하도록 함

- 여기에는 우리「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재의 개념도 포함된다 할 수 있음

○ 또한 '대상 사업(계획)이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문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도록 함

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②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더욱 크게 부가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사회의 파편화, 핵가족화의 지속 등으로 인해 과거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양극화와 심화, 소외와 고독, 갈등의 심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 또한 이러한 필요를 절감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주민 간 단결과 협력의 촉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유대 강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Hillery(1955)[147]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실체'로, MacQueen et al(2001)[148]은 '사회적 유대, 공동의 관점을 공유, 지리적 또는 상황적으로 협력활동에 참여를 통해 연계된 다양한 개선을 가진 일련의 사람들'로 정의하여 '일정한 장소, 공유, 협력활동, 사회적 유대'를 중요한 개념요소로 제시함

- 한편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지리적, 물리적 범주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은 인간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한계인 동시에 상호작용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기에서는 공동체를 '특정한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계획)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함

①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이를 운영할 것을 규정한 경우, 공동체의 결속,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교류 활성화, 신뢰 및 호혜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거나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형성 또는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 또는 확대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 확대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생성이나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거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가로막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147) Hillery, G.A.(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ty. 20. p.111-123.
148) MacQueen, K.M. et al. (2001). What is Community? An Evidence-Based Definition for Participatory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2). p.1929-1938.

2) 종합평가단의 구성 및 심사

○ 확정된 종합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함

○ 종합평가단은 크게 '문화기본권' 분야와 '문화정체성'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각 정책의 사업계획서, 세부실행계획서, 개별평가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서면평가로 진행함

○ 평가결과는 종합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통해 정량화 결과를 제시했으며, 종합평가위원이 기술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성적 결과를 제시함

〈표 3-14〉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단 구성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종합평가단</th></tr>
<tr><td>문화기본권</td><td>서순복 교수(조선대학교)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임학순 교수(가톨릭대학교)
한승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홍기원 교수(숙명여자대학교)</td><td rowspan="2">양혜원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종은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td></tr>
<tr><td>문화정체성</td><td>구자훈 교수(한양대학교)
김규원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백선혜 박사(서울연구원)
안창모 교수(건국대학교)</td></tr>
</table>

제4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개별평가

제1절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2절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제3절 새뜰마을 사업
제4절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제5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제1절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 사업 개요

□ 마을공동체 사업 목표

○ 마을 특성 및 마을공동체 회복

-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 가치를 두고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사람 사이의 관계망 복원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
- 지역의 내부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어 특색 있는 마을로 재창출

○ 공동체적 가치와 자치의식을 지닌 주민 발굴, 성장

-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를 주민으로 인식하고 주민 스스로의 인식, 주민간의 연결, 마을활동을 통한 주민과 마을 활동을 지원함
-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행정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서울을 구현함

□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 및 과제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4-1] 마을공동체의 과제 및 전략

○ 사업 10대 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4-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0대 전략

구 분	세부내용
전략 1. 창의적 마을활동가 양성	– 마을 활동가를 신청을 받아 선발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걸쳐 양성 – 마을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이론과 현장실습 진행 – 마을 활동가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마을 활동을 발굴하고 필요한 공공지원을 신청하거나 공동체 활동이 있는 지역에 네트워킹을 확산함
전략 2. 청년의 활력과 역량 활용	– 마을 활동가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청년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매년 150명 지원 – 중장기적 청년창업 지원 마을비지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 3. 여성의 활동과 역량 강화	– 돌봄공동체 운영지원 직장맘, 맞벌이부부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공동육아 커뮤니티 운영 – 부모커뮤니티 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운영으로 부모, 예비부모, 직장맘, 한부모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부모 인성교육, 자녀 정서 함양,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규류와 프로그램을 지원함
전략 4.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공동체 문화 육성	– 작은 공동체 활동으로 시작, 다양한 공동체 문화로의 확산 작은 공동체 활동,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건강친화마을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적극 지원함
전략 5. 이웃 돌봄 활성화	– 취약계층은 자활능력을, 노인에게는 일자리 제공 마을 공동체 돌봄 지원 등 취약계층, 노인 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활동을 육성함
전략 6. 마을 경제 활성화	– 협력적 소비 활동 육성 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편리한 나눔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e품앗이 등을 활성화함 – 서비스형 사업발굴 및 컨설팅 마을공동체기업은 수요가 높은 의료, 복지, 교육, 돌봄 등 서비스형 기업에 대한 사업발굴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함 – 마을공동체 기업 지원 주민이 자본을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의 마을 공동체 기업은 민간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자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공간 임대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을 추진함
전략 7. 에너지 절감마을 조성	– 에너지 절감 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 실천 환경과 에너지 관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녹색교육, 마을단위 실천방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전파, 확산함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발굴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하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에너지 절감 공동체 문화를 확산함
전략 8. 주민주도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지원 민관협력을 위해 '주민제안제'를 원칙으로 추진함 –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민 상시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기획, 주민이 동행하는 현장평가 등을 추진함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현장지원 활성화 현장밀착형 컨설턴트, 마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마을공동체 DB구축 및 자료실 운영

구 분	세부내용
	등 정보관리, 주민교육, 마을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진행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주민이 지원하는 일 이외에도 사업부서와 마을공동체담당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 진행
전략 9. 현장 밀착형 마을인프라 구축	– 커뮤니티 공간 지원 공동육아, 돌봄센터, 북카페, 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과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여 운영 – 북카페 조성, 마을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청소년 휴(休)카페 설치, 작은 도서관 운영,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등 지원 운영
전략 10. 마을 지향 행정시스템 정착	– 마을단위 행정체계 정착 부서간 통합행정, 마을단위의 지원을 위한 통합예산 편성 등 마을에 맞는 예산 집행체계를 지속적 마련 – 마을활동 지원 공무원 육성 공무원이 마을에 관란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에 맞는 성과 평가제도, 순환근무제 개선 등을 추진 – 장기적인 마을 지향적 도시계획 정착 도시전체, 권역단위, 지구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마을 단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준비

위 전략은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2)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2012.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황 분석

□ 마을공동체 자원 현황

○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발간한 기본계획 자료집에 따르면, 지역차원에서 마을활동을 적극 전개한 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민간단체(약 400개), 풀뿌리 시민단체(약 50개), 행정동별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424개) 등임[149)]

○ 2012년 서울시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시설로서 복지시설은 약 5,500개소, 문화시설은 약 920개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시설들이 보유한 공간을 지역과 주민에게 개방하여 쉽게 활용하고 마을공동체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150)]

149)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p.26.
150)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p.27.

○ 2012년 서울시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지역의 공유경제 활동을 육성하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서울시 차원의 육성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600여개, 협동조합 90여개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나타남

□ 마을공동체의 필요성 대두

○ 지난 50년간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급증하는 서울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단지 고층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삶의 공간을 획일화시켰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들이 설 자리를 잃음[151]

○ 서울은 정주율이 낮고 주민의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지만, 맞벌이 가족의 육아문제, 은퇴시니어들의 일거리 문제, 이웃 간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개별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가치 잠재력은 충분함[152]

3) 사업내용

가. 사업 현황

□ 사업 추진 경과[153]

○ 2012.1.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설치(광역전담부서)

○ 2012.3. 자치구 마을과(팀) 생성

○ 2012.3.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공포

○ 2012.4.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민관협의기구)

○ 2012.5. 서울형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련

○ 2012.9.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기본계획발표

○ 2012년 21개 사업으로 시작, 약 570곳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였고 1,340억 원 예산 소요

○ 2013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15개 지원 사업 시행, 총 423건 접수 중 우리마을프로젝트로 25개 자치구의 156팀 지원[154]

○ 2014년 총 16개 사업 지원, 예산 15,657백만 원 소요

○ 2015년 총 14개 사업 지원, 예산 14,915백만 원 소요

○ 2014년과 2015년의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151)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p.38.
152)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p.39.
153) 서울시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참고 (www.seoulmaeul.org)
154)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4),인포그래픽스로 보는 2013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과자료집.

□ 2015년도 지원사업 현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모사업과 기반조성사업 등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운영됨

- 공모사업은 서울시 각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시민의 제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반조성 사업은 마을공동체담당관과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홍보,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음

〈표 4-2〉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요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2014년	2015년	지원규모
총계			16,463	14,915	
공모사업 소계			13,259	11,479	
1	부모커뮤니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546	371	200만원 내외
2	공동육아	출산육아담당관	542	607	4,000만원 이내
3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공동체담당관	-	1,000	주민모임 500만원 내외 학교 5,000만원 이내
5	아파트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631	759	1,000만원 이내
6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협력과	350	485	기존 1,000~5,000만원 신규 500~1,000만원
7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975	653	2,000만원 이내
8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615	715	500~1,500만원
9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	2,851	3,100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10	다문화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0	60	500만원 이내
기반조성사업 소계			3,204	3,436	
1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합지원센터	2,561	2,631	
12	마을박람회 개최	마을공동체담당관	200	300	
13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확산	마을공동체담당관	259	355	
14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공동체담당관	184	150	

□ 지원 사업의 변화[155)]

○ 사업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절차의 변화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 지원사업은 행정에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향식(Top-down) 방식이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간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향식(Bottom-up)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지원하는 민간주도라는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155)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 p.41-43.

- 서울시 특정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행정부서의 사업으로 흩어져 있으며 마을 현장과 밀접한 행정조직인 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지원절차를 가지고 있고 매년 제도가 변화함

○ 2012년 백화점식 사업의 나열

- 마을지원사업이 시작된 2012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한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 명명하고 불완전하게 시작함

○ 2013년 지원사업의 재배치

- 마을지원사업 중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진행할 필요가 없는 18개 사업이 마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마을미디어 사업'과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상호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되었음
- 또한,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사회이슈였던 상가마을 공동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지원사업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은 주민의 필요에 근거하기보다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생겨났음

○ 2014년 행정부서별 지원사업의 한계

-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결합이 필요한 한옥마을 공동체 사업, 실제 사업 집행에서 차별성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했던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 2 폐지, 기존의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과 유사한 마을북카페 지원 등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다시 구성함

〈표 4-3〉 연도별 지원사업 종류 및 신설과 폐지 상황

12년 지원사업	13년 지원사업	14년 지원사업	비고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1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1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1	12~14년 유지사업
부모커뮤니티	부모커뮤니티	부모커뮤니티	
마을예술창작소조성 지원	마을예술창작소조성 지원	마을예술창작소조성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마을미디어 육성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미디어 활성화	
마을미디어 문화 교실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2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2		13년 폐지 사업
마을청소년 휴카페	마을청소년 휴카페		
마을 북카페 조성 지원	마을 북카페 조성 지원		
한옥마을 공동체	한옥마을 공동체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12년 폐지사업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세대통합형 복지 건강 마을공동체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			

12년 지원사업	13년 지원사업	14년 지원사업	비고
취약계층 자활 마을공동체			
서울품앗이			
저소득 노인지원 마을공동체 육성			
주거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마을 도시농업 지원			
마을 나눔장터 운영			
마을 작은 도서관 지원			
마을학교 운영			
한뼘 마을공원 조성			
갈현도시농업공원 조성			
마을뒷산 공원 조성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마을 숲 가꾸기			
자전거 마을공동체 활성화			
담장허물기를 통한 마을공동체			
	상가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상가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13년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활동지원	주민제안사업 활동지원	
	주민제안사업 공간지원	주민제안사업 공간지원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3	14년 신규사업

나. 사업 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대상

○ 우리마을프로젝트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함

○ 주민 공모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상담과 현장조사, 컨설팅을 거쳐 선정함

○ 공모 선정시 심사기준은 1) 사업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공익석, 실현가능성), 2) 실행력 및 효과, 3) 자부담 사업비 요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 여부임

□ 단계에 따른 사업 유형

○ 모임형성 지원 단계의 씨앗기는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주민필요와 마을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로 우리 마을 프로젝트, 보모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음

○ 실행지원 단계의 새싹기는 주민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다문화 마을공동체, 상가마을 공동체, 주민제안사업(활동, 공간), 공동육아 활성화, 마을예술창작서, 에너지자립마을, 안전마을 활성화 등이 있음

○ 마을계획 수립지원 단계의 성장기는 종합적인 마을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단계로 우리마을프로젝트3 등의 사업을 진행함

□ 사업조직 구성 및 사업 구조

○ 사업 조직은 주민조직, 서울시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민조직은 주민 3명으로 구성된 조직과 지역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주민 관련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음
- 서울시 내 마을 공동체 관련 행정조직은 서울혁신기획관이라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도 조직을 구성하여 협조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과 관의 정책을 연결하는 실무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마을지원사업의 접수부터 심사와 평가를 거쳐 집행관련 실무지원과 현장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자문 역할을 함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혁신, 주택, 경제, 복지, 문화, 자지행정분야의 국장급 당연직과 서울시의원, 마을활동경력자, 마을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함

○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조직의 업무성격 및 내용에 따라 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사업진행 절차

○ 사업기획은 서울시 행정부서에서, 접수신청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평가는 서울행정부서에서, 협약과 결과 보고는 자치구에서, 최종 평가는 서울시에서 진행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절차는 제안서 접수, 현장조사, 심사 및 선정, 협약체결, 사업실행, 평가의 단계로 진행이 됨

- 제안서 접수는 지정일시까지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제안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 및 주민의 필요와 의지를 확인 후 사업 보완의 작업이 진행됨
- 제안서와 현장 조사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선정이 진행되며, 선성사업의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약을 체결함
- 협약시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따라 마을 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 결과를 종합보고하고 주민스스로와 시, 자치구 등의 행정평가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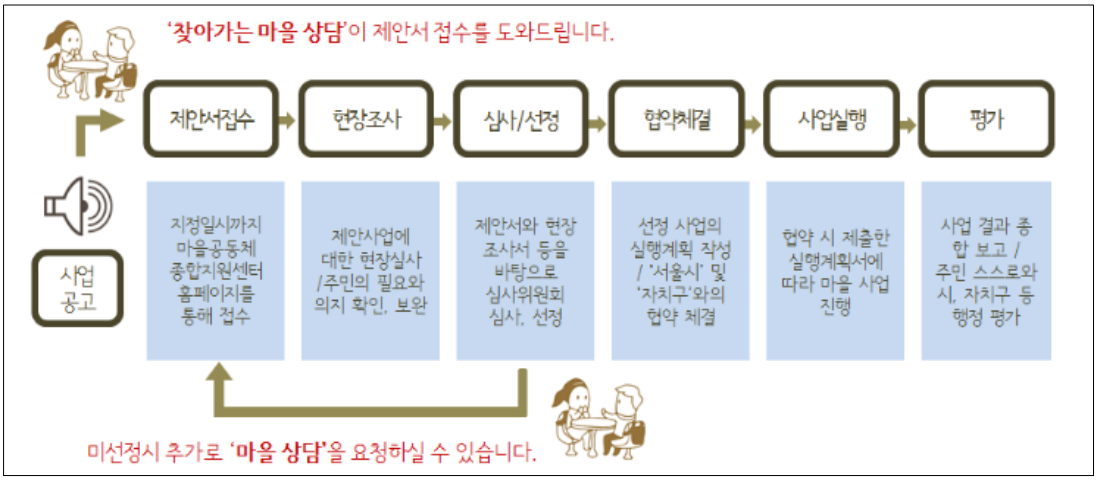

[그림 4-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절차

다. 세부 사업 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시

- 모임형성 지원 단계의 '씨앗기'는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주민필요와 마을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로 우리 마을 프로젝트, 보모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음
- 실행지원 단계의 '새싹기'는 주민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을 본격화, 상설화 하는 단계로 다문화 마을공동체, 상가마을 공동체, 주민제안사업(활동, 공간), 공동육아 활성화, 마을예술창작서, 에너지자립마을, 안전마을 활성화 등이 있음
- 마을계획 수립지원 단계의 '성장기'는 종합적인 마을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단계로 우리마을 프로젝트 3 등의 사업 진행

○ 주거유형에 따라서도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육성

- 아파트지역은 기존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단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함
- 단독,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반이 약한 지역 특성상 마을활동 촉발을 위한 마을 일꾼 지원 및 마을 사업 발굴, 또는 마을계기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둠
- 한옥지역은 한옥보존과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함
- 상가지역은 상인공동체에 의한 특색 있는 상권형성 또는 공동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추구함

○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마을은 일꾼 교육, 사업발굴 지원 등을 통해 마을역량 인큐베이팅[156]

○ 마을 내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마을공동체 형성의 안착을 도모함

156) 서초구청 홈페이지 (www.seocho.go.kr/site/sd/page.jsp?code=sdd090010000)

〈표 4-4〉 마을활동가 양성 계획[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명)	500 (190)	900 (400)	1,380 (480)	1,980 (600)	2,580 (600)	3,180 (600)
사업비(백만 원)	72	199	224	249	249	249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함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육성, 마을 공동체 만들기 관련 자원관리 등이 있음
- 민·관 협력으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를 발굴·지원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서울 실현이라는 미션을 수행함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문화영향평가 범위

□ 문화영향평가의 내용적 범위

○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사업 평가

○ 정책사업대상자 설문조사를 통한 문화영향도 측정

○ 문화영향평가의 항목에 따른 세부지표 개선안 도출

□ 문화영향평가 대상적 범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함

○ 2014년도에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 문화영향평가 진행시 문화와 관련있는 담당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문화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표 4-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대상

연번	사업명	부서명	평가대상여부
1	부모커뮤니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	공동육아	출산육아담당관	평가진행
3	다문화마을공동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4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	평가진행
5	에너지자립마을	환경정책과	평가진행
6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제외
7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제외
8	아파트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9	우리마을지원사업	마을공동체담당관	평가진행
10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마을공동체담당관	
11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합지원센터	평가진행

2)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개발

○ 문화영향평가 공통지표를 기준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평가에 적합한 세부항목과 세부지표를 개발함

○ 사업적 특성에 맞는 항목개발을 위해 서울시 각 사업담당자의 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사업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지표개발에 참고하였음

○ 평가 항목별로 문화기본권에 해당하는 문화격차 표현 및 참여, 문화다양성 등 각 항목을 평가하기 적합한 지표를 설정함

○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선정하여 마을공동체지원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지표별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기법에 근거함

- 가중치 선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한 전문가의 관련 평균 경력은 17년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였음
- 델파이는 평가지표 6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 산정을 백분율로 산정하고 평균값으로 책정한 후 배점함

〈표 4-6〉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세부항목	세부지표	배점
문화 기본권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20%	접근성	해당 사업에 접근하기 쉽게 설계되었나?	10
			설명	사업참여자, 사업수혜자	
			확장성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10
			설명	마을주민, 새로운 기획, 문화공간 확대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10%	개방성	사업주제 결정, 사업내용 및 방식에 제한요소가 없는가?	5
			설명	주제설정, 내용구성	
			기회성	사업의 참여자에게 창작 및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5
			설명	발표, 창작, 표현 기회 등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0%	다양성	다양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가?	10
			설명	계층, 장르, 주제, 대상 등	
			수용성	사업의 내용이 참여자에게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확장에 기여하는가?	10
			설명	지역민의 수용성, 계획의 수용성 등	
문화 정체성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10%	보존성	문화유산을보존하거나보존하려는계획적정한가?	5
			설명	자연환경, 인적자원, 보존장치 존재	
			활용성	문화유산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5
			설명	활용계획 유무, 활용을 위한 활동	
	5. 문화적경관에 미치는 영향	10%	정체성	마을의 고유성을 유지·강화하고 있는가?	5
			설명	오래된 건물, 지명, 장소, 이야기, 인물 등	
			대표성	마을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가?	5
			설명	대표적 상징공간, 이미지 등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30%	관계성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망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10
			설명	주민협의체, 공동체의 합의	
			지속성	마을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인가?	10
			설명	갈등관리방안, 이해조정기구 존재, 자립의지	
			주체성	마을주민들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있는가?	10
			설명	자발적 참여	

3) 문화영향평가 방법

가. 평가체계

□ 평가의 방향

○ 문화영향평가 6개 주요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별도의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진행함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전체의 정책적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정책사업의 계획이 세부사업으로 반영여부를 평가함

○ 세부사업별 평가를 통해 계획의 반영정도를 파악함, 평가지표에 따른 정성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정량평가 결과는 참고하여 결과를 분석함

□ 평가점수체계

○ 평가점수는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100점으로 하여 진행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선정대상자들은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화영향도를 책정함, 설문결과는 해당사업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점수배점에는 반영하지 않음[157)]

〈표 4-7〉 자체평가기관 평가점수체계

평가 항목	평가 점수	평가 방법	비고
문화영향평가 세부지표	100점	서면평가	정성평가

나. 평가방법

○ 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별평가기관 연구진과 공동연구진이 정성평가로 진행함

○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설문항은 서면평가, 사업담당자 그룹인터뷰 등을 토대로 개발함

○ 사업수혜대상자 설문조사(정량평가)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히 크지 않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각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평가에 활용함

○ 제출한 자료는 내부 평가위원이 검토하고 내용을 분석함

○ 내부 평가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함

○ 공동연구진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표 작성

□ 사업담당자 포커스그룹인터뷰

○ 서울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평가항목을 근거로 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사업담당자의 정책에 대한 시각과 현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표개발에 활용함

○ FGI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FGI결과 문화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문화여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 공동위원회의 사업계획보고가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157) 사업별로 선정자수의 차이는 많게는 400%이상 차이가 나기도 함. 이 경우 문화영향도의 객관적 지표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설문조사 결과는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함

- 문화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함

□ 사업수혜자대상 설문조사

○ 사업수해대상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정책 2014년 사업 선정자 총 2,0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총 설문인원은 마을공동체지원정책의 각 자원투입단계 사업자 총 144명이었음

○ 사업수혜자대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위해 개발한 설문항은 아래와 같음

〈표 4-8〉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사업수혜대상자 설문항

지표	세부항목	설문항
문화격차	접근성	사업 참여가 쉬웠는가?
	확장성	문화향유기회(공간)가 늘어났는가?
표현의 자유	개방성	사업주제, 내용, 방식 선택의 제한이 없었는가?
	기회성	창작과 발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가?
문화다양성	다양성	다문화탈북자, 장애우 등 사회적 소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수용성	문화다양성(인종, 종교, 국적, 세대, 장애,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문화유산	보존성	마을문화유산(자연환경, 인적자원 등)을 보존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는가?
	활용성	마을 문화유산을 적절히 활용하였나?
문화적경관	정체성	사업으로 인해 마을의 고유성을 유지·강화하였나?
	대표성	마을의 브랜드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공동체	관계성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망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지속성	이사업이 마을공동체에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는가?
	주체성	마을주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전반		참여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참여한 사업이 확대되기를 원하는가?
일반문항		사업참여횟수 / 참여사업 / 거주지 / 마을거주기간 / 사업기간 / 사업비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1) 정책사업의 평가결과

□ 사업별 종합

○ 평가대상 사업별 종합평균은 보통이상정도로 나타나 전반적 사업이 문화영향에 우수할 정도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님

○ 우리마을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영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으로 평가되었고, 마을기업사업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보다도 문화영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정책사업의 단계적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

평가 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세부 항목	공동 육아	서울 마을 기업	에너지자립 마을	우리 마을 지원 사업	서울시마을 공동체종합 지원센터	지표별 평균
문화 기본권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20	접근성	8.4	7.2	4.8	10	8.4	14.72
			확장성	6.4	6.4	4.8	8.8	8.4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10	개방성	3.2	3.4	2.6	4.6	3.8	6.72
			기회성	2.6	3	2.2	4.4	3.8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0	다양성	5.6	8.4	4.4	8.4	8	13.92
			수용성	6.4	7.6	4.8	8	8	
문화기본권 소계				32.6	36	23.6	44.2	40.4	35.36
문화 정체성	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10	보존성	1.6	4	1.8	3.2	2.6	5.48
			활용성	1.8	4.4	1.8	3.6	2.6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10	정체성	3	3.8	2.8	4	3.4	7.2
			대표성	2.8	4.4	3.8	4.4	3.6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30	관계성	9.2	9.2	8	10	8.8	26.56
			지속성	8.8	9.2	8	10	8.4	
			주체성	8.4	8.8	8	10	8	
문화정체성 소계				35.6	43.8	34.2	45.2	37.4	39.24

□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사업 모두 문화기본권 보다는 문화정체성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이라고 평가됨

○ 이는 문화기본권이 나타내고자 하는 문화정체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성과 부합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문화기본권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화격차, 표현의 자유 등의 지표는 정책사업의 계획에 뚜렷이 보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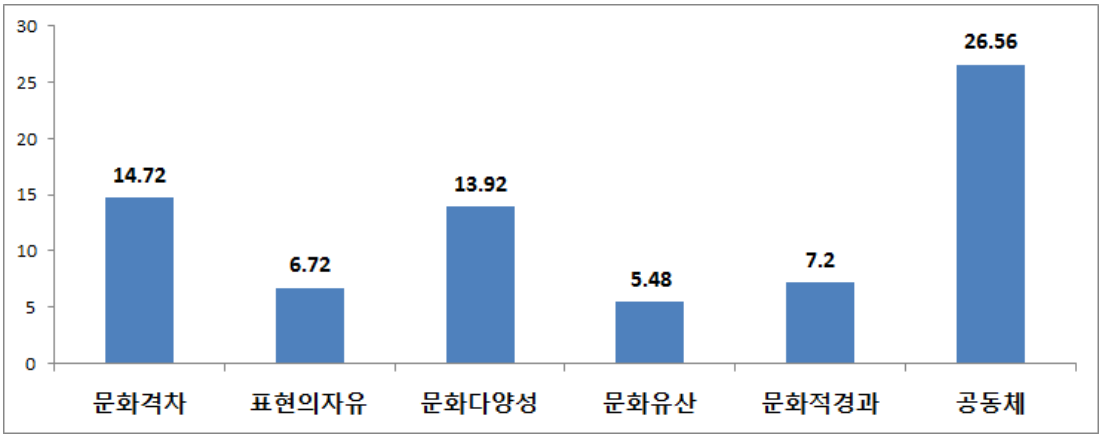

[그림 4-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문화영향 (서면평가 결과)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긍정적 영향의 항목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정책의 문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들을 살펴보면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영향평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마을공동체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계획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담고 출발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문화정체성항목에서 문화유산보다는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인 영향의 항목

○ 문화정체성 항목에서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계획상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마을공동체정책을 계획함에 있어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보존성과 활용성측면을 고려한 계획을 세운다면 문화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3) 정책적 제언

□ 긍정적 영향 제고 및 확산방안

○ 계획 단계에서 문화 영향 검토 절차 마련

-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목적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정책을 넘어 여러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문화적 가치와 관념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반영되는 것임
- 사업 계획 단계에서 문화영향 부분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 기본 방향에 도시차원에서 문화적 가치 확산을 지원함
-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 중 단체 선정 및 평가에서 문화영향에 때한 방향 및 지표를 공유하여 계획단계에서 문화 영향 부분을 고려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계획의 지속성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꼽힌 것은 마을주민과의 관계망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임
-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어진 정책을 고도화 시키고 계획을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기존사업의 보완

- 공동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기존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마을주민들의 주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획의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마을공동체지원 정책의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명칭되어지기 전부터 시행되어오던 사업이 있는 만큼 사업의 단계적 진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지원정책에 적합한 사업이 되었음을 상기하여 많은 정책들 중 마을공동체지원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향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긍정적 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적 확산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영역 내부에 대한 정책 및 사업 평가라기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 평가를 통해 문화적 관점이 충분히 고려된 사업에 대하여 사례 공유의 장 혹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영향에 대한 사회적 확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

□ 부정적 영향 저감방안

○ 생활 속 문화로의 가치 확산

-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항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하며, 지역문화는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문화적 활동을 말함(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영향평가에서 논의 하고 있는 문화는 규제-진흥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권리-확산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이 아닌 생활 속 문화에 대한 가치 확산 인식에 있음

○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인식

- 마을공동체지원정책의 대상은 마을에 사는 주민일 것임. 마을의 공간에서 보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문화유산은 보존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유지하고 활용하였을 때 문화유산을 인식하는 딱딱한 시선이 아닌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 문화유산으로 인식되어질수 있을 것임
-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사례조사와 관련 계획을 보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표현에 대유에 대한 기획 확산

-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제나 사업내용 및 방식에 대한 제한요소는 없는지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점검이 필요함
- 사업의 참여자에게 풍부한 창작의 기회와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계획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계획을 검토해야할 것임

○ 평가 결과 적극 권고 및 환류

- 문화영향 평가과정에서 각 지표별 결과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권고하여 각 사업을 문화적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평가의 결과를 통해 사업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가져 갈 수 갈수 있도록 평가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함

제2절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개별평가 결과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 사업 개요[158][159]

□ 사업 배경

○ 강원도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이타적·양보적 태도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서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저발전 지역의 문제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강원도는 글로벌화, 첨단화, 지역화, 대륙화, 공동체·인간화를 5대 중심지 전략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공동체·인간화 전략의 실천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함

□ 사업 목적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라져가는 미풍양속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자치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고 인구유입과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마을 내·외부 자원과 마을주민 역량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생활공동체 활성화가 경제공동체 활성화로 선순환 되도록 전략을 추진함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강원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지 현황 분석

□ 환경적 측면

○ 강원도는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으로 접근성 측면의 어려움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마을 단위의 공동체사업으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국에서 가장 넓은 기초단체는 홍천(1,818㎢), 인제 (1,646㎢), 안동 (1,519㎢), 평창

158)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159) 강원발전연구원(201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강원도, 정책메모 제359호.

(1,463㎢) 순이며, 홍천은 제주도(1,845㎢)와 비슷한 크기이고 홍천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으로 447.93㎢임

○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은 산업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과 양극화 등으로 도민 개개인의 행복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 사회문제 측면

○ 일자리 부족, 사회적 갈등, 이웃간의 배려 등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함

○ 강원도 인구는 1985년 전국 인구의 4.3%를 차지하였으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0년 3%로 하락함. 마을단위사업 활성화를 통해 귀농과 귀촌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함

○ 강원도는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립형 마을 복지사업 추진으로 보완이 필요함

- 강원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 14.36%에서 2012년 15.71%로 3년 사이 1.35%가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 평균 1.25% 증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국에서 고령인구비율이 4번째로 높음
- 특히 도내 시군 중 군 단위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횡성 23.03%, 양양 22.97%, 영월 22.71%, 고성 21.91% 등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음. 마을단위에서는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마을들이 많아 노인복지차원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추진이 요구됨

3) 사업 내용

가. 사업 현황

□ 사업 추진 경과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1. 3.

○ 마을공동체 시군 관계자 워크숍 : 2014. 1. 22.~23.

○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 설명회 : 2014. 2. 7.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 2014. 3. 5.

- 도의원, 연구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등 10명

○ 마을공동체 비전 선포식 : 2014. 3. 31.

- 도의원,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관계자 등

○ 2014년 지원 현황 : 18개 시·군 50개(1차 모집 29개, 2차 모집 21개) 마을공동체 지원

○ 2015년 지원 현황 : 총 90개 사업 501백만 원

- 1차 모집(3월) : 17개 시·군 61개 사업 287백만 원
- 2차 모집(7월) : 10개 시·군 29개 사업 214백만 원
- 2015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다음 〈표 4-10〉, 〈표 4-11〉과 같음

〈표 4-10〉 2015년 1차 선정 공동체 현황

시군 (사업수)	공동체명	사업내용
춘천 (3)	앞짱도서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마을축제 개최,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역할강화 프로그램 진행, 다양한 마을동아리 운영
	꿈꾸는숲 어린이집 부모협동조합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홍보하며 부모들의 재능기부 강의(어린이집)와 주민대상 육아관련 교육도 실시
	후평3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관내 홀몸어르신들 대상으로 생신잔치, 합동고희연을 개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 사상 회복
원주 (6)	개운동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작은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한자친구들, 인문학강좌, 한자부수 특강, 어르신 도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태장2동 흥양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기존 형성된 마을라디오와 관련하여 태장문화마당에 제2회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 관심 및 참여 형성
	한일아파트 청장년회	기존에 단절된 아파트 주민 간의 관계를 어린이 축제, 주민 체육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회복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함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마을리더십 교육, 어르신 안전건강 지킴이, 마을 환경 개선사업, 마을공작소 등 운영
	풍류문화 사랑방	부론마을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걷기대회, 문화사랑방, 축제자원 봉사 등 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	무실동 마을축제(등반대회, 주민공연 등)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교류 및 화합 증대
강릉 (6)	작은정원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골목에 상자텃밭 제작 및 비치하고 마을 사진전 개최,집집마다 문패 만들기 등으로 이미지 개선
	콩세알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모심기 및 수확하기 등 벼농사 체험을 함으로써 음식의 소중함 경험 및 공동체 소속감 증진
	푸른모임	지역의 황토체험장 등 농촌체험 관광시설 발전을 위해 작년 꽃동산(튤립)을 조성 및 금년에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컴퓨터 구입 및 교육 실시
	구정면 어단1리 마을회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받은 후 체험형 농촌관광 발전을 위해 구절초다방 개소 및 바리스타 양성 등 주민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봉사하는 통·반장들	관내 정부지원을 못받는 노인 등에게 경로잔치, 취약계층 쌀김치 배달, 보이스피싱 예방 등 교육 실시
	강릉맘마미아	지역의 엄마들이 육아품앗이로 아이들을 돌보며 또한 아이와 영화, 미술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마음행사(체육대회)도 개최
동해 (6)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	해안 숲 공원에서 관내 군악대, 실버예술단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음악회를 개최 및 주민들과 문화 향유
	삼화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릉계곡 진입로에 복숭아 나무 식재 등 꽃길을 조성하고 허병장스토리를 보완하여 돌탑 만들기 및 공연 등 실시
	새마을지도자 발한동협의회	쇠퇴해 가는 발한동 지역에서 연탄 나누기, 어르신 목욕봉사, 사랑의 붕어빵 나눔, 김장 나누기 등 활동으로 공동체 회복
	망상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의 남는 논밭을 사랑의 농장으로 운영하여 주민참여 계기 마련, 생산물은 어르신에게 김장해서 나눠드리며 경로잔치도 개최
	동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동호동에 전래되는 물지게 싸움놀이 보전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시군 (사업수)	공동체명	사업내용
		연습 및 관내 각종 행사 시 공연
	발한동 주부클럽 소녀시절	지역의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터 운영 및 판매행사 개최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 환원
태백 (6)	태백산유채꽃축제위원회	유채꽃 축제와 관련하여 전단지,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마을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구문소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으로 어르신 지킴이, 사랑의 아침 나눔, 따뜻한 겨울나기 등 복지 활동으로 함께 하는 마을 조성
	태백시 화전발전협의회	마을의 폐학교 부지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노하우을 통해 전통 발효음식을 제조 및 판매하고 그 외 탄광사진 박물관 운영 등 마을발전 도모
	삼수동 2통 자치위원회	지역 내 빈터에 폐가를 철거 및 공간을 조성하여 새벽시장과 문예장터를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
	조탄마을 영농조합법인	폐탄광을 활용하여 계절별 묵은지 체험, 촌집이야기, 전나무 소원빌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마을소득 증대
	죽사회(산죽을사랑하는모임)	낙후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시장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골목길 환경개선, 해달별의 LED조명 설치, 마당극 개최
삼척 (1)	도계4리 구공탄마을 운영위원회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난 사업에 이어 주민역량 교육, 스토리텔링 벽화디자인, 폐자원(연탄) 활용한 그리기 등 실시
홍천 (5)	향기나는 서곡마을	지난 이야기 골프길 사업에 이어 골프길 걷기체험 행사, 꽃나무 등 나무 심기, 기존 표지물 보완 설치, 길소개 책자 추가 발행 등
	행복한 카페모임	마을회관을 카페로 조성하고 주민들 컴퓨터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마을축제도 개최하는 등 행복한 마을 만들기
	백이동에 살면	주민토지 무상임대를 통해 마을주민을 위한 비닐하우스 사랑방공사 및 기존 식재한 고로쇠를 따라 꽃나무 식재하여 환경개선
	구만리 콩마을 영농조합법인	지역 특산품인 콩을 이용한 전통장류 제조 및 판매하여 마을소득 증대 및 장담그기 전통문화도 보존
	참살이 먹거리 동호회	전문가로부터 힐링꽃차(구절초 등) 관련 주민교육 실시 및 제조판매하여 마을을 위한 동아리활동에 투자
횡성 (2)	청풍너울	마을사람들이 함께 전통풍물(사물,춤) 배우며 지역축제에 참가 및 봉사활동도 추진
	횡성읍 번영회	작년 마을라디오 1기 운영에 이어 2기, 3기 마을주민 CJ 교육 실시로 다양한 마을주민 참여를 유도 및 마을라디오 진행
영월 (3)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을영화관 운영(월1회, 저녁제공), 옛농촌생활도구 수집 및 전시하여 영월찾는 사람들에게 기자박물관과 연계 운영
	여행자의노래 협동조합	지역주민(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기존카페를 리모델링, 마을텃밭 조성,마을학교 강좌, 마을음악회,주민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운학리 학산천마을	마을할머니들 중심으로 뜨개교실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만든 작품은 이웃마을 주민에게도 배부, 연말 솜씨자랑대회도 개최
평창 (4)	송정3리 한울타리	작년 오픈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공사, 비가림시설 등 보완공사 실시 및 진부 도서관으로부터 다양한 이동도서를 제공받아 도서관 운영
	계방산 아마란스 영농조합법인	아마란스/아로니아 축제 개최를 위해 마을꽃길 및 산책로 조성, 아마란스/아로니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판매 등
	척천리 부녀회	마을주민들이콩을 심고 이를 수확해 메주 제작 및 판매하며 작년에 이어 규모를 확대 추진
	계촌5리 힐링파크 운영위원회	지역펜션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힐링파크 주차장 신설 및 이를 활용 농산물 장터 확장하여 주민소득 증대
정선	대촌마을 사랑나눔회	마을의 공동육아를 위해 품앗이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백일홍 등 식재로

시군 (사업수)	공동체명	사업내용
(4)		아름다운 마을길 조성하고 옥수수 축제도 개최하는 등 마을화합 도모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부모모임을 형성하여 자녀와 함께 딸기따기 등 체험활동과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등 실시
	정선 꿈꾸는 도서관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방치되는 마을아이들을 위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강사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예미5,6리 마을발전추진위원회	예미리 살기좋은 마을1단계로 우선 골목길 및 거리에 벽화를 그리며 집집마다 화분을 길러 골목에 둠으로써 정감있는 공간으로 조성
철원 (4)	뚜루뚜루 철새교실	지역 특산품인 쌀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쌀 전시회 개최 및 쌀 마켓 운영으로 지역의 예술문화를 널리 홍보
	버들골 두루미지킴이	주민들이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서식처 보호 및 먹이주기 활동 실시하며 각종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 유치
	철원 다놀 주민여행사	농가별 이뤄지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을단위 패키지로 통합운영 및 홍보함으로써 마을소득 증대 도모
	대마리 어울림누리	마을어르신에게 전통음식(된장, 간장 등)을 배워서 만들고 이를 주민들에게 나누주거나 판매하여 마을수익 증대
화천 (2)	함께자람	군인가족이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 공동양육을 위해 엄마들이 모여 요리교실, 음악수업, 전래놀이 등 운영함으로써 양육기반을 조성
	후덕 매화마을 추진위원회	작년에 이어 매화나무를 추가 식재 및 수확 후 판매하고 일부는 매실청으로 만들어 판매하여 마을소득 증대 및 사업비로 활용
양구 (2)	소통동아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마을라디오 운영을 확대하여 다문화채널도 개설하고 마을주민을 초대손님으로 초청하는 등 운영
	월명산채영농조합법인	마을순찰 및 제설활동을 통해 마을을 안전하게 하고 노인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실시하여 노인 여가도 증진
인제 (1)	상동5리 청장년회	마을산책로 정비활동 및 파고라 설치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마을단합대회 등 개최로 주민 간 화합 도모
고성 (5)	현내면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학생 및 유관기관 등 참여하여 대진항 방파제에 벽화 그리기 작업 진행
	토성면주민자치위원회	마을 휴경농지에 서리태(콩)를 경작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마을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활용
	거진읍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명아주 묘목을 식재하여 이를 노인 지팡이로 제작해서 지역 노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화합 도모
	죽왕면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내 농공단지 주변 휴경지을 메밀공원으로 조성하여 메밀을 식재 및 수확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는데 활용
	거진10,11리 마을회	지역 특산품인 명태를 활용해 행운명태를 제작 판매하고 명태어등을 제작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양양 (1)	오사모	과거 오색지역과 관련한 사진을 수집하여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민 간의 추억을 공유하고 사진 중 일부는 인화 판매하여 마을소득도 증대

〈표 4-11〉 2015년 2차 선정 공동체 현황

시군 (사업수)	공동체명	지원사업명
춘천 (4)	도란도란 부모공동체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마커:마을에서 함께 커가는 아이들
	어린이 문화공간 꿈둥지	꿈둥지의 마을상상 프로젝트
	춘천 부모 리더십센터	부모 커뮤니티-'행복한 부모! 마을을 만들다'
	약사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약사명동 홀몸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시군 (사업수)	공동체명	지원사업명
원주 (2)	귀래면 주민자치위원회	귀래면 마을사랑 나눔 북카페
	소꿉 코딱지	소꿉 코딱지 방과 후
강릉 (3)	강릉중앙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문화를 통한 강릉중앙시장 활성화
	구산리 청장년회	마을주민 안전보장
	달뜨는 박월마을회	마을공터 꽃밭 가꾸기
동해 (5)	배움동아리 "사랑터"	행복드림아파트 내 사랑터 만들기
	동쪽바다 중앙시장상인회	전통시장 추억의 사진 및 스토리발굴사업
	분토마을	로컬푸드장터 운영
	심곡약천 정보화마을	약촌한솥밥 프로젝트
	동해시민 행복추진 홍보단	시민중심의 행복도시 프로젝트 가동
속초 (1)	화채마을 운영위원회	깨끗하고 안전한 설악동 화채마을 만들기
횡성 (3)	어둔리 마을회	오음산 문화체험장 조성
	봉명고라데이마을	고라데이마을 자투리공원 조성
	봉화마을 주민자치회	봉화마을 테마형 농장조성사업
영월 (3)	승당아낙들	여성풍물패 "승당아낙들" 활성화사업
	마차6리 마을회	꿈과 희망을 이루는 솔치마을
	덕전마을 마을회	덕전마을 이야기길 만들기
평창 (4)	대화강냉이공이국수협회	대화강냉이공이국수 개발
	문화마을체험장 운영위원회	전통민속 체험장
	봉산리 작은뜨락	봉산리 작은 뜨락(마을회관)사업
	흥정리마을 생활체육 탁구동호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환경 개선
철원 (3)	YMCA철원평화센터	꼬마야 꼬마야 뭐하니?
	삼성공부방	함께하는 공부방
	푸른별 어린이 영어카페교실	푸른별 어린이 영어교실 마을공동체사업
양구 (1)	두무마을회	농한기 마을문화 여가활용(사교댄스)

□ 예산

○ 총사업비 : 5년 동안 50억 원(도비), 시·군비나 국비공모사업 추가 가능

○ 지원금액 : 분야별 500만 원 ~ 1,000만 원 내

○ 분야별 지원한도액 및 자부담비율은 다음 〈표 4-12〉와 같음

〈표 4-12〉 사업 형태별 지원한도액 및 자부담비율

구분	지원규모	지원한도액	자부담비율
지정공모 및 주민제안	-	10백만 원	10%이상
도시형 공동체 형성	-	5백만 원	5%이상
형성단계	평균 2백만 원(총 50백만 원)	5백만 원	5%이상
활성화단계	평균 5백만 원(총 97백만 원)	10백만 원	10%이상

출처 : 강원발전연구원(2014),「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강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재인용

나. 사업 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대상

○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각종 주민단체

○ 개인자격 신청 불가, 최소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 및 단체 (세대당 2인 이하)

□ 사업 유형[160)]

○ 공모 형태에 따른 구분 : 지정공모, 주민제안, 도시형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 지정공모는 육아공동체, 안전공동체, 노인공동체, 전통시장공동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정공모는 최대 3년간 지원하며,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의 경우 1년만 지원하며 이후에는 지정공모 또는 주민제안 공모로 신청 가능함
- 공모 분야별 사업내용과 대상사업은 다음 〈표 4-13〉과 같음

〈표 4-13〉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형태에 따른 사업 및 세부내용

공모분야		사업내용	대상사업
지정공모	육아 공동체	육아를 사회공동의 문제로 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동육아, 부모품앗이, 청소년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실현
	안전 공동체	지역 내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감시 및 예방 활동을 하는 주민 모임	마을 안전지도, 야간 여성·청소년 안전귀가 도우미, 마을순찰대 등 생활안전 공동체 실현
	노인 공동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먹을거리 및 여가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	밥상 공동체, 건강 공동체, 여가활동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등 노인 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공동체	상인들이 기존 상가·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발굴, 전통시장 상인 재능기부 공동체, 상인대학(배움과정) 운영 등
주민 제안		지정공모 분야 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해당지역에 적합한 사업	문화(마을 미디어), 복지(마을 밥상), 다문화(다문화 사랑방), 소득창출(마을 장독대), 환경 정비(자투리 공원) 등
도시형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도시지역 중심 초기단계 소규모 공동체 형성지원	아파트축제, 동네사진전, 동네음악회, 마을평상 등 이웃 간 만남의 기회 및 공간 제공으로 공동체 형성

출처 : 강원도 공고 제2015-83호『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신청 안내 공고문

160)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 내용에 따른 구분 : 지역안전형, 문화역사형, 다문화자원형, 생활정비형, 커뮤니티형성, 협력경제, 마을재생, 생활복지, 환경안전, 지역산업형, 지역교육형, 지역복지형

-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 〈표 4-14〉와 같음

〈표 4-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내용별 유형 및 세부내용

유형	세부내용
지역안전형	지역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재난재해·교통안전사고·사고위험·범죄와 관련된 지역안전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확보
문화역사형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지역 정체성과 공간 창출 및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
다문화자원형	외국인들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에 형성된 다문화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생활정비형	지역주민 거주 지역의 환경정비, 생활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커뮤니티형성	부모(육아) 커뮤니티 활동, 동아리 활동(김치나눠주기, 마을장독대), 텃밭 가꾸기, 마을청소 등
협력경제	공동생산, 마케팅, 특산품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활동 중 순수 수익사업 중심활동
마을재생	마을환경 및 경관, 길 정비, 공동생활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낙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마을 활성화
생활복지	생협, 로컬푸드, 로컬머니, 공동육아(교육, 복지, 귀농, 귀촌) 등과 관련된 마을활동 및 사회적 경제 활동
환경안전	재난 및 생활위협으로 안전 확보, 기후생태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활동 등
지역산업형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 내 소득 선순환시스템 창출
지역교육형	지역주민의 생애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이외에서 실시되는 사회교육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역복지형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열어나가는 복지, 지역사회와 개개인들의 긍정적 순환구조 형성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 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른 구분 : 형성단계, 활성화단계, 자립단계

- 형성단계는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로,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이나 형성되었으나 아직 미약한 단계로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 자체에 초점을 맞춤
- 활성화단계는 마을사업이 구체화 되는 단계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기업, 주민단체 등 마을사업을 수행할 공동체 형성이 이미 이루어진 단계임. 공모사업은 개별 마을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둠
- 자립단계는 공동체 자립 기반이 형성되어 외부 지원 없이 마을사업이 가능한 단계로, 공모사업을 통한 직접 지원은 하지 않지만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국비사업을 연계하는 등 간접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각 형성단계와 자립단계의 특징은 다음 〈표 4-15〉와 같음

〈표 4-15〉 마을공동체 발전단계에 따른 특징

구분	특징	대상사업
형성단계 (동아리)	· 커뮤니티 기반이 미약한 단계 ·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주민 모임 운영, 동아리 활동 단계	· 부모(육아)커뮤니티 활동 · 동아리활동(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김치 나눠주기, 마을 장독대) · 마을텃밭 가꾸기, 마을청소, 안길 가꾸기 등
자립단계 (마을공동체)	·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단계 · 마을사업 구체화로 사업추진 · 소규모 소득사업이 가능한 단계	· 마을축제, 마을극장, 마을라디오 운영, 마을문화 역사배우기, 안전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 마을도서관, 동네부엌 운영 등

출처 : 강원발전연구원(201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강원도.

□ 추진체계

○ 마을공동체 위원회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과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심의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함
-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이며, 당연직(해당 실국장)과 위촉직(도의원 및 주민, 전문가)으로 구성
- 위촉방법은 추천 및 지명

○ 마을공동체 전문교육기관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등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 4-4]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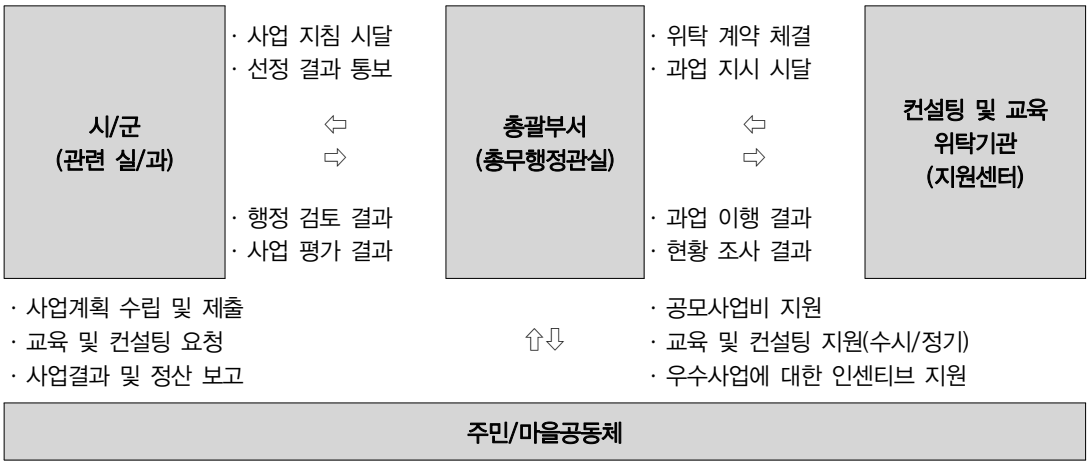

[그림 4-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절차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은 크게 준비단계, 공모 및 선정단계, 실행단계, 평가 및 관리 단계로 세분할 수 있음

① 준비단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과 사업 정책심의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함
- 워크숍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향모색 등을 위해

② 공모 및 선정단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신청 및 접수 후 행정검토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단계임
- 1차 행정검토에서는 해당 시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에서 마을공동체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함
- 2차 행정검토는 강원도 자치정책과에서 담당하며 해당 시군에서 1차 행정검토를 거친 주민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함
- 1, 2차 행정검토 시 고려사항과 심사기준은 다음 〈표 4-16〉와 같음

〈표 4-16〉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대상 선정 기준

1차 행정검토 고려사항	2차 행정검토 고려사항
• 마을공동체 현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 검토기준에 의거한 해당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 시군 마을사업 담당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사업 중복을 방지 • 개인의 취미활동을 위한 동호회 등과 구분, 단체의 적격성 판단 • 자부담 비율 확인 및 자부담 미제시 단체는 검토 제외 처리	• 사업내용, 사업능력, 사업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확정 • 마을주민의 참여도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우선 고려 • 행정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의 중복여부 파악 •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조정 및 적정여부 검토 • 1회성 사업지양, 사업효과의 지속성과 파급력 고려 • 시군 편중 지원 방지 및 최대 사업비 지원액 확인

심사항목		내용
사업타당성 (50점)	필요성(15)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여부
	공익성(15)	주민의 이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실현가능성(10)	실현가능여부 및 방법의 구체성
	지속가능성(10)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사업실행력 및 효과(50점)	자발성·창의성(10)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 적용 여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주민참여(10)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도 및 의지
	재원확보(10)	자부담 비율(동아리:5%이상, 공동체:10%이상)
	민관파트너십(10)	행정과의 역할 분담 가능성 및 효율적 연계 여부
	파급효과(10)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타 분야지역에의 효과

출처 : 강원발전연구원(201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강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재인용

③ 실행단계

- 사업비 지원 : 사업비는 시군에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교부처리함
- 사업비 집행 :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관리지침 작성 후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담당부서 및 도 자치정책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함
- 주민교육 실시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이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마을주민(기초과정)과 마을리더(심화과정)로 대상을 설정하여 총 15회 운영함

④ 평가 및 관리단계

-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마을공동체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정산과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및 보고를 하도록 함
- 정산내용은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불용액 파악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 등임
-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은 환수 조치함
- 종합평가를 실시해 사업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환류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함
- 우수사례 마을공동체에 최우수·우수·장려 등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함
- 평가방법은 강원도 자치정책과에서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 절차를 담당하고,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수행함
- 평가기준은 서면심사(70%)와 현지 확인(30%)이며, 평가항목은 다음 〈표 4-17〉과 같음

〈표 4-17〉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 평가 기준

항목	평가기준
독창성(20)	사업 수행체계, 수행방식, 추진내용, 수혜·참여자 범위 등 사업 전반에 있어 타 사업과 차별화 된 정도
참여도(20)	사업추진을 위한 단체 회원 및 주민참여도
효과성(30)	목표대비 실적, 비용대비 효과, 수혜자 만족도, 지속성 및 파급효과 등
협력성(15)	시군청, 보건소, 학교, 유관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각종 지역자원 종합·연계 및 협력정도
노력성(15)	사업 추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재정자립도, 이해갈등 조정 및 기관장 관심유도 등

출처 : 강원도(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재인용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절차는 다음 [그림 4-5]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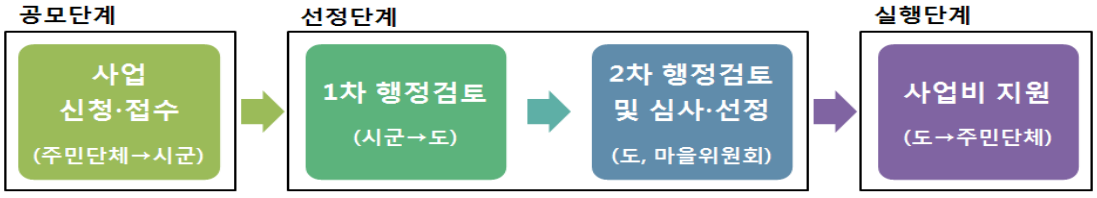

[그림 4-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절차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 추진 일정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 2~3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및 추진 : 3~12월
- 마을공동체 컨설팅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3~11월
- 마을공동체 2차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 : 6~7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2016년 1월

다. 세부 사업 내용

□ 2015년 사업 추진 방향

○ 2014년 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 가운데 우수공동체 등 일부 공동체에 대해 금년 사업 신청시 지속지원(최대 3년간)

○ 공동육아 등 도내 사정에 적합한 공모 유형을 추가함

○ 시·군 공무원의 사업내용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선정된 공동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확대(2~3회) 실시함

□ 현장 컨설팅[161)]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직접운영

○ 컨설팅단 구성 : 마을전문가 등 12명, 6팀으로 구성

○ 컨설팅내용 : 사전·사후 2회에 걸쳐 사업내용 전반
- 사전 : 공동체 이해, 사업내용, 추진계획 등(1차 선정 공동체 6~7월 완료)
- 사후 : 추진결과, 컨설팅 이행, 향후 발전방향 등(2차 선정 공동체 10~11월 진행)

□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4년. 12월 ~ 2015년 5월

○ 수행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강원도의 인구·지리적 특성, 마을공동체 추진모델 설정,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등

161) 문화컨설팅 바라(201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최종보고서.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문화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 평가 범위 및 평가 대상

○ 정책 및 사업 실행 평가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정책적 배경, 목적과 목표 파악, 사업 추진체계 파악
- 사업설명회, 사업계획 양식, 평가/환류체계 등 주민 접점, 사업의 흐름, 교육.컨설팅 지원 분야 검토
- 참고자료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용역(2015. 5), 참여 공동체의 사업 계획서, 사업 선정 평가 양식, 2015년 1차 선정 마을공동체 사전컨설팅 보고서(마을공동체 사전 컨설팅 결과 간담회),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컨설팅 보고서 양식, 사업 종료 평가 양식
- 업무 담당자 인터뷰 : 강원도 자치정책과 심동석 주무관

○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인터뷰

- 현장 컨설팅의 주된 관점 파악
- 현장에서의 문화영역과 행정에서의 문화영역의 상이점 파악

○ 사업 참여 공동체

- 조사 기간 : 2015년 11월 9일 ~ 11월 13일
- 조사 방법 : 강원도 협조를 통한 사전 조사계획 송부 후 용어 설명 등 응답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전화 인터뷰 실시
- 조사 대상 : 2015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 공동체
- 시군별 조사 대상 공동체 현황은 다음 〈표 4-18〉과 같음
- 조사대상 91곳 중 설문에 참여한 공동체 수는 83곳 (91.2%) 이었으며, 8곳(8.8%)은 “연락 미상”, “설문 거절”, “사업 포기” 등의 이유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음

〈표 4-18〉 시군별 조사 대상 공동체 현황

구분	시군	공동체 수 (%)
총계		91
시지역	계	44 (48.4%)
	강릉	9 (9.9%)
	동해	11 (12.1%)
	삼척	1 (1.1%)
	속초	1 (1.1%)
	원주	9 (9.9%)
	춘천	7 (7.7%)
	태백	6 (6.6%)

구분	시군	공동체 수 (%)
군지역	계	47 (51.6%)
	고성	5 (5.5%)
	양구	3 (3.3%)
	양양	1 (1.1%)
	영월	6 (6.6%)
	인제	1 (1.1%)
	정선	4 (4.4%)
	철원	7 (7.7%)
	평창	8 (8.8%)
	홍천	5 (5.5%)
	화천	2 (2.2%)
	횡성	5 (5.5%)

2) 평가지표

□ 문화기본권

○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문화 격차에 대해 문화 시설과 활용도, 문화 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 지역 공동체 내의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공동체 이용 공간 중심의 설문 구성

○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기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헌법 제 22조상의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마을 혹은 공동체 내의 개인의 의사 표현 기회로 보는 것으로 의미를 축소하여 구성원들 간 의사표현의 기회 제공 및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함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다른 구성원(귀농/귀촌, 다문화 가정 등)과의 관계 형성에 관점을 둠

□ 문화정체성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2014년 평가지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유산 및 전통 문화 활용에 방향을 둠

○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 2014년 세부지표의 지역자원 활용을 참고하여 지역 내 문화시설 외에 지역 내 공동체 및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대상으로 함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2014년 세부지표나 앞선 마을진단지표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량적인 평가 위주로 되어 있으나 지원액이 크지 않은 사업의 특성상 전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 세부지표와 설문문항은 다음 〈표 4-19〉와 같음

〈표 4-19〉 세부지표와 설문문항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설문문항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공간 확보 및 활용	1. 공동체/문화활동 공간 확보 여부 1-1 활성화 정도
		공간 활용 프로그램	1-2 공간활용 프로그램 여부
		공간의 지속 사용	1-3 사업 종료 후 사용 여부
		유휴공간 활용	2. 유휴공간 혹은 불용공간 활용 계획 유무 2-1 활용한 공간의 활용 촉진 정도
		마을 내 문화시설 활용	3. 기존 문화시설 활용 계획 유무 3-1 문화시설의 활용 촉진 정도
		문화활동	4.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정도
		문화예술 관람	5. 문화예술 관람 빈도의 증가 정도
		사회적 약자 배려	6. 활동의 지역 내 소외자 고려 정도
문화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논의 구조	1. 정례화 된 회의 여부 1-1.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보 여부
		의사 표현	2. 의사 표현의 증가 정도
		다양한 매체 활용	3.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성원과 공유 여부 3-1 대화 증가 정도
		공동체 활동의 마을 공유	4. 활동 내용이 마을 주민에게 전달되는 정도
		참여의 자율성	5. 마을 주민 혹은 외지인의 참여 증가 정도
		삶의 질(생활문화) 향상	6.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혹은 생활문화 향상에 대한 전망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체 구성계층과 다른 계층의 참여	1. 활동가의 구성 파악(현지인, 귀농귀촌인) 2. 다른 계층의 참여 유도의 적극성
		타 문화 계층 참여 유도	3. 다문화 가정 혹은 다른 문화 주민의 참여 유도 정도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적 고유성 검토	1. 사업계획상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고려 여부
		문화유산 활용	2. 활동에서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의 활용 정도
		지역 정체성 표현	3. 활동이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도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신규 자원 발굴과 활용	1. 신규 자원 발굴 유무 1-1. 신규 자원의 활용 촉진 정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마을과의 연계 - 마을홍보여부와 전망	1. 홍보 시 마을 홍보 병행 여부 1-1. 마을 홍보에 긍정적 영향의 정도
		재능 있는 인재 발굴	2. 구성원 재능 발견 가능 여부 2-1 마을 자원으로의 가능성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	3. 향후 마을활동에 대한 구성원 관심 증가 정도
		마을에 대한 관심	4.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촉진 정도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1) 정책 평가 종합

□ 지표를 활용한 평가

○ 문화정체성 영역이 문화기본권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음

- 정책 수립과 실행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 〈표 4-20〉과 같음

〈표 4-20〉 정책 수립과 실행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화활동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논의 구조
		공동체 활동의 마을 공유
		삶의 질(생활문화)향상
문화정체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재능 있는 인재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
		마을에 대한 관심

○ 앞선 긍정적 영향에 반해 문화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전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 요소가 많으나 공간 및 인적 결합의 다양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립과 실행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음 〈표 4-21〉과 같음

〈표 4-21〉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유휴공간 활용
		마을 내 문화시설 활용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활동의 마을 공유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체 구성계층과 다른 계층의 참여
		타문화 계층 참여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활용

□ 평가

○ 2014년 처음 시행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계획과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한 지역 자원조사와 공동체 구성의 핵심인 논의 구조에 있어 근거와 배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반면 사업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사업의 경우 주민주도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은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초기 시행단계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장에 중심을 두고 있음

○ 경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공동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사업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에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문화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구상부터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자체가 지역의 생활문화나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사업 안정화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문화적 요소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기존의 사업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향후 정책사업 계획 및 방향 수립 단계부터 문화적 요소들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2) 설문조사 결과

□ 지표를 활용한 평가

○ 2개 평가항목의 6개 평가지표 내에서 세부지표별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크기의 대소를 비교하여 그 값이 가장 큰 지표를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로 가장 작은 지표를 부족한 부분을 지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22〉와 같음

〈표 4-22〉 긍정적 영향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긍정적 영향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화활동(0.82)	유휴공간 활용(0.64)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논의구조 및 삶의 질(0.9)	다양한 매체 활용(0.7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사업 추진계층과 다른 계층 참여(0.69)	타문화계층 참여(0.56)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체성 표현(0.72)	문화유산 활용(0.6)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신규자원 발굴과 활용(0.7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0.9)	마을과의 연계(0.78)

○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비교 결과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 0.63으로 가장 낮게 나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참여, 다른 지역 출신 및 타문화에 폐쇄성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평가지표별 평균점수와 순위는 다음 〈표 4-23〉과 같음

〈표 4-23〉 평가지표별 평균점수와 순위

평가지표	평균점수	순위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741	4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82	2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63	6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67	5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745	3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83	1

□ 평가

○ 각각의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 정책사업 단계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문화적 요소들을 사업 실행 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 문화적 요소의 반영 방법이나 사용하는 용어 등의 차이는 있으나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자와 주민들의 경우 자연스럽게 문화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현재 반영되고 만들어지는 문화적 요소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효과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보이고 있음

○ 이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사업 계획 단계부터 확인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설팅 과정이 필요할 것임

3) 정책적 제언

가. 긍정적 영향 제고 및 확산 방안

□ 공동체 형성

○ 2014년부터 진행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초기 목적인 공동체 형성은 지금까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됨

○ 2014년과 2015년 사업을 통해 100여개의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분이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음

□ 공동체 안정화 및 확산을 위한 구조

○ 이후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들의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함

○ 2014년과 2015년 사업 운영을 통해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및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마을 개발 연구 용역에서 밝히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함
- 현재 사업 구조는 정책과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형태이며, 지원조직으로 컨설팅단이 운영되고 있음

□ 공동체 형성 및 지원의 관점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은 사업의 효과, 예산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함

○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보다 공동체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요인이 필요함

○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함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기준과 지표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나. 부정적 영향 저감 방안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세부 목표 설정

○ 현재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비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직접적인 목표나 비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추상적임

○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비전을 사업 추진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현장 또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시와 군의 공동체 형성 차이 극복

○ 82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의식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사업 경험이 많은 것에 기인함

- 군지역의 경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비롯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시지역은 공동체 형성 이후 단계의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공동체 형성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 해소하고 공동체 상황에 맞도록 사업 지원과 평가에서

시지역(도시형)과 군지역(농어촌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사업설계 필요

□ 지역 공동체의 고유성 확보 방안

○ 현장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마을 공동체의 지역 자원 활용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세부지표	전체 (83)	시지역 (40)	군지역 (43)
지역적 고유성 검토	.70	.68	.72
문화유산 활용	.60	.57	.63
지역 정체성 표현	.72	.67	.77
평균	.67	.64	.71

○ 공동체 사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구성의 바탕이 되는 것은 마을이 위치하는 지역이나, 지역의 자원 활용보다는 지역 내 인적 결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여겨짐

- 마을의 역사와 인문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욕구 해결을 위한 사업 내용 수립을 넘어 사업 계획 수립 저변에 마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인문학적 배경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1차 년도)에 반영된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붐 조성의 일환 사업 : "마을 의제 발굴 및 지역자원 조사 지원"

- 마을의제 발굴 및 지역자원 조사를 위한 지원 사항이 있는 것을 활용하여 마을에 역사적, 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강좌, 마을 자원조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권장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유연성 제고

○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에 제약 발생

- 사업 실행 단위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모임이 필수적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함

○ 커뮤니티 활동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 편성

- 예산의 일정 비율을 공동체 모임(Network Party) 등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모임을 양성화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및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조기 설치 필요

- 도청 총무행정관실의 행정 업무 담당, 현장 컨설턴트단의 현장 방문 및 컨설팅을 운영 중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기는 힘든 상황임

○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영향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행정지원체계 및 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고도화 마련
- 문화영향을 고려한 사업 운영 및 교육 기회 제공

□ 지속적인 평가 필요성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올해 2년차인 사업으로 안정화하는 단계임

○ 평가 대상 사업 자체가 아직 안정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문화영향평가 또한 완성된 사업에 대한 평가라 볼 수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진행한 평가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문화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책사업의 문화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제3절 새뜰마을 사업 개별평가 결과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새뜰마을 사업(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주　　관 : 지역발전위원회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간)

○ 사 업 비 : 개소 당 70억원(200가구 이상) 또는 35억원(100가구 이상) 내외로 차등 지급

□ 목적 및 근거

○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주변화 된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내 낙후 지역이 다수 존재함

- 군 지역을 기준으로 한 농어촌 통계에 따르면, 하수도 미설치 36.3%('13), 광역상수도 미설치 25.2%('11), 읍면 평균 빈집 86.1호('10), 노인인구비율 24.7%('12)에 달함
-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이 미흡한 농어촌 약 1,200여 개, 도시 약 350여개의 취약지역이 상존함[162]

○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의 개선이 절실함[163]

○ 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자 함[164]

2) 현황 분석

○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주변화 된 농어촌 낙후마을이 다수 존재함

- 농어촌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하수도 미설치 36.3%, 2011년도 기준 광역상수도 미설치 25.2%, 2010년도 기준 읍면 평균 빈집 86.1%, 2012년도 기준 노인인구비율 24.7%('12)에 달함

○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 향유,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취약개선이 절실함

162) 지역발전위원회(2015), 「'1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사업 추진 기본방향.
16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1쪽.
164)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2쪽.

3) 사업내용

가. 사업 현황

□ 추진 경과

○ 지역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결정함

-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심의·확정(2014.9.16)

○ 2015년 예산에 생활권 선도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프로젝트' 포함.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예산을 1200억 원으로 증액(2014, 650억 원)하고, 550억 원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에 배정하였음
- 생활여건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추진 후 단계적 확대할 예정임

○ 농어촌 선정 지역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사업 대상 선정지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포함되었고,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낙후 지역(양양, 정선, 화순), 문화재 보호구역(강화) 등도 포함[165]

- 전략적 이주촌에는 한센인 마을(칠곡), 지진해일 피해 주민 이주촌(고성), 무장공비 침투지역 주민 이주촌(삼척), 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파주, 철원) 등이 포함

○ 도시 선정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달동네,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이 포함

- 달동네에는 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등이 있으며, 공단 배후지역은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양산 등을 포함

□ 사업 추진 계획[166]

○ 2015. 4. 사업설명회 개최

○ 2015. 4 ~ 6. 기본계획수립

○ 2015. 6 ~ 9.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 2015. 10 ~ 12. 공사발주 및 착수

○ 2015. 11. 1차 평가

○ 2016. 10. 2차 평가

○ 2017. 9. 3차 평가

○ 2017. 10. 사업완료

16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3.24.,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5417) 참조.
166)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p.22.

나. 사업체계 및 추진절차[167)]

□ 사업 대상

○ 화재, 노후붕괴,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위험잠재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함[168)]

○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 55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함

〈표 4-25〉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새뜰마을 사업 선정지역

시/도	마을	시/도	마을
강원	철원군 근북면 유곡마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마을
	양구군 남면 황강마을		담양군 무정면 평지마을
	인제군 인제읍 귀둔마을		해남군 화산면 해창마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마을		장흥군 화진면 선학마을
	양양군 서면 장승마을		무안군 몽탄면 남천마을
	삼척시 근덕면 동막마을		보성군 벌교읍 봉림마을
	정선군 신동면 예미마을		화순군 동면 구암마을
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마을		영암군 금정면 청용마을
	음성군 금왕읍 다부네마을		신안군 압해읍 마산마을
	증평군 증평읍 삼보산골마을		완도군 넙도 내리/방축리마을
	청주시 내수읍 저곡마을	경북	울진군 죽변면 등대마을
	옥천군 이원면 평계마을		상주시 화북면 용화마을
	보은군 내북면 세촌마을		의성군 구천면 청산마을
	괴산군 청천면 관평마을		군위군 우보면 소실마을
충남	금산군 복수면 곡남마을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
	예산군 대흥면 금곡마을		안동시 풍천면 구담마을
	보령시 웅천읍 구룡마을		예천군 용문면 성저마을
	부여군 석정면 비당마을		청송군 진보면 세장마을
	서천군 마서면 정선마을	경남	남해군 상동면 둔촌마을
전북	무주군 적성면 내창마을		함안군 법수면 윤외마을
	임실군 일실읍 감성마을		하동군 화개면 범왕마을
	순창군 풍산면 두지마을		함양군 병곡면 옥계마을
	부안군 진서면 왕포마을		산청군 금서면 화계마을
	정읍시 산외면 평사마을		거창군 가북면 동촌마을
	남원시 주생면 서만마을		합천군 봉산면 권빈마을
	완주군 동상면 거인마을	인천	강화군 강화읍 서문안마을
	진안군 동향면 상양마을	대구	달성군 하빈읍 낙동마을
		경기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마을

167) 지역발전위원회(2015), '1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p.7-8.
16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p.1.

□ 사업조직 구성

○ 사업시행 전반 및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기본계획 수립이나 세부계획 수립의 과정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진행함

□ 사업선정 과정 및 절차

○ 생활권을 구성하는 시군구별로 1개씩 신청이 가능하며, 시도에서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지역위 및 관련부처(농식품부, 국토부)에 동시 제출함

○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농어촌, 도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본회의를 거쳐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함

□ 1년차 사업의 과정 및 절차

○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농어촌), 총괄코디네이터(도시)를 선정하고 자문위원회와 주민협의회를 구성함

○ 취약지역 개선 과제발굴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에서 해결해야할 취약지역 개선 및 자활과제를 발굴함

○ 주민이 제안한 과제를 토대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착수함

○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참여도, 사업의 진척사항, 자활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점검하고, 지역에서 제안한 관련부처 사업이 연계되도록 지원함

□ 2년차 이후 사업의 과정 및 절차

○ 지역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함

○ 사업시행절차를 다음의 [그림 4-6]처럼 나타낼 수 있음

주민추진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마을주민 및 시장·군수
↓	
주민회의 및 동의서 징구	시장·군수 사업설명회, 추진위원회 주관 마을회의 마을발전방향, 사업추진방향 등 협의
↓	
기본계획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시장·군수·구청장
↓	
기본계획 수립, 변경, 고시,보고 (법 제58조)	시장·군수·구청장 주민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
↓	
사업위탁여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승인), 고시, 열람, 보고 (법 제59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어촌공사 주민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필요하면 별도 추진을 한 후 그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
↓	
발주 및 시공회사 등 선정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계약법 적용
↓	
공사착수, 추진상황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계획변경(법 제61조),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준공검사, 보고 (법 제114조)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물 등 인수인계, 사후관리	마을 주민

[그림 4-6] 새뜰마을 사업 시행절차[1)]

다.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으로는 안전 강화,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집수리 비용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며,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총사업비의 5%이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을 지원함[169)]

○ 생활 인프라 사업내용의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주민의 생활과 밀접성이 높은 인프라를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컨셉으로 지원

169)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20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p.2.

〈표 4-26〉 새뜰마을사업 생활인프라 사업 예시

구분	주요 사업 내용
1 기초기반시설	① 소방도로, ② 마을 주차장, ③ 쌈지공원·어린이놀이터, 도시텃밭 등 공원·녹지시설, ④ 노후 상·하수도 개량 및 신설, 공동화장실 보수 및 신설, ⑤ 가스·열공급 시설 등
2 환경·방범	⑦ 보행환경정비, ⑧ 가로등,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물설치 및 정비, ⑨ 담장허물기, 벽화그리기, 화단설치 등 가로환경개선, ⑩ 폐·공가정비 및 철거 등, ⑪ 하천정비, 산책로 등 정비, ⑫ 구 철길, 전통가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특화자원 리모델링 등
3 주민편의시설	⑬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⑭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마을카페, 공부방, 마을도서관, 청소년쉼터 등 이용편의시설, ⑮ 일자리센터, 마을공방 등
4 재해방지시설	⑯ 사면보강 시설(옹벽, 석축, 네일링 등), ⑰ 저류지 등 수해방지, ⑱ 소화전 및 제설함 설치 등 화재 방지시설 등
5 위생시설	⑲ 악취저감을 위한 차폐(녹지) 시설, ⑳ 소음·진동 방음시설, ㉑ 방역소독, ㉒ 공동 쓰레기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등
7 장애물 제거	㉒ 경사지 핸드레일,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경사턱 등 장애물 제거, ㉓ 노인·장애인 주택 문지방 개선 등 장애물 제거 등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2015), 「'1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9쪽.

○ 휴먼케어 사업내용의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주로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사업 등에 주된 사업임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한 우선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필요시 총액 5% 이내로 지원함

〈표 4-27〉 새뜰마을사업 휴먼케어 사업 예시

구 분	주요사업내용	
	부처사업(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취약지역사업(예시)
1 교육·돌봄	① 어린이집 확충·지원 ②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③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 ④ 노숙인 등 복지지원 (※ 시설기능보강·시설운영) ⑤ 지역아동센터 지원 ⑥ 청소년상담·쉼터(소규모·복합형) ⑦ 노인요양시설 확충 ⑧ 다문화가족지원	① 마을 도서관 ② 공부방, 놀이방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2 안전·위생	⑨ 지역연계 의료지원 사업 ⑩ 취약지 응급협진 시스템 구축 ⑪ 안심콜서비스 사업	④ 클린서비스(소독, 방역) ⑤ 통학 안전활동 ⑥ 안전지도 제작 ⑦ 골목관리소 등
3 일자리	⑫ 노인 일자리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⑬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⑭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⑮ 마을기업 육성사업	⑧ 집수리 기술교육(동네목수) 등
4 문화,체육	⑯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⑱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마을문화 축제)	⑨ 마을 갤러리 전시회 ⑩ 소규모 마을 체육활동 ⑪ 마을 영화제 ⑫ 마을소식지 발행 등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5), '1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p.10.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선행연구

○ 유사 정책 및 사업평가 사례 고찰

-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구성체계를 비교, 새뜰마을 사업과 같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평가 지표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지표 관련 문헌 연구

-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영향의 양태, 경로, 크기, 지속성) 실시하기 위한 논문, 연구보고서 등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지표(안) 마련

□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약 2차례의 전문가(2~3명) 자문회의를 거쳐 체크리스트 도출

○ 건축/도시재생, 지역문화, 정책전문가 등 총 3명으로 구성

○ 문화기본권의 경우는 마을 주민 개인적 차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스스로 참여하며, 소통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노력으로 요약됨

○ 문화정체성의 경우는 마을의 공동체적 차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문화적 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과 마을공동체성의 확장으로 요약됨

□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 패널 선정과 몇 차례에 걸친 질문지 조사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서, 이 연구의 델파이 조사 연구 절차는 다음 〈표 4-28〉과 같음

〈표 4-28〉 델파이 기법 기간 및 절차

Step1. 자문위 풀 구성	Step2. 델파이 기법 조사	Step3. 지표확정 통계분석
자문위원회 풀 구성 *새뜰마을 사업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마을만들기 전문가 포함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e-mail조사	상기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지표 확정을 위한 통계 분석
20명 내외 구성	20명 내외 발송	약 10명 내외 취합 완료
10월 30일~11월 1일	11월 2일~6일	11월 9일

○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종의 수렴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델파이 조사 연구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됨(각계 전문가 10명)

- 이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는 측정항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패널의 의견을 100%를 기준으로 지표별 수치 작성이 가능한 응답지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며, 익명성을 보장함. 또한 구성항목에 대한 삭제, 보완,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함

□ 시범 자체 현장평가(케이스 스터디)

○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대상 마을 1곳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 보완/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음

2)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평가지표

○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전문가들의 지표 관련 수정, 보완, 삭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최종 지표에 반영하고, 지표별 측정 방법을 확정함

○ 문화기본권 (개인적 차원 활동 중심)

〈표 4-29〉 새뜰마을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A 문화격차	B 표현의 자유	C 문화다양성
A1 취약계층	B1 주민참여/소통	C1 마을역사문화 보존
A1-1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B1-1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 B1-2 주민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	C1-1 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성 보존
A2 주민 문화적 욕구조사	B2 주민 욕구 표현과 수용	C2 다양한 문화수용
A2-1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주민욕구조사	B2-1 주민 욕구를 반영한 기본계획 B2-2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수용	C2-1 외지인·소수자 문화 C2-2 세대 계층 간 문화
		C3 다양한 장르 융합
		C3-1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의 장르 융합

○ 문화정체성 (공동체적 차원 활동 중심)

〈표 4-30〉 새뜰마을 평가지표 (문화정체성)

D 문화유산	E 문화적 경관	F 공동체
D1 유형문화유산	E1 주거 경관	F1 주민 조직/활동가 양성
A1-1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E1-1 주택의 문화적 특성 반영 E1-2 주거편의성/에너지효율성 증진	F1-1 주민 조직 F1-2 주민 활동가
D2 무형문화유산	E2 마을 경관	F2 주민 공동체성 확장
D2-1 마을무형문화유산 보존·활용 D2-2 마을주민 일상생활문화	E2-1 마을 경관 보존·활용	F2-1 공동체 프로그램/활동 F2-2 공동체 공간(복합커뮤니티공간)/인프라
		F3 준주민자치적 사업 전개

D 문화유산	E 문화적 경관	F 공동체
		F3-1 주민참여형 공동체 설계 F3-2 후속사업 연계 방안 설계
	E3 마을 경관	F4 민관거버넌스/파트너십
	E3-1 생태 경관 보존·활용 E3-2 생업 경관 보존·활용	F4-1 외부 전문가 파트너십 구축

□ 세부지표 및 측정방법

○ 문화기본권(개인적 차원 활동 중심) 관련 지표의 세부지표 및 측정방법은 아래의 〈표 4-31〉, 〈표 4-32〉, 〈표 4-33〉과 같음

〈표 4-31〉 문화기본권 중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A 문화 격차 (취약계층 배려)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A1 취약계층				
A1-1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마을의 취약계층 비율 조사 선행)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활동과, 복합커뮤니티공간에 접근성과 이동성을 배려하는 계획이 있는가?	1)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문화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마을환경정비, 마을축제 등)	기본계획평가
		2) 중장기 계획 여부	① 5년 이상 장기계획 ② 3-4년 중기계획 ③ 2년 이하의 단기계획 ④ 1년 이하의 일시적 계획 ⑤ 계획 없음	
		3) 취약계층 비율	① 80% 이상 ② 70% ③ 60% ④ 50% 미만 ⑤ 50% 미만	
A2 주민 문화적 욕구조사				
A2-1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욕구 조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문화적 욕구를 조사 분석(하였는가?	4) 주민 문화적 욕구조사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자원조사, 주민의견 청취 등)	기본계획평가

〈표 4-32〉 문화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B 표현의 자유 (주민 참여 활성화)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B1 주민참여/소통				
B1-1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 주민 다수가 인지하는가?	1) 사업인지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주민설문조사
B1-2 주민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	사업설명회 등 주민 참여 및 호응이 활발한가?	2) 사업참여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사업설명회 자료 분석
		3) 사업호응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주민설문조사
B2 주민 욕구 표현/수용				

B 표현의 자유 (주민 참여 활성화)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B2-1 주민 욕구를 반영한 기본계획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의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는가?	4)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평가
B2-2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수용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 평가를 받아 최종 결정하였는가?	5) 주민평가 및 승인	① 주민 70% 이상이 승인 ② 50-60% ③ 30-40% ④ 10-20% ⑤ 추진위원회만 승인	

〈표 4-33〉 문화기본권 중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C 문화 다양성 (마을 문화적 특성 반영)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C1 마을역사문화 보존				
C1-1 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성 보존	마을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발굴하여 마을비전을 세우고 있는가?	1) 마을이야기 발굴/보전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평가
		2) 마을비전에 대한 주민 동의 정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가구 수 기준)	주민설문조사
C2 다양한 문화 수용				
C2-1 외지인·소수자 문화 수용	외지인·소수자(결혼이민자 가정, 귀농/귀촌인 등)의 참여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활동 계획이 있는가?	3) 외지인·소수자 프로그램/활동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기본계획평가
C2-2 세대 계층 간 문화 수용	마을 노년층, 청년층(손주세대 포함) 간의 소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가?	4)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활동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C3 다양한 장르 융합				
C3-1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의 장르 융합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이 하나의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계획이 있는가?	5) 장르 융합 프로그램 여부 (특정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활동)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평가

○ 문화정체성 관련 지표의 세부지표 및 측정방법은 아래의 〈표 4-34〉, 〈표 4-35〉, 〈표 4-36〉과 같음

〈표 4-34〉 문화정체성 중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D 문화 유산 (마을살이문화)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D1 유형문화유산				
D1-1 마을유형문화유산 보존·활용	마을의 유형문화유산(보호수, 담장, 계단, 마을길 등 생활문화유산)의	1) 마을유형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주민설문조사

D 문화 유산 (마을살이문화)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2)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평가
D2 무형문화유산				
D2-1 마을무형문화유산 보존·활용	마을의 각종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3)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평가
		4) 마을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D2-2 마을주민 일상생활 문화	마을주민의 일상생활 문화를 보존·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5)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표 4-35〉 문화정체성 중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E 문화적 경관 (주거·마을·생태/생업 경관 보존)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E1 주거 경관				
E1-1 주택의 문화적 특성 반영	주택정비 과정)에서 주택의 각종 문화적 특성(지붕, 벽면, 문, 창호, 구조, 재료, 문양, 색깔)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1) 문화적 특성 반영 계획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개량/빈집 정비/에너지 성능개선/주택 개보수 및 신축 등)	기본계획평가
E1-2 주거편의성/에너지효율성 증진	주택정비 과정에서 주민의 편의성과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한 계획인가?	2) 주민편의성 증진 계획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3) 에너지효율성 증진 계획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E2 마을 경관				
E2-1 마을 경관 보존·활용	마을 경관 정비 과정(에서 특색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보존하고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4) 특색있는 공간/시설 보존·활용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마을 경관 정비: 마을 담장정비/마을 내 상하수도/마을길 등)	기본계획평가
E3 생태 경관/생업 경관				
E3-1 생태 경관 보존·활용	마을의 생태환경, 자연경관 등 공간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환경정비사업을 실행할 계획이 있는가?	5) 생태 경관 보존·활용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환경 정비: 공원, 쉼터 등)	기본계획평가
E3-2 생업 경관 보존·활용	마을마다 다른 경제활동 환경(광산, 농촌, 어촌, 산촌 등)을 활용한 공간계획이 있는가?	6) 생업 경관 보존·활용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표 4-36〉 문화정체성 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부지표

F 공동체(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세부 지표	하위 문항	측정 방법	척도	판단 근거
F1 주민 조직/활동가 양성				
F1-1 주민 조직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1) 추진위원회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평가
		2) 추진위원회 주민 신뢰도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주민설문조사
F1-2 주민 활동가	사업 전반을 이끌어 갈 주민 활동가를 발굴/양성할 계획 및 주민의 참여의향이 높은가?	3) 주민 활동가 양성 계획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기본계획평가
		4) 주민 활동가 참여 의향	① 90% ② 70-80% ③ 50-60% ④ 30-40% ⑤ 10-20%	주민설문조사
F2 주민 공동체성 확장				
F2-1 공동체 프로그램/활동	주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공동체 프로그램/활동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가?	5)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기본계획평가
		6) 중장기 계획 여부	① 5년 이상 장기계획 ② 3-4년 중기계획 ③ 2년 이하의 단기계획 ④ 1년 이하의 일시적 계획 ⑤ 계획 없음	
		7) 운영인력 계획 여부 (주민강사 포함)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F2-2 공동체 공간(복합커뮤니티공간)/인프라	공동체 공간(복합커뮤니티공간)/인프라를 구축 (마을 공공시설 기능전환, 리모델링 등)할 계획이 있는가?	8)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9) 운영인력 계획 여부 (주민강사 포함)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F3 준주민자치적 사업 전개				
F3-1 주민참여형 공동체 설계	주민참여형 공동체(주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를 운영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10)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11) 중장기 계획 여부	① 5년 이상 장기계획 ② 3-4년 중기계획 ③ 2년 이하의 단기계획 ④ 1년 이하의 일시적 계획 ⑤ 계획 없음	
E3-2 후속 사업 연계 방안 설계	사업 완료 후 후속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는가?	12) 계획 여부	① 계획이 매우 잘 짜임 ② 계획이 있음 ③ 보통 ④ 계획이 다소 있음 ⑤ 계획이 전혀 없음	
F4 민관거버넌스/파트너십				
F4-1 외부 전문가 파트너십 구축	주민-행정-외부전문가 협의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가?	13) 협의구조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14) 외부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① 있음 ② 없음	

3) 종합 점수 산출 방법

○ 종합 점수는 각 지표별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산출함

- 새뜰마을 사업 전문가위원회의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각종 평가적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 척도)를 사용함
- 단, 태도나 성향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00점 만점 환산하여 분석함(긍정적 태도=100점, 보통=50점, 부정적 태도=0점)

〈표 4-37〉 환산점수표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가 척도	1	2	3	4	5
환산 점수	100	75	50	25	0

○ 문화영향평가 종합 점수(안)

〈표 4-38〉 문화영향평가 지표별 종합 점수

유형	평가지표	점수화	종합점수 산출
문화 기본권	A. 문화격차 (10문항)	문화기본권 3지표 17문항에 대한 평균값(100점 환산)	문화영향평가 종합점수 산출 6지표 27문항의 평균값(100점 환산)
	B. 표현의 자유 (3문항)		
	C. 문화다양성 (4문항)		
문화 정체성	D. 문화유산 (2문항)	문화정체성 3지표 10문항에 대한 평균값(100점 환산)	
	E. 문화적 경관 (4문항)		
	F. 공동체 (4문항)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1) 현장평가 결과

가. 현장평가 목적

○ 개발된 지표의 실제 적용을 통한 함의 도출 및 보완/수정 사항 반영

- 당해 연도 기본계획은 시기적으로 수립 중인바, 계획 입수가 가능한 한 개 마을의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기 개발된 지표 적용함
- 지표 적용을 위해 필요한 확인사항, 지표상의 보완/수정 사항 도출 및 반영함
- 향후 전체 사업 지원 마을로 평가를 확대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도출함

○ 지표의 현장 적용 가능성 점검
- 지표 측정 항목의 현장과 주민의 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현실감 반영

나. 현장평가 방법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의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시범적 현장 평가를 실시함.
- 현장 평가(케이스 스터디)는 마을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와 마을 투어를 통해 실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함

step1. 문화영향평가 지표 확정	선행연구, 전문가 FGI,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지표 확정
step2. 칠곡군 연호마을 협조	대표적인 주거취약마을인 '칠곡군 연호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조를 요청
step3. 시범적 자체 평가	전문가, 연구원, 마을 추진위원회, 칠곡군 미래전략과 참여하여 시범적 자체 평가 진행
step4. 개선방안 제안	시범적 자체 평가를 통한 지표의 개선방안과 준용방안을 도출

[그림 4-7] 현장 평가(케이스 스터디) 연구 흐름도

○ 칠곡군 연호2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 2015년 지원 대상 마을 55개 중 5개 유형 중 특수지역형
- 전국 91개 한센인촌 중 가장 오래된 한센인 정착촌으로 한센인 103명 전원 기초수급생활자
- 산세가 험하고 토양이 건조해 축사로 생계를 이어갔으나, 현재는 120개의 폐계사 방치 및 계분 악취, 무분별한 쓰레기로 고통
-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이 86%이며, 저소득층 비율이 60%임
- 전국 91개 한센인 촌 중 가장 오래된 한센인 정착촌/ 미래세대가 기억해야 할 어두운 과거/ 10, 20년 뒤면 이 땅에서 사라질 가슴 아픈 현대사와 특수지역 문화가 남아있는 공간

○ 사업지 개요
- 사업면적 : 23,376 ㎡
- 전체 가구수 : 61가구
- 사업참여율 : 73.7%(45가구/61가구)
- 사업 기간 : 2015. 5. ~ 2017. 12.
- 사업비 : 약 2,300백만 원 (최종 승인 대기 중)

○ 사업지 여건

- 폐쇄된 축사가 마을 곳곳에 어지럽게 산재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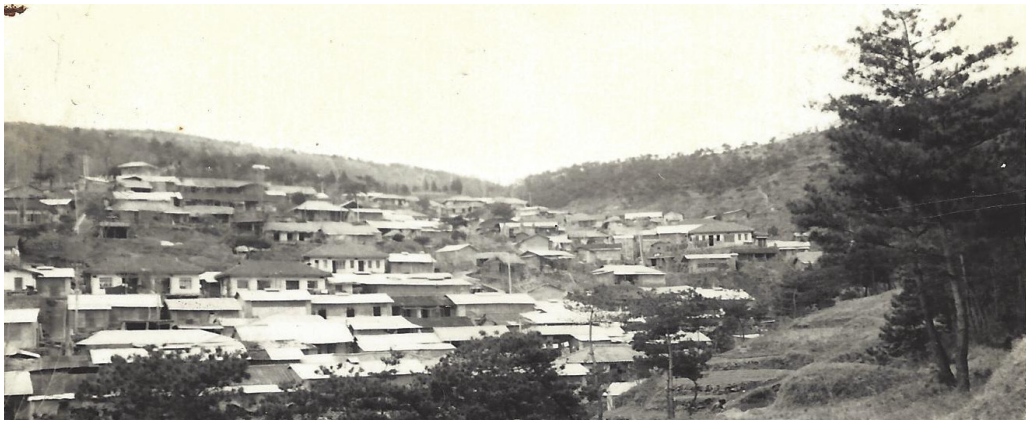

[그림 4-8] 연호2리 옛 모습(70년대)

[그림 4-9]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마을 곳곳에 말리고 있는 계분(鷄糞) 더미는 마을을 뒤덮은 악취의 주범

[그림 4-10]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정비되지 않은 환경과 쓰레기 더미로 마을은 더욱 음산한 분위기

[그림 4-11]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높은 경사도, 낭떠러지 등 마을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그림 4-12] 연호2리의 현재 모습

○ 사업지 역사

- 1기 : 형성과 정착

(1945년) 광복을 전후로 대구 대명동 공동묘지 일대 천막을 치고 살던 한센인 30여명이 이곳으로 강제 이주
(1951년) 철조망으로 둘러친 작은 마을에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1,300여명의 나환자들이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살이를 시작
(1950년대) 국립나병원이 정부의 국립나병원 통폐합정책(1969)에 따라 폐쇄, 치료중인 자는 소록도로 보내지고, 안동성좌원, 산청성심원 등지로 분산 이송, 완쾌된 391명이 남아 현재의 마을로 이어져 옴

- 2기 : 양계와 자립

(1969년) '건강사회복귀'란 현수막을 내걸며 '칠곡농장'이라 명명하고, 15~45인당 1필지씩을 공동소유로 불하하며 가구당 병아리 50마리씩 분배하여 생계 밑천을 삼도록 한 것이 양계의 시초.
(1970년대) 한 집에 4-500마리씩, 하루 닭 30만 마리가 24만 개의 달걀을 생산, 대구에서 소비하는 계란의 4할이 여기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생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곳

- 3기 : 도약과 발전

(1977년) 가톨릭 기관의 후원으로, 2km 떨어진 냇가에 웅덩이를 파 양수기를 사용하여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간이상수도 준공. 78년 정부와 칠곡군의 지원으로 간이양로시설(약30평규모) 1동(현재 철거)과 1981년 1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간이양로시설 1동이 각각 건립됨.
(1983년) 마을회관이 칠곡군의 지원으로 마을회관이 준공되었고, 1985년 농원 입구에 카톨릭 단체와 대구대학교 등의 지원으로 칠곡 복지회관을 설립하여 치료와 교육을 지원. 현재에도 '기독의원'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진료 중에 있음.
(1987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자부담으로 취약구조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16세대의 단독주택을 건립

- 4기 : 쇠퇴와 침체

현재)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계속되는 조류독감으로 양계업 폐업
한센인 103명 전원이 군에서 지급하는 기초수급생활자로 생활
칠곡 농장은 칠곡군청과 35km나 떨어진 먼 거리로 연호리 90번지 일대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가파른 곳에 계단식으로 터를 닦아 조성
산세가 험하고 토양이 건조해 축사 외 다른 작물은 엄두도 못 냄

○ 정비 계획

- 사업 내역별 추진계획

〈표 4-39〉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 사업계획안

구분		취약지역 개선사업 (2015~2017)	향후 사업 연계 방안 (2017년 이후)
하드웨어 사업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개보수	노후 및 방치 폐계사 철거 - 주민역량강화 후 주민주도자체 사업 추진
			공동텃밭 조성 - 주민역량강화 후 시행 (농림부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 환경개선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간이양로원 공동홈화	
		마을전시관 조성	공동시설 활용을 통한 주말식당 - 주민역량강화 후 시행 (농림부 창조적마을만들기)
		환경미술 시행	
			분뇨처리시설 도입 - 인근 퇴비화 공장 협약 추진
	동선계획	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기타	자전거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주민역량강화		주민 아카데미, 사례탐방 등	
휴먼케어 사업		마을특성화 사업, 문화프로그램, 마을 축제, 마을 브랜드 개발 등	

○ 세부 정비 계획

- 슬레이트 지붕(폐계사 및 주택) 철거

[그림 4-13]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슬레이트지붕 철거

- 공동시설 리모델링

[그림 4-14]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시설

- 공동텃밭 조성

[그림 4-15]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공동텃밭 조성

– 환경미술

[그림 4-16]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환경미술

–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그림 4-17]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그림 4-18] 연호2리 세부정비계획: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2) 자체평가 결과 요약

○ 확정된 지표 및 항목을 바탕으로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지표의 적용가능성 점검

- (1)선행연구, (2)전문가FGI, (3)델파이조사, (4)현장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종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지표를 적용
- 55개 대상지 각 시/군에 협조 전화 및 공문 발송 후 '기본계획안', '추진위원장 컨텍포인트'를 취합함
- 취합된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16개 마을 조사 완료

○ 델파이조사를 통해 얻은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평가 지수 산출

▶ 새뜰마을 사업의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의 종합지수 '62.7점' – 약간 긍정적
- 'B 표현의 자유' 지표가 76.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
- 반면, 'D 문화 유산' 지표는 38.5점으로 약간 부정적

|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 종합 평가 지수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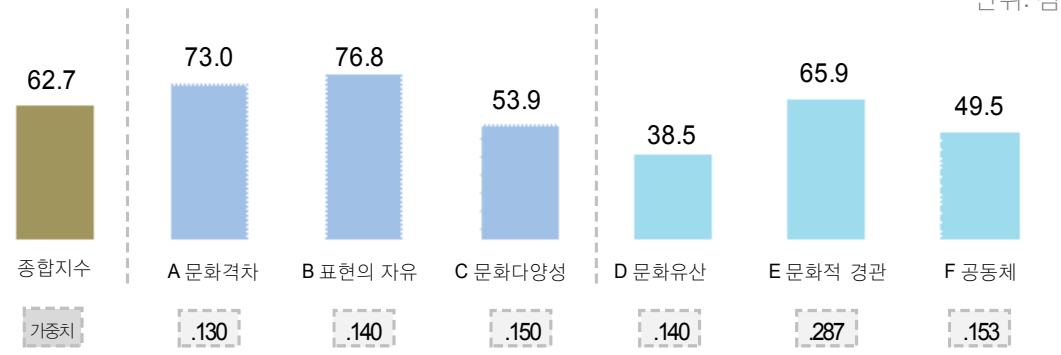

[그림 4-19] 문화영향시범 자체평가 – 종합평가지수

○ 평가점수 해석 기준

〈표 4-40〉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 평가 점수 해석 기준

20점 미만	20~29점	30~39점	40~59점	60~69점	70~79점	80~100점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	약간 긍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부정적 또는 보통으로서 계획보완/수정 필요 대상				*긍정적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추진 대상		
C등급 마을			B등급 마을		A등급 마을	S등급 마을

3) 평가 세부 내용

□ 문화기본권

○ 문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

A 문화격차

A1 취약계층 비율 - 대상 마을의 취약 계층 비율이 어떠한가?(취약계층 범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A2 문화적 욕구 조사 -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문화적 욕구를 조사 분석하였는가?

▶ '문화 격차' 지표 전체 평균 73.0점 - 다소 긍정적
- M마을이 100점 만점으로 매우 긍정적
- P마을은 25점으로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아, '취약계층 비율'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욕구 조사' 등 미비

- 새뜰마을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문화격차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적 욕구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보았음
- 평가 결과, 문화격차 지표는 전체 평균 73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가운데, M마을(100점), O마을(93.8점), A마을, J마을, K마을(각 87.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C마을(50점), P마을(25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M마을'의 경우,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새뜰마을 사업이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됨

| 문화격차(평균)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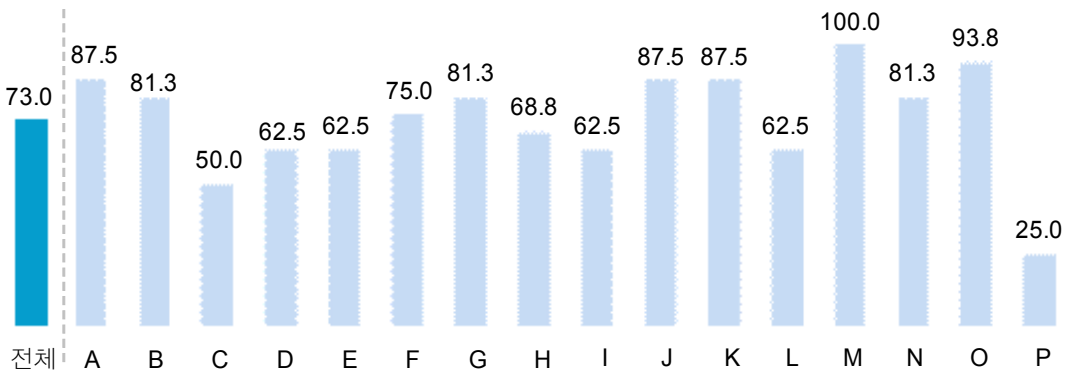

[그림 4-20]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격차(평균)

○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B 표현의 자유

B1 주민참여/소통 -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 주민 다수가 인지하는가?(가구 수 기준)
B2 주민 욕구 표현/수용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는가?

▶ '표현의 자유' 지표 전체 평균 76.8점 - 다소 긍정적
- H마을이 평균 95.8점으로 '주민참여/소통', '주민 욕구 표현/수용' 모두 매우 긍정적 결과
- K마을은 평균 45.8점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새뜰마을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지표로 '표현의 자유'를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관심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주민의 자유로운 욕구 표현과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적 환경이 마련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 평가 결과, 표현의 자유 지표는 전체 평균 76.8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가운데, H마을(95.8점), M마을, P마을(각 93.8점), A마을(91.7점), B마을(85.4점)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K마을(45.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새뜰마을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욕구 표현이 발현될 수 있는 방안이 권고되어야 함을 나타남
- 'H마을'을 비롯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마을들은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 사업설명회 참여도, 관심도가 높으며 사업 과정에서의 욕구 표현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K마을'의 경우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 받아 주민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표현의 자유(평균)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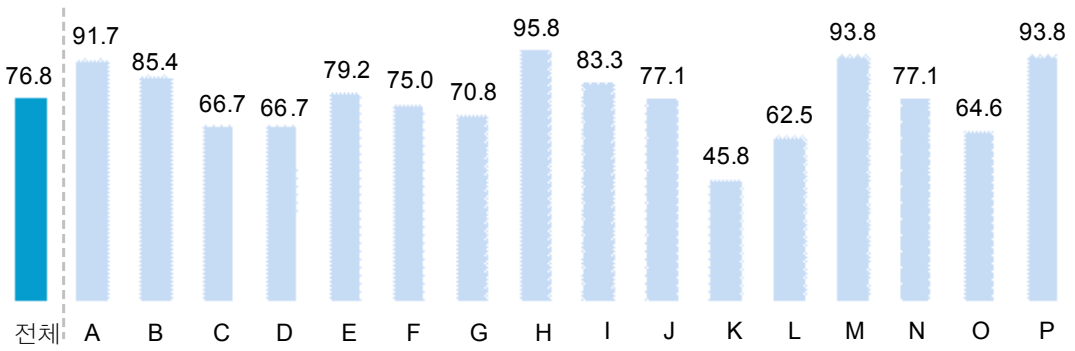

[그림 4-21]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표현의 자유(평균)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C 문화다양성

C1 마을 역사문화 활용- 마을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발굴하여 마을비전을 세우고 있는가?
C2 다양한 문화 수용 - 마을 외지인·소수자·마을청년층의 참여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활동 계획이 있는가?
C3 다양한 장르 활동 - 마을의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 계획이 하나의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는가?

▶ '문화다양성' 지표 전체 평균 53.9점 – 보통
– E마을, F마을(각 100점)이 다양한 문화 수용을 위한 준비를 계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음
– K마을은 마을 고유의 사업 목표, 비전이 없으며 문화 다양성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전무함

– 본 연구에서 보는 거시적 차원의 '문화다양성'은 각 지역, 공동체, 주민의 정체성(마을 역사문화를 활용한 마을 비전)을 찾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미시적 차원의 '문화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에 계층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평가 결과, 문화다양성 지표는 전체 평균 53.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E마을, F마을(각 100점), M마을(91.7점), A마을(87.5점)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50점 미만인 마을도 N마을, G마을(33.3점), J마을(25점), L마을, O마을(각 4.2점), K마을(0점)으로 6개 마을로 큰 차이를 보여 문화적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는 '휴먼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마을별로 상이한 결과라고 분석됨

| 문화다양성(평균)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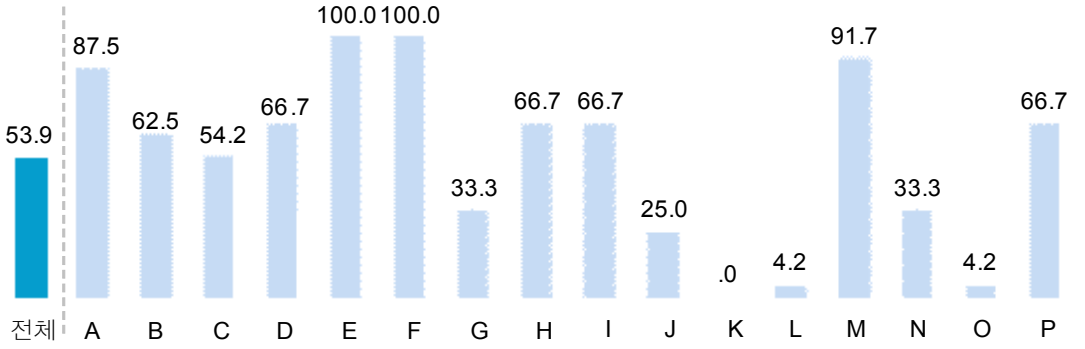

[그림 4-22]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평균)

□ 문화정체성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D 문화유산

D1 유형문화유산 - 마을의 유형문화유산(보호수, 담장, 계단, 마을길 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D2 무형문화유산 - 마을의 무형무화유산(유래, 전설 등)과 일상생활유산(전통기술, 전통음식 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 '문화유산' 지표 전체 평균 38.5점 - 약간 부정적
- F마을(100점)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주거 환경 개선 계획안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 평가
-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낮은 가운데, 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이 전혀 없는 마을이 4개
- 새뜰마을 사업은 주거 개선 위주로 설계되어 유무형문화유산(일상생활문화유산 등 포함) 보존·활용 계획에 부정적

- 새뜰마을 사업에 있어 '문화유산'은 국가나 지자체 지정 문화재에서 나아가 농어촌 마을 그 자체가 보존·활용되어야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며, 그 마을 속 주민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쌓여 있는 정주 공간, 마을 공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조화롭게 재생/개선하는 방향을 권고하고자 평가지표를 설계하였음
- 평가 결과, 문화유산 지표는 전체 평균 38.5점으로 6개 지표 중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D마을(100점), G마을(83.3점), E마을, F마을, P마을(각 66.7점)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그 외 11개 마을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새뜰마을 사업 안에서는 보존·활용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음

| 문화 유산(평균)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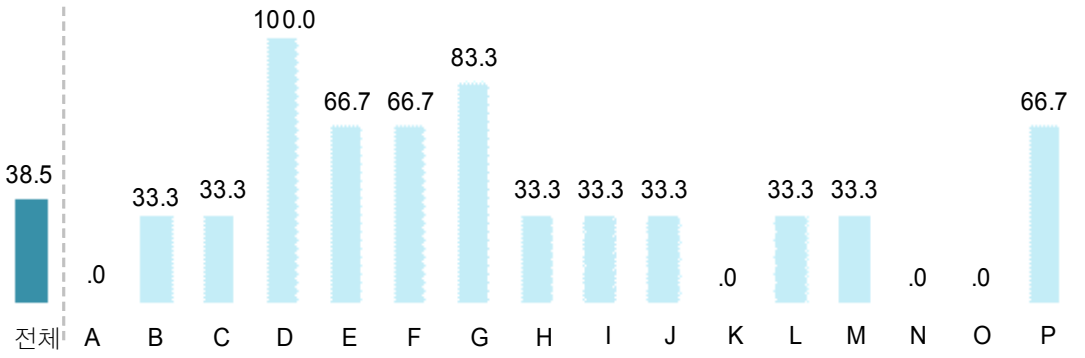

[그림 4-23]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유산(평균)

○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E 문화적 경관

E1 주거 경관 – 주택정비 과정에서 주택의 주거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거편의성/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는가?
E2 마을 경관 – 마을 경관 정비 과정에서 특색 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보존·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E3 생태 경관·생업 경관 – 마을의 생태환경, 자연경관 등 공간적 특성과 경제활동 환경을 보존·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 '문화적 경관' 지표 전체 평균 65.9점 – 약간 긍정적
– '문화적 경관'을 보존·활용에 대한 가치 인식 여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D마을, H마을, I마을, M마을(각 100점)은 경관 보존에 대한 가치 인식이 가장 높아 매우 긍정적 평가

– 앞선 '문화유산'과 '문화적 경관'은 차이는 '주민에 의해 재창조된 공간적 특징'으로서 '주거문화', '마을공동체', '경제활동' 등에 대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계획안이 짜여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 인프라 개선 정책인 새뜰마을 사업이 단순한 개발이 아닌 재생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자 함
– 평가 결과, 문화적 경관 지표는 전체 평균 65.9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문화적 경관(주거/마을/생태/생업 경관)'에 대한 정확한 가치 인식에 따라 보존·발굴 계획이 있는 마을은 4개(D마을, H마을, I마을, M마을)가 있는 반면, 주거/마을/생태/생업 경관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만을 목표로 하는 마을도 4개(A마을, B마을, K마을, N마을)로 나타났음

| 문화적 경관(평균)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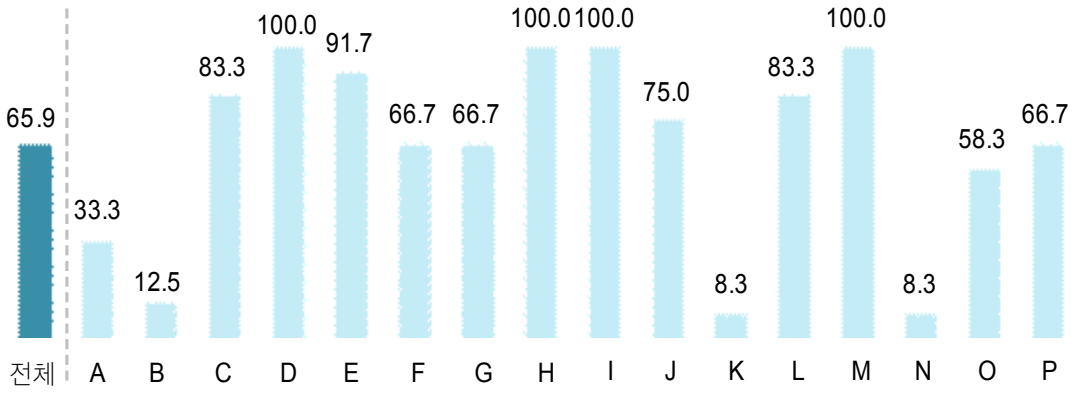

[그림 4-24]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문화적 경관(평균)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F 문화적 경관

F1 주민 조직/활동가 양성– 추진위원회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사업전반을 이끌어 갈 주민활동가 양성 계획이 있는가?
F2 주민 공동체성 확장 – 주민의 일상적인 공동체 프로그램/활동과 공동체 공간 구축 계획이 있는가?
F3 준주민자치적 사업 전개 – 주민참여형 공동체(협동조합, 법인 등)를 운영할 계획과 후속 연계 사업 방안이 있는가?
F4 민관거버넌스·파트너십– 주민/행정/외부전문가 협의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가?

▶ '공동체' 지표 전체 평균 49.5점 – 보통
–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준비 계획이 대체로 '보통 수준'
– M마을이 75.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음

–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민 참여들이 증가할수록 응집력이 강해지고, 추후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음
– 평가 결과, 공동체 지표는 M마을(75.0점), P마을(74.0점), L마을(67.2점) 순으로 주민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C마을(34.9점), O마을(26.4점), K마을(16.5점)으로 다소 부정적 평가를 받아 단순히 주거환경이나 인프라 등의 하드웨어적 정비 사업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함께 시도하는 계획 마련이 시급하였음

| 공동체(평균) |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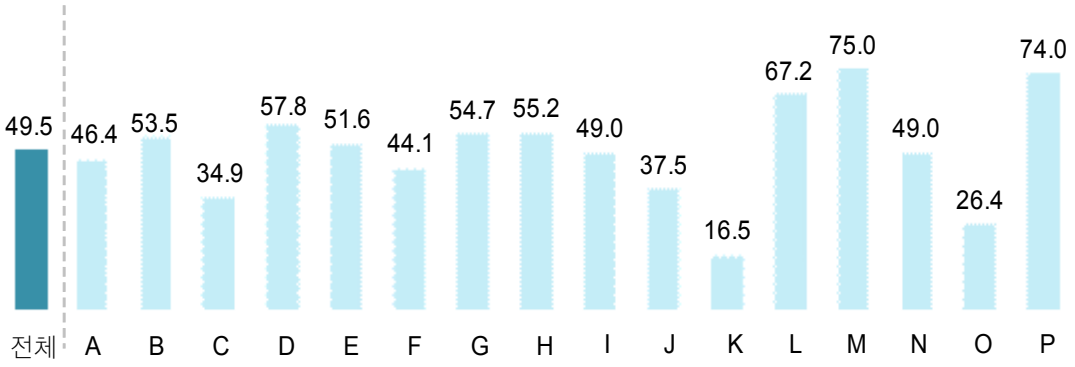

[그림 4-25] 새뜰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공동체(평균)

4) 평가 결과 종합

〈표 4-41〉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 – 평가 결과 종합

	C등급			B등급							A등급			S등급		
	K	N	O	B	A	L	C	J	G	P	I	F	H	D	E	M
종합점수	23.0	38.8	43.4	50.9	52.8	58.5	60.9	62.3	66.0	66.4	74.8	76.2	78.3	80.4	83.6	86.5
A 문화 격차	87.5	81.3	93.8	81.3	87.5	62.5	50.0	87.5	81.3	25.0	62.5	75.0	68.8	62.5	62.5	100
A1 취약 계층	75.0	62.5	87.5	62.5	75.0	25.0	.0	75.0	62.5	50.0	25.0	50.0	37.5	25.0	25.0	100
A2 문화욕구 조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100	100	100	100	100	100
B 표현의 자유	45.8	77.1	64.6	85.4	91.7	62.5	66.7	77.1	70.8	93.8	83.3	75.0	95.8	66.7	79.2	93.8
B1 주민참여 /소통	41.7	91.7	66.7	83.3	83.3	50.0	83.3	91.7	91.7	100	91.7	100	91.7	83.3	83.3	100
B2 욕구표현 /수용	50.0	62.5	62.5	87.5	100	75.0	50.0	62.5	50.0	87.5	75.0	50.0	100	50.0	75.0	87.5
C 문화 다양성	.0	33.3	4.2	62.5	87.5	4.2	54.2	25.0	33.3	66.7	66.7	100	66.7	66.7	100	91.7
C1 마을 비전	.0	.0	.0	.0	100	.0	100	.0	100	.0	.0	100	.0	100	100	100
C2 다양한 문화	.0	100	12.5	87.5	62.5	12.5	62.5	75.0	.0	100	100	100	100	100	100	75.0
C3 다양한 장르	.0	.0	.0	100	100	.0	.0	.0	.0	100	100	100	100	.0	100	100
D 문화 유산	.0	.0	.0	33.3	.0	33.3	33.3	33.3	83.3	66.7	33.3	66.7	33.3	100	66.7	33.3
D1 유형 문화유산	.0	.0	.0	.0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D2 무형문화 유산	.0	.0	.0	100	.0	100	.0	.0	100	.0	.0	100	.0	100	100	.0
E 문화적 경관	8.3	8.3	58.3	12.5	33.3	83.3	83.3	75.0	66.7	66.7	100	66.7	100	100	91.7	100

	C등급			B등급							A등급			S등급		
	K	N	O	B	A	L	C	J	G	P	I	F	H	D	E	M
E1 주거 경관	25.0	.0	100	.0	75.0	100	100	100	100	75.0	100	50.0	100	100	100	100
E2 마을 경관	.0	.0	50.0	.0	.0	100	100	100	5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E3 생태/ 생업경관	.0	25.0	25.0	37.5	25.0	50.0	50.0	25.0	50.0	75.0	100	50.0	100	100	75.0	100
F 공동체	16.5	49.0	26.4	53.5	46.4	67.2	34.9	37.5	54.7	74.0	49.0	44.1	55.2	57.8	51.6	75.0
F1 주민조직/ 활동가	22.2	66.7	22.2	55.6	66.7	66.7	66.7	33.3	66.7	66.7	66.7	22.2	66.7	66.7	66.7	66.7
F2 공동체성 확장	12.5	29.2	33.3	45.8	37.5	58.3	10.4	41.7	8.3	79.2	29.2	79.2	79.2	20.8	45.8	58.3
F3 준주민 자치적 사업	31.3	62.5	12.5	93.8	93.8	75.0	93.8	25.0	50.0	25.0	31.3	93.8	75.0	50.0	50.0	100
F4 민관 거버넌스	50.0	50.0	50.0	50.0	.0	.0	50.0	50.0	50.0	50.0	.0	50.0	100	50.0	.0	50.0

○ 새뜰마을 사업 마을 중 16개를 대상으로 문화영향 시범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마을을 S등급에서 C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 S등급 마을(100점~80점)은 총 3개 마을로 M마을(86.5점)이 가장 문화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되며, 그 다음은 E마을(83.6점), D마을(80.4점)순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그러나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은 M마을은 마을 내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E마을은 문화적 욕구 조사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 계획을 통해 활발한 주민 참여과 관심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D마을은 마을 내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 B등급(40점~69점, B/A/L/C/J/G/P마을)은 보통 수준이거나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마을들로 각각 미비한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특히 '문화유산', '공동체' 요인은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많아 이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소 부정적 영향이 예측되는 C등급(0점~39점)의 마을은 K마을(23.0점), N마을(38.8점), O마을(43.4점)으로 평가되었음. K마을의 경우, '문화다양성'이 발현되고 마을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마을 비전을 세우고, 마을 내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프로그램/활동을 계획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N마을과 O마을은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마을길, 계단, 담장, 보호수 등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주거/마을 경관에 대한 가치 인식도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이 권장될 수 있을 것임

- A등급(70점~79점, I, F, H마을)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새뜰마을 사업 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마을별 '문화적 요소 읽기'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5) 정책적 제언

□ 문화격차 관련

○ 사업 혜택 주민 중 취약계층 비중이 매우 높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국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이 가능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목적 충족
- 실제로 사업 지원 55개 마을이 농촌, 어촌, 산간오지, 특수지역 등에서 고령자 등 문화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문화적 욕구 부문' 파악 및 체계적 가이드라인 필요

- 욕구 파악 과정에서 정량적인 가옥 수리 의사 등과 함께, 문화프로그램, 문화공간 등 문화적 욕구 부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
- 문화 예산 비중에 대한 기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화적 활동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부문 관리를 위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필요

□ 표현의 자유 관련

○ 사업 참여과정의 주민 참여 및 주민양성

- 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 참여 창구에 대한 지침을 통해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주민교육, 리더양성 등 주민양성을 통해 사업이 주민 주도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 참여 주민의 폭 확대와 긴밀한 의사소통 구조 마련 필요

-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 주민 중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수 리더 중심이 아닌 주민 다수가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고 수렴하는 의사소통 구조 마련 필요

□ 문화 다양성 관련

○ 마을역사문화 보존과 지역문화 다양성에 기여

- 마을 고유의 역사, 유래 등이 보존되는데 기여
- 세대간 문화수용, 결혼이민자 문화 등 외지인 및 소수자 등 문화수용에도 기여

○ 주민간, 외지인 소통과 문화적 교류, 다양한 문화 장르 활동

- 세대간, 내부 주민간 소통 등을 통한 지역 문화 다양성도 고려 필요
  (예 :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 외지인(결혼 이민자, 귀농귀촌인 등)과의 소통 등을 통한 지역 문화 다양성도 고려 필요
  (예 : 마을알기 프로그램, 다문화/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 등)
- 마을 외부의 문화적 활동이 주입되는 것이 아닌, 마을 고유의 생활문화 등에 기반하고, 다양한 장르가 결합하는 방식의 문화 활동이 필요

□ 문화유산 관련

○ 유·무형 지역문화유산 보존

- 대체로 사업과정에서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음

○ 유·무형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과 일상문화, 생활문화의 재정립

- 유형문화 중 마을살이 문화로서 보호수, 담장, 계단, 마을길 등 정취가 있는 것, 근현대 산업유산 등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활용하려는 지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상문화, 생활문화 등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향후 지역문화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마을에서부터 콘텐츠 발굴/아카이브/전수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임

□ 문화적 경관 관련

○ 주거문화, 마을경관, 생태·생업경관 보존에 기여

- 지역의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인 주거문화, 마을경관, 생태·생업경관 보존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보존/활용 방식에 대한 건축적/디자인적 관점의 제시 필요

- 문화적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건축적/디자인적 관점을 제시하여, 사업 계획부터 실행까지 마을 고유의 문화적 경관의 의미 찾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 관련

○ 주민 조직화, 주민활동가 양성, 공동체성 증진, 주민참여형 공동체 기여

- 사업 과정 자체로도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관심을 환기함은 물론, 휴먼케어 사업 등을 통해 문화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체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함
- 주민 리더가 양성되고, 주민 중 일부가 주민활동가로서 양성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이는 곧 마을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비즈니스 모델 정립, 마을 공동사업 등 주민참여형 공동체 정립도 고려하고 있음

○ 주민참여형 / 지속가능한 공동체 계획

- 주민 조직이 자발성에 근거하여 사업을 참여하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추진위원회의 조직 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염두에 두어야 함
- 협동조합 등 다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 공동체 설계도 필요
-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파트너십을 구축하되, 계획에서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마을 계획으로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제4절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개별평가 결과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운상가의 재생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세운상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

- 서울의 도심 동서축으로 공중 보행데크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도심접근권, 조망권, 생태적 보행축을 형성
- 공공영역에서 보행데크 조성과 창의적 거점공간 마련을 통해 세운상가 군의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에 기여

○ 역사문화공간 광화문과 패션디자인 공간 동대문 사이에 낙후된 세운상가 공간을 활성화하여 서울의 도심에 도시활력을 불어넣어줌

- 서울의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동대문 일대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세운상가 군이 낙후되어 도심 활력의 확장 공간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
- 창의적 거점공간과 전자 기술문화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도심공간의 활력을 도모

○ 낙후된 산업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사업을 전개

- 세운상가 군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컴퓨터, 음향, 영상, 조명 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환경과 시설을 개선
- 사운드, 만화, 게임 등 창의적 거점공간 조성으로 젊은 세대가 세운상가를 많이 찾고, 보행데크 조성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주변 상권이 활성화

○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을 조성(문화예술거점공간, 세운전자박물관, 광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보행데크 공간 조성 사업과 함께 보행데크에 창의적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예술과 기술, 산업과 문화가 연합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지를 마련함
- 세운전자 박물관으로 세운상가의 오래된 역사와 기억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

○ 사업의 3대 목표는 아래 〈표 4-42〉와 같음

〈표 4-42〉 세운상가 도시재생의 3대 사업 목표

3대 목표		
보행환경 확충정비	경제활력 거점 조성	거버넌스 운영
○ 공공선도사업추진 - 초록띠 공원 용어 전환 및 데크 상하부 정비 -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연계-공중보행로 신설	○ 시민 관광객이 모이고 즐기며 함께하는 공간 마련 - 세운상가 데크 및 공중보행로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 경제활력을 견인할 다양한 프로그램운동 - 활성화를 위한 붐업 행사	○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활성화 계획 의견 수렴 - 소통방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체계 확보 - 다양한 주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

2) 현황 분석

□ 간략한 역사

○ 일제 때 - 소개공지(공터)

○ 해방 후 미군정기 - 좌판상의 광석라디오 제작판매 이후 전자제품이나 부품 판매가 성행

○ 한국전쟁 전후 - 미국 피엑스(PX)에서 유입된 라디오와 전축의 상거래

○ 1950~1960년대 - 독일제나 일제의 진공관식 라디오의 조립,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

○ 1968년 -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으로 이후 현대식 전자상가

○ 1970년 - 가전제품, 라디오, 오디오 조립 전자제품

○ 1980년 - 전자오락기, 개인용컴퓨터, 게임, 홈비디오, 음반, 가라오케

○ 1980년대 후반 - 용산전자상가로 이전 시작, 일부는 현재까지 잔존

□ 현재의 상태

○ 1987년 용산전자상가의 건립으로 세운상가 점의 이주에 따른 슬럼화 가속

○ 상가의 상관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미미했고, 상가 주민들은 저가의 임대료로 인해 간간히 버티는 수준임

○ 오세훈 전임시장의 세운상가 주변지역 개발 계획으로 철거 후 공원화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시장의 보존계획으로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됨

○ 서울시는 2015년 2월 24일 세운가동상가와 청계상가 사이 청계천에 보행교를 건설하고, 종묘앞 세운 초록띠공원부터 퇴계로 진양상가까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세운상가 재생프로젝트'를 발표함

○ 3층 보행데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종묘에서 남산까지 보행로가 조성되며 세운상가 군을 보존 및 재생으로 근대적 건축물을 지키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임

3) 사업내용

가. 사업 현황

□ 추진현황

○ 도시재생 관련 국제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안 진행(2016년 2월 완료)

○ 〈세운포럼〉(2014년 11월 출범. 11월에 완료)을 통한 정책담론 생산 및 문화예술 거점 공간 조성안 마련

○ 세운상가 관련 주민설명회. 국제심포지엄 개최(국제도시설계학회, 〈Beyond Big Plan〉)

○ 세운상가 거버넌스 관련 연구용역 중(11월에 완료 예정. 세운상가 주민들과의 현장 면접 인터뷰 진행)

○ 세운상가 산업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 중(12월에 완료 예정. 세운상가의 장기적인 산업활성화를 위한 연구)

○ 세운상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 논의 중 내용

○ 세운상가 연계 정책사업 현황

- 도시재생 관련 국제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안 진행
- 〈세운포럼〉(2014년 12월 출범)을 통한 정책담론 생산 및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안 마련
- 세운상가 과련 주민설명회, 국제심포지엄 개최(국제도시설계학회)
- 세운상가 산업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 중(세운상가의 장기적인 산업활성화를 위한 연구)
- 세운상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논의 중

○ 세운상가 재생 사업 진행 현황

- 도시재생 관련 국제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안 진행(2016년 2월 완료)
- 〈세운포럼〉(2014년 11월 출범. 11월에 완료)을 통한 정책담론 생산 및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안 마련
- 세운상가 관련 주민설명회. 국제심포지엄 개최(국제도시설계학회, 〈Beyond Big Plan〉)
- 세운상가 거버넌스 관련 연구용역 중(11월에 완료 예정. 세운상가 주민들과의 현장면접 인터뷰 진행)
- 세운상가 산업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 용역 중(12월에 완료 예정. 세운상가의 장기적인 산업활성화를 위한 연구)
- 세운상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 논의 중 내용

□ 추진일정

○ 2015년 6월 : 국제설계 현상공모 확정(이스케이프건축)

○ 2016년 2월 : 실시설계 안 확정

○ 2017년 2월 : 보행데크 공사 완료(세운상가가동 - 대림상가까지 1차 공사완료)

나. 사업 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대상

○ 세운상가 상가 군 주변 정비사업

- 1단계 사업으로 세운상가에서 청계 대림 상가 군에 이르는 3층 보행데크 조성사업

○ 보행데크에 거점 창의적 공간 조성

- 3층 보행데크의 상하부 공간에 다양한 거점공간을 조성

○ 초록띠 공원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

- 현재 도시농업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초록띠 공원을 복합 문화광장으로 조성.

○ 청계천 주변 보행데크 연결 공사

- 세운상가 가동과 청계상가를 연계하는 보행데크 공사로 청계천 일대에 도시 조망권을 확보

○ 보행환경 확충 및 정비

- 1단계 공사로 세운상가 군 가동에서 청계 대림상가 군에 이르는 3층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사

□ 추진체계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중심의 협업체계

- 세운상가 도심재생 사업은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역사도심재생과)가 총괄하고 있지만, 경제진흥본부, 문화관광본부 등에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진행 중에 있음

○ 상가주민과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 체계로 사업을 진행

- 세운상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17회 진행. (초상화 인터뷰, 세운상가는 대학, 입주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주민협의체 운영)
- 문화예술, 도시계획, 제작문화 분야 전문가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세운포럼)
- 상가주민들이 세운상가 도지재생사업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세운강가 광장 1층 상가주민, 대림상가군 을지로4가 역과 연계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의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추진방향

○ 보행데크 네트워크 확장

- 걷는 도시 실현
- 보행데크 공사의 조기 실현

○ 거점공간 운영 전략마련
- 전자박물관, 제작문화, 문화콘텐츠 조성 등 예술, 문화, 기술이 접목하는 차별화된 문화거점 공간을 마련

○ 전략적 추진체계 마련
- 세운상가의 다양한 의견들과 계획들을 하나로 총합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개발
- 다양하지만,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

○ 주민중심의 세운상가 재생 방향
- 주체형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중심의 세운상가 조성안 마련
- 서울시, 상가주민, 문화예술인 등이 상생할 수 있는 협약안을 마련
- 창의적인 거점공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협약 마련

□ 세운상가 활성화 시민협의회 구성

○ 세운상가 재생사업 공사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소통
- 2016년 실시설계 계획 완료 후 2017년 6월까지 완공 시기 동안 서울시와 상가군 주민들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

○ 재생사업 공간 조성 후 거점공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2017년 6월 실시설계 공사 완료 후에 창의적 거점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 세운상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 세운상가 재생사업 종료 후에 예상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군 주민들과 세운상가 발전을 위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다. 세부 사업 내용

○ 공간 및 보행로 개선
- 청계천 복원 시 철거된 보행데크(세운상가(가동)~청계상가)를 공중보행교로 다시 연결, 세운·청계·대림상가의 노후한 보행데크 구간 보수보강, 데크하부는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입체 보행네트워크를 구축
  · 세운상가(가동)~청계상가 공중보행교는 청계천의 경관을 고려하여 미적 수려함과 기능이 담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결정할 예정
- 현재 도시 농업공간으로 이용중인 세운초록띠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면 개편

○ 초록띠 공원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
- 현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종묘 앞 초록띠 공원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휴식공간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

- 경사면 광장으로 세운상가 가동 끝 부분에 실내 공간이 조성되어 이 공간을 전시, 워크숍, 퍼포먼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그림 4-26] 초록띠 공원 조성안

○ 보행데크 내 창의적 거점공간을 마련 경제 활력 거점 조성

- 세운상가 가동은 전자박물관, 청계천 야외 보행데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청계상가는 제작문화 공간, 대림상가는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조성

〈표 4-43〉 보행데크 거점공간 조성안

분류	거점공간 A	거점공간 B	거점공간 C	거점공간 D
위치	세운상가 가동 보행데크	청계천 야외	청계상가 보행데크	대림상가 보행데크
분과	세운전자박물관	공용공간	제작문화	문화콘텐츠
구성	세운전자박물관: 기억저장소: 비즈니스 빅데이터 인 서울 (세운2층/1개)	스카이 뷰 다목적 휴식공간	제작문화 워크숍 공간 제작문화 테크 카페 제작문화 미니오피스	만화/일러스트/웹툰 스튜디오 게임창작 스튜디오 (대림2층/1개) 사운드 스튜디오 콘텐츠 쇼룸 (대림3층/1개)

○ 문화예술 프로그램 가동

- 빛초롱 축제 등 서울시 기존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시민·관광객이 모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 세운상가 입주 문화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예술복덕방, 개방회로, 800/40, 300/20 등 12개 입주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 · 지역주민 주도의 컨텐츠 개발 지원

○ 문화분야 성장 인프라 마련
- 창작자 지원서비스(공간임대), 문화공간(공연장, 갤러리 등)조성 등

○ 세운상가의 건축사적 가치, 탄생배경, 관련 문헌, 사진, 도면 등을 거점공간을 통해 도시 박물관 형태로 전시

○ 세운상가의 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창조산업 붐 유도
- 세운상가군 내 발생하는 공실을 도심산업 체험공간 및 전시실로 운영
- 세운상가군 내 발생하는 공실을 창업 지원 거점공간으로 구성하여 주변지역 산업 활성화의 촉매역할로 활용

○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비즈니스 서비스(컨설팅 등) 지원
- 첨단기술 및 트렌드 관련 교육·워크숍 실시 등

○ 소규모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고부가치 성장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융자지원, 교육 및 체험공간 확보

○ 자발적 정책참여 유도
- 세운상가 입주민 대상 공모를 통한 지원 → 인센티브 부여
- 거점공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 등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 생성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문화영향평가 지표

□ 문화기본권

○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또는 확대) 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의 문화자원 격차를 해소(또는 확대) 시킬 것인가?

○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주민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신장(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주민의 소통과 거버넌스를 신장(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문화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증진(또는 침해)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소수자들의 문화권리를 증진(또는 침해)시킬 것인가?

□ 문화정체성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문화유산을 보존(또는 훼손)할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또는 해체)할 것인가?

○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보존(또는 훼손)할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대상지역 경관을 새롭게 발전(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발전(또는 저해)시킬 것인가?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은 공동체의 관계성을 형성(또는 해체)할 것인가?

2) 문화영향평가 방법

○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세운상가 활성화계획을 단순화시켜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시정부 사업이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양태, 경로, 크기, 지속성 측면에서 고려함

○ 문화관련 인프라구축, 인력, 프로그램, 재정, 수요,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함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방법은 다음 〈표 4-44〉와 같음

〈표 4-44〉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개별평가 방법

평가 영역	내용
문헌연구	· 세운상가 학술연구자료 · 세운상가 관련 시각, 영상 자료 · 세운상가 관련 포럼 및 심포지엄 자료
정책자료 분석	· 세운상가 시정 정책 관련 자료(이명박, 오세훈 시장) · 세운상가 현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정책 자료 · 세운상가 도시재생 관련 연구용역 자료
현재 정책사업 분석	· 국제현상공모 설계안 · 세운포럼 최종 결과보고서 · 세운상가 거버넌스 연구 결과보고서 · 세운상가 산업활성화 컨설팅 연구보고서
현장연구조사	· 세운상가 현장방문(도시재생 공간 탐방, 상가주민 면담, 주요 전문가 인터뷰 등 진행)
설문조사	· 상가주민,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연구 전문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초점자 그룹 인터뷰	· 세운상가 도시재생 관련 주요 그룹 대상 FGI 실시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1) 문화기본권

가.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계획이 문화 관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계획이 문화 관람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프로그램 운영/시설, 프로그램 운영인력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가?

○ 공간확보

- 보행데크에 마련되는 활력거점사업은 세운상가 기존 산업군의 생태계 확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및 향유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함

○ 프로그램 운영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소통방'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사업초기부터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보 미비

- 세운포럼을 통해 사업 전반의 비전 및 절차를 고민하고 있으나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관 및 제도의 설계와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계획은 없음

□ 계획을 통해 정책대상자 또는 정책대상 중 취약계층(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수준(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교육경험률, 관람 또는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취약계층 문화향유수준 확보

- 문화 기반시설 접근성이 떨어졌던 곳의 취약계층도 기존 세운상가 산업현장과 인접한 문화시설(활력거점사업 및 보행데크 사업)로 인해 문화향유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계획에 정책대상자의 참여 기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정책대상자 참여 기제 명시

- 거버넌스 운영을 사업의 주요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업 초기부터 정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함
- 특히 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및 '소통방' 운영은 정책대상자의 참여에서 나아가 정책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 공청회 등 단순한 참여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음

□ 계획의 실현으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가?

○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음
- 반면, 거버넌스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계획에 정책대상자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의 확보,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프로그램 운영인력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는가?

○ 공간확보

- 활력거점사업을 통해 정책대상자를 위한 공간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정책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음

○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인력 확보 미비

- 앞의 문화격차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을 장기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 명시 및 제도화 부분,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예산규모 등의 장기적인 계획이 미비함

다.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방식의 보호 또는 형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 거버넌스 운영

- 거버넌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수용할 가능성을 보장함
- 반면 다양성의 이면인 문화적 표현방식을 둘러싼 갈등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되지 않았음

□ 계획이 소수집단 (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문화적 표현방식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가?

○ 보행데크 건설

- 개방성 및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이 형성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완만한 보행램프의 건설을 통해 장애인 등 도시 이동약자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 계획이 문화적 종다양성을 침해하거나 문화적 획일화와 관련된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가?

○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적 획일화 방지

- 다양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창구가 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소수 집단의 공간운영을 지양함

○ 활력거점사업을 통한 문화다양성 확보

- 기존 산업경관에 추가되는 문화시설들은 기존 산업공간이 갖는 단일한 도시풍경을 다양하게 하고, 이질적인 기능들을 문화를 통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풍경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2) 문화정체성

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계획으로 가치있는 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가?

○ 근대문화유산의 발전

-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도심내 기존 건물을 존치하고 발전시키는 본 사업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에 맞추어 진행됨

□ 계획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또는 창조적 계승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보행데크 건설

- 인접한 문화유산인 종묘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남산 녹지까지의 보행데크 건설은 기존 문화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확대하는 요소가 됨
- 또한 본 사업은 세운상가라는 근대 건축 유물을 시대적 맥락을 보존하며 바꾸는 문화환경 발전방안이기도 함

나.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으로 고유한 문화적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가?

○ 보행데크 건설 및 활력거점사업

- 사업으로 인해 세운상가의 기존 경관인 산업공간으로서의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과는 달라질 것이 예상됨
- 이는 앞의 문화환경 발전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항임. 따라서 기존 문화적 경관을 어디까지 훼손할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함

□ 계획이 대상지의 고유한 문화적 경관에 대한 보호 또는 형성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거버넌스 운영

- 기존 고유한 문화경관을 만들어왔던 주변 상인들 등의 정책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은 본 사업이 바꾸어갈 경관변화의 방향성 및 속도를 조절하고 재조정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계획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할 제도적 기제를 명시하고 있는가?

○ 거버넌스 운영

- 거버넌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나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할 제도적인 방식을 마련하고 있음

□ 계획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공동체에 미치는 사업의 혜택에 대한 종합적 그림 미비

- 보행데크, 활력거점사업 등 시 재정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투입되는 사업이 해당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큰 그림은 존재하지 않음
-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선된 공간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미비함

3) 정책적 제언

가. 긍정적 영향 제고 및 확산방안

□ 문화기본권의 측면

○ 시정책의 장소적 통합화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

- 낙후된 도심 중심지의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물리적 환경개선, 경제산업정책, 지역문화정책 등, 기존 분리된 정책으로 각각 수행되던 정책을 장소적으로 통합한 정책임
- 따라서 문화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보행데크 건설, 활력거점 조성, 거버넌스 운영은 개별 정책들이 포괄할 수 없었던 문화권 증진을 예상할 수 있음

○ 시정책 사업지의 확장

- 향후 활성화 종합계획의 대상지에의 포함 유무에 따라 지역주민 및 공간이용자들이 또 다른 문화적 환경 격차 등 기본권 증진의 새로운 장애를 느낄 수 있음. 이 경우 대상지의 확장이 아닌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문화정체성 측면

○ 시정부의 도심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장소접근

- 종묘, 남산, 산업화 유산 등 현 세운상가가 갖는 장소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체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며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강조됨

- 또한 거버넌스 운영은 향후 문화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짐

○ 시정책 참여자의 확장

- 해당지역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이용자 수가 확장함에 따라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 또한 기대될 수 있음

나. 부정적 영향 저감방안

□ 문화기본권의 측면

○ 사업이 기존 지역구조의 변화가 주는 충격

- 서울시의 계획은 지역활성화를 통해 많은 신규 행위자들의 유입을 목표로 함. 기존 공간 사용자의 문화환경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문화요소들이 유입되고, 이를 고려한 세부정책이 미진할 시 문화적 폭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
- 같은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은 기본권임과 동시에 이를 훈련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로 현재의 종합계획이 예상하는 시간의 범위에는 해결하기 힘들 수도 있음

○ 변화의 시간을 조절

- 변화가 필요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정책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
- 또한 장기간의 집행이 종종 보여주는 흐지부지한 사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예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

□ 문화정체성 측면

○ 서브컬처의 쇼핑몰화

- 세운상가라는 기존 문화유산 및 문화경간을 최대한 유지하는 현 계획은 보행데크 사업 등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에 치중한다면, 기존 산업유적(브라운 필드) 등을 활용한 스펙터클 중심의 새로운 유형의 쇼핑몰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
- 또한 도심에 위치한 사업대상지의 경우 풍부한 도시기반시설의 분포로 젠트리피케이션 및 기존 경제주체들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시정책의 거버넌스 운영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큼

○ 다양성과 보편성 확보

- 세입자, 비정규직 노동자, 노숙자 등 다양한 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보편성을 확보해야함
-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유지가 아니더라도 민간 개별 이익과 공공 이익을 조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세입자문제, 권리금문제, 등등)을 새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5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개별평가 결과

1. 사업내용 및 현황 분석

1)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임

○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공동마케팅 지원, 상인대학, 상인조직 역량강화,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전통시장 ICT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골목형시장 육성,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4-45〉와 같음

〈표 4-45〉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세부 사업 및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홍보 및 특화사업 등 마케팅 활동지원 (이벤트 및 경품행사, 공동쿠폰, 광고·홍보, 패션쇼, 특가판매 등 가능)
상인대학(점포대학)	· (상인대학) 경영 및 의식혁신, 상인조직 및 시장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핵점포 육성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상인조직 역량강화	· 전통시장 행정지원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채용 인건비 보조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시장 10곳, 상인 50명 이상 참가)
전통시장 ICT 육성	· 전통시장의 콘텐츠(시장·상품정보 등)와 ICT가 융합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 K-POP 등 한류공연·음식, 한국문화 체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필수 관광코스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해 장보기·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 상품개발, 진열개선(VMD), 핵점포 육성, 커뮤니티 조성 등 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 지원

출처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0호.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 사업의 목적 및 근거

○ 유명 관광지와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볼만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브랜드화 함

○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하여 세계인이 필수 관광코스로 찾을 수 있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함

○ 한국 고유전통·한류체험, 특성화거리 조성, 야시장 개설, 안내·통역·환전서비스, 사후 면세점 확대 등을 지원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황 분석

가. 전주 남부시장

□ 기초현황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전동 일대 약 2만 1,349㎡

○ 상인 현황

- 전주 남부시장 연령별·성별 상인 현황은 다음 〈표 4-46〉와 같음

〈표 4-46〉 전주 남부시장 연령별·성별 상인 현황

연 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종사자수	12	24	37	99	178	350	152	198	350
비율(%)	3	7	11	28	51	100	44	56	100

출처 : 전주시장상인회·전주시(2015), 전주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영업 현황

- 전주 남부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는 다음 〈표 4-47〉와 같음

〈표 4-47〉 전주 남부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백만 원)	46,550	47,160	47,870	55,505
일별 이용객수 (명)	4,200	4,495	4,944	5,930

출처 : 전주시장상인회·전주시(2015), 전주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품목 비율

- 전주 남부시장 품목별 점포수는 다음 〈표 4-48〉와 같음

〈표 4-48〉 전주 남부시장 품목별 점포수 현황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60	6	20	42	92	8	59	60	347
비율(%)	17	2	6	12	26	2	18	13	100

출처 : 전주시장상인회·전주시(2015), 전주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편의시설

- 아케이드 : 시장 전체에 아케이드를 설치함

[그림 4-27] 전주 남부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 화장실 : 시장내부에 공용화장실 6개소를 구비함(1개동 2013년 리모델링)

[그림 4-28] 전주 남부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 주차장 : 천변주차장 400대, 전용주차장 75대(2010년 조성)

[그림 4-29] 전주 남부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 시설 및 공간 현황

- 천변주차장 : 시장 천변의 주차장으로 현재 가요제를 진행하고 있음
- 전용주차장 : 신설된 주차장으로 소규모 행사가 가능함
- 시장 내 옥상 : 6동 건물의 옥상(하늘정원)에서 현재 문화행사를 진행 중임

[그림 4-30] 전주 남부시장 이벤트 활용가능 공간 시설현황

□ 특징

○ 조선시대 생성된 전통시장으로써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주변에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이 풍부함

○ 역사적 특징[170]

-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 3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남문 밖 장'이 오늘날 남부시장으로 일컬어짐
- 전주 남부시장은 1930년대 호남권 최대의 물류 집산지로, 1960~1970년대 전라북도의 상업·금융·교통의 중심적 기능을 유지했음

○ 지리적 특징

- 전주 시내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길 하나 사이에 위치함. 한옥마을 내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이 있으며, 호남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서양식 근대건축물 중 하나[171]로 사적 제288호인 전동성당이 위치함
- 조선시대 전주부성(全州府城)의 4대문 가운데 남문(南門)인 풍남문(보물 308호)[172]이 남부시장 동문 옆에 위치함
- 전주시내에 '전주객사', 복원 예정인 '전라감영터' 등의 문화재가 있음
- 이러한 시설과 자원들이 남부시장을 축으로 반경 1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이를 연계한 각종 탐방코스, 걷기 체험코스 등이 잘 구비되어 있음
- 차량 이동이 적은 외국인 도보 여행객들에게 좋은 여행 코스가 되고 있음

170) 남부시장 상인회 및 전주시
171)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전주 전동성당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840&cid=40942&categoryId=33543
172)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주 풍남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1696&cid=46656&categoryId=46656

○ 문화적 특징

- 전주는 조선시대 이래로 음식, 공예, 인쇄, 판소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왔으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 속에서도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해 왔음
- 전주는 한옥, 한지, 한소리, 한식 등 다양한 전통문화의 시너지효과로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여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됨. 전주시민들은 전주가 지난 천년동안 한국의 역사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에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시장 특화상품 및 서비스

- 청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운영 중인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청년층을 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장년층에 국한되어 있던 전통시장 방문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야시장'은 밤 시간대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옥상 하늘정원 공연장을 활용한 휴게공간 및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함
- 각종 이벤트 행사 기획 및 운영으로 차별화된 시장문화서비스를 제공함

나. 청주 육거리 시장·성안길 상점가

□ 기초현황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7번지 42

○ 상인 현황

- 청주 육거리시장 연령별·성별 상인 현황은 다음 〈표 4-49〉와 같음

〈표 4-49〉 청주 육거리시장 연령별·성별 상인 현황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종사자수	32	164	328	2,262	492	3,278	2,131	1,147	3,278
비율(%)	1	5	10	69	15	100	65	35	100

출처 : 청주 육거리시장상인회·청주시(2015),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영업 현황

- 청주 육거리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는 다음 〈표 4-50〉과 같음

〈표 4-50〉 청주 육거리시장 연 매출 및 일별 이용객수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백만원)	254,504	254,675	255,012	255,543
일별 이용객수(명)	30,000~50,000	30,000~50,000	30,000~50,000	30,000~50,000

출처 : 청주 육거리시장상인회·청주시(2015),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청주 육거리 시장 품목 비율은 다음 〈표 4-51〉과 같음

〈표 4-51〉 청주 육거리시장 품목별 점포수 현황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420	120	300	84	36	120	60	60	1,200
비율(%)	35	10	25	7	3	10	5	5	100

출처 : 청주 육거리시장상인회·청주시(2015),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편의시설

- 아케이드 : 아케이드 시설 완비

[그림 4-31] 청주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시설현황

- 주차장 : 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1주차장 및 89대 규모의 제2주차장 건립

[그림 4-32] 청주 육거리시장 주차장 시설현황

- 고객용 화장실 : 고객용 화장실 확충

[그림 4-33] 청주 육거리시장 화장실 시설현황

□ 특징

○ 육거리 시장은 1,200여개의 점포와 노점이 모여 있는 대규모 상권으로 일일 5-6만 명이 찾는 청주의 대표 장터로 육거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음

○ 2009년 전국 최우수 시장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 청주국제공항에 '외국인 120시간 무비자 입국제도'가 적용되면서(2014.4.6) 청주공항의 수송실적이 증가할 전망[173]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가 큼

○ 역사적 특징[174]

- 1950년 이후에 형성된 청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임
- 육거리 시장의 시초는 조선 말기에 청주의 유일한 하천인 무심천변에 있었던 우시장(가축시장)과 인근에 농산물 및 땔나무 장사, 국밥집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으로 형성된 것임[175]
- 육거리시장은 구 석교동 파출소 일대에서 북진하여 청주시의 간선도로를 따라 발전해 왔음
- 주로 남북으로 발달했던 시장이 한국동란을 겪으면서 동서 축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바둑판식 시장형태를 취하게 되었음
- 간선도로를 따라 우리나라 최고(最古), 최대의 돌다리인 남석교가 묻혀 있음. 일제 강점기 '시가지 개정'으로 묻혔으며, 청주문화원과 청주 JC 등 시민단체가 해마다 시장 입구에서 남석교 모형을 만들어 '다리밟기' 놀이를 재현하고 있음

○ 문화적 특징

- 청주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한국 대표 도시임
- 청주시는 교육도시, 직지의 도시, 공예비엔날레 개최 도시로서의 문화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그 외에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 상당산성, 청주읍성 등 역사, 문화, 자연환경이 풍부함[176]
- 청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공장이었던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의 문화재생 및 도시재생의 사례를 해외에 알려 한류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문화벨트를 구성할 계획임

○ 성안길 상점가[177]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사직로에서 청남로 사이에 있는 도로
- 청주읍성의 안에 있는 큰 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함. 과거에는 청주읍성 안의 남문과 북문을 가로지르는 중심축이었음

173) 신익수, 「무비자 확대로 지방공항이 뜬다」, 매일경제, (2015.11.23.),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10309&year=2015
174)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거리 재래시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2836&cid=51895&categoryId=53959
175)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제공 자료
176)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http://www.culturecj.com/#!-/c170m
177)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성안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3803&cid=51895&categoryId=53958

- 개화기 이후 이 길을 따라 주요 관청과 은행, 상점들이 밀집하여 충북 광역행정과 금융의 중핵기능을 했고, 도심상업지구로 발전했음
- '성안길'이라는 명칭은 1990년대 '바른지명찾기운동'의 전개로 바뀐 명칭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본정통(本町通)이라는 일본식 지명으로 불렸음
- 청주읍성의 남문이 있던 국민은행 남문지점을 기점으로 북쪽구역과 남쪽구역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임
- 북쪽구역은 청원군청, 청주우체국, KT청주지사 등 행정기관과 각 은행의 청주지점 등 금융점포가 산재하여 있음. 또한 흥업백화점과 롯데영프라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청주, 패션의류상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이 밀집하여 도심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음
- 남쪽구역은 일찍이 5일장이 발달하여 거래가 활발했으며 석교동시장을 비롯한 육거리시장이 자리해 있음
- 1995년부터 매년 성안길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찾고 성안길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명소화 하기 위한 '성안길 축제'가 열리고 있음

3) 사업 내용

가. 사업 현황

□ 사업 추진 경과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관한 국정과제에 따라 2014년 10월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이 마련됨

○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월 골목형 및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신설함

○ 전통시장을 3대 유형(골목, 문화관광, 글로벌 명품)으로 차별화하고, 17년까지 375개 특성화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함[178)]

〈표 4-52〉 전통시장 특성화 유형 및 내용

시장 유형	특성화 내용	육성계획	
		'15	'17
골목	마케팅·상품진열·요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	70개	200개
문화관광	예술공방·도서관 등 시장에 작은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지역 예술인·주변 관광지 등 연계	87개	165개
글로벌명품	외국사례 및 외국인 대상 추적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한류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5개	10개

출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2015), 2015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178)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2015), 2015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 예산

○ 지원 규모 : 시장당 3년간 5,000백만 원

○ 지원 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기준 시장별 3년간 최대 25억 원 이내 지원

○ 지원 조건

- 국비기준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 총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2015년도 문화관광형시장(계속지원 포함)·골목형시장·상권활성화사업(계속지원)과 중복 지원(선정) 불가

○ 기타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시설, 편의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나. 사업 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유형

○ 시장 규모별 유형 :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규모별로 차등 지원함

□ 사업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상권활성화사업 이외의 사업 신청 가능)

○ 상인연합회(상인조직역량강화) 및 지회(지역상품전시회, 상인조직역량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인대표 및 상인

○ 2015년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표 4-53〉와 같음

〈표 4-53〉 2015년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대상

시장명	특징
서울남대문시장	6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으로,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가능성이 우수함
전주남부시장	한국적 문화가 녹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등의 관광지가 인접해 있고, 청년몰과 야시장 등 차별화된 시장인프라를 보유함
청주육거리시장	청주국제공항 등 교통과 숙박 인프라가 우수하며, 중국 관광객의 유입 증가 가능성이 우수함
제주동문시장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과 크루즈 입항지에 가까워 제주도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우수함
부산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등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볼거리·먹거리 자원이 우수함
대구서문시장	보부상 및 대동법과 연계한 스토리, 김광석길 등의 콘텐츠로 외국인 유입요인이 우수함

□ 사업 추진 체계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청이며, 총괄 관리 및 사업 운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함

○ 각 지자체의 관련부서는 해당 시장 상인회와 선정된 사업수행자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지원함

- 청주 육거리시장 사업단 :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연합회,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협력지사(사업수행자)
- 전주 남부시장 사업단 : 전주시청 지역경제과, 전주남부시장 상인회,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사업수행자)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4-34]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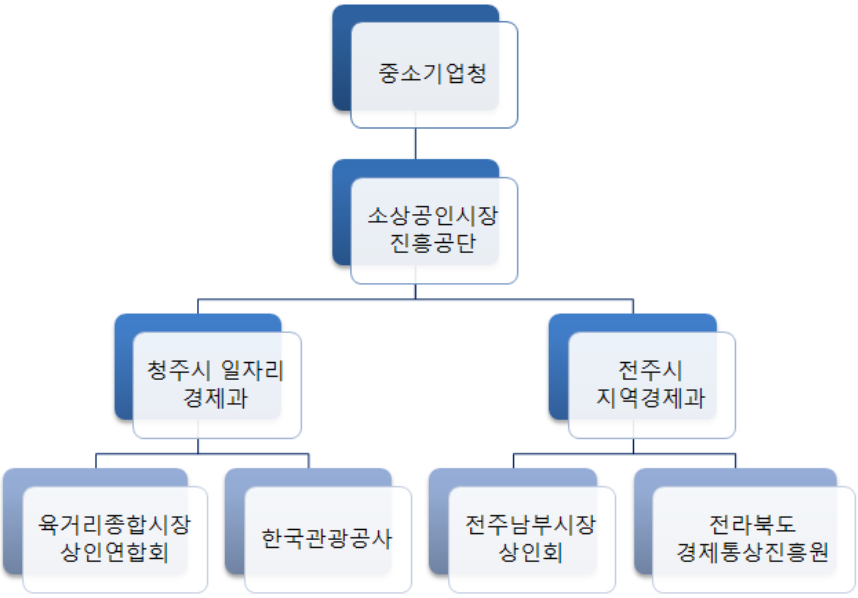

[그림 4-34]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전략

○ 전부 남부시장 사업 추진 전략

- 주변의 다양한 전통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가장 한국적인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함
- 맛이 있는 시장 : 전주의 한식문화를 접목한 남부시장의 먹을거리를 이용해 글로벌 명품 맛 시장으로 육성함
- 멋이 있는 시장 :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각종 전통테마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남부시장 인근 전통문화(한옥마을 등)와 연계하여 세계 속에 한국의 멋을 알림
- 흥이 있는 시장 : 외국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및 도입으로 외국인이 오고 싶은 전통시장, 다시 찾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함
- 사람 오는 시장 :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문화와 관련한 체험, 안내 및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함.
- 글로벌 명품 상인기획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시장의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인 상인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상인을 육성하며, 시장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은 다음 [그림 4-35]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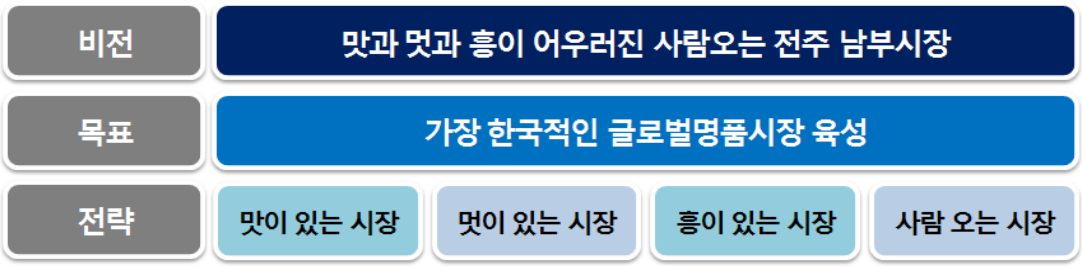

[그림 4-35]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

출처 :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청주 육거리시장 사업 추진 전략

-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함. 시장 자체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명소화하고 더 나아가 청주시 지역의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관광 부문과 전통 시장, 지역 산업간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목표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축제기획, 상인 역량강화, 마켓투어, 종합체험장 조성, 환경디자인 등의 사업을 전략별로 제시함
-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략은 다음 [그림 4-3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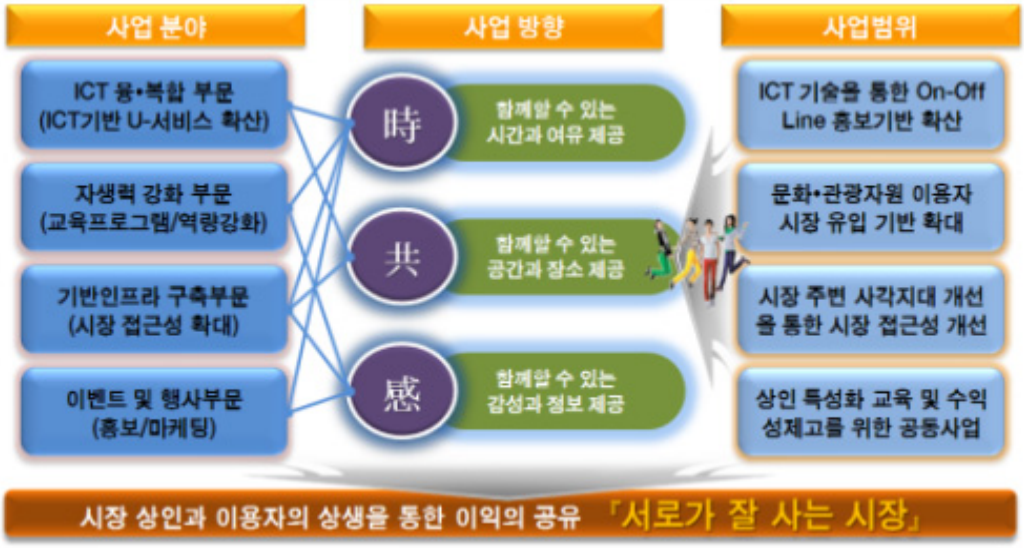

[그림 4-36]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추진전략

출처 :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추진 절차

○ 신청

- 시·군·구청장이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에 신청함(시·도지사는 전통시장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2개 이내 시장 추천)

○ 집행 및 관리

- 지자체에서 지원체계 및 조직도를 구상하여 작성함
- 관련부서 지원TF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유·무형의 결과물을 지자체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함

○ 사업수행자(전문업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는 시장 선정 이후 별도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함

다. 세부 사업 내용[179)]

○ 한국 문화와 연계된 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 개발

- 공연·체험 프로그램 : K-POP 스타 초청공연, 국악한마당, 전통혼례식, 도자기 체험, 한복 입기, 송편 만들기, 떡 메치기, 연날리기 등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17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emas.or.kr/web/SUP01/SUP0113/SUP011306.kmdc)

-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상품 개발 : 전통 공예품이나 특산품, 화장품, 액세서리, 안경, 뷰티, 전통주, 먹거리 등을 상품화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글로벌 브랜드로 개발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외국인 대상 여행상품 개발
-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 개발, 먹거리 홍보 강화

○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
- 외국인 대상 가이드 및 통역 배치, 상인대상 외국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 환경 조성
- 사후면세점, 종합관광안내센터, 환전소 등 쇼핑환경 조성

○ 글로벌 홍보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해외유명 전통시장과 MOU 체결, Know-How공유, 상품 교류전 추진
- 외국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 주요 호텔 및 관광지에 홍보 리플릿 배치 등 글로벌 홍보 추진

○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은 다음 〈표 4-54〉와 같음

〈표 4-54〉 전주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세부 사업 계획

	사업 구분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
글로벌 상품 /서비스 개발사업	K-food 개발 프로젝트	• 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한류음식 개발 : 아이디어 공모전, 경연대회 개최, 품평회, 사업화 모색 • 먹거리 투어 코스 개발
	야시장 확대 운영	• 야시장 매대 충원 및 프로그램 다변화 : 유휴 공간 활용, 문화 체험프로그램, 공연(한 밤의 콘서트 등)
	문화관광 융합상품 개발	• 시장 내 공예촌 조성 : 예술과 함께하는 시장 이미지 조성, 남문입구 가점포 10여 개 운영 • 스토리 텔링을 활용해 한옥마을, 청년몰, 전주 남부시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글로벌 마케팅/ 홍보사업	시장 이벤트 개발	• 버스킹, 공연, 한복패션쇼, 드로잉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상인 자생력 증대	• 상인교육을 통한 시장의 퀄리티 및 자생력 강화
	SNS 홍보단 운영	• 시장 정보 및 소식 제공 : 시장 및 상인의 스토리 발굴, 지역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공('우리동네 뉴스'), 시민기자 및 서포터즈 운영(SNS 및 유튜브)
디자인/ ICT융합 사업	쇼핑편의 제공	• 점포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선물 배달서비스 운영
	시장 ICT 융합	• 키오스크 제작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시장역사 및 정보제공, 시장홍보 콘텐츠 영상 UCC 공모(시민참여 유도)
기반설비사업	컬쳐 스페이스 조성	• 문화 공연을 위한 공간 조성 : 하늘공원 리모델링 • 예술 공간 조성 : 천변 벽화거리, 예술작품 전시 등 • 상인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
	안내 유도시설 설치	• 시장의 정체성을 반영한 안내 유도시설 설치 : 풍남문 등과 같은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디자인 • 시각적인 환경개선 및 휴식 공간 조성

○ 청주 육거리시장·성안길 상점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은 다음 〈표 4-55〉와 같음

〈표 4-55〉 청주 육거리시장·성안길 육성사업 세부 사업 계획

	사업구분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
글로벌 상품 /서비스 개발사업	명품시장 종합 육성계획 수립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수용태세, 홍보마케팅, 중장기 전략
	대표상품 및 스토리텔링 발굴	• 대표상품 홍보를 위한 스토리텔링 발굴 •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장이미지 구축 :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컨셉 구상 • 시장 내 선호도를 고려한 대표상품 개발
	글로벌 명품시장거리 조성	• 특성화 zone 구성(6개) – 영화의 거리(영화 이야기 등) – 예술문화의 거리(예술조각, 꽃, 時 등) – 젊음의 거리(시민참여 플리마켓, 거리공연 등) – 글로벌 체험 거리(다문화 체험공간 등) – 골목갤러리 거리 – 먹자골목 거리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명품시장 아카데미 과정, 글로벌 명품시장 청년상인 교육 과정, 모바일 서비스 교육
글로벌 마케팅 / 홍보사업	홍보/ 판촉 마케팅	• 시장의 역사, 문화, 상품, 쇼핑 정보 제공 • 시장정보 및 행사안내, 위치, 관광정보 제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 여행사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체험 관광 상품 운영 • 청주공항 및 오송역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글로벌 페스티벌 및 행사	• 시장의 역사, 문화를 고려한 시장축제 기획 : 참여형 축제 기획, 창작요리 경연대회 개최, '청주 맵핑 페스티벌' 개최
디자인/ ICT융합 사업	명품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 시장의 특색을 반영하는 공동브랜드 네이밍 개발 , BI 디자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상품군별 패키지 개발
	스마트존 조성 및 서비스 지원	• 시장내 무료 와이파이 설치
	SNS 및 웹기반 홍보	• 파워블로거 기자단 팸투어(대학생, 주부), 글로벌 서포터즈 시장투어(외국인 유학생, 원어민 강사) : SNS, 유튜브 활용 홍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스마트폰 및 테블릿 등 모바일 기기용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모바일 콘텐츠 개발(시장정보, 커뮤니티 공간, 이벤트 참여)
기반설비사업	글로벌 문화 시설물 설치	• 시장 고유의 상징물 설치, 아트시설 및 포토존 조성
	관광수용태세개선	• 시장 조명라인 구축 • 시장 이미지 개선 • 관광안내소 리뉴얼 • 안내 사인물 디자인 •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

○ 전주 남부시장(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일대

○ 청주 육거리시장(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일대

□ 대상에 따른 범위

○ 시장 상인 및 상인회

○ 내국인 및 외국인 시장 방문객

□ 내용에 따른 범위

○ 각 시장의 사업 계획

○ 각 평가요소에 따른 문화적 영향의 경로, 양태, 크기, 지속성에 대하여 평가함

2) 평가지표

○ 문화영향평가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표의 특징을 살려서 검토함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특성에 맞는 개별 세부 평가지표를 충분히 논의함

○ 그 결과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대한 평가지표와 세부지표를 개발했음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표 4-56〉와 같음

〈표 4-56〉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의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화 공간,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소외계층 배려
		문화 전문인력 확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주민 창작프로그램 운영
		주민 창작활동의 확산
		콘텐츠개발에 다양한 참여 기회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교류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거버넌스 전개
		공간, 환경의 다양화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유·무형 고유문화콘텐츠 반영
		사업 활동 확산에 따른 고유문화콘텐츠 보전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의 보전
		인문경관의 보전
		문화경관의 보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주민, 이해관계자의 참여
		해당 사업의 가치증진
		공동체 구성원 개인 삶의 질 제고

가. 문화기본권

□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현 정책(계획)이 대상지역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또는 확대)시킬 것인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킬 것인지에 대해 평가함

- 이를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시설·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방안, 문화공간의 접근성 제고와 문화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와 배치를 세부 평가지표로 구분함

□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현 정책(계획)이 대상지역 주민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 또는 저해하는지에 대해 평가함

- 주민 창작프로그램의 운영과 주민 창작활동의 확산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세부지표로 구분함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현 정책(계획)이 대상지역의 문화다양성 증진 또는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함

- 이를 위해 국제 문화교류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거버넌스 전개, 공간·환경의 다양화를 세부지표로 구분함

나. 문화정체성

□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현 정책(계획)이 대상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는지 또는 현 정책(계획)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유·무형의 고유 문화콘텐츠 반영, 사업 확산에 따른 고유문화콘텐츠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지표로 평가함

□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 현 정책(계획)이 대상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보존 및 발전시킬 것인가 또는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

- 이를 위해 자연경관의 보전, 인문경관의 보전, 문화경관의 보전을 세부 평가지표로 구분해 평가함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현 정책(계획)이 대상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 또는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함

- 이를 위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 참여유무, 해당 사업의 가치증진, 공동체 구성원 개인 삶의 질 제고를 세부 평가지표로 제시함

3) 평가 방법

□ 문헌조사

○ 문화영향평가의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검토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의 평가 목표와 방향성 도출

- 중소기업청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의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찾고자 함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시장별 사업실행계획 이해

- 각 시장별(전주 남부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사업단의 세부사업 계획서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운영계획으로 예상되는 문화적 파급력과 영향을 측정·평가하고자 함

○ 문헌조사 개요는 다음 〈표 4-57〉과 같음

〈표 4-57〉 문헌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5년 8월 21일~11월10일
조사대상	- 선행연구 자료 및 보고서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과업지시서(중소기업청) - 시장별(전주 남부시장/청주 육거리시장) 사업계획서
조사방법	스코핑(scoping)을 통해 사업이 지니고 있는 특성 및 이 사업이 미칠 영향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항목 및 평가의 공간적·시간적·대안의 범위 등을 설정함.

□ 현장방문조사

○ 문화 시설 및 현장 확인 : 대상 시장의 문화시설 유무와 크기, 상태 등을 점검하고 확인함

○ 시장 주변 환경 확인 : 시장의 위치나 환경, 주변 환경의 문화적 특성을 확인함

○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 시장 내 문화프로그램의 유무 및 운영 실태 확인

○ 조사개요는 다음 〈표 4-58〉과 같음

〈표 4-58〉 현장 방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5년 10월 21일~11월10일
조사대상	-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주변의 문화환경 - 청주 육거리시장 내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주변의 문화환경
조사방법	현장(전주 남부시장과 청주 육거리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크리스트 목록을 중심으로 점검 및 확인함

□ 인터뷰

○ 면접조사는 대상 시장 별 각 1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장 별로 상인 7명, 지자체와 사업수행단체의 담당자 2명, 일반 방문객 6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담조사를 진행함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개인 심층면접조사법(Personal In-depth Interview)을 활용하여 실행함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현재의 시장 환경 파악(문화인지도 포함),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기대효과 확인

○ 조사개요는 다음 〈표 4-59〉와 같음

〈표 4-59〉 인터뷰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5년 9월 21일~11월10일		
조사대상	구분	청주 육거리시장	전주 남부시장	합계
	상인	7명	7명 (상인회장, 청년몰 2명, 야시장 2명, 남부시장 상인 2명)	14명
	지자체	1명 (담당 과장)	1명 (담당 과장)	2명
	사업단	1명 (한국관광공사)	1명 (전북경제통상진흥원)	2명
	방문객	6명	6명	12명
	총계	15명	15명	30명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개인 심층면접조사법(Personal In-depth Interview)을 활용하여 실행함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시장별로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설문조사 대상은 상인 30명, 내국인 방문객 50명, 외국인 방문객 20명으로 조사원이 1대 1로 개별 조사를 진행함

○ 대상에 따라 상인, 지역주민, 고객 등으로 구분해 다수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함. 또한 외국인과 내국인을 표본으로 설정해 시장 인지도 및 현재 상황,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알아봄

○ 설문지는 시장의 이미지 및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시장 내 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시장 내 문화관련 만족도 조사,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조사로 구성됨

○ 설문조사 대상인원은 다음 〈표 4-60〉과 같음

〈표 4-60〉 설문조사 대상인원

구분		청주 육거리시장	전주 남부시장	합계
상인		30명	30명(청년몰 상인 15명 포함)	60명
방문객	내국인	50명	50명	100명
	외국인	20명	20명	40명
총계		100명	100명	200명

○ 설문 문항은 다음 〈표 4-61〉과 같음

〈표 4-61〉 방문객 및 시장상인 대상 설문문항

1. 귀하는 전주 남부시장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편리하다 ② 분위기가 젊다
③ 먹거리가 많다 ④ 시설이 낙후됐다
⑤ 전통적인 미(美)가 있다 ⑥ 기타( )

2. 귀하는 전주 남부시장에서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귀하가 전주 남부시장에서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어떤 문화활동에 참여하십니까?

① 음악 ② 국악
③ 미술 ④ 공예
⑤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⑥ 기타( )

〈시장상인용〉

3. 귀하는 전주 남부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귀하는 전주 남부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어느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① 지인 소개 ② 인터넷
③ TV광고 ④ 거리 현수막
⑤ 상인 소개 ⑥ 기타( )

〈방문객용〉
1-1. 귀하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귀하는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귀하가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을 알고 계시다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① 이색적이다　　② 글로벌적이다
③ 저렴하다　　④ 패기있고 열정적이다
⑤ 활기차다　　⑥ 기타(　　)

항목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장의 문화인식	1. 문화시설(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전통재래시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자랑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이용하는 지역사람들끼리 서로 아끼며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시장의 문화만족도	1. 문화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시설(공간)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공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행사(문화프로그램 포함)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적 끼'를 잘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보기 중 두 가지 선택)	〈보기〉문화공간/문화프로그램/청년점포/야시장/문화기획자/주차장/통역/안내 도우미/편의시설/휴게시설/노래자랑 대회/기타				
	6. 귀하는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보기 중 두 가지 선택)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기대효과	1.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된 후 문화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더 이용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글로벌 명품시장사업으로 문화시설(공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시장 내에서 문화프로그램의 참여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글로벌 명품시장사업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일대에 글로벌 문화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술형 문항)	6. 전통문화의 보존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글로벌 명품시장사업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글로벌 명품시장사업으로 지역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앞으로 더 필요한 문화시설(공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귀하는 앞으로 더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전통시장에서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전주남부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이 되면서 문화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1) 지표별 평가결과

가. 문화기본권

(1)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문화 공간, 프로그램의 적정 운영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역사문화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를 주민들이 골고루 향유하도록 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특히 연구 대상지역에서는 각종 문화공간을 개발하고, 문화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였음

-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과 초기단계로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이 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까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른 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주 남부시장 : 컬쳐 스페이스 조성계획 수립, 기존 청년몰이나 하늘공원을 확대 또는 주변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운영함. 한류음식 개발, 야시장의 문화프로그램,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청주 육거리시장 : 명품거리 조성(영화의 거리, 예술문화거리, 젊음의 거리, 글로벌 체험거리, 골목갤러리 거리) 등의 사업을 계획함. 심미성 있는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트릭아트, 핸드프린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문화소외계층 배려

○ 전통시장 소비층은 문화생활의 여유가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격차해소 대상 계층들이므로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은 문화소비 격차해소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여지가 있음

- 문화공간으로 마련된 시장 내 공간이나 시설도 접근이 어렵고,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찾기 쉽지 않음

□ 문화 전문인력 확보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은 사업의 특성이 중층적이므로 글로벌전문가와 문화전문가가 함께 필요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감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담당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음

(2)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주민 창작프로그램 운영

○ 설문조사 결과 문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전주 19%, 청주 5.7%)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각종 유사프로그램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창작프로그램의 참여와 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참여하는 활동의 종류는 시장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전주의 경우는 기타 문화활동(26.7%), 음악, 국악, 공예가 각각 20%임. 청주는 기타 문화활동 66.7%, 국악과 미술이 각각 16.7%로 나타남

□ 주민 창작활동의 확산

○ 지역문화를 표현하는 데 활용되는 문화자원은 역사적 건조물, 유·무형의 문화유산, 전래동화나 각종 설화, 역사인물 등으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함

○ 지역의 표현은 글로벌 경향을 지니며, 융합적인 자원 활용으로 융합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음. 특히 장르와 장르의 융합, 전통과 현대의 융합, 동서양 예술의 융합, 관계자들의 인적융합 등 다양한 융합으로 다양하고 멋있게 이뤄짐

- 조사 결과 지역전통예능이나 전통공예품을 활용하는 지역 활성화 이벤트, 페스티벌 및 전시·판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 콘텐츠 개발에 다양한 참여 기회

○ 글로벌 명품시장에서 융합적인 방식의 표현의 자유는 효과적이며, 해당 지역들이 이점을 인식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명품시장에서 가치융합은 수익성과 문화성의 조화로운 표현, 전통성과 미래성의 조화로 다양하게 열려 있음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이미지를 변화 또는 조성해 나감

○ 콘텐츠 개발에 참여 기회 제공과 동시에 홍보 및 가치 확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최근 값싼 해외 유사상품 판매로 지역 내수를 목표로 하던 전통문화상품들의 이미지가 동반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문화교류 지원프로그램

○ 글로벌 명품시장의 정책이슈 중에서 문화다양성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글로벌 문화거버넌스 전개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글로벌 문화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수단이 부족함

○ 특히 글로벌 문화다양성 추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교류, 지원예산, 전문가,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미흡하게 설계됨

○ 그러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 문화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소수집단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는 없음

□ 공간, 환경의 다양화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련 문화공간을 넓히고 문화적인 환경을 다양하게 하는 데 기여함

- 글로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이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보임. 사업 초창기에는 글로벌 환경인식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념이나 의지가 빈약하지만, 재정지원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늘려가고 문화적 종다양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나. 문화정체성

(1)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유·무형 고유문화콘텐츠 반영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고유콘텐츠의 명맥을 이어오고 이를 글로벌 마케팅으로 연결하면서 정체성을 확산 시키는데 기여함

□ 사업 활동 확산에 따른 고유문화콘텐츠 보전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인구밀집 공간으로써 문화유산 요소가 많고 지역 문화유산 보존 역할이 큼

- 생활 속에서 내려오는 정신문화, 무형 문화 활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배경으로 발생해 내려오므로, 시장공간의 문화유산 역할이 중요함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서 수입공예품이 판매되면서 유산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2)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의 보전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은 대개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시 근교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는 않음. 다만,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심재개발을 추진하는 일이 생기면 진행 과정에서 자연전원경관을 해칠 수는 있음

□ 인문 경관의 보전

○ 글로벌 명품시장의 발달은 서구문물이 들어오던 개항기 도시 시장부의 인문경관과 조화롭게 발달해 옴

○ 지역의 인문경관은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에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문화 경관의 보전

○ 문화경관은 도시의 고유디자인 등이 반영되어 전체로서 조화롭게 구성되어 기능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전원과 인문적 경관, 문화적 경관을 포함함

○ 글로벌 명품시장은 인구유입 공간이므로 문화적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큼

(3)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참여기회를 늘려가고 있으나, 주민이해 관련자들의 참여를 억제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균형적 참여를 유발할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공동체 주민,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따라 문화적 소통이 활발해짐. 이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그 안에서 이뤄지는 문화 활동을 해외에 소개하고, 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의 문화역사의 깊이를 이해시키는 일종의 국제교류 활동이므로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만들어냄

○ 조악한 프로그램일 경우는 오히려 소통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 이러한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음

□ 해당 사업의 가치증진

○ 글로벌 명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 관심은 크며,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어 가치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함

○ 공동체 활동이 해당사업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흐릿하게 할 우려는 없지 않음. 특히 경제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들은 사업목적에 직접 관련 없는 활동임.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참여자를 분산시킬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음

□ 공동체 구성원 개인 삶의 질 제고

○ 글로벌 활성화 사업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들은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갖거나 참여를 통해 마케팅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임

○ 연구 대상지역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지역의 성격 또는 사업진행 전략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찾기는 어려웠음

2) 정책적 제언

□ 문화마케팅 강화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의 서비스 대상인 일반시민, 문화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파악하고, 서비스와 품질을 개발 제공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함

○ 사업추진 시에 마케팅전문팀을 두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각종 마케팅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 일부 현재도 시행중인 시장이벤트를 개발하고, 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네트워크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SNS홍보단 운영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민의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의 문화만족도를 알아보는 조사를 하고 다른 지역이나 시장에서 현상과 가능성을 파악함

○ 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고객데이터를 작성하고, 직접 자료를 보내는 마케팅을 실시함.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들끼리 자금을 합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며, 전문 지식과 기술에 따라 전문마케팅으로 추진함

○ 시장의 거래상품이 아닌 글로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시켜야 함

□ 목표 고객대상으로 사업을 적극 홍보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은 뜻있는 문화중심 글로벌 관광객들이 지역문화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산하는데 분명히 장점이 있음

○ 의미 있는 방문객을 목표대상으로 하여 지역문화적 의미를 담은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묶어서 알리도록 함

○ 물건판매 이상의 문화판매 마케팅전략을 개발하여 글로벌 고객들에게 활용토록 함. 시장과 상인의 스토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지역 케이블방송 콘텐츠로 제공하며, 각종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연계 활용함

○ 종래의 홍보들이 시장경영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관점을 소홀하게 다뤘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관점의 홍보를 적극화하며,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들보다는 글로벌 고객으로 특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순히 양적인 홍보를 늘리기 보다는 홍보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효과를 거두어야 함

□ 문화다양성 증진 목적의 의도적 전개

○ 문화다양성을 확대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을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에 다각적, 다층적, 다원적 교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의 동원과 배분을 전략화해야 함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 평가대상 도시는 일찍부터 유네스코와 연결되면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실제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이같은 글로벌 활동의지는 지역내 모든 사업과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참고로 '세계유산조약'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글로벌 수준에서 유지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이같은 문화다양성 의지를 글로벌 시장의 콘텐츠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여 지역문화유산의 보존은 물론이고 글로벌 활용을 추구해야 함

□ 문화리더의 양성 및 연계 활용

○ 글로벌 명품시장과 문화를 결합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격에 맞게 글로벌 감각을 갖춘 문화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시장경영과 융합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다양한 분야 직종, 연령층, 생활경력자들이 서로 모여 '시장과 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서로 충돌하며 융합하는 공간으로 움직이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함

○ 예를 들면, 전주 남문시장의 청년창업몰에서 활동하는 젊은 상인들은 경영감각이나 글로벌 감각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이 분야 문화리더로 양성하여 활용할 경우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우선 채용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함

○ 문화리더는 단순 매개자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예술인이나 문화기획자, 경영전문가를 아울러 문화가치를 다양하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양성하고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효율적으로 전국단위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활용하면서 비교 운영하는 방안도 경제적이라고 판단됨

□ 문화경관 조화와 포장지(包藏地) 보전

○ 시장경영 및 시장활성화 과정에서 일상적인 관리, 일상업무 처리, 방화에 대한 우려, 방범우려, 사업계획의 추진 장애요인, 문화영향 저해요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그 외에도 일반적인 문화재보전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종합적인 방재사업, 시장내 문화재에 대한 화재나 도난 위험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시장을 갑자기 개발하는 경우 매장문화재가 남겨진 지역(包藏地)을 외면하고 진행하기 쉬운데, 이러한 포장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함

□ '생활문화뮤지엄'으로 종합개발

○ 시장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와 오수 등으로 인근 대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인근 하천을 끼고 있는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은 이점을 유의해야 함

○ 글로벌 시장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적 경관과 함께 시장을 모두 포함해서 에코뮤지엄과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해서 '생활문화뮤지엄'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바람직함

○ 예를 들면, 전주 남부시장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등과 인접해 있고, 서울남대문시장의 경우는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연계되어 있음. 인근지역에 모두 생활문화시설이나 문화재가 함께 문화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 생활문화 뮤지엄으로 종합개발하면 문화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임

○ 결국, 글로벌 명품시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일대 문화관련 지역을 '생활문화뮤지엄'으로 설정함. 그리고 이를 시대변화에 맞는 생활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이는 일종의 에코뮤지엄(eco-museum)과 비슷한 개념의 문화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가능함

□ 공동체 육성과 지원

○ 시장 안에 다양한 '문화예술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며, 글로벌 시장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세련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함. 예를 들면 청년몰이나 컬처스페이스, 하늘공원, 공예촌, 야시장 등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체 활동으로 시장 전체가 문화예술 분위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참여인력의 다양한 역할이 생길 것임. 나아가 공동체의 탄생과 발전으로 시장사업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기여토록 함

○ 공동체는 구성보다 실질적 활동이 중요하므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문화가치 기반의 새로운 사업전개

○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을 확산시켜 문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최근 많아지고 이에 관심을 갖는 공공정책도 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자산과 문화재를 바탕으로 주민 창작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시장과 전통예능 중심의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임
- 둘째, 지역 특산공예품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업화 함
- 셋째,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옴

□ 모든 부처 문화협동으로 사업전개

○ 문화 관련 정책개발은 그 문화의 개성, 특질, 정체성에 입각함. 개성과 특질에 충실하여 자국 문화의 전통과 장점을 존중하고, 다른 정책에 반영하여 개발하도록 문화협동이 전 부처 행정협력으로 이뤄져야 함

○ 국가위상은 현재의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중심으로 평가되지만, 그 기저에는 역사전통 문화와 교육 등에 뿌리를 두고 있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정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은 문화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임

○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이 이러한 특징을 고루 지니는 문화정책 분야이므로 단순 상인 대상의 일거리나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넘어서 종합 행정대상으로 추진되어야 기대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을 것임

제6절 개별평가 종합

○ 앞에서는 2015년 문화영향평가에 선정된 다섯 가지 시범사업에 대한 개별평가 결과를 1) 사업내용 및 대상지 현황 분석,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개별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화영향평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

1. 개별평가 종합을 통한 시사점 도출

1)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지역적·내용적·절차적 다양성 및 평가 적용가능성 확인

□ 다섯 가지 시범사업은 정책목적이나 기간, 예산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원에서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졌음

○ 무엇보다도 개별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수도권 및 특정 지역(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지역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됨

○ 또한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프로젝트 기반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상가재생 및 시장재생 사업 등 여러 범주를 아우르는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음

○ 이러한 이유로 평가를 진행한 각 사업들의 추진체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개별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추진체계 역시 다채로운 모습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었음

□ 개별평가를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다양한 정책 사업들의 목표 달성 및 긍정적인 외부효과 창출을 위한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

○ 물론 시범사업으로서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일적인 방향의 제시나 이를 통한 일관성의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음

○ 하지만 각 사업의 '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 및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에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영향도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는 작업이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창조적 해석과 구성

□ 2014년 개발되어 업그레이드 된 평가지표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 역시 일정 부분 달성되었음

○ 개별평가의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의 지표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사업 분석을 진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문화영향평가 지표'의 큰 틀을 따르면서도,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부 지표 구성을 위한 창조적·발전적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서 개별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획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도출되었음

○ 일례로 유사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 사업의 경우 문화기본권 항목에 대하여 문화격차(접근성, 확장성)/표현의 자유(개방성, 기회성)/문화다양성(다양성/수용성)이라는 세부 항목을 도출하고 가중치를 설정하여 영향평가를 진행한 반면, 강원도 사업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하여 문화격차(공간확보 및 활용, 공간의 지속사용, 유휴공간 활용, 사회적 약자 배려 등)/표현의 자유(논의구조, 의사표현, 참여의 자율성 등)/문화다양성(사업주체 구성계층과 다른 계층의 참여, 타 문화계층 참여 유도)라는 세부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함

□ 이러한 창조적 변용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번 개별평가에서 발견된 평가지표의 창조적 변용을 통한 적용 방안 모색이라는 경향은 아직 완벽한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시범사업 단계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영향평가가 갖는 강한 질적 평가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권장할만한 것이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통지표와 변용이 요구되는 특수지표를 구분하여 평가의 일관성 제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개별사업 평가결과 검토를 통한 문화영향평가 준거 자료 확보 및 전망

□ 개별평가를 종합하여 문화영향평가 적용시 사업별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함

○ 개별평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가로질러 영향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틀을 점검하는 계기이자 사업유형별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기회를 제공하였음

○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진행한 평가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 적용시 도출될 결과에 대한 예비적(preliminary)이지만 실질적인(substantial) 준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예컨대, 서울 마을공동체와 강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

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됨

○ 한편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과 강원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비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남

□ 입법, 계획수립, 정책사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영향평가'의 특성상 상호비교와 분석을 위한 계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세운상가 영향평가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 형태의 영향관계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계량화'는 시도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지점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마찬가지로 글로벌 명품시장 영향평가의 경우, '문화영향'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범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향과는 무관한 내용이 계량화되고 영향평가는 서술형으로 기술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한 형식임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화영향평가가 현재의 시범사업단계, 즉 도입기와 형성기를 넘어서 안정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평가결과가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 및 확산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는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어떠한 성과물과 결과물(output & outcome)을 낳을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5년 개별평가는 이를 위한 원재료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개별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 부류로 집약할 수 있음

문제점	개선 방향
지나치게 다양한 평가대상	• 평가대상의 세분화 및 체계화를 통한 문화영향평가의 선명한 포지셔닝
평가지표의 필연성 및 적합성 제고 요구	• 지표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현실적합성 및 확산효과 제고
평가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용 발생	• 평가체계와 평가방식의 확정 및 매뉴얼화

[그림 4-37] 개별평가 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평가대상의 세분화 및 체계화를 통한 선명한 포지셔닝

□ 문화영향평가가 분명한 위상과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다양한 평가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계획 또는 사업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2015년 시범사업의 평가대상은 주로 현장에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도 입법안이나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음

○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평가의 경우에도 단기간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적 사업(프로젝트형)인가, 아니면 매년 정기적이고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프로그램형)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역적으로도 새뜰마을 사업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과 같이 복수 광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면 강원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서울시의 세운상가 사업과 같이 단일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구별됨

○ 투입되는 예산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또는 국비/지방비의 규모 등을 통해서 대형사업, 중형사업, 소형사업을 구분하는 관점도 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

○ 게다가 사업의 숫자 역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사업이 한 사업명 아래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한 지역에서 단수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화영향평가의 방법이나 평가결과 활용 등의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지나치게 다양한 평가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세분화와 체계화가 필요함

○ 아래의 [그림 4-38]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평가대상의 여러 유형을 정책성격, 사업형태, 지역범위, 예산규모, 사업개수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임

평가대상	평가대상별 유형		
정책성격	입법영향평가	계획영향평가	사업영향평가
사업형태	프로젝트(일회적)	복합형	프로그램(항상적)
지역범위	전국적 (예: 새뜰마을)	복수 지역 (예: 명품시장)	단일 지역 (예: 강원마을공동체)
예산규모	대형(500억 이상)	중형(100~500억)	소형(100억 이하)
사업개수	복수사업 (예: 서울마을공동체)	단수사업 (예:세운상가)	

[그림 4-38]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 이상의 평가대상별 유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문화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 시급한 지점 등을 검토하여 단기적으로 집중해야할 부분을 설정하고 향후 확대해나갈 부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정착 및 확산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지표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적합성과 확산성 제고

□ 평가대상의 세분화와 체계화를 통해서 문화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구성되면 안정적인 영향평가 운용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표의 필연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함

○ 2015년 시범사업 개별평가에서 사용한 지표는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이라는 대분류 아래 6개의 중분류와 각각에 2개씩 하위지표를 구성하여 12개의 소분류 체계로 이루어짐

○ 문화영향을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으로 양분하는 것이 문화의 가치 및 효과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을 반영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진흥을 주목표로 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견인효과를 주요한 의의로 삼고 있는 문화영향평가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차원의 영향에만 관심을 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음

○ 다시 말해서 문화영향평가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추진하듯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깊은 관심을 얻고자 한다면, 평가 대상 사업들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 가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표체계의 논리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지표 체계를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방안과 새로운 지표 도입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표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이 가능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정착과 확산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시범사업의 지표체계를 지나치게 흔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며,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범사업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체계의 논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현행지표의 적합성과 확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컨대, 다음의 〈표 4-62〉와 같이 평가항목을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당 2개의 지표를 배분하되, 세부지표에 있어서는 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제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4-62〉 문화영향평가 평가 지표의 재구조화(예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공통 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접근성
			(선택)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필수) 표현 및 참여 기회
			(선택)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 사회적 자본
			(필수)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적 종 다양성
			(선택)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선택) 창조자본
			(선택)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3) 평가체계와 평가방식의 확정 및 매뉴얼화

□ 평가대상의 유형화 및 평가지표의 재구성에 이어 평가체계와 평가방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진행시마다 적지 않은 평가비용 투입을 피할 수 없음

○ 5개의 개별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분명한 매뉴얼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사업에 걸맞은 평가방법을 구성하기 위해 매번 평가진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해야함

○ 또한 많은 수고와 비용이 투입되어 도출된 평가의 결과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 제시될 위험이 상존함

○ 아래의 [그림 4-39]는 5개의 개별평가 과정을 검토하여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 확정을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소를 발의자/시행자/의무성(평가체계)과 추진방향/평가시기/결과형태(평가방식)로 구분하고, 요소별 유형을 정리한 내용임

구분	구분별 유형		
평가주체	자체평가 (사업담당 공무원)	전문평가1 (전문가/개별평가)	전문평가2 (전문가/종합평가)
평가의무	신청형	권고형	강제형
평가시기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결과형태	계량형	복합형	서술형
평가취지	Negative형 (일정 점수 도달 강제)	Complex형	Positive형 (기대효과 구체화 혜택)

[그림 4-39] 문화영향평가 방법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예시)

□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확정 이전에는 대상 사업이 늘어날수록 일종의 거래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연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확정하는 것은 훗날 더 큰 교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시범사업 단계가 아직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한 차례 더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확정을 추진해야함

○ 사업대상의 유형화를 통해서(예: 대규모 개발 사업, 공동체 사업, 인적 대상 사업)[180] 문화영향평가지표의 공통지표와 유형별 특수지표를 도출하고, 유형별 추진체계와 평가과정, 기대되는 평가결과 형태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해야함

○ 이를 위한 매뉴얼을 미리 제공해야만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한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평가가 비교 가능한 결과 및 시사점을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역으로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종) 매뉴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임

○ 매뉴얼 완성 이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시스템(예: GIA)을 통해 일체의 평가과정을 기록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은 물론 평가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함

180)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례: 인적 대상 사업(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시설설치·개선 사업(공원, 도로, 주거 등) /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제5장

2015년 문화영향평가 결과 : 종합평가

제1절 종합평가 결과
제2절 종합평가의 시사점 및 한계
제3절 개선방안
제4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제1절 종합평가 결과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결과는 대상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의견 및 평가점수를 토대로 작성됨

○ 최종적 평가점수는 전문가 평가단의 평균 점수로 제시되었으며, 각 평가위원이 기술한 평가점수 산정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아래에서 제시함

○ 각 평가항목은 각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부 평가지표의 점수는 최저

- 10점에서 최고 +10점까지를 부여하도록 하여 문화적 영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다만 2015년의 경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가 상이하고, 대상 정책의 문화적 영향은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평가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본 종합평가에서 산출된 각 항목의 세부점수는 사업간의 비교우열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대상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의 참고기준에 해당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문화공간의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우리마을(활동,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사업이나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기업 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다른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북카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등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함에 따라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나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접근성의 제고가 이루어짐

- 실제로도 '문화향유기회 및 공간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는 3.8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문화향유수준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의 경우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참여자들의 문화향유 수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다른 단위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문화향유수준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에 있어 문화적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단위사업의 특성 및 내용,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해 ‘주민제안제’를 원칙으로 추진하였고,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업기획 및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다양한 소통과 의사표현,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표현 및 참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4.0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생활문화예술 참여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사업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의 경우 주민에 의한 창작 및 발표를 지향하는 생활문화예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른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공동체 구성원간 취향과 기호가 유사한 이들이 함께 동호회 활동 등과 같이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할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문화예술 참여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해당 단위사업 자체가 서울시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창작과 발표의 기회가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 응답결과는 3.8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다양성

-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단체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참여 기회도 개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상업적 프로그램보다는 마을주민의 이야기나 삶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마을미디어, 마을신문, 주민창작발표회 등)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문화적 종다양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실제 '다문화, 탈북자, 장애우 등 사회적 소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3.6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 성별, 연령, 국적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이 없으며,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경우 내·외국인간 문제해결과 화합·공존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는 성격을 가짐
- 실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3.4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

- 사업기본계획이나 현황자료에는 특별히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 등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음. 다만 동 사업은 대규모 시설조성보다는 마을 단위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아파트, 단독·다가구, 한옥, 상가 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사업의 결과 마을공동체들이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는데 고유경관은 마을 공동의 가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한편 '마을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3.5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으로 마을의 고유성을 유지·강화하였나?'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 응답점수는 3.5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

- 동 사업은 대규모 시설조성보다는 마을 단위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아파트, 단독·다가구, 한옥, 상가 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고유한 유형문화유산과 문화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영향은 각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세부 단위사업별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마을 인근에 있는 유형문화유산 답사와 접목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직접적으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경우 벽화 내용과 구성 방식에 있어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나 참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벽화 작업 시 예술가와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벽화 작업 이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공동주택, 돌봄,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마을' 또는 '지역 정주의식', '해당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 등과 같은 가치들의 보존 또는 회복에 기여했다고 판단됨
- 또한 마을박람회,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신문 제작, 마을미디어 등의 프로그램은 마을과 관련된 인물, 사건, 이야기 등의 발굴 및 기록화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사업으로 마을의 고유성을 유지·강화하였나?'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 응답점수는 3.5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 마을박람회,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신문 제작, 마을미디어 등의 프로그램은 마을과 관련된 인물, 사건, 이야기 등의 발굴 및 재창조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사업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민 등을 담아내는 프로그램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형성 및 창조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을 문화유산을 적절히 활용하였나?'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3.7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의 브랜드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3.4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공동체 의식의 회복은 동 사업의 핵심적 고유목표 중의 하나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활동가 양성,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참여 확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체 의식의 회복 또는 배양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동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의 공간적·물리적·인적 형성 범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4.2점,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에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는가?'라는 설문문항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점수는 4.2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문화공동체

-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사업이나 '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사업들의 경우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도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며, 작은도서관, 북카페, 휴카페 등 공동체 공간이 조성된 경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나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렇게 조성된 문화공동체가 자생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단체, 문화기관(지역 문화재단 등)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조치가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정책제언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5-1]과 같음

○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동 사업은 대규모 시설조성보다는 마을 단위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주거 특성(아파트, 단독다가구, 한옥, 상가 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고유한 유형문화유산이 문화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나 관련된 사업결과 또는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움
- 한편 주민들이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이나 빈집이나 폐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화 하는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나 참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예술가나 기획자 등과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작업 이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경우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어렵기는 하나 공동육아, 마을축제, 마을신문 제작, 마을공동체 교육 등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관련된 인물, 사건, 이야기 등이 발굴되고 재창조됨으로써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형성 및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큼

- 따라서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재창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화 또한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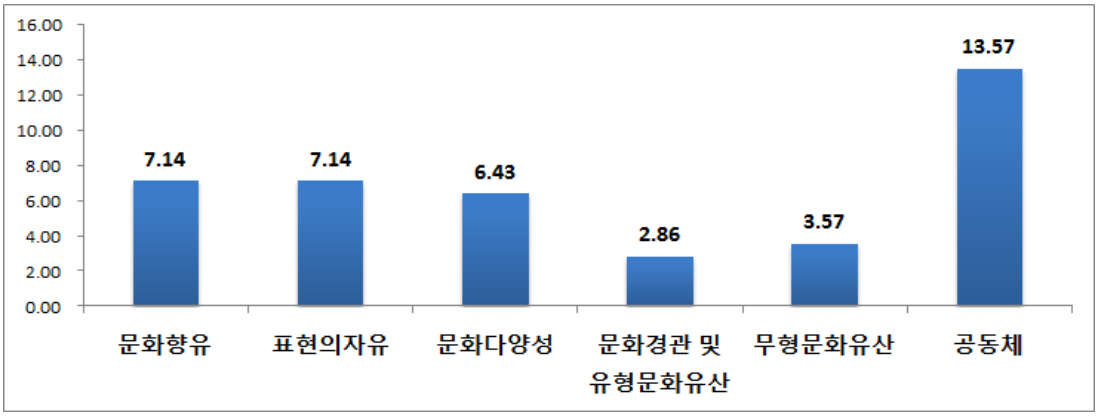

[그림 5-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주) 각 평가지표의 점수 범위 : -20점~+20점

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2015년 1차 선정된 공동체의 사업의 상당 수가 문화공간 확보(작은도서관, 마을공작소, 문화사랑방, 구절초다방, 탄광사진 박물관, 마을회관 카페 조성, 마을영화관 등) 및 문화활동(문화사랑방 프로그램, 마을라디오 제작운영, 마을축제, 실버예술단, 경로잔치, 사진전, 벽화디자인, 풍물놀이, 뜨개교실 등)을 매개로 하고 있어 동 사업이 강원도민의 문화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다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조성된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보이지 않음
- '공동체가 활동하면서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공간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사업을 통해 구성원들의 공간 활용이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1%, '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문화향유수준

-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마을축제, 실버예술단, 경로잔치, 사진전 등 전시회 개최, 벽화디자인, 풍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문화향유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및 마을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사업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5%, '사업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및 마을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빈도가 사업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5%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추진계획에서 '주민참여 강화'를 3대 기본방향으로, 지원사업 선정 심사기준으로 '주민참여도'를 설정하고 있고 마을주민, 마을리더 양성을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구조를 별도로 배정한 점,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사표현,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강원도민의 표현 및 참여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정례화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3%,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5.2%, '사업 시행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표현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1%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생활문화예술 참여

-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마을라디오 제작운영, 마을축제, 실버예술단, 경로잔치, 사진전, 벽화디자인, 풍물놀이, 뜨개교실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창작·발표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이 사업 참여자들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다양성

- 마을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나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마을의 폐가나 폐탄광, 폐교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전시회 개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문화적 종다양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체의 활동이 서로 다른 구성원 계층(현지인, 귀농귀촌인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 낙후된 원도심이나 소외지역 주민들이 동 사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어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은 눈에 띠지 않음. 여성풍물패 사업이나 전통민속 체험장, 전통시장 추억의 사진 및 스토리발굴 사업 등은 지역의 특정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보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공동체의 활동에 다문화가정 혹은 다른 문화(종교, 예술, 생활 등)를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

- 사업 추진계획에서 '지역향토자원(사회·문화·자연·역사)을 활용'할 것을 주요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선정사업의 내용에서도 숲, 꽃, 천연기념물(두루미) 등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로 나타나 유형문화유산과 문화경관 등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계획상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전통 문화를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로 나타남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

- 사업 추진계획에서 '지역향토자원(사회·문화·자연·역사)을 활용'할 것을 주요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특성에 맞추어 실제 선정사업의 내용에서도 낙후된 원도심, 쇠퇴한 시장, 폐교, 폐가, 폐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옛 농총생활도구를 수집·전시하는 영원미디어 기자박물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풍류문화 사랑방이나, 텃밭, 꽃길, 농장을 조성하는 등 자연경관을 고려한 사업도 다수 있어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마을벽화디자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공동체가 다수 있는데, 벽화 내용과 구성 방식에 있어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나 참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벽화 작업 시 예술가와의 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벽화 작업 이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유적, 기념물 등) 및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나타남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사업 추진계획에서 '지역향토자원(사화·문화·자연·역사)을 활용'할 것을 주요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선정된 사업에서도 물지개싸움놀이, 민속사냥, 철새교실, 풍류교실, 황토체험장, 계절별 묵은지 체험관, 기자박물관 등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수 있어 지역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 계획상 지역의 문화유산 및 전통 문화를 고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 '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로 나타남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 물지개싸움놀이, 민속사냥, 철새교실, 풍류교실, 황토체험장, 계절별 묵은지 체험관, 기자박물관, 전통풍물놀이 등 기존의 민속 및 전통문형문화유산에 대한 활용, 체험장 조성, 폐가 및 폐교 활용 박물관 조성 등 마을의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뜨개질, 농사, 품앗이, 김장, 발표음식, 묵은지체험 등 새로운 일상적인 무형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제시되고 있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유적, 기념물 등) 및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나타남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공동체 의식의 회복 및 형성은 동 사업의 핵심적 고유목표 중의 하나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공동돌봄, 주민교육, 마을학교, 마을미디어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4.4%로 나타남

○ 문화공동체

-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문화학교, 마을영화관, 문화사랑방 등과 같은 문화공간의 조성이나 이를 근간으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렇게 조성된 문화공동체가 자생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단체, 문화기관(지역 문화재단 등)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조치가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정책제언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5-2]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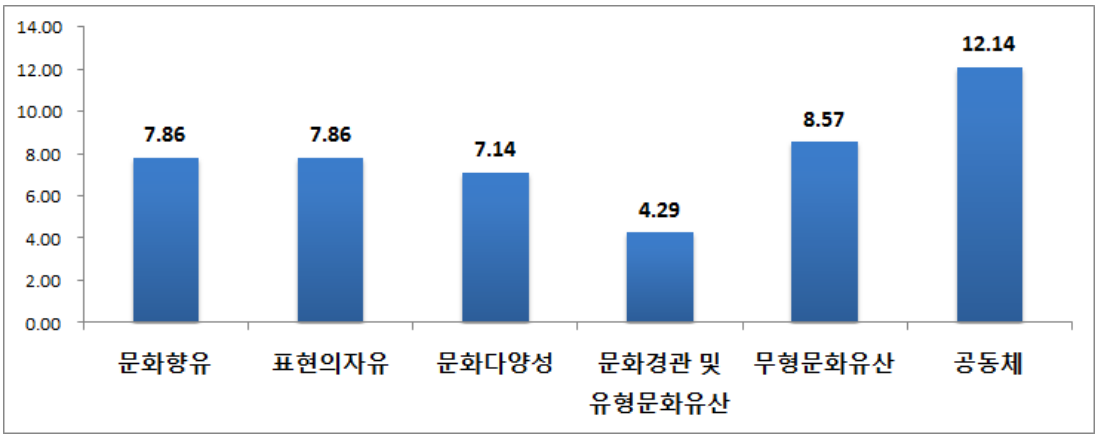

[그림 5-2]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주) 각 평가지표의 점수 범위 : -20점~+20점

○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기본계획에서 '지역향토자원(사회·문화·자연·역사)을 활용할 것을 주요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고 선정된 사업 내용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이나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그러나 공동체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의 아이템을 문화유산으로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마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인문학적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마을의제 발굴 및 지역자원 조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마을의 역사적, 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강좌, 마을 자원조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을 조기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교육컨설팅 등이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새뜰마을 사업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새뜰마을 사업(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붕괴나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 등 농어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강화,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집수리 지원,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와 관련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커뮤니티 센터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취약지역 문화공간의 확대를 통한 문화접근성의 제고가 기대됨
-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및 하드웨어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휴먼케어 지원은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진행될 문화프로그램이나 운영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문화접근성의 향상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향유수준

-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문화프로그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간의 마련이 주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시행지침에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자치규약 마련, 마을정비방향 설정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지자체, 전문가, 세부설계자, 재능기부자, 공사감리자 등으로 구성된 마을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또한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전문가 참여 및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책대상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주민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 및 표현 기회 확대가 예상됨

○ 생활문화예술 참여

-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 관련 관계부처 협업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을소식지 발행 등 자체발굴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을 사업이 채택될 경우 대상지역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확대가 기대됨

- 다만 생활문화예술 참여는 1회적 기획 프로그램이나 이벤트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공간, 프로그램, 운영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예술 참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다양성

-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을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를 천명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동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및 문화인프라가 확대될 경우 새로운 인구 유입을 가져와 지역 내 문화적 종 다양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확충된 문화공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기회가 증대될 경우 보다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 '주민역량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나 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위험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

- 기본방향으로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을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를 천명하고 있으며 마을정비계획 지도를 작성할 때 '주택지붕색상, 주택벽체 모양 및 색상, 흙 담장 철거 후 나무 식재(나무종류 포함), 돌담정비, 공동홈 및 마을회관 모양 및 색상 등 설계와 시공 후 완료된 모습 연출' 등을 예시로 제시함
- 또한 3만㎡이상의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거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신고지역 등에 해당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그러나 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용효율성만을 고려한 개발·보수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 산업경관, 생활문화유산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

- 생활환경 개선이 주 목적이므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 산업경관, 유형문화유산 등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가능성이 큼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기본방향으로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를 천명하고 있으며 '휴먼케어'의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이 가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없어 전반적으로는 마을공동체 고유의 생활문화로서의 예법이나 관습, 기술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생활문화, 예법, 관습, 기술, 설화, 스토리, 전통 등)을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이나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원에 대한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공동체의 자긍심 제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자율적인 마을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마을회의를 통한 마을자치규약과 마을정비방향 설정,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일자리·문화·복지 등 휴먼케어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제고가 기대됨
- 다만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확충에 집중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위한 지원은 제약적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문화공동체

- 휴먼케어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프로그램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문화공동체가 형성될 여지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문화공동체의 형성이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인·단체 등과의 개입 기제나 연계를 통해 문화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문화공동체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제언

○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5-3]과 같음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항목을 제외한 5개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무형문화

유산'과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무형문화유산'과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비용효율성만을 고려한 개발·보수가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 담장, 계단, 마을길과 같은 촌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문화경관, 산업경관, 생활문화유산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 또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마을 고유 문화경관의 의미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방안

-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생활관습을 담은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역사, 설화, 기술, 예법, 생활문화, 놀이문화, 음식문화, 전통적 관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발·보수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 간의 충분한 사전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콘텐츠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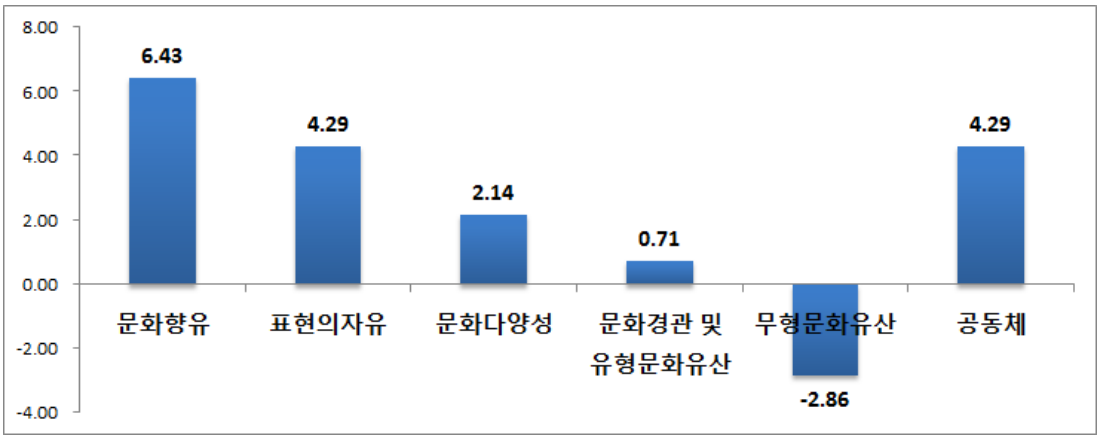

[그림 5-3] 새뜰마을 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주) 각 평가지표의 점수 범위 : -20점~+20점

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동 사업은 낙후된 도심에 세운초록띠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세운상가와 청계

상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의 설치와 문화예술공간의 조성(세운전자박물관, 공연이벤트 상설무대, 갤러리, 젊은 예술가 창작실 등)을 통해 상가주민과 인근 주민, 관광객들의 문화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새로이 만들어지는 문화공간의 운영 및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여 지속적 문화접근성의 향상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향유수준

- 문화예술공간(세운전자박물관, 공연이벤트 상설무대, 갤러리, 젊은 예술가 창작실 등)의 조성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상가주민, 인근주민, 관광객의 문화예술관람률이나 관람빈도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공간이나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문화향유수준의 제고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 이용자(상가주민, 인근주민, 관광객 등)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문화향유 수준 제고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계획 수립 과정부터 관련 주체들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주요하게 고려함
- 구체적으로 상가주민(소유자 및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세운상가 입주기업,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운포럼'(12회), '입주 문화·예술인 모임'(7회), 기타 '자문단' 등(15회),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향후 조성될 거점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함
- 이러한 거버넌스 운영과 주민설명회(17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대상이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생활문화예술 참여

- 2016년에는 세운상가활성화 기획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모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입주문화단체모임, 사회적경제 세운소셜픽션, 입점장인네트워크, 세운상가는 대학(세운상가 공공디자인 학부, 세운상가 상인대학, 수리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통해 상가주민 및 인근주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생활문화예술 참여는 1회적 기획 프로그램이나 이벤트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안정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예술 참여가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다양성

- 세운상가 활력거점 조성을 통해 계획되고 있는 세운전자박물관, 갤러리, 젊은 예술가 창작실,

입주문화단체모임, 사회적경제 세운소셜픽션, 입점장인네트워크, 세운상가는 대학(세운상가 공공디자인 학부, 세운상가 상인대학, 수리워크숍 등은 세운상가가 가진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결합하여 다양성 예술, 융복합예술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종다양성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 종묘~남산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 구축(데크 상하부 보행로 조성, 공중보행교 등)을 통해 아동, 여성, 노인 등과 같은 보행약자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상가 주민들의 기술, 제작문화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상인들의 장인문화'를 형성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

- 세운상가를 전면철거하려 했던 종전의 계획을 변경하여 '세운상가를 존치'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성장한 우리의 경제와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건축유산(산업유산)이자 미래유산으로서의 세운상가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 또한 종묘어도 폭을 고려한 광폭횡단보도와 세운초록띠공원 등을 통해 한양 도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

- 새로운 구조물의 설치로 인해 문화경관의 변형은 불가피하나 세운상가의 원형보존과 종묘, 청계천, 남산 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문화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훼손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운상가 주변과의 조화만이 아니라 창덕궁-종묘-남산의 세로축과 광화문-동대문의 가로축의 중심에 존재하는 세운상가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 도심의 전체적인 문화, 역사적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세운상가가 가진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음향, 조명, 영상, 컴퓨터산업 등과 같은 전자산업 문화유산'과 그곳에서 생활해온 '기술자와 장인들의 기술과 문화', '세운상가와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우리나라 산업화, 도시화, 레코드판, 잡지, 카세트테입 등 초기 대중문화와 관련된 추억 등)' 등을 들 수 있음

- 동 계획은 세운상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전자산업군과 함께 청년벤처창업 지원, 도심 전통산업 등의 추가적 배치를 통해 기존산업과 신규산업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고려하고 있으며 '세운상가 초상화 인터뷰- 장인발굴 프로그램', 기록화 프로그램, 세운전자박물관, '세운수리 워크숍' 등을 통해 세운상가가 가진 장인문화 및 세운상가와 관련된 기억, 문화, 산업발전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 기존의 전자산업군 외에 첨단기술산업군 및 창조산업군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산업 간 융합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으며, 문화공간의 조성과 운영, 세운상가와 관련된 기억과 추억을 요소로 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세운상가가 가진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음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세운상가 공동체 구성원(상가 소유자, 세입자, 인근 주민, 입주 문화예술인,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등) 간의 이해관계의 상이성으로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또한 추진 이후에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며, 이는 공동체의식의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 계획은 주민협의체, 세운포럼, 입주 문화예술인 모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 체계와 관계맺기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계하였으며,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운상가 재생사업 이후 상권의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기존의 상가 세입자나 문화예술입주단체 등이 쫓겨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소유주와 상인간 상생협약 추진 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문화공동체

- 문화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입주예술인 간의 교류 활성화가 예상되며, 상가주민과 인근주민, 입주예술인간에 문화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문화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큼. 또한 세운상가를 거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새로이 협력하고 교류하게 될 가능성도 큼
- 다만 세운상가 입주자들만의 폐쇄적인 문화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세운상가를 거점으로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인·단체, 지역 주민들을 함께 어우르는 개방적인 문화공동체를 촉발하기 위한 매개자 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3) 정책제언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5-4]과 같음

○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문화향유'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문화향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새로이 조성되는 활력거점(세운전자박물관, 공연이벤트 상설무대, 갤러리, 젊은 예술가 창작실 등)의 공간 조성 뿐 아니라, 그 이후 공간운영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잠재적 이용자(상가주민, 인근주민, 관광객 등)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이들의 문화접근성과 실질적 문화향유수준의 제고가 가능할 것임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세운상가 공동체 구성원(상가 소유자, 세입자, 인근 주민, 입주 문화예술인,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등)간 이해관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과 관계맺기 프로그램이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세운상가 재생사업 이후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소유주와 상인 간 상생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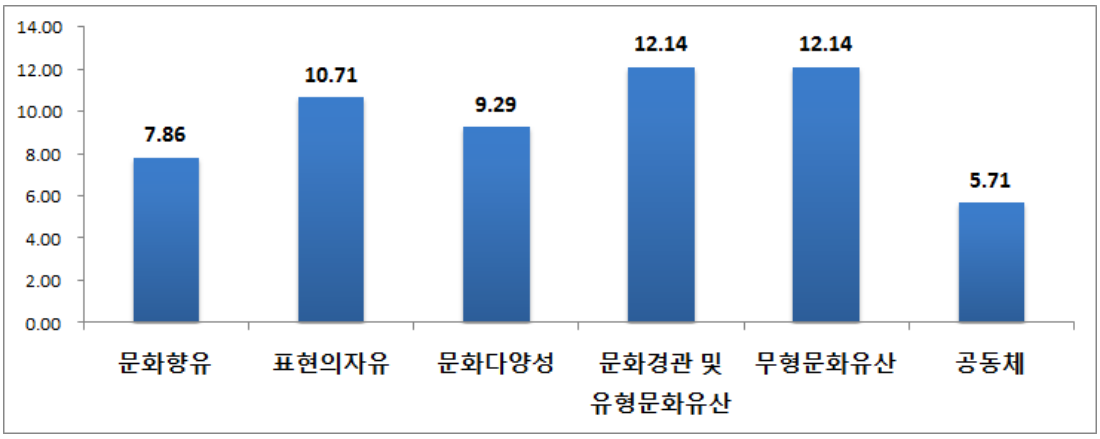

[그림 5-4]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종합평가 결과 요약

주) 각 평가지표의 점수 범위 : -20점~+20점

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지원사업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 동 사업은 전통시장을 외국관광객이 가볼만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관광객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류문화체험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상품 개발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해당 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외에 해당 시장의 상인, 내국인 시장방문자, 인근 주민 등에게도 문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외에 상인, 내국인 시장방문자, 인근 주민 등에게도 해당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이 개방될 필요가 있는데, 내국인 이용자들에게 외면받는 전통시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임
- 또한 K-pop 스타 초청공연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문화를 단순히 '볼거리'로만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해당 시장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인·단체·문화기획자 등의 참여가 주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문화향유수준

-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전통시장의 이용자 등은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통해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고 지속적인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동 사업은 상인, 내국인 시장방문자, 인근 주민, 외국인 방문객 등의 문화향유수준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형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을 때 실질적인 문화향유 수준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추진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참여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일방적·하향적인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기획자 등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참여 기제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예술 참여

- 동 사업의 주된 정책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며, 주된 지원내용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이목을 끌기위한 볼거리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예술 참여 확대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국인 관광객 외에 시장상인, 내국인 방문객, 인근 주민 등에게도 열려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거나, 시장상인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문화적 특생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긍정적 결과도 기대됨

□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다양성

-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전통시장이 갖는 역사문화적 자원이나 생활사적 자원, 기타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인력 등을 발굴하고 이를 공간 조성이나 프로그램 등에 적극 반영할 경우 문화적 종다양성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해당 시장의 역사문화적 의의 또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 없이 단순한 한류 스타 초청공연 등과 같은 상업적인 일회성 이벤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전통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색이 침해되고 획일화될 위험성 또한 크게 상존함
- 해당 전통시장 혹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야시장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외국인 거주민이나 다문화가족 등과 같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기회 향상 및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

- 동 사업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터전이었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전통시장 주변의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의 방문을 유도하고 연계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글로벌화'과 '명품화'라는 개념에 집착하여, 해당 시장이나 주변 문화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디자인의 적용, 현대화, 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치중할 경우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도 큼

-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

- 동 사업은 지역 유형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이 가지는 가치를 전통시장의 콘텐츠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그러나 비용효율성이나 편의성만을 고려한 시설현대화나, 인근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 상권 활성화로 인한 현대적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무분별한 입점 등은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또는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거래, 정보교환, 문화 등 주민생활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공간이며, 지역민의 삶의 정서와 역사 등의 무형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공간임
- 동 사업은 이들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시장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정체성 제고와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 동 사업은 전통적 콘텐츠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및 인근 관광지의 가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여지가 큼
- 또한 특성화존, K-food 개발, 문화관광 융합상품 개발, 시장축제, 지역 예술인·단체와의 연계 등 특화된 서비스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통문화라는 요소를 박제화된 개념으로 이해하여 단순한 마케팅 요소나 외국인을 위한 눈요깃감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상인 및 지역민의 삶을 담고 지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 상인회 등 시장 리더들이 관계자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장 외부의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연계와 네트워킹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함께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동참할 경우 동 사업은 시장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의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소통과 논의와 협력,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기제나 절차가 필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상인들에 의해 사업이 주도되거나, 일부 점포에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통해 공동체의 분열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

○ 문화공동체

- 동 사업으로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기획자들의 참여 속에 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문화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집단에 의해서만 사업이 주도되거나,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시장상인,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기획자, 시장 이용자들 간의 소통이나 참여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3) 정책제언

○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5-5]과 같음

○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점수가 나타나 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향유'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표현 및 참여'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표현 및 참여'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추진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참여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일방적·하향적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동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기획자 등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참여 기제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주된 정책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며 주된 지원 내용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이목을 끌기 위한 볼거리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외에도 시장상인, 내국인 방문객, 인근 주민 등에게도 열려있는 생활문화 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문화마케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안

- 해당 시장이나 주변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디자인의 적용 및 상품·콘텐츠의 개발, 비용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고려한 시설현대화, 상권 활성화로 인한 현대적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무분별한 입점 등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경관을 훼손하고 그 가치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인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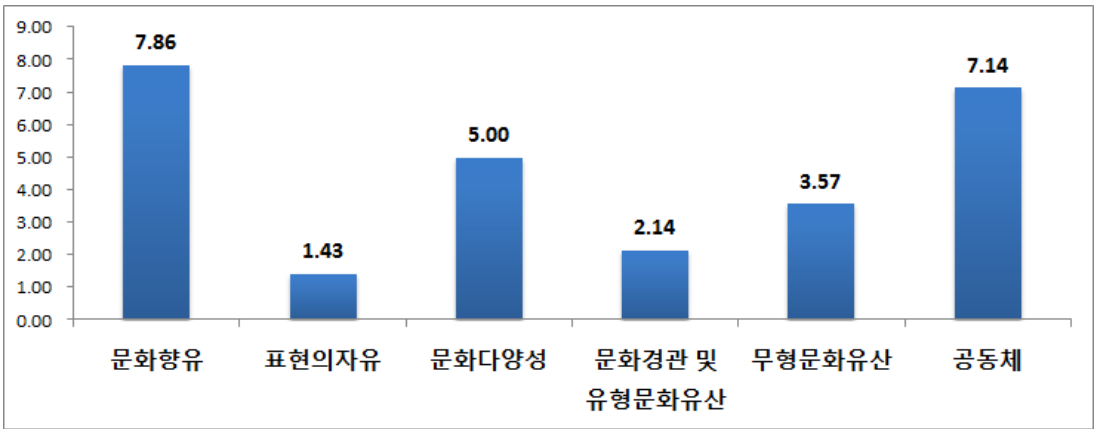

[그림 5-5]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종합평가 결과 요약

주) 각 평가지표의 점수 범위 : -20점~+20점

제2절 종합평가의 시사점 및 한계

1. 종합평가의 시사점

1) 종합적 비교평가 프레임 개발

○ 개별평가가 공통지표 이외에 각 정책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추가·변용함으로써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추구했다면, 종합평가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포괄적 프레임(frame)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2015년 선정된 대상 정책은 그 정책적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의 상이성 이외에도, 아직 본격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의 정책과,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집행된 정책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상이성을 포괄하면서도 해당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방법을 개발·적용했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적용가능성 확대 여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다양한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동일한 잣대로 측정함에 따라 각 정책 유형에 따라,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의 어떤 항목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개략적으로나마 비교·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2) 주요 개념의 정의 및 조작화 시도

○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주요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시도됨

○ 문화영향평가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 '영향'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해 합의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일한 현상이나 사실(fact)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이나 평가가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학계·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토대로 문화영향평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요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개념,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를 사전에 기술함으로써, 종합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평가단의 개념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들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요 개념을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부지표에서 +/-의 방향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주요 항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강도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측면 또한 성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3)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균형 추구

○ 대상 정책이 가져올 문화적 영향(cultural impact)을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 이는 문화적 영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며, 그 영향 또한 무형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가시적이고, 따라서 이를 측정하여 특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에 기인함

○ 이러한 이유로 특정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데에는 질적인 기술(qualitative description)이 주요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문화영향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대한 가시화하는 것 또한 필요함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과 정책적 필요성을 균형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정책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각 평가항목(평가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으며, -10점에서 +10까지의 분포를 갖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그 영향의 크기와 방향성을 함께 측정하고자 함

○ 한편 종합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평가단 개개인에게, 그러한 평가점수를 부여한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친 영향의 경로와 양태를 함께 파악하고자 함

○ 또한 특정 평가위원의 평가에 지나치게 평가점수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명의 전문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도출하였으며, 질적인 판단 근거 또한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제시한 내용 중 공통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고자 함

2. 종합평가의 한계

1) 평가지표 및 방법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의 구성 등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 종합평가지표를 구성하는 평가지표의 확정에 앞서 여러 번의 워크숍과 전문가 FGI를 거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향평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화 영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문화적 영향을 어떠한 범주에 따라 구분할 것인지, 어느 평가항목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이라는 평가 분야에 포함되는 평가항목(평가지표)과,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세부평가지표)을 어떠한 요소로 구성할 것인지, 세부 평가지표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떠한 개념을 포함하고 어떠한 개념을 배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평가방법의 단순성 vs. 평가비용

○ 개별평가에서는 개별 정책 하나를 평가 대상으로 하므로 문헌검토, 설문조사, 계량분석, 관계자 인터뷰 및 FGI, 현장조사 등이 심도 깊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종합평가의 경우 여러 개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별평가처럼 다양한 평가방법을 심층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름

- 즉 한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해야 할 정책 및 평가항목의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능한 이들의 평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지표나 평가방법은 상당히 간소화·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물론 2015년 연구에서는 대상 정책별로 최소 1번 이상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나 평가에 임하는 모든 전문가 평가단이 이러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며, 이에 따라 종합평가에서의 평가는 주로 대상정책의 사업계획서와 현황자료, 개별평가자료 등과 같은 서면자료의 검토를 통해 전문평가위원의 질적 판단에 의존하는 형태를 갖게 됨

2) 평가자료의 부족 및 불충분성

□ 세부실행계획 및 실행현황(결과) 정보 부족

○ 대상 정책의 '기본계획서'의 경우 전반적인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핵심내용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세부실행내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이 미칠 문화적 영향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함

○ 특히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정책은 대부분 '문화적 영향을 고유한 정책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계획'이나 '세부실행계획', '사업현황', '사업결과' 자료 등에는 해당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미칠 영향, 또는 영향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이미 집행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서 상에는 일부 기술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가 어려움

○ 기존에 생산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나, 문화 부문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경우 격년 단위로 발행되어 시의성이 낮거나,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표본 수가 작아 특정 지역에 대한 통계치의 경우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정책 등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 규모가 큰 정책의 경우 중앙단위나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큰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계획과 실행은 세부사업단위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 경우 기본계획만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인지, 세부사업까지 모두 포괄하여 평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또한 우수한 사례와 열등한 사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3) 판단 준거의 불명확성과 주관성

○ 2015년 종합평가의 경우 세부평가지표 별로 평가점수 산정의 판단 준거를 제시하는 조작적 정의를 사전에 수행하였고, 평가위원 개개인에게도 평가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는 복수의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질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평가위원 개개인의 가치나 신념, 판단 준거에 따라 평가결과는 달라지게 됨

4) 개별평가와 종합평가 간 관계 설정의 문제

○ 2015년의 경우 개별평가와 함께 종합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였는데, 개별평가기관의 평가결과와 종합평가 결과 간에 차이가 나타났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또한 향후에도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라는 이원적 평가체계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또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음

5) 평가대상정책에 따른 평가결과의 차이 발생

○ 대상 정책이 문화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종합평가지표에서 사용된 항목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나 구성요소(설계요소)로 활용한 경우 평가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제3절 개선방안

1. 평가지표 및 방법의 지속적 개선과 보완

□ 전년도 평가결과의 공유 및 워크숍과 전문가 FGI의 적극적 활용

○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평가지표와 방법의 개발과 창조적 적용이 시도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매년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학술대회나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평가지표나 평가방법에 대한 공론을 모을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평가지표나 평가방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년도 종합평가에서 활용된 평가지표와 방법을 차년도 평가에서 개별평가의 공통지표를 활용하도록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매년 평가 이전에 개별평가기관과 종합평가기관 간의 워크숍과 전문가 FGI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도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임

□ 종합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부담 간 균형 모색

○ 종합평가결과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복수의 전문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평균 및 평가위원이 기술한 구체적 평가근거에 대한 종합적 기술을 통해 제시됨

○ 이 경우 해당 평가위원이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평가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평가위원의 평가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 오히려 평가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종합평가에서는 개별평가와 별도의 종합평가를 수행하기보다는 개별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의 검토 및 수정·보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임

2. 평가자료 수집 시기의 조정 및 전문평가단의 조기 참여

□ 사업기본계획 / 실행계획 / 현황자료의 초기 협조 확보

○ 개별평가와 종합평가 모두 평가 시작 단계에서 대상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 정책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집행현황 자료나 사업성과자료까지 미리 획득하도록 함

○ 대상정책에 대한 기본 자료가 불비될 경우 평가 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향후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시 이에 응할 의무를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와 사업 관계자 대상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5-1〉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기본법」 제5조의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매년 그 평가보고서와 정책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 종합평가 전문평가단의 조기 참여 및 현장조사 의무화

○ 종합평가 전문평가단을 조기에 구성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확정 이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개별평가 진행 시 종합평가 전문평가위원들 역시 현장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상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서면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화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개별평가의 문헌검토, 통계자료 확보, 설문조사 설계의 엄밀성 강화

○ 종합평가의 경우 개별평가와 달리 별도의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평가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결과나 인터뷰 결과, 현황분석 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평가보고서는 종합평가의 중요한 판단준거가 됨

○ 따라서 개별평가보고서의 대상정책에 대한 문헌분석, 인터뷰 결과 기술, 설문조사 설계의 엄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구체화함으로써, 개별평가의 질적 제고와 함께 종합평가의 질 제고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출방식을 엄밀화하고,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표본 수(1,000샘플 이상)를 확보하도록 함
- 사업의 적극적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편의가능성(bias)이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질문 방식에 있어서도 주관적 태도나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 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리지표(proxy indicator)의 개발과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나 양적데이터의 분석은 단순한 빈도분석이나 평균분석을 넘어서 t-test, ANOVA, regression analysis 등을 통해 통계적 검증을 포함하도록 함

3. 평가지침의 명확화와 간주관성 확보

□ 평가지침의 명확화 및 평가회의·통합워크숍 등을 통한 간주관성 확보

○ 종합평가에 있어 전문가 평가위원 개개인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 수행을 위한 판단 준거인 평가지침을 보다 명확화·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평가단의 워크숍, 평가회의, 현장조사를 통한 상호 소통과 논의를 통해 평가요소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한계에서 제시된 이슈와 관련하여 평가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사전평가와 과정(사후)평가의 평가 초점 차별화

○ 사전평가

-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을 주된 평가근거로 활용하고, 전문가에 의한 추론 및 예측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도록 함
- 설문조사의 경우 정책대상자의 문화기본권 및 문화정체성에 대한 현재 상태 또는 사업 이후 기대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함

○ 과정평가(또는 사후평가)

- 사업실적자료와 해당 사업이 참여자의 문화기본권 및 문화정체성에 미친 영향(효과)을 실질적으로 측정한 설문조사 결과, 또는 양적자료를 활용한 효과 측정 결과를 주된 평가근거로 활용함

□ 평가의 범위 및 사례분석의 활용 방법

○ 평가대상정책이 다수의 세부사업들로 구성되거나, 다수의 사업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일부 유의미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해당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은 해당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정책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문화영향평가가 가지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임

4. 표준평가모형의 개발

○ 정책에 따라 다른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과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평가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상 정책이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양태나 경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반에는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라는 이원적 평가체계를 활용

하여, 개별평가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창조적인 평가모형의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개선된 평가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개별평가와 종합평가가 변증법적인 진화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와 방법을 차년도 개별평가의 공통지표로 제시하여 환류(feed-back)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5.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대상정책 선정 우선순위 설정

□ 유형별 평가체계의 마련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대상 정책이 고유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나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사업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문화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대상 정책의 고유목표나 중요한 설계요소에 따라 해당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평가 결과가 해당 정책의 바람직성 또는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정책의 모습을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어떠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지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종합평가 결과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4장 개별평가의 종합 부분에서 전술한 바와 있듯이, 평가대상이 법률이나 제도거나, 종합계획인 경우 정책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책적 권고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평가대상의 유형에 따른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6개의 평가항목과 세부평가지표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으나, 향후에는 평가대상의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우선순위 설정

○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전에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평가의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평가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우선대상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①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큰 정책 및 계획

-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국정과제, 지자체 단체장 주요

시책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등

②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큰 계획 및 정책

-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

제4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앞에서 전술한 개별평가와 종합평가의 개선 이외에도 향후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반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음

1. 법적 기반 재정비 및 DB시스템 구축

가. 법적 기반 재정비

○ 현재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근거는 「문화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 분야 영향평가제도와 같이 별도의 「문화영향평가법」을 제정하거나, 「문화기본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계획 및 정책의 구체화, 평가대상 직권 선정 권한,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위상 제고, 자료협조 및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평가 대상 : 의무평가대상의 구체화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대상 선정 권한 추가

○ 현재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임

- 다만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의 범위가 광범하고 모호하여, 어떠한 계획이나 정책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만 문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 그러나 문화영향평가가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자체평가 대상선정의 기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하는 전문평가 대상선정의 기준을 수정·보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정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력이 크거나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수정]
1.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력이 크거나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및 정책[신설]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신설]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체화 및 위상 제고

○ 현재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력체계의 위상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음

○ 다만,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이슈만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문화융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심의·조정기구로 설립하고,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이슈도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를 '문화정책협의회'로 위상과 기능을 확대하여 신설하고, 문화정책협의회에서 문화영향평가를 비롯한 주요 문화정책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5-3〉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문화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로서 문화정책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라.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문화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정책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문화정책연구 또는 문화영향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정책협의회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중앙/지방)

○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안착되고 자체평가를 확대하게 되는 경우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문화영향평가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 지정 필요함

○ 현재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2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따라서 향후에는 중앙 문화영향평가센터와 지방 문화영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중앙 센터에서는 종합평가를 중심으로, 지방센터에서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앙 문화영향평가센터 : 전문평가 중심 (종합평가/개별평가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검토 기능 수행
- 지방 문화영향평가센터 : 자체평가에 대한 검토 및 통보 기능 수행

□ 자료협조 및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 명시

○ 중앙 및 지자체로부터 자료 등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이나 개선권고를 한 경우 소관부처에서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및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과부 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무 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

- 다만,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함께 규정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표 5-4〉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매년 그 평가보고서와 정책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⑦ 제6항에 따라 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나. 문화영향평가 DB시스템 구축 (CIAS :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181]는 평가의 전 과정은 온라인시스템(GIA: Gender Impact Assessment)을 총해서 처리·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고용영향평가도 평가결과를 집적한 쌍방향 플랫폼을 운영하며 국민들이 평가 및 수용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 역시 별도의 DB시스템을 운영하여 평가대상 공모 및 제안접수, 평가절차 및 방법 안내, 문화영향평가의 수행 및 결과제시, 전문가 제언 등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특히 사업의 특성과 유형이 다양하고 정성적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방법론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 초기부터 시행하는 평가과제에 대한 DB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사업대상별 평가유형을 분류하고 평가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용이할 것임

2. 인식 확대 방안

□ 대국민 공모를 통한 대상과제 선정

○ 개요: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시, 대국민공모를 실시하여 공모안을 취합한 후 사업의

181)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http://gia.mogef.go.kr〉 참고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함

○ 공모방식: 문화영향평가센터, 문화부, 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공모를 진행하며 별도의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공모를 접수함

○ 공모자격: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기대효과:

- 대국민공모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 및 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기존의 대상과제 선정과정과 더불어 2015년도부터 대국민공모 방식을 추가로 진행해오고 있음

□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촉구

○ 개요: 제도 초기 실행단계에서 언론보도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영향평가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함

○ 홍보방식:

- 평가시행 전, 과제 공모 및 연구용역기관 공모를 알려 좋은 과제와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1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평가과정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함
- 평가 후, 당해 연도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

○ 기대효과:

-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문화영향평가의 우수사례에 대해 해당 정책·사업을 홍보하여 정책 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에 추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참여유인을 제공함
- 포털사이트에 해당 제도를 검색 시 출력값 및 데이터의 증가로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임

□ 결과공유포럼 개최로 평가시행결과 공유 및 의견 청취

○ 개요: 문화영향평가 시행결과를 발표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및 안착을 위해 논의함

○ 시행방식:

- 당해연도에 진행한 문화영향평가에 대해 차년 연초에 연1회 개최함
- 평가한 정책에 대한 결과발표, 전문가 토의, 우수사례 시상 등으로 구성함

○ 기대효과:

- 문화영향평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 및 공유함
-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한 담당공무원들 및 연구용역들이 타기관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차년도 평가사업 참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함

□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개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대상 교육 실시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필요성, 절차,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함

○ 교육대상: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공무원

○ 교육유형:

- 자체교육: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에서 주관하여 광역 단위 워크숍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
- 파견교육: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또는 문체부에서 해당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 교육내용: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교육 실시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필요성, 절차,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제고
- 문화영향평가가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진단 및 컨설팅

○ 기대효과: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제도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의 안착을 기대함
- 특히 문화영향평가는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 단계로서, 문화영향평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제도를 충실히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와 추진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하며, 교육을 통해 기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개별정책평가기관 및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잘 구축될 수 있음

3.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 각종 평가지표에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반영

○ 지역문화지표, 지역관광발전지표, 지자체 합동평가 등의 지표에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에 실시되는 지역문화지표 분석에서부터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이 세부지표로 반영되도록 추진해야함

- 지역문화지표는 3년을 주기로 분석을 실시하며,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부분에서 각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매년 기초자치단체별 정책집행 결과를 취합하는 '행정자료수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해 평가하고 있어 해마다 실시되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집행 결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함

○ 2017년에 실시되는 지역관광발전지표 분석에서부터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내 관광부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포괄하여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 체계임
-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측정을 위한 세부지표 가운데 역사문화 또는 관광복지 분야[182]에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세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중인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가운데 지역문화기반 확충 또는 지역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분야에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반영을 고려해야 함

- 추진실적에는 문화영향평가 건수, 개선 사항 정책반영 실적, 평가책임관 지정여부 외에 평가 활성화 노력도(정성평가) 등을 세부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참고 자료로 포함

○ 문화영향평가 결과 대상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해당 정책의 예산편성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고, 재정당국에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수기관 표창 및 시상

○ 매년 문화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표창이나 수상을 부여하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사업 홍보

○ 문화영향평가 실시와 관련된 언론보도 외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182) - 역사문화분야 세부지표 : 문화재 수, 박물관 수, 미술관 수, 화랑 수
- 관광복지 : 취약계층 관광수혜자 수, 복지관광 지원 금액, 복지관광 관련 실천 프로그램 수, 녹색성장 관련 관광실천 프로그램〈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지역관광발전지수 도입 기초 연구〉

4. 평가 결과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영향평가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실장·과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

○ 역할

- 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영향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조항을 마련해야함

□ 중앙행정기관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결과 통보 의무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종합결과보고서 공표 및 개선 현황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 일반국민들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시에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현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정책반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6장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시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개별평가
제4절 자체평가
제5절 평가결과의 제시 및 활용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1. 개념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함

2. 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 지원

○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역량 및 삶의 질 향상

3. 도입배경

○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의 상실 또는 파괴에 대한 문제제기

○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 및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제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융성 기반 조성 필요

4. 법적 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추진경과

○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동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문화영향평가〉 도입 (2013.12)

○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2013)

○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 수행(2014) : 1차 시범평가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건, 국토교통부 사업 2건 등 1차 시범평가 수행(4개 정책)

연번	평가대상 정책	소관기관
1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2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3	도시재생 정책	국토교통부
4	행복주택 정책	

○ 2015 문화영향평가 연구 수행(2015) : 2차 시범평가 수행(5개 정책)

연번	평가대상 정책	소관기관
1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서울시
2	새뜰마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3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5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강원도

6.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계획과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

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큰 정책 및 계획(예시)
-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예: 국정과제, 지자체 단체장 주요 시책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예 : 도시첨단산단조성,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사업, 도심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등)
-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예 : 사회보장기본계획, 삶의질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등

②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큰 계획 및 정책(예시)
-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 (예 : 도시재생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공외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사업 등)

〈표 6-1〉 분야별 예시

구분	예시
① 교육, R&D 분야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산학협력 5개년 계획, Post-LINC 사업, 인문한국 사업, 돌봄교실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누리과정,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사업(청소년 쉼터 운영 등), 평생교육정책,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학교건축 현대화·선진화 대책, 아동학대 종합대책,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사업, 문화-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 R&D 지원사업, 대학평가제도 등
② 복지, 보건, 고용 분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누리과정, 취약계층 돌봄사업,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고령자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고용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복합헬스케어타운 조성,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청년취업프로그램, 열정페이 근절,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등
③ SOC, 시설조성, 산업 분야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 조성사업,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사업(자율주행 실험도시 등), 규제프리존 입지규제 완화,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청년몰 조성사업, 문래동식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사업, 대중교통시설 운영 및 디자인 정책 등

구분	예시
④ 농림, 수산, 식품, 환경 분야	농촌관광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활기찬농촌 프로젝트, 로컬푸드직매장, 승마시설 조성 사업, 어촌체험마을 내실화 사업, 한식진흥사업, 도심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폐자원 배출수거·재활용 정책,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생태관광지역 지정, 캠핑장 확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사업 등
⑤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분야	병영문화 혁신사업, 병영폭력 근절 프로그램, 군인복지 기본계획, 공공외교 사업, 문화외교사업, 재외공관 운영,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사업, 보훈기념행사(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 호국영웅 선양 사업, 나라사랑교육 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운영 등), 행복출산서비스, 한류비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 선정절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평가대상 정책 후보안을 선정하여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상정
-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서 평가대상 정책의 협의 및 확정

7. 평가 유형

1)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1)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 수행

(2) 전문평가 : 요청 또는 선정된 대상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수행

- 개별평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개별 평가대상(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를 수행
- 종합평가 : 전체 개별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실시)

〈표 6-2〉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유형		내용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 수행
전문평가	개별평가	개별 평가연구기관이 1개의 평가대상(계획 및 정책)에 대해 평가를 수행
	종합평가	전체 개별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

2)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①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② 계획에 대한 평가 : 법정계획, 중장기계획 등

③ 법·제도에 대한 평가 :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 필요

3)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① 사전평가 : 정책 등이 시행되기 이전에 평가 실시

② 과정평가 : 정책 등이 시행되는 과정에 평가 실시

③ 사후평가 : 정책 등이 완료된 이후 평가 실시

8. 평가절차

1) 전문평가 절차

① 평가요청 및 수요조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소관기관으로부터 요청 또는 추천과제 접수

② 평가대상 후보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요조사 및 요청, 추천받은 정책 등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후보 선정하여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상정

③ 평가대상 선정 :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서의 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확정

④ 문화영향평가 : 개별평가 및 평가종합

- 선정된 평가대상 각각에 대해 전문평가연구기관에 의한 개별평가 실시
- 전체 개별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종합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실시)

⑤ 평가결과 보고 :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를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정책개선사항 도출

⑥ 평가결과 통보 : 평가대상 소관기관에 대해 평가결과 및 정책개선사항 통보

⑦ 개선방안 마련 : 소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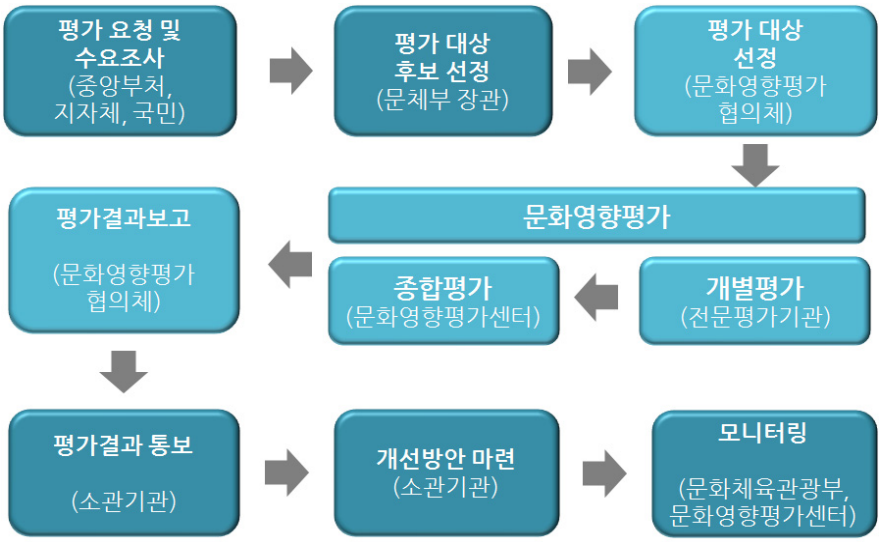

[그림 6-1]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2) 자체평가 절차

① 평가대상 선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② 문화영향평가 : 선정된 정책사업, 계획, 법·제도 등에 대해 자체평가 양식(체크리스트 방식)에 입각하여 문화영향평가서를 작성

③ 평가결과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문화여가정책과)에 제출

④ 검토의견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영향평가센터에서 평가서 검토 후 해당부처/부서 등에 '원안동의' 또는 '개선의견'으로 결과 통보

⑤ 반영 결과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일 경우 해당 부처/부서 등에서는 반영 결과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함

⑥ 종합분석 결과 보고 : 자체평가 결과 및 반영결과에 대해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결과보고

[그림 6-2]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9. 평가체계

1) 문화체육관광부

○ 대상과제공모 및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 후보 선정,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안건 상정

○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 관리 및 지원, 제도개선 등

○ 평가결과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2) 문화영향평가협의체(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근거)

○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표 6-3〉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성

•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위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소관기관)

○ 자체평가 수행 : 소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양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 수행 및 분석 결과 제출

○ 전문평가 요청 및 제안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소관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제안

○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조치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전문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이나 개선권고에 대해 소관기관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

4)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문화영향평가센터(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영향평가의 실질적 수행 및 관련 사업 실시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 개별평가기관의 선정 및 개별평가에 대한 전반적 지원 및 관리

○ 종합평가 실시 : 개별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종합평가단 구성을 통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지침 작성, 교육 및 컨설팅 수행

5)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기관

○ 선정된 정책 등에 대해 개별평가 실시 및 개별평가보고서 작성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이해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평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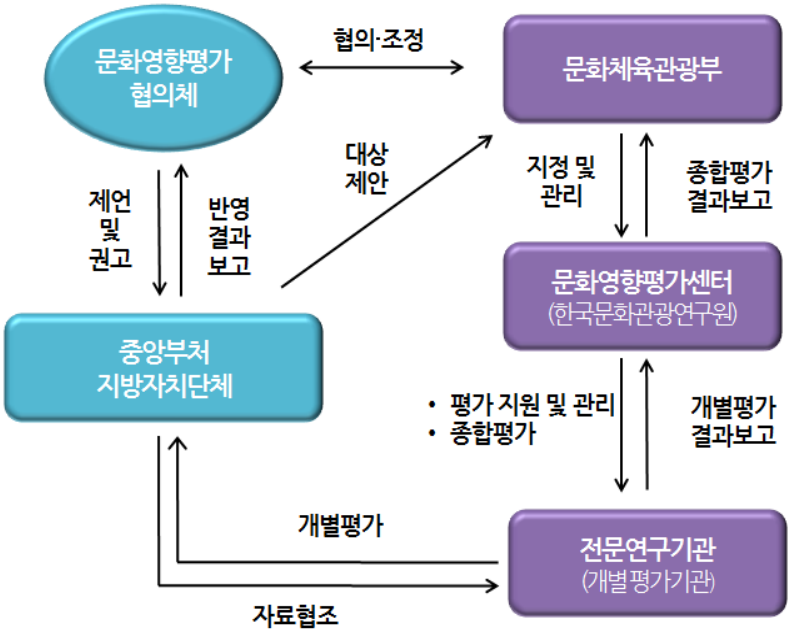

[그림 6-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전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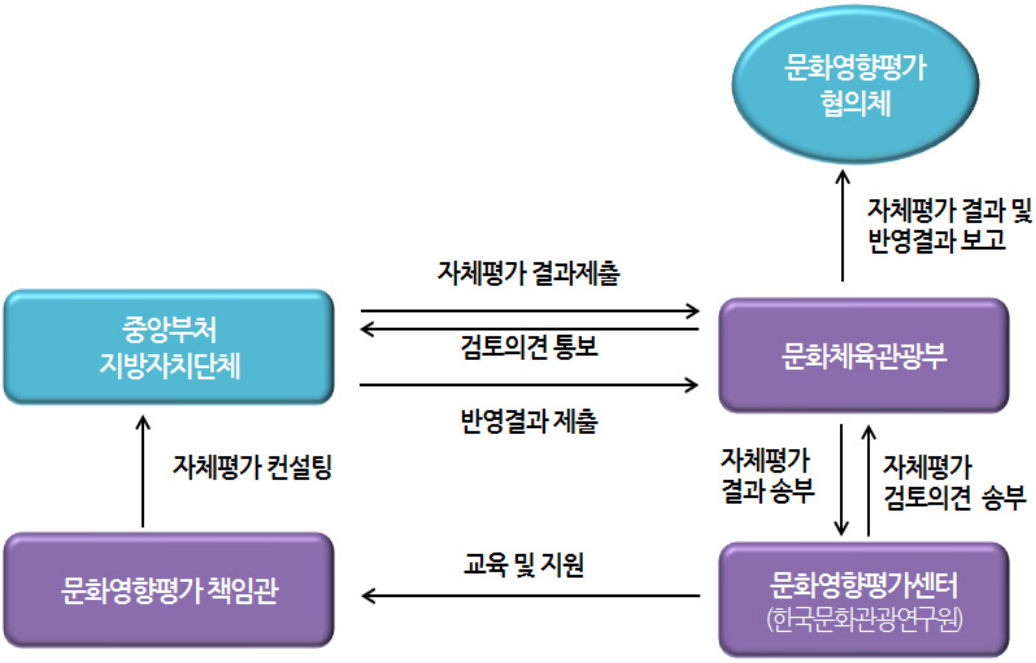

[그림 6-4]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자체평가)

10. 추진일정

○ 문화영향평가 추진일정은 다음 [그림 6-5]과 같음

	추진계획	추진방법
3월~5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및 대상과제 선정	• 2016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4.1) • 정부부처, 지자체로부터 대상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 대국민 공모 제안과제, 전문가 추천과제 접수 • 협의체 시범 가동 (관계부처 협의) • 2016년 전문평가 대상과제 선정(15개)
6월~11월	2016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수행 및 자체평가 시범실시	• 개별평가기관 공모 및 선정 • 착수보고회 및 1차 통합워크숍 • 개별평가기관 문화영향평가 수행 (표준분석절차 원용) • 중간보고회 및 2차 통합워크숍 • 최종보고회
12월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 개별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도출 • 종합평가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1월	평가결과 보고 (문화영향평가협의체) 및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부처 및 지자체에 통지 및 환류 • 개별평가 기관별 정책 컨설팅 실시
2월	해당기관 개선방안 마련	• 해당 부처 및 지자체 개선방안 마련 및 통부 • 2016 문화영향평가 성과공유 포럼

[그림 6-5] 문화영향평가 추진일정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정책 및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계획 및 정책 (자체평가 대상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한 계획 및 정책 (요청에 의한 전문평가 대상,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호)
-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서 평가하기로 협의된 계획 및 정책 (협의 및 선정에 의한 전문평가 대상,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2.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운영

1)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 협력체계에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대해 협의함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제4조(협력체계 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선정절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대상 정책 후보안을 선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가 요청 접수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 최소 1건 이상의 추천과제 접수
- 대국민공모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평가대상 정책후보안을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상정

○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서 상정된 평가대상 후보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 확정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대상 협의 (문화영향평가 협의체)		평가대상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평가 요청 접수 ② 정부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 ③ 대국민 공모 제안과제 접수 ④ 전문가 추천과제 접수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평가 확정된 정책, 계획, 법·제도 등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그림 6-6] 문화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절차

4. 대상선정기준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계획, 법·제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책, 계획, 법·제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

①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큰 정책 및 계획(예시)

-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예: 국정과제, 지자체 단체장 주요 시책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예 : 도시첨단산단조성,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사업, 도심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등)

-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예 : 사회보장기본계획, 삶의질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등

②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큰 계획 및 정책

-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 (예 : 도시재생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공외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사업 등)

○ 2016년 문화영향평가는 약 15개 내외의 정책, 계획, 법·제도를 대상으로 선정 고려

〈표 6-4〉 분야별 예시

구분	예시
① 교육, R&D 분야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산학협력 5개년 계획, Post-LINC 사업, 인문한국 사업, 돌봄교실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누리과정,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사업(청소년 쉼터 운영 등), 평생교육정책,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학교건축 현대화·선진화 대책, 아동학대 종합대책,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사업, 문화-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 R&D 지원사업, 대학평가제도 등
② 복지, 보건, 고용 분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누리과정, 취약계층 돌봄사업,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고령자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고용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복합헬스케어타운 조성,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청년취업프로그램, 열정페이 근절,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등
③ SOC, 시설조성, 산업 분야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 조성사업,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사업(자율주행 실험도시 등), 규제프리존 입지규제 완화,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청년몰 조성사업, 문래동식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사업, 대중교통시설 운영 및 디자인 정책 등
④ 농림, 수산, 식품, 환경 분야	농촌관광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활기찬농촌 프로젝트, 로컬푸드직매장, 승마시설 조성 사업, 어촌체험마을 내실화 사업, 한식진흥사업, 도심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폐자원 배출·수거·재활용 정책,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생태관광지역 지정, 캠핑장 확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사업 등
⑤ 국방,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분야	병영문화 혁신사업, 병영폭력 근절 프로그램, 군인복지 기본계획, 공공외교 사업, 문화외교 사업, 재외공관 운영,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사업, 보훈기념행사(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 호국영웅 선양 사업, 나라사랑교육 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운영 등), 행복출산서비스, 한류비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제3절 개별평가

1. 개요

□ 개별평가의 정의

○ 개별평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한 개 단위의 정책이나 계획, 법·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영향평가를 의미함

□ 개별평가의 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정책, 사업, 법, 제도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 지원

○ 일방적인 하향식 평가지표 전달이 아니라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각 전문평가연구기관들의 자체·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지표 및 방법의 창조적 발굴 및 적용을 독려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질적 안정성을 확보

□ 개별평가 절차

① 선정된 대상 계획 및 정책에 대해 개별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전문평가연구기관을 공모 : 제안서(연구계획서 포함) 제출

② 공모에 응찰한 전문평가연구기관 중에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평가역량이 우수한 전문평가연구기관을 선정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과 계약체결

③ 선정된 개별 전문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워크숍(workshop)을 통해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방향, 평가지표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 진행

④ 2016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 평가지표(핵심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확정 및 지침 전달

⑤ 개별평가 수행

- 평가대상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적절하게 분석·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설정 (핵심지표 + 자율지표) 및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 FGI, FGD, 델파이조사, 사례분석(Case Study), 현장조사(Field Study), 관계자 인터뷰(in-depth interview), 주민, 이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survey), DB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의 활용을 통한 정성적·정량적 평가 (다만 부문별 합산을 통한 총점 방식은 지양)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긍정적 영향을 확산·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추상적 방향성 기술 지양, 전문가 자문, FGI, FGD, 관계자 인터뷰(in-depth interview) 등을 활용)

⑥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⑦ 대상 과제 담당자에 대한 컨설팅 수행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사업의 개선을 위한 대면 컨설팅 수행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문화영향평가센터)은 개별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핵심평가지표 및 방법론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

2. 평가기관 선정

1) 개별정책평가기관의 선정

□ 평가기관의 선정방법

○ 사업명 : 2016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 연구용역 공모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신청자격[183] : 정책연구·정책평가(컨설팅 포함) 전문 기관으로서, 정책연구, 정책 평가 수행 역량과 추진실적을 보유한 단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문적인 학술연구 능력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 예외규정 적용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출

183) 고용영향평가의 입찰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음.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본원 회계규칙 제81조(일반경쟁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과 지방재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심의위원회(5인 이상의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를 구성하고,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총점			100점
Ⅰ. 기술평가			80점
	1. 과업에 대한 이해도(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점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평가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 및 예산배분의 합리성 및 적합성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20점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과 역량 – 연구원간 업무분담의 적정성	
	4. 기관의 수행능력(15)	관련 분야 수행실적, 기관의 신뢰도 등	15점
		– 관련분야 연구 및 기술경험 실적 – 연구진의 연구실적 및 전문성	
Ⅱ. 입찰가격평가			20점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평가모형

○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의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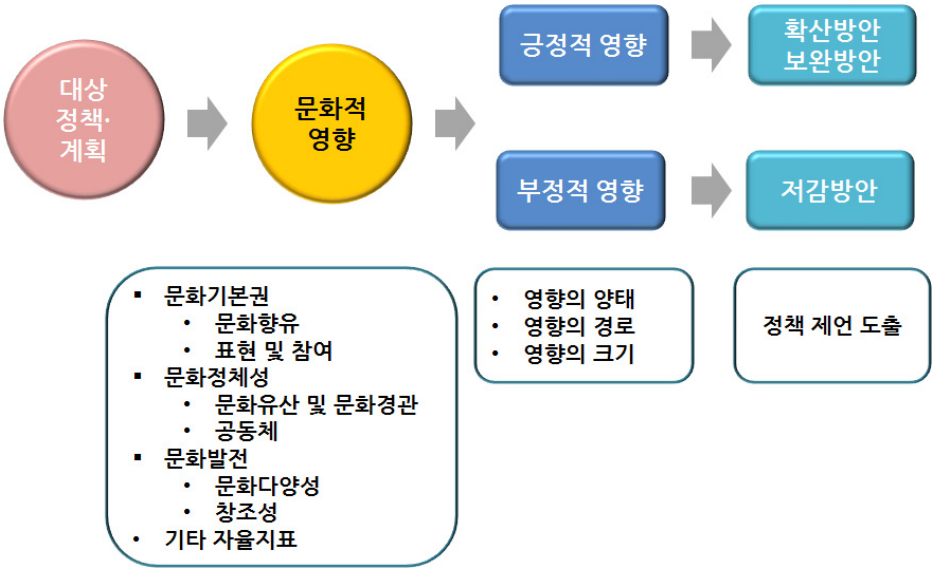

[그림 6-7]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평가모형

2)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 평가지표

○ 개별평가기관이 개별평가에서 포함해야 할 핵심지표(공통지표)는 '문화기본권(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발전(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6개임(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 세부지표의 경우 필수지표는 반드시 평가에 적용하되, 선택지표의 경우 개별평가기관에서 평가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개별평가기관은 핵심지표(공통지표) 이외에 대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책 등의 문화적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표(자율지표)와 평가방법을 추가 개발·적용할 것을 장려함

○ 신규 개발된 평가지표의 주요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는 개념적·조작적 정의를 수행함

〈표 6-5〉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공통 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접근성
			(선택)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필수) 표현 및 참여 기회
			(선택)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 사회적 자본
			(필수)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적 종 다양성
			(선택)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선택) 창조자본
			(선택)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 공통지표(핵심지표) 중 필수지표는 평가에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통지표(핵심지표) 중 선택지표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성화지표(자율지표)는 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의 개념 및 세부지표의 내용은 [부록 1] 참조

〈표 6-6〉 2016년 문화영향평가 개별평가 세부 평가지표 및 판단기준의 예시

평가지표	세부지표	판단 기준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 해당 정책 등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확보 수준이 충분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인력 및 예산이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문화향유수준	• 정책대상집단의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이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 기회	• 해당 정책 등의 입안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참여 기회나 절차가 보장된 경우, 사업(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정책대상의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의 참여기회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설사 절차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축소 또는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생활문화예술 참여	• 해당 정책 등에 정책대상이 정책대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수준이 충분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거나, 고유한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 해당 정책 등이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룬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을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의 고유한 가치를 더욱 크게 부가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기존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을 활용하였으나 그 결과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그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평가지표	세부지표	판단 기준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이를 운영할 것을 규정한 경우, 공동체의 결속,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교류 활성화, 신뢰 및 호혜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거나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문화공동체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형성 또는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 또는 확대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 확대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생성이나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거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가로막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보호하거나, 상업주의 예술로부터 비상업주의 예술이나 독립예술, 다양성예술을 보호하거나,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호·육성하거나, 다양한 문화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침해하거나, 문화적 획일화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 해당 정책 등이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혁파하는데 기여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차별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형성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	• 해당 정책 등이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사고, 경험, 도전의 기회를 강화하거나, 창조적인 인재의 발굴, 성장 및 유인에 기여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사고, 경험, 도전의 의지를 저해하거나, 창조적인 인재의 발굴, 성장 및 유인에 장애가 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창조기반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정책실행 방식의 혁신, 규제 시스템의 합리화 또는 활발한 기업가 정신의 고취에 기여하거나, 시대적인 필요에 부흥하는 다양한 지식·정보의 융합 혁신의 장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 해당 정책 등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정책실행 방식의 퇴보, 불필요한 규제의 도입 또는 기업가 정신의 저하를 가져오거나, 시대적인 필요에 반하는 인습(anachronism)을 강화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 개별평가기관은 다음의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함

○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

- 평가대상 정책 등과 관련된 정부보고서, 학술논문, 홈페이지 자료 참고
- 대상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현황자료, 통계자료 참고

○ 현장 평가 및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계획)의 대상지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field study)와 정책 관계자(사업담당자,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수행
- 최소 1회 이상 수행

○ FGI(Focused Group Interview) 및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정책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FGI(Focused group interview) 수행
- 대상 정책 및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발, 해당 정책 등이 미칠 문화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판단, 정책제언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AHP 분석을 통해 설정하도록 함
- 최소 3회 이상 수행(1회 최소 3인 이상)하고, 표준화된 보고양식에 따라 종합평가기관에 결과 제출

○ 설문조사(survey)

- 대상 정책이 미친 영향을 예측 또는 파악하는 데 적합한 대상(정책대상 등)에 대해 설문조사 수행
- 모집단과 표본추출방법을 명확히 밝히고, 표본의 대표성 및 설문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을 사용
- 사전평가의 경우 정책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정책 등의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 설계
- 과정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경우 해당 사업이 미친 영향(효과)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 설계
- 설문지 및 표본설계·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종합평가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 계량분석(Statistical analysis)

- 통계청, 각 정부부처, 지자체 생산, 또는 개별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 및 통계적 검증
- 시계열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회귀분석, 사전사후 설계, 참여자/비참여자 비교분석, 패널분석,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등을 통해 대상 정책 등이 미친 문화적 영향의 객관적 규명

- 단순한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을 넘어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 사례분석(case study)

- 대상 정책이 다수의 세부사업이나 사업주체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곤란할 경우 이 중 유의미한 사례를 뽑아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수행
- 다만 해당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은 해당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정책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함

□ 표준분석·평가절차

○ 개별평가연구는 다음과 같은 표준분석·평가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또한 평가단계별로 [부록 2] 서식1~6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평가진행보고를 수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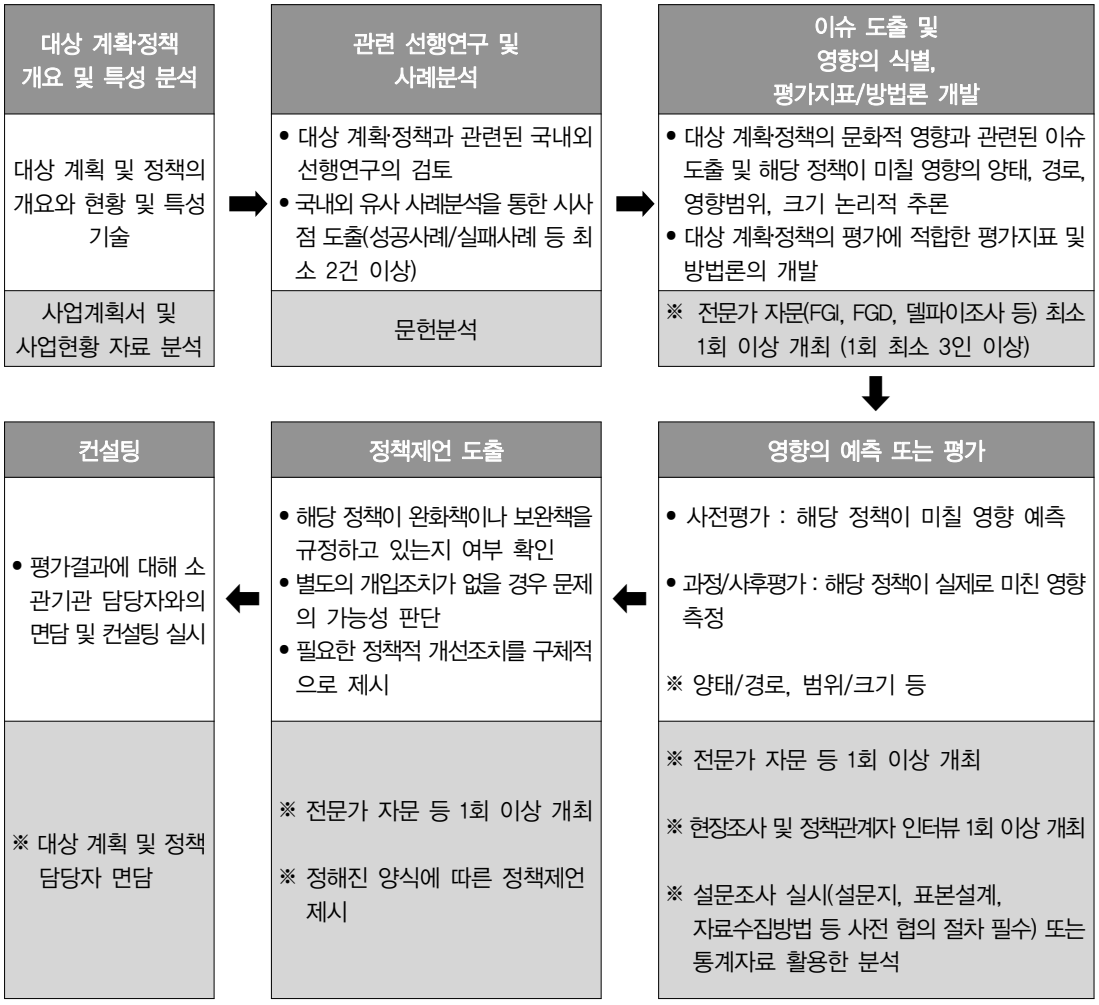

[그림 6-8]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표준분석·평가 절차

(1) 대상 과제의 개요, 전개과정, 현황 분석

○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분석

○ 대상 과제의 대상지역 및 정책대상에 대한 현황 분석

○ 사업현황자료, 국내외 관련 문헌 분석,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

(2)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대상 과제와 유사한 정책 등이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 최소 2건 이상 분석

(3) 이슈도출 및 영향의 식별과 평가지표 및 방법론의 개발

○ 대상 과제의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 대상 과제가 미칠 문화적 영향의 양태, 경로, 영향범위 및 크기에 대한 논리적 추론

○ [서식 1 : 이슈도출 및 영향의 식별]을 활용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결과보고

○ [서식 2 : 평가지표 개발]를 활용하여 개발된 평가지표에 대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결과 보고

○ [서식 3 :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결과 보고

(4) 영향의 예측 또는 평가

○ 설정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대상 과제의 문화적 영향을 예측 또는 평가함

- 사전평가 : 대상 과제가 아직 시행되기 이전의 단계일 경우 사전평가에 해당하며, 해당 정책 또는 계획이 미칠 영향을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이 주된 과업이 됨
- 과정평가 : 대상 과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계일 경우 과정평가에 해당하며, 해당 정책 또는 계획이 실제로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주된 과업이 됨

○ 판단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함

○ 2차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화관련 지표 외에 문화영역 밖에 있는 지표(예-고령화지수, 실업률, 임대료 등)들도 관련시킬 수 있는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평가결과의 정량화 시에는 항목별 배점과 판단기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본 평가는 평가대상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유사정책이나 같은 지역 내의 타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서식 4 :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결과 보고

(5) 정책제언 도출

○ 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상 정책(재정사업, 계획, 법·제도)이 문화친화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
-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정책프로그램이나 정책추진체계·추진과정 설계, 재정적 지원사항 및 방안, 법·제도적 조치 포괄
- 실현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책제언 중심으로 기술 (추상적인 방향성 기술 지양)

○ [서식 5 : 정책제언 도출]를 활용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결과 보고

(6) 컨설팅

○ 대상 과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컨설팅 수행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 및 사업의 개선을 위한 대면 컨설팅 수행

○ [서식 6 : 컨설팅 결과보고]을 활용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결과 보고

4. 평가보고서의 작성

○ 지정된 보고서 목차 및 디자인 서식에 맞추어 최종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목]

2016 OOOOOOOO 문화영향평가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대상 과제명] 문화영향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1. 평가배경
2. 평가의 필요성

제2절 [대상 과제명] 문화영향평가 범위와 방법

1. 문화영향평가 범위

※ 작성요령 :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유 제시

2. 문화영향평가 방법

1) 문화영향평가 지표

※ 작성요령 : 평가지표 제시 및 도출과정 명시 (핵심지표 + 자율지표)

2) 문화영향평가 방법

※ 작성요령 :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기술, 이유 제시

- 문화 영향의 정성적 평가 외에 정량적 평가 반드시 포함
- 설문조사의 경우 모집단, 표출방법 등 명확히 제시하고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샘플 수 확보, 설문문항을 부록으로 제시

제2장 [대상 과제명] 추진 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대상 과제명]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 사업 개요

※ 작성요령 : 대상과제의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세부실행계획서,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

- 사업목표, 대상, 주요내용, 추진체계 및 절차 등 포함

2. 사업 추진 현황

※ 작성요령 : 대상 과제의 공식적인 사업현황자료, 실적자료, 기타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진행과정, 추진현황, 주요성과, 세부사업실적 및 문제점

제2절 유사 정책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

※ 작성요령 : 대상 과제와 유사한 정책 등이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제시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 최소 2건 이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3절 [대상지] 현황 분석

※ 작성요령 : 대상과제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나 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현황 분석

- 문화접근성, 문화향유 수준,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적 종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창조자본, 창조기반 현황 등

– 〈문화향유실태조사〉, 〈인구통계자료〉, 〈문화재관리현황〉 등 기존의 2차 자료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기술

제3장 [대상과제명] 사업 문화영향평가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작성요령 : 대상 과제가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 경로, 크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작성요령 : 대상 과제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 경로, 크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 작성요령 : 대상 과제가 문화다양성,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 경로, 크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

※ 이외에 개별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평가지표에 대상 과제가 미친 영향의 양태, 경로, 크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평가결과 종합

1.
2.
3.
4.

※ 작성요령 : 2장과 3장의 내용을 근거로, 대상 과제의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술

제2절 정책적 제언

1.

2.

3.

4.

※ 작성요령 : 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상 과제가 문화친화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
-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정책프로그램이나 정책추진체계·추진과정 설계, 재정적 지원사항 및 방안, 법·제도적 조치 포괄
- 실현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책제언 중심으로 기술 (추상적인 방향성 기술 지양)

※ 종합표 작성

주요평가항목	평가 주요내용	개선과제	담당부처

제3절 [대상정책명] 개별평가의 성과와 과제

1. 개별평가의 성과
2. 개별평가의 한계 및 과제

※ 작성요령 : 대상 과제에 대한 개별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 활용된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개별평가의 성과 및 한계, 향후 과제를 기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첨부

□ 작성시 주의사항

○ 문화영향평가는 대상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대상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판단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함

○ 2차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화관련 지표 외에 문화영역 밖에 있는 지표(예-고령화지수, 실업률, 임대료 등)들도 관련시킬 수 있는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평가결과의 정량화 시에는 항목별 배점과 판단기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주요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는 개념적 정의를 함

○ 본 평가는 평가대상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유사정책이나 같은 지역 내의 타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초점집단면접(FGI),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진행시 조사대상 선정에 유의하며, 충분한 사전설명 및 시간을 투입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정책적 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작성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히 서술해야 함

5. 개별평가의 관리 및 지원

□ 통합 워크샵을 통한 제도에 대한 이해 지원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개별평가의 수행에 앞서 문화영향평가의 목적 및 방향,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평가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개별평가기관이 사업의 대상 및 성격에 맞는 세부지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함

□ 대상사업관련 자료제공요청 협조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개별평가기관이 자료제공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상사업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해 자료제공 협조 공문을 발행함

□ 보고회 및 현지방문동행을 통한 개별평가의 관리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주관하고 실시하여 개별평가기관의 연구상황을 점검함(개별평가기관은 평가단계별로 표준화된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진행보고를 해야 함 : 부록2 참조)

○ 현지방문시 동행하여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개별평가와 종합평가간 연계성 확보

제4절 자체평가

1. 개요

□ 정의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계획 및 정책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당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함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에 의해 직접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평가연구기관에 의한 전문평가인 '개별평가, 종합평가'와 구별됨

○ 즉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소관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반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완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목적

○ 문화영향평가의 자체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 및 정책 등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나 기관들이 스스로 문화영향평가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책의 취지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평가(개별평가나 종합평가)의 경우 물리적,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평가 대상의 규모와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처가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내면화하고 실행함으로써 문화기본법이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음

○ 나아가 자체평가의 결과를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해당 사업의 문화적 결과를 미리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적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촉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도 가짐

2. 평가시행 체계 및 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 자체평가 대상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임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평가대상의 선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진흥을 주된 목표로 하는 계획 및 정책은 제외 가능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기준 (안)〉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계획 및 정책
- 국정과제 또는 지자체 단체장의 주요 시책
-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은 아니나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 대규모 개발·시설조성 사업
- 문화적 요소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책
- 문화적 요소와 결합의 필요성이 큰 정책
-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법(조례 포함) 및 제도

□ 자체평가 절차

○ 자체평가의 단계는 1) 평가대상의 선정, 2) 자체평가서 작성 및 제출, 3) 검토의견 통보, 4) 반영결과 제출, 5) 반영결과 확인의 다섯 단계로 구성됨

○ 각 단계별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시행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음

※ 향후 문화영향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체평가결과를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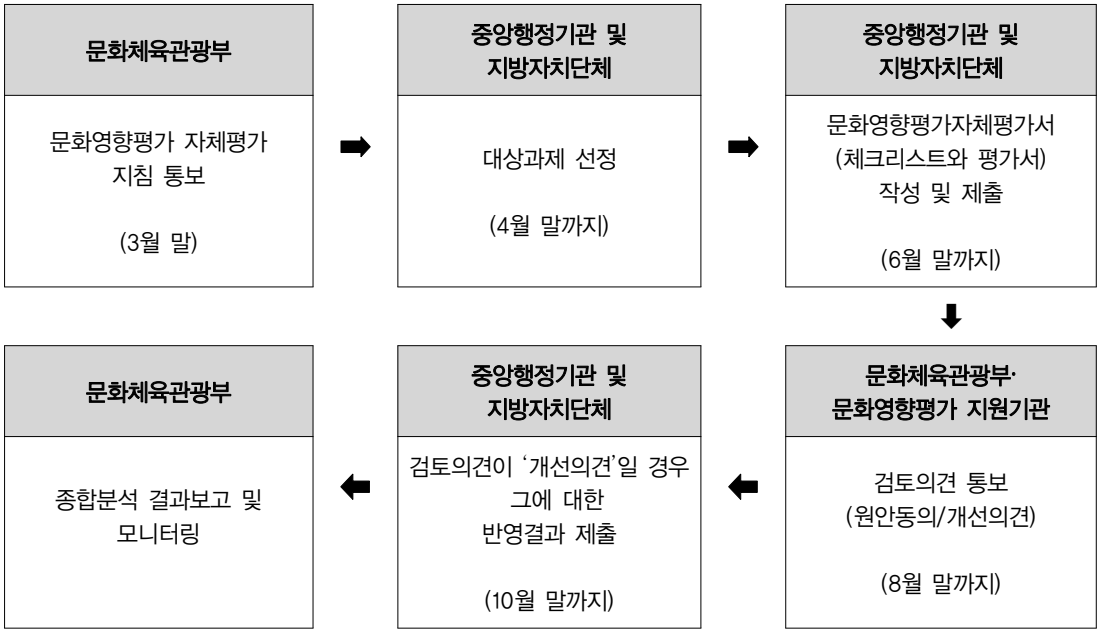

[그림 6-9]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절차

□ 자체평가 시행체계

○ 자체평가 시행체계는 다음의 [그림 6-10]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자체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함

- 자체평가서는 평가대상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이 작성
- 작성된 자체평가서는 해당 부서 국장급 공무원의 검토를 득하도록 함(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 분야 국장)

※ 자체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문화영향평가 분석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질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경우 평가대상의 수가 크게 급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광역 단위로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종합평가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또는 '개선의견'으로 분류

○ 검토의견이 '개선의견'으로 나왔을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의견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검토의견이 원안동의로 나올 경우 절차 종료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종합평가기관)은 자체평가결과와 반영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결과 보고

- 2016년 자체평가기관의 반영결과에 대해서는 2017년에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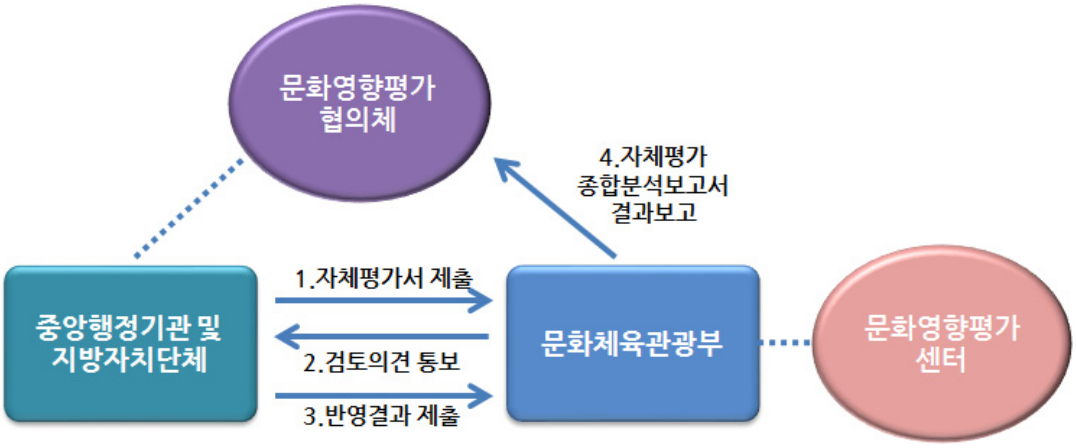

[그림 6-10]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시행체계

3.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평가지표

○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전문가 평가인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와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재정사업, 계획, 법·제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임

○ 자체평가에서도 개별평가, 종합평가와 마찬가지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6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함

- 다만 전문평가와는 달리 담당 공무원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보다 간략화된 평가양식과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함

〈표 6-7〉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공통 지표 (핵심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접근성
			(선택)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필수) 표현 및 참여 기회
			(선택)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필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 사회적 자본
			(필수)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 문화적 종 다양성
			(선택)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6.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선택) 창조자본
			(선택) 창조기반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 공통지표(핵심지표) 중 필수지표는 평가에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통지표(핵심지표) 중 선택지표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성화지표(자율지표)는 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소관 부서장의 책임 아래 체크리스트와 자체평가서를 단계적으로 작성함

○ 체크리스트는 평가대상의 유형에 대해 소관기관의 평가대상 정책 담당자가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성

○ 자체평가서는 대상 정책의 문화적 영향의 크기(높음, 보통, 낮음),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했는지 여부(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에 대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4. 체크리스트 및 평가보고서 작성

1)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체크리스트 구성

○ 자체평가의 첫 번째 단계는 평가대상사업의 담당 공무원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임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는 사업명, 평가대상의 유형, 신규/계속 여부, 문화영향평가 신규과제/지속과제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부서 정보와 해당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됨

○ 다음으로는 대상사업의 유형에 관한 항목으로서 해당사업이 기능별로 어떠한 정책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기관명]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에 ○ 또는 V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사업, 계획, 법, 제도)명		
구분1	1) 재정사업 ( ) 2) 계획 ( ) ☞ ① 법정계획( ) ② 비법정계획 ( )	
구분2	신규 ( ), 계속( ) ※ 시행기간(0000.00.00 ~ 0000.00.00)	
구분3	문화영향평가 신규과제( ), 문화영향평가 지속과제( )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붙임자료	해당사업의 계획	
정책유형	① 교육, R&D 분야 ( ) ② 복지, 보건 분야 ( ) ③ SOC, 시설조성, 개발 분야 ( ) ④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고용 분야 ( ) ⑤ 농림, 수산, 식품, 환경 분야 ( ) ④ 국방, 외교, 통일 분야 ( ) ⑥ 공공질서, 안전 분야 ( ) ⑦ 일반, 지방행정 분야 ( ) ※ 여러 개의 성격이 혼합된 경우 복수 표시 (○)	

년 월 일

2)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 구성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체평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평가보고서는 크게 Ⅰ. 대상정책 개요, Ⅱ. 대상정책의 문화적 영향 및 문화영향의 정책 반영 여부 평가로 구성됨

○ 대상정책 개요

- 정책명, 목적, 추진근거, 주요 내용, 예산 등을 기술함

○ 대상정책의 문화적 영향 및 문화영향의 정책 반영 여부 평가

- 먼저 문화영향평가의 6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대상 정책이 미친(혹은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평가항목별 문화 영향의 크기를 '높음, 보통, 낮음' 중 체크하고 그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함
- 둘째, 6개 평가항목별 문화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 정책에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중 체크하고, 그 구체적인 반영내용, 추후 개선계획, 해당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함

〈표 6-8〉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책의 문화적 영향*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1. 문화기본권	1-1. 문화향유 (문화접근성 확대 및 문화향유 수준 제고)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1-2. 표현 및 참여 (표현 및 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예술 참여 증진)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2. 문화정체성	2-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2-2. 공동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문화공동체 발전)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3. 문화발전	3-1. 문화다양성 (문화적 종 다양성 증진 및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확대)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3-2. 창조성 (창조자본 형성 및 창조기반 구축)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서식

[기관명]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서

Ⅰ. 대상 정책 개요

※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에 ○ 또는 V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사업, 계획, 법, 제도)명		
구분1	1) 재정사업 ( ) 2) 계획 ( ) ☞ ① 법정계획( ) ② 비법정계획 ( )	
구분2	신규 ( ), 계속( ) ※ 시행기간(0000.00.00 ~ 0000.00.00)	
구분3	문화영향평가 신규과제( ), 문화영향평가 지속과제( )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붙임자료	해당사업의 계획	
정책유형	① 교육, R&D 분야 ( ) ② 복지, 보건 분야 ( ) ③ SOC, 시설조성, 개발 분야 ( ) ④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고용 분야 ( ) ⑤ 농림, 수산, 식품, 환경 분야 ( ) ④ 국방, 외교, 통일 분야 ( ) ⑥ 공공질서, 안전 분야 ( ) ⑦ 일반, 지방행정 분야 ( ) ※ 여러 개의 성격이 혼합된 경우 복수 체크	

□ 정책 목적

○ *사업 계획서 상에 적시된 사업목적 기재*

○

○

□ 추진 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

○

□ 주요 내용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

○

○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2015년(A)	2016년(B)	증감(B-A)
총액			

II. 대상 정책의 문화적 영향 및 문화 영향의 정책반영 여부 평가

※ 아래의 〈표〉에서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칠 문화적 영향을 '높음, 보통, 낮음' 중 체크(☑)해주시고, 각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문화 영향을 반영하여 대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영완료, 추후개선, 해당없음' 중 체크((☑))해주십시오.

[평가기준]

*** 정책의 문화적 영향**

① 높음: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높음'에 체크

② 낮음 :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낮음'에 체크

③ 보통 :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 '보통'에 체크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① 반영완료 :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이미 고려하여 사업내용, 예산배분, 수행방식 등에 반영한 경우 '반영완료'에 체크

② 추후개선 :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내용, 예산배분, 수행방식 등에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인 경우 '추후개선'에 체크

③ 해당없음 :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나타난 문화적 영향과 관련성이 낮으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책의 문화적 영향*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1. 문화 기본권	1-1. 문화향유 (문화접근성 확대 및 문화향유 수준 제고)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1-2. 표현 및 참여 (표현 및 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문화예술 참여 증진)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 앞의 〈표〉에서 평가하신 내용(체크한 내용)에 대해 그 근거를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1. 문화향유 : 문화접근성 확대 및 문화향유 수준 제고

□ 정책의 문화적 영향

○ 평가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하여 제시)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 '반영완료'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추후개선'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그 이유를 기재

구분	반영된 내용	개선안	해당없음의 이유
3. 법령(지침 포함) 반영			
4. 예산 반영			
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1-2. 표현 및 참여: 표현 및 참여기회 확대와 생활문화예술 참여 증진

□ 정책의 문화적 영향

○ 평가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하여 제시)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 '반영완료'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추후개선'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그 이유를 기재

구분	반영된 내용	개선안	해당없음의 이유
3. 법령(지침 포함) 반영			
4. 예산 반영			
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1-3. 문화다양성: 문화적 종 다양성과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확대

□ 정책의 문화적 영향

○ 평가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하여 제시)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 '반영완료'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추후개선'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그 이유를 기재

구분	반영된 내용	개선안	해당없음의 이유
3. 법령(지침 포함) 반영			
4. 예산 반영			
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2.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책의 문화적 영향*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2. 문화 정체성	2-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2-2. 공동체 (사회적 자본 형성 및 문화공동체 발전)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평가기준]

*** 정책의 문화적 영향**

① 높음: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높음'에 체크

② 낮음 :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낮음'에 체크

③ 보통 :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 '보통'에 체크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① 반영완료 :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이미 고려하여 사업내용, 예산 배분, 수행방식 등에 반영한 경우 '반영완료'에 체크

② 추후개선 :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내용, 예산 배분, 수행방식 등에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인 경우 '추후개선'에 체크

③ 해당없음 :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나타난 문화적 영향과 관련성이 낮으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2-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와 활용

□ 정책의 문화적 영향

○ 평가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하여 제시)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 ‘반영완료’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추후개선’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그 이유를 기재

구분	반영된 내용	개선안	해당없음의 이유
3. 법령(지침 포함) 반영			
4. 예산 반영			
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2-2. 공동체 : 사회적 자본 형성 및 문화공동체 발전

□ 정책의 문화적 영향

○ 평가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하여 제시)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 '반영완료'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추후개선'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그 이유를 기재

구분	반영된 내용	개선안	해당없음의 이유
3. 법령(지침 포함) 반영			
4. 예산 반영			
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3.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책의 문화적 영향*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3. 문화발전	3-1. 문화다양성 (문화적 종 다양성 증진 및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확대)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3-2. 창조성 (창조자본 형성 및 창조기반 구축)	□ 높음 □ 보통 □ 낮음	□ 반영완료 □ 추후개선 □ 해당 없음

[평가기준]

*** 정책의 문화적 영향**

① 높음: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높음'에 체크

② 낮음 :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낮음'에 체크

③ 보통 :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 '보통'에 체크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① 반영완료 :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이미 고려하여 사업내용, 예산 배분, 수행방식 등에 반영한 경우 '반영완료'에 체크

② 추후개선 : 각 평가항목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내용, 예산 배분, 수행방식 등에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인 경우 '추후개선'에 체크

③ 해당없음 :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나타난 문화적 영향과 관련성이 낮으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3-1. 문화다양성 : 문화적 종다양성 증진 및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 정책의 문화적 영향

○ 평가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하여 제시)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 '반영완료'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추후개선'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그 이유를 기재

구분	반영된 내용	개선안	해당없음의 이유
3. 법령(지침 포함) 반영			
4. 예산 반영			
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3-2. 창조성 : 창조자본 형성 및 창조기반 구축

□ 정책의 문화적 영향

○ 평가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하여 제시)

□ 문화영향 정책 반영 여부

○ '반영완료'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정책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 '추후개선'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기재

○ '해당없음'으로 체크한 경우 해당 칸에 그 이유를 기재

구분	반영된 내용	개선안	해당없음의 이유
3. 법령(지침 포함) 반영			
4. 예산 반영			
5.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반영			

년 월 일

5. 자체평가 참여시 인센티브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기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지역문화지표〉에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참여실적 및 정책반영실적을 세부지표로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지역관광발전지표〉에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참여실적 및 정책반영실적을 세부지표로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 힝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참여실적 및 정책반영실적을 세부지표로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 매년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나 정책에 대해 표창이나 수상 부여

○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이나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홍보 지원

제5절 평가결과의 제시 및 활용

1. 정책권고 및 이행점검

1) 정책개선 권고 및 환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기본법」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제언 도출 및 문화영향평가협의체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개선 권고 실시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 및 환류 요청

2) 정책개선 대책 수립 및 시행

○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특성 및 정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3)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 종합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기한이 지난 후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제출

○ 이행상황을 문화영향평가협의체에서 점검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체계가 구축되어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수택·박재홍(2013).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 추이와 문화취향. 현상과 인식. 37(3). p.87-115.

강원도청(2015).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 강원도 공고 제2015-83호.

강원발전연구원(2014).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강원도. 정책메모 제359호. 1-15.

고용노동부(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지침.

고용노동부(2015).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고용노동부(2015).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 평가: 제1장 사회 · 행정.

권영한·오진관·안소은(2014).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규원(2003).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둘순(201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둘순·정가원·문희영(201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연진(2013).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효정(2013).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류제헌(2013).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국제적 선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pp.575~588.

박용치(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10. p.120-147.

박주현(2014).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연구보고서: 마을 3년의 변화 그리고. 1-83.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4). 인포그래픽스로 보는 2013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과자료집.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1-248.

서울특별시(2015).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설명서. 1-149.

성종상(2015). 기념물에서 경관으로 -문화경관으로 본 세계문화유산. 건축. 59(12). p.21-24.

양혜원(2015). 문화가 있는 날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성가족부(2015).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15). 2014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오민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제-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287. p.92-108.
윤순진(2004).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283-311.
윤윤규·원희연·최양국(2008). 지역산업정책의 고용영향분석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원(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 지침. 고용노동부
이시재(2000).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223-228
이시재(2002).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환경사회학연구(ECO). 3. p. 106-132.
장민선(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p.18-19.
전주시장상인회·전주시(2015). 전주남부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정정숙(2014).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주철·임재영(2007).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연구-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16(1). p,45-58.
정홍익 외.(2014).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권중(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특별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2015). 2015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지역발전위원회(2015). '1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청주 육거리시장상인회·청주시(2015). 청주 육거리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한건수(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문화예술지식DB 심층이슈분석 제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2012). 고용친화적 예산편성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4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지역관광발전지수 도입 기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2015 문화영향평가 내부 공문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17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2015년 환경평가 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재 .
허영식·정창화(2012). 한국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간문화적 접근방안. OUGHTOPIA. 27(2).
환경부(2008).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제도 조사 분석 연구.

환경부(2009).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환경부(20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환경부(2014),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환경부(2014). 201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2014).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부(2015),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대책.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

국외문헌

Burdge et al.(1995). Social Impact Assessment: State Of the Art.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2015).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Emerson, T. I.(1966).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Hillery, G.A.(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ty. 20. p.111-123.

HM Treasury(2011). The Green Book: Appraisal and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Mackenzie Valley Environmental Impact Review Board(2004).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p.1-97.

Mackenzie Valley Environmental Impact Review Board(2014). Annual Report 2013-2014. p.1-52.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09). Status Report and Information Circular - Develop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A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Initiative.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12).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nternal Working Draft. 비배포용 내부자료.

MacQueen, K.M. et al.(2001). What is Community? An Evidence-Based Definition for Participatory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2). p.1929-1938.

Moreno et al.,(2012). EIA Review Methodology.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Partal, A. (2013). Impact Assessment: A Tool to Assist 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ities Research Institute.

T.F.King(2000). What should be the "cultural resources" element of an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anc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1994).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Principles and Guidanc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2003). Principles and guidanc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s Service's(1999). The NEPA Desk Guide.

Williams, R. (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보도자료 및 브리핑자료

고용노동부(2013.9.27.).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4년 예산안 주요내용.

고용노동부(2013.11.). 2014년 예산편성개요.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1105&state=A&seq=1395656317819

고용노동부(2014). 20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Ⅲ-1).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div_cd=&mode=list&page=1&bbs_cd=OP1102&state=A&pimSeq=1&piSeq=1

고용노동부(2014). 사업입찰 공고문.

고용노동부(2014.9.29).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015년 예산안 주요내용.

고용노동부(2014.11). 2015년 예산편성개요.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mode=view&pimSeq=1&piSeq=1&bbs_cd=OP1105&state=A&seq=1434976786253

고용노동부(2015.1.16). 일자리 창출 효과가 궁금하다면? 지금 고용영향평가를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2015.4.13).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 발표.

고용노동부(2015). 20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국회확정).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7&div_cd=&mode=list&page=1&bbs_cd=OP1102&state=A&pimSeq=1&piSeq=1

국토교통부(2015.3.24.). 지역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5417

남정탁.(2013.11.19). 수원 못골시장, 구경 한번 와보세요…웃음이 가득해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9/20131119004902.html?OutUrl=naver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전주 전동성당.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9840&cid=40942&categoryId=33543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주 풍남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1696&cid=46656&categoryId=46656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성안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3803&cid=51895&categoryId=53958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거리 재래시장.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2836&cid=51895&categoryId=53959
농림수산식품부(2014.8.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2011.7.7.). 농식품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본격추진.
송영일(200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에코포럼 발표문.
신익수(2015.11.23). 무비자 확대로 지방공항이 뜬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10309&year=2015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소기업청(2015).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공고 제2015-10호.
환경부(2012.8),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설명자료.
환경부(2013.2.1),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
환경부(2014). 201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환경부(2015.7.30).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대책.

웹사이트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http://www.culturecj.com/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매켄지밸리 환경평가 검토위원회 http://www.reviewboard.ca/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 http://www.noaa.gov/
삶의 질 향상 위원회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
서울시 마을공동체 http://www.seoulmaeul.org/
서초구청 마을공동체사업 http://www.seocho.go.kr/site/sd/page.jsp?code=sdd090010000/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http://gia.mogef.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영국 법제처 http://www.legislation.gov.uk/

캐나다 법제처 http://laws-lois.justice.gc.ca/

캐나다 관광청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영향평가 http://www.keis.or.kr/www/project/measure/impact.jsp/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26478&lang=E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http://gia.kwdi.re.kr/center/page.do?cg=centerHistor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https://www.eiass.go.kr/

부 록

1. 2015 문화영향평가(종합평가) 주요 개념 및 평가지표
2. 2015 문화영향평가(종합평가) 서면평가서

1. 2015 문화영향평가(종합평가) 주요개념 및 평가지표

□ 문화의 정의

○ '문화(culture)'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184)]

- Raymond Williams는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185)]에서 문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ⅰ) 지적, 정신적, 미적 개발과정 일반 ⅱ) 사람들, 일정시기 혹은 집단이 공통의 정신을 매개로 하여 획득한 특정한 삶의 양식 ⅲ) 지적작업 혹은 지적 실천, 특히 예술적 활동 ⅳ) 문화는 특정한 사회질서가 소통되고 재생산되며 경험/탐구되는 기호적 표현의 세계

○ 한편 UNESCO는 문화를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요소의 총합이라고 보았으며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협의의 범위에서 벗어나 생활방식, 가치체계, 신념들을 포괄한다고 정의함

○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기반하여 「문화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의 개념을 정의함

>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본법」의 정의개념을 받아들여, 광의의 '문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함

가.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체험, 즉 문화향유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짐[186)]

- 미적 가치(aesthetic value) : 문화예술은 내적 감정 및 관념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훌륭한 문학, 시, 음악, 회화 등의 예술작품이나, 이러한 문화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대상은 그것을 소비·향유하는 이에게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함
- 정서적 가치(emotional value) : 문화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작가·예술가의 자기표현이며,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당대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함. 즉 문화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작품을 매개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견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억눌려 있던 생각과 불만이 표현되고 분출되며, 각자가 가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짐

184) 김연진.(2013).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5) Raymond Williams(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86) 양혜원.(2015). 문화가 있는 날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교육적 가치(education value) : 문화예술은 독특성과 참신성을 주요한 요소로 하는 만큼, 기성질서 또는 기존 사고의 틀을 전복하고 새로운 사상, 아이디어,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혁신적 가치를 가짐. 훌륭한 문화예술은 사물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제공하며, 본질에 대한 천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성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인지능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문화는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문명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관용, 호혜성, 신뢰 등 민주주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통합적 가치(social integration value) :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identity)과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다른 집단, 계층과의 소통과 공감을 촉진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통해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이렇게 문화향유가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재화에 대한 소비는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수준(Q*)보다 과소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천부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로부터 정서적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후천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재화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에 해당하며 아동이나 청소년기때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그러나 이러한 문화향유가 가지는 다양한 긍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화향유의 수준은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 사회적 위치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항상 문화격차가 나타나게 됨

- 박용치(2003)[187]는 문화격차(culture gap)를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으로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로 정의하며, 조권중(2004)[188]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수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수수준의 차이'로 해석함
- 문화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데 첫째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사회의 특정 집단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둘째,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소유가 사회계급 재생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부르디외, 1996; 강수택·박재홍, 2013)[189][190]

187) 박용치(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10. p.120-147.
188) 조권중(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특별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89) 부르디외, 삐에르(1996).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하). 최종철 옮김. 서울. 새물결.

○ 따라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화향유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부문은 정책적 노력을 다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는 UN인권선언 등에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

- 1948년 제정된 「UN 인권선언」제 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권리'를 처음으로 선언하였으며, 이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됨
- 우리 「문화기본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나 계획이 정책대상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동 사업(계획)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계획)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개의 차원, 즉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하도록 함

①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은 정책대상 또는 정책대상 중 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관람이나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함
-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확보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인력 및 예산이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 '문화향유수준'은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을 의미함
- 정책대상집단의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190) 강수택·박재홍(2013). 한국사회 문화격차의 변화 추이와 문화취향. 현상과 인식. 37(3). p.87-115.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이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나.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포함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191]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우리 헌법 제 19조(양심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됨[192]

-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에 대한 검열의 금지',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한편 과거 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정책대상의 전문예술에 대한 관람 기회와 관람률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일반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하고 창작·발표 등에 직접 참여(participation)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문화예술은 일반국민(ordinary people)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이 직면한 소외, 공동체의 붕괴, 불안과 고독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직접적인 문화예술 창작·발표를 위한 기획, 교육, 연습, 발표행위 등을 모두 생활문화예술 참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문화예술 참여는 '일반국민에 의한 문화적 형태의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나 계획이 정책대상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차원, 즉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함

191) Emerson Thomas I(1966).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192) 박주현.(2014).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 커뮤니케이션북스.

①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

- 사업(계획)의 입안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참여 기회나 절차가 보장된 경우, 사업(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정책대상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점수 부여
- 사업(계획)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의 참여기회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설사 절차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축소 또는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생활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사업(계획)에 정책대상이 정책대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사업(계획)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다.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각 문화는 보호받고 보전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의 일부'라는 인식은 2001년 UNESCO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의 체결로 결실을 이루었음

- 동 협약은 첫째,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둘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게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넷째, 문화다양성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것이며, 다섯째, 문화다양성은 시공간을 넘어서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에서 구현됨을 제시함[193)]

○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7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에 대한 국회에서의 비준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속조치로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193) 한건수(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문화예술지식DB 심층이슈분석 제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을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조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이나 계획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고자 함

① 문화적 종다양성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보호하거나, 상업주의 예술로부터 비상업주의 예술이나 독립예술, 다양성예술을 보호하거나,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호·육성하거나, 다양한 문화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침해하거나, 문화적 획일화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 해당 사업(계획)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차별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형성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혁파하는데 기여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라.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 UNESCO는 1972년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를 통해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함

- 동 협약은 1959년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로 고대 누비아유적이 수몰위기에 빠지자 유네스코에서 국제적인 누비아 유적보호운동을 전개했고 그로 인해 인류유산 보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채택됨

○ 동 협약에 따르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란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monuments),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를 의미함

- 기념물(monuments) : 건축작품, 기념적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특성을 가진 구조물이나 구성요소, 금석문, 혈거유적지 및 혼합유적지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
-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s) : 독립적인 또는 연계된 구조물들 중 건축적인 또는 그들의 동질성 또는 경관상의 이유로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
- 유적지(sites) : 인간의 작품 또는 인간과 자연의 결합적 작품, 고고학적 유적지를 포함한 지역으로 역사적, 미학적, 민속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하게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으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문화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영문으로는 '문화재'를 'cultural property'가 아닌 'cultural heritage'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194)]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의미함

194)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26478&lang=ENG

[문화재보호법, 2015.12월 현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015.3.27.일 개정, 2016. 3.28 시행 예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라는 개념을 활용하도록 하며, 문화유산의 범위에 포괄되는 개념 중 무형문화유산을 제외한 '문화적 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4번째 평가항목으로 다루도록 함
- 무형문화유산은 5번째 항목에서 다루도록 함

○ 한편 '문화적 경관 또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란 그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만의 보호에만 치우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이 가진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다는 반성에서 대두된 개념임
- 이는 1987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개념으로 유적과 기념물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일상적 경관을 중시하는 문화유산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와 맞닿아있음

○ UNESCO는 1992년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문화경관'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편입시켰으며 문화경관을 '문화재(cultural properties)이며 세계유산협약 1조에서 규정된 자연과 인간의 결합의 소산(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으로 정의함

○ 이러한 문화경관은 물리적 제약과 내외적인 자연환경, 연속적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힘에 의해 주어지는 기회의 영향 아래 인간사회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됨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2013년도 개정본)

Cultural landscapes

Cultural landscapes are cultural properties and represent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designat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and settlement over ti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constraints and/or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of successiv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orces, both external and internal.

○ UNESCO는 문화경관을 크게 다음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농업경관, 종교·역사적 산, 성지나 종교적 대상지, 역사문화루트, 원주민문화유적, 공원 혹은 정원, 산업문화경관, 역사도시, 정주지, 캠퍼스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표 1〉 문화경관의 영역

영역	내용	등록사례
의장(意匠)된 경관 (designed landscape)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의 설계의도 하에 창조된 경관	Sintra(Portugal, 1995) Arajuez(Spain, 2001)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evolved landscape)	①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 ②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으로 유적 주위에 남아있는 화석경관 등	① Cordilleras 계단식 논(Philippine, 1995), Saint-Emilion(France, 1999) ② Vat Phou와 이에 부속하는 Champasak의 고대주거(Laos, 1999)
관련된 경관 (associative landscape)	인간의 제 활동 특히 신앙 및 종교, 문학, 예술활동 등과 직접 관련된 경관	Tongariro 국립공원(New Aealand, 1993), UlruruKata Tjuta 국립공원(Australia, 1994), Perdu산(France./Spain, 1997, 1999)

출처 : 오민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제-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287. p.92-108.

〈표 2〉 세계문화유산 중 문화경관의 유형 예시

유형	세계 문화 유산명(국가)
전통적 농업경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필리핀), 커피문화경관(콜롬비아)
종교·역사적 산	피레네산맥 문화경관(프랑스), 태산· 황산·무이산(중국)
성지나 종교적 대상지	바미얀 계곡(아프가니스탄), 빔베트카 바위 은신처(인도), 룸비니 석가탄생지(네팔), 왓푸 사원(라오스),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한국)
역사문화루트	실크로드(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네게브 지역 항로 교역로(이스라엘), 시렌토 지역(이탈리아), 키산 지역 순례길(일본), 잉카 루트(아르헨티나)
원주민문화유적	울룰루바위(호주), 통가리로산(뉴질랜드)
공원 혹은 정원	메사버드국립공원(미국), 데사우뵐리츠공원(독일), 큐가든(영국), 쑤저우 전통정원, 베이징황실정원, 피서산장과 사원, 루산국립공원(중국), 크로메지우시의 정원과 성(체코)
산업문화경관	포스다리, Blaenavon지역(영국), 류칸-노토텐 산업유산(노르웨이)
역사도시	네세바르(불가리아), 그랑바싱(코트디브아르), 리장(중국), 아유타야(타이), 로도스 중세도시(그리스), 산토도밍고식민도시(도미니카공화국)
정주지	홀라쇼비체역사마을(체코), 홀로쾨마을(헝가리), 외암리·양동마을(한국), 안후이성 마을(중국),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 마을(일본)
캠퍼스	국립자치대학교 중앙대학도시캠퍼스(멕시코)

출처 : 성종상(2015). 기념물에서 경관으로 -문화경관으로 본 세계문화유산. 건축. 59(12). p.21-24.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함

○ 우리나라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경관(景觀)'을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음

>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계획)이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도록 함

①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을 보존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거나, 고유한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②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과의 조화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룬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문화경관이나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그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마.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앞에서 제시된 유형문화유산과 문화적 경관이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형문화유산은 무형적 특징을 가진 문화유산에 해당함

○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란 '공동체, 집단,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관습(practices), 표상(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과 이들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s), 공예품(artifacts), 문화적 공간(cultural spaces)'을 의미함

-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과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문화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

>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
> Article 2 -Definitions
>
>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 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에서 제시된 '무형문화재'란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됨

- 다만 2015년 3월 개정으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그 범위가 더 확대되었음

[문화재보호법, 2015.12월 현재]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015.3.27.일 개정, 2016. 3.28 시행 예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UNESCO「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개념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관습(practices), 표상(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과 이들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s), 공예품(artifacts), 문화적 공간(cultural spaces)'으로 정의하도록 함

- 여기에는 우리「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재의 개념도 포함된다 할 수 있음

○ 또한 '대상 사업(계획)이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문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과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평가하도록 함

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②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더욱 크게 부가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사회의 파편화, 핵가족화의 지속 등으로 인해 과거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을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양극화와 심화, 소외와 고독, 갈등의 심화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정부 또한 이러한 필요를 절감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주민간 단결과 협력의 촉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Hillery(1955)[195]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실체'로, MacQueen et al(2001)[196]은 '사회적 유대, 공동의 관점을 공유, 지리적 또는 상황적으로 협력활동에 참여를 통해 연계된 다양한 개선을 가진 일련의 사람들'로 정의하여 '일정한 장소, 공유, 협력활동, 사회적 유대'를 중요한 개념요소로 제시함

- 한편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지리적, 물리적 범주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은 인간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한계인 동시에 상호작용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기에서는 공동체를 '특정한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계획)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함

195) Hillery, G.A.(1955).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ty. 20. p.111-123.
196) MacQueen, K.M. et al. (2001). What is Community? An Evidence-Based Definition for Participatory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2). p.1929-1938.

①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이를 운영할 것을 규정한 경우, 공동체의 결속,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교류 활성화, 신뢰 및 호혜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거나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②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형성 또는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 또는 확대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 확대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생성이나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거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가로막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2. 2015년 종합평가 서면평가서 양식

※ 평가위원께서는 아래의 5개 사업(또는 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판단근거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종합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사전평가)

Ⅱ. 새뜰마을 사업 (사전평가)

Ⅲ.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전평가)

Ⅳ.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과정평가)

Ⅴ.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과정평가)

[참고자료 목록]

- 사업계획서
- 자체평가결과보고서
- 자체평가결과보고서의 요약본
- 판단근거 참고자료
- 종합평가 평가지표 설명

[참고] 전체 평가지표 체계

	평가 지표
문화 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접근성, 문화향유수준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종 다양성, 문화적 차별
문화 정체성	4.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
	5.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 문화공동체

사전평가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을 통해 정책대상자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문화접근성’은 정책대상 또는 정책대상 중 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관람이나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함
-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확보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인력 및 예산이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을 통해 정책대상자 또는 정책대상 중 취약계층(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수준(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교육경험률, 관람 또는 교육의 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문화향유수준'은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을 의미함
- ○ 정책대상집단의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이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

Q.계획으로 표현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사업(계획)의 입안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참여 기회나 절차가 보장된 경우, 사업(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정책대상의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확대될 경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사업(계획)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의 참여기회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설사 절차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축소 또는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으로 정책대상자의 생활문화예술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생활문화예술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사업(계획)에 정책대상이 정책대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 사업(계획)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적 종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이 대상지의 문화적 종 다양성을 보호 또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적 종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보호하거나, 상업주의 예술로부터 비상업주의 예술이나 독립예술, 다양성예술을 보호하거나,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호·육성하거나, 다양한 문화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침해하거나, 문화적 획일화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이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가?(역순위 점수)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차별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형성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혁파하는데 기여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1)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이 대상지의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거나,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의 실현 결과가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룬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그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Q. 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Q. 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더욱 크게 부가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이 대상지 내 공동체의식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이를 운영할 것을 규정한 경우, 공동체의 결속,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교류 활성화, 신뢰 및 호혜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실제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Q. 계획이 문화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형성 또는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 또는 확대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 확대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생성이나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거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가로막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사후 평가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을 통해 문화 관람 또는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문화접근성’은 정책대상 또는 정책대상 중 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관람이나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함
-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확보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인력 및 예산이 축소되었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을 통해 정책대상자 또는 정책대상 중 취약계층(경제적·사회적·신체적·지리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수준(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교육경험률, 관람 또는 교육의 질 등)이 향상되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향유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문화향유수준'은 문화예술작품의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양적 수준 및 질적 수준을 의미함
- ○ 정책대상집단의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향상되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 기존 상태에 비해 문화예술관람률 또는 관람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험률이나 경험빈도가 낮아지거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이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을 통해 표현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사업(계획)의 입안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참여 기회나 절차가 보장된 경우, 사업(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자의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정책대상의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확대될 경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점수 부여
- ○ 사업(계획)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의 참여기회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설사 절차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으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가 축소 또는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으로 정책대상자의 생활문화예술 참여가 확대되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생활문화예술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사업(계획)에 정책대상이 정책대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규정되어 있고 그 수준이 충분할수록 (+) 점수 부여

○ 사업(계획)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모임이나 창작·발표·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시설·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예산의 축소를 규정하고 있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 문화적 종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으로 대상지의 문화적 종 다양성이 보호 또는 확대되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적 종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보호하거나, 상업주의 예술로부터 비상업주의 예술이나 독립예술, 다양성예술을 보호하거나,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호·육성하거나, 다양한 문화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 예술적 표현,

문화적 가치 등을 침해하거나, 문화적 획일화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으로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이 조장되었는가?(역순위 점수)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기준

- ○ 해당 사업(계획)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차별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형성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 해당 사업(계획)이 소수집단(외국인거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혁파하는데 기여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1)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이 대상지의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존에 기여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 또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 ○ 대상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거나,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의 실현 결과가 대상지에 존재하는 고유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등과의 조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룬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대상 사업(계획)이 기존 유형문화유산이나 문화경관에 대한 변형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가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그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Q. 사업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고려하여 추진될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거나, 무형문화유산의 훼손이나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Q. 사업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기여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더욱 크게 부가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크게 훼손되거나 침해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으로 대상지 내 공동체의식이 제고되었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이를 운영할 것을 규정한 경우, 공동체의 결속,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교류 활성화, 신뢰 및 호혜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실제 공동체의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Q. 사업으로 문화공동체의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의 박스에 그 "판단근거"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	② 그렇지 않다 (-5점)	③ 보통이다 (0점)	④ 그렇다 (5점)	⑤ 매우 그렇다 (10점)

[참고] 문화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평가점수 산정 기준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형성 또는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 또는 확대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 확대에 기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 해당 사업(계획)이 대상지에 존재하는 문화공동체의 생성이나 발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거나, 대상지에 존재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 관련 협의회 등 문화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거나,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가로막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 점수 부여

[판단근거] ※ 평가점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정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이윤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정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고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민혜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개별평가기관(연구책임)

(사) 문화사회연구소 (임동근 교수)
문화컨설팅 바라 (권순석 대표)
(사) 인문사회연구소·코뮤니타스(신동호 소장)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흥재 교수)
(사) 한국문화기획학교 (윤성진 상임이사)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발 행 인 : 김 종 덕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52
http : //www.mcst.go.kr
연구 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 행 일 : 2016년 1월
인 쇄 처 : 크리홍보주식회사

ISBN 978-89-7820-818-5 93300